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746-01



2017-20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분석 연구

2020



특허청



2017-20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분석 연구

2020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분석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2일

- 주관연구기관명 : 법무법인 다음
- 연구기간 : 2020. 5. 6. ~ 2020. 9. 2.
- 감수자 : 정 호 열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 주관연구책임자 : 송 석 은 (변호사, 법학박사)
- 참여연구원
 - 연구원 : 이 성 준 (변호사)
 - 연구원 : 현 혁 승 (변호사)
 - 연구원 : 양 지 은 (변호사)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2017-2019 부경법 판결문 전수 분석	19
	2. 주요판례 60선 서지사항·요약문 작성·검수	20
	3. 동종 선행연구 결과와의 연계	21

제2장

2017-2019 부경법 판결문 전수분석

제1절	개관	25
	1. 피해업체 유형별 현황	25
	2. 표준산업분류별 현황	28
	3. 법원·심급별 현황	32
	4. 소제기·선고연도별 현황	36
	5. 부문별 개괄도(생키다이어그램)	37
제2절	민사 가치분	43
	1. 처리결과별 현황(인용률)	43
	가. 신청취지별	43
	(1) 부정경쟁행위	43
	(2) 영업비밀 침해행위	44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45
	나. 피해업체 유형별	46
	(1) 부정경쟁행위	46



(2) 영업비밀 침해행위.....	47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48
다. 표준산업분류별	49
(1) 부정경쟁행위	49
(2) 영업비밀 침해행위.....	52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55
라. 법원·재판부별.....	56
(1) 부정경쟁행위	56
(2) 영업비밀 침해행위.....	58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60
마. 소제기·선고연도별.....	61
(1) 부정경쟁행위	61
(2) 영업비밀 침해행위.....	62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63
바. 영업비밀 유형별.....	64
(1) 영업비밀 침해행위.....	64
(2)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65
2. 행위유형별 현황(기각사유)	66
가. 부정경쟁행위	66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68
다.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70
3. 최근 법개정사항 적용 추이	72
가. 타인성과 무단사용.....	72
(1)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72
(2) 카목 세부유형별 현황	76
나. 트레이드 드레스.....	77
다. 아이디어 탈취.....	79
라.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80



CONTENTS

제3절	민사 본안	84
1.	처리결과별 현황(인용률/파기율)	84
가.	청구취지별	84
(1)	부정경쟁행위	84
(2)	영업비밀 침해행위	86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87
나.	피해업체 유형별	88
(1)	부정경쟁행위	88
(2)	영업비밀 침해행위	89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90
다.	표준산업분류별	91
(1)	부정경쟁행위	91
(2)	영업비밀 침해행위	94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98
라.	법원·재판부별	100
(1)	부정경쟁행위	100
(2)	영업비밀 침해행위	102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105
마.	소제기·선고연도별 현황	107
(1)	부정경쟁행위	107
(2)	영업비밀 침해행위	108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109
바.	영업비밀 유형별 현황	111
(1)	영업비밀 침해행위	111
(2)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112
2.	행위유형별 현황(기각사유)	113
가.	부정경쟁행위	113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115



다.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116
3. 최근 법개정사항 적용 추이	118
가. 타인성과 무단사용	118
(1)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118
(2) 카목 세부유형별 현황	120
나. 트레이드 드레스	121
다. 아이디어 탈취	123
라.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125
마. 징벌적 손해배상(3배 상한제)	127
4. 손해배상액 분석	128
가. 인용액 분석	128
(1) 부정경쟁행위	128
(2) 영업비밀 침해행위	130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131
나. 청구액 분석(산정근거주장 배척사유)	133
(1) 부정경쟁행위	133
(2) 영업비밀 침해행위	134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135
제4절 형 사	137
1. 처리결과별 현황	137
가. 무죄율·집행유예율	137
(1) 부정경쟁행위	137
(2) 영업비밀 침해행위	139
나. 양형 분포	141
(1) 부정경쟁행위	141
(2) 영업비밀 침해행위	142
2. 행위유형별 현황(무죄사유)	145

CONTENTS

가. 부정경쟁행위(제18조 제3항 각호 위반)	145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제18조 제1항, 제2항 위반)	146
3. 최근 법개정사항 적용 추이	148
가.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148
나. 영업비밀침해죄 벌칙 구성요건 구체화	151

제3장

주요 판례 서지사항 및 요약문

제1절 개 관	155
1. 선정현황 및 기준	155
가. 선정현황	155
나. 구체적 선정기준	156
2. 감수의견	162
제2절 부정경쟁행위	16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자 2017카합80760 결정	16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4.자 2017카합80606 결정	166
3.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자 2017라20655 결정	168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7.자 2018카합10209 결정	17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자 2018카합157 결정	17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1.자 2018카합21701 결정	177
7. 서울고등법원 2019. 9. 27.자 2018라21047 결정	180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자 2019카합21496 결정	18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가합503208 판결	18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합573811 판결	186
11. 대전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107145 판결	18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553435 판결	19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가합555264 판결	193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가합502502 판결	19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510626 판결	198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6가합36473 판결	20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합555817 판결	20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합566909 판결	20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526830 판결	20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9. 선고 2017고정712 판결	212
21. 전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노755 판결	214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고단713 판결	216
23. 부산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고정446 판결	219
24. 창원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고단2941 판결	221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고단3978 판결	223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22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자 2016카합81253 결정	225
27.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자 2018카합5004 결정	228
28. 수원지방법원 2018. 7. 3.자 2018카합10106 결정	231
29. 대전고등법원 2018. 7. 19.자 2018라126 결정	234
30.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자 2018라20665 결정	237
31.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자 2018라20045 결정	240
3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6.자 2018카합50314 결정	244
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7.자 2018카합50378 결정	247
34. 서울고등법원 2019. 4. 16.자 2019라20165 결정	250
35. 수원지방법원 2019. 10. 30.자 2019카합10295 결정	253
3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4.자 2019카합5283 결정	256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가합4681 판결	258
38. 울산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4가합19086 판결	261



CONTENTS

3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108593 판결	264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4가합532786 판결	267
41.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4나2011824 판결	270
42. 부산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합4337 판결	273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합559836 판결	275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가합521364 판결	278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2가합540820 판결	281
46. 부산고등법원 2019. 3. 14. 선고 2017나54008 판결	284
47. 부산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7나54442 판결	287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7가합556769 판결	290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293
50.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296
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4. 선고 2015고단3315 판결	299
52.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2162 판결	303
5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6. 선고 2017고정710 판결	307
5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8노79 판결	309
55. 인천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노4721 판결	312
56. 수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2435 판결	315
57.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판결	318
5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485 판결	324
5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9고단729 판결	328
6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2 판결	331



2015-2019 5개년도 연계분석

1. 분석대상 판결문 현황	336
2. 민사가처분 1심 인용률	336
3. 민사본안 1심 인용률	337
4. 형사 1심 무죄율	337
5. 형사 1심 집행유예율	338
6. 카목(구법 차목) 주장 인용률	338
7.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339
8. 손해액 추정규정(14조의2) 각항별 활용률	339



TABLE CONTENTS

표 1-1 2017-2019 부경법 관련 판결문 분석 모수 현황	20
표 2-1 2017-2019 피해업체 유형별 부경법 관련 판결문 현황	26
표 2-2 2017-2019 표준산업분류별 부경법 관련 판결문 현황	28
표 2-3 2017-2019 법원·심급별 부경법 관련 판결문 현황	32
표 2-4 2017-2019 소제기·선고연도별 부경법 관련 판결문 현황	36
표 2-5 신청취지별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44
표 2-6 신청취지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45
표 2-7 신청취지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45
표 2-8 피해업체 유형별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46
표 2-9 피해업체 유형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47
표 2-10 피해업체 유형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48
표 2-11 표준산업분류별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49
표 2-12 표준산업분류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53
표 2-13 표준산업분류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55
표 2-14 법원·재판부별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56
표 2-15 법원·재판부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58
표 2-16 법원·재판부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60
표 2-17 소제기·선고연도별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61
표 2-18 소제기·선고연도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62
표 2-19 소제기·선고연도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63
표 2-20 영업비밀 유형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64
표 2-21 영업비밀 유형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65
표 2-22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행위유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67
표 2-23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행위유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69
표 2-24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행위유형별 현황 I (인용률·기각사유)	70
표 2-25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행위유형별 현황 II (인용률·기각사유)	70



표 2-26 2013년 개정 부경법 신규조문대비표	72
표 2-27 2018년 개정 부경법 신규조문대비표	72
표 2-28 카목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 (인용률·기각사유)	74
표 2-29 카목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I (인용률·기각사유)	74
표 2-30 카목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II (인용률·기각사유)	75
표 2-31 카목 세부유형별 민사가처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76
표 2-32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 (인용률·기각사유)	77
표 2-33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I (인용률·기각사유)	77
표 2-34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II (인용률·기각사유)	78
표 2-35 아이디어 탈취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79
표 2-36 2015년 개정 부경법 신규조문대비표	81
표 2-37 2019년 개정 부경법 신규조문대비표(비밀관리성 관련)	81
표 2-38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인용률	82
표 2-39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	83
표 2-40 선고연도별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인용률 및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	83
표 2-41 청구취지별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84
표 2-42 청구취지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86
표 2-43 청구취지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87
표 2-44 피해업체 유형별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88
표 2-45 피해업체 유형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89
표 2-46 피해업체 유형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90
표 2-47 표준산업분류별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91
표 2-48 표준산업분류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94
표 2-49 표준산업분류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98
표 2-50 법원·재판부별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100
표 2-51 법원·재판부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102



TABLE CONTENTS

표 2-52 법원·재판부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105
표 2-53 소제기·선고연도별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107
표 2-54 소제기·선고연도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108
표 2-55 소제기·선고연도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109
표 2-56 영업비밀 유형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111
표 2-57 영업비밀 유형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112
표 2-58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행위유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113
표 2-59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행위유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115
표 2-60 중복쟁점 민사본안 행위유형별 현황 I (인용률·기각사유).....	116
표 2-61 중복쟁점 민사본안 행위유형별 현황 II (인용률·기각사유).....	116
표 2-62 카목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 (인용률·기각사유).....	118
표 2-63 카목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I (인용률·기각사유).....	118
표 2-64 카목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II(인용률·기각사유).....	119
표 2-65 카목 세부유형별 민사본안 현황(인용률·기각사유).....	120
표 2-66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 (인용률·기각사유).....	121
표 2-67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I (인용률·기각사유).....	122
표 2-68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II(인용률·기각사유).....	122
표 2-69 아이디어 탈취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123
표 2-70 영업비밀 민사본안 비밀관리성 인용률.....	125
표 2-71 영업비밀 민사본안 비밀관리성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	126
표 2-72 선고연도별 영업비밀 민사본안 비밀관리성 인용률 및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	126
표 2-73 2019년 개정 부경법 신구조문대비표(14조의2 관련).....	127
표 2-74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인용액 분석.....	129
표 2-75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배상 인용액 분석.....	130
표 2-76 중복쟁점 손해배상 인용액 분석.....	131
표 2-77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액 분석(주장배척사유).....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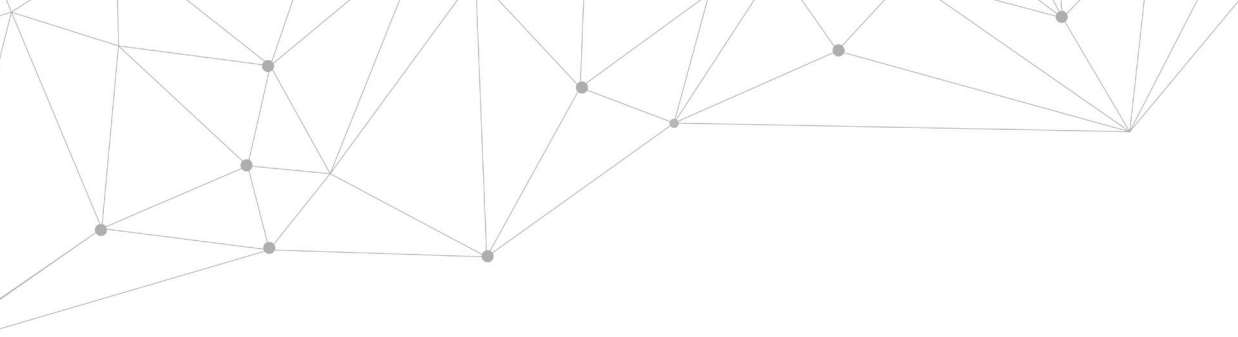


표 2-78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배상 청구액 분석(주장배척사유).....	134
표 2-79 중복쟁점 손해배상 청구액 분석(주장배척사유)	135
표 2-80 2017-2019 부경법 관련 형사 판결문 모수 현황(피고인 인원수 기준)	137
표 2-81 부정경쟁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 피고인 현황	138
표 2-82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 피고인 현황	139
표 2-83 영업상 주요한 자산 침해에 따른 업무상배임 피고인 현황.....	140
표 2-84 부정경쟁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사범 양형 분포	141
표 2-85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사범 양형 분포	143
표 2-86 영업상 주요한 자산 침해에 따른 업무상배임 사범 양형 분포	144
표 2-87 부정경쟁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 피고인 행위유형별 무죄사유	145
표 2-88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 피고인 행위유형별 무죄사유.....	146
표 2-89 영업상 주요한 자산 침해에 따른 업무상배임 피고인 행위유형별 현황	147
표 2-90 영업비밀 형사 비밀관리성 인용률	148
표 2-91 영업비밀 형사 비밀관리성 완화 취지 반영률	149
표 2-92 선고연도별 영업비밀 형사 비밀관리성 인용률 및 완화 취지 반영률	150
표 2-93 2019년 개정 부경법 신구조문대비표(벌칙 구체화)	151
표 3-1 2017-2019 주요판례 60선 선정 현황	155
표 3-2 2017-2019 주요판례 60선 선정 목록	158



IMAGE CONTENTS

그림 2-1 2017-2019 부경법 관련 민사 가처분 사건 개괄도	39
그림 2-2 2017-2019 부경법 관련 민사 본안 사건 개괄도	40
그림 2-3 2017-2019 부경법 관련 1심 형사 사건(부정경쟁행위 부문) 개괄도	41
그림 2-4 2017-2019 부경법 관련 1심 형사 사건(영업비밀 침해행위 부문) 개괄도	42



2017-20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분석 연구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흩어져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라 한다) 관련 민·형사 판례를 망라하여 다각도로 심층 분석함으로써 최근 법개정사항의 판례 반영 추이를 거시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 부문과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문별로 주요 판례를 선별하고 서지사항 및 요약문을 제작함으로써 핵심적인 부경법 최신 집행 동향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2017-2019 부경법 판결문 전수 분석

본 연구는 특허청에서 수집·제공한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선고일 기준) 전국 각급 법원의 부경법 관련 민사가처분·민사본안·형사 판결문 1,960건을 기본 분석대상으로 하되, 자체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던 부경법 판례 588건과 비교·대조하여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분석대상 판례를 추가한 결과, 합계 총 1,961건을 최초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이후의 판례 전문 확인 및 심층 분석 과정에서, 그 내용상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침해만이 문제되거나 부정경쟁·영업비밀 쟁점과 무관한 판결문, 1심에서는 부경법 위반이 문제되었으나 항소·상고심에서는 교환적 변경 또는 항소·상고이유 불포함 등의 사유로 아무런 부경법 관련 설시가 없는 판결문, 위치정보(낙시 포인트) 무단 수집에 관한 판결문,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가압류이의·가압류취소결정문, 판례번호 오기에 따른 중복판결문 등은 분석 제외하였고, 그 외에 위헌심판제청결정, 이송결정,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제출요청,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감정인 지정결정 취소결정, 비밀유지명령 내지 열람등제한결정, 중재판정 집행판결문 등의 절차적 결정 역시 분석 제외하였다.

한편 영업비밀 관련 민·형사 판례 중에는 직접적으로 부경법 위반을 청구원인 내지 범죄사실로 하지 않고, 근로계약, 가맹계약, 동업계약, 업무제휴계약 등에 부대하는 비밀유지·전직·경업금지약정 위반만을 이유

로 하는 사건, 영업비밀이 아니라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반출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만 기소된 사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모두 부정경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과 경계선에 있는 사안들로서 부정법 집행의 범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상의 결과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삼은 판결문은 민사가처분·민사본안·형사 합계 총 1,872건으로, 그 상세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 쟁점 판결문 93건의 경우, 모수 왜곡을 막기 위해 별도로 분리하여 표시하되 양 부문에서 각각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각각의 상세 통계 분석에 있어 아래의 통계 모수값을 기본으로 하였고, 행위유형별·쟁점별 분석이라든지, 형사사건 무죄율·집행유예율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만 중복 데이터의 발생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수를 기준으로 모수에 변경을 가하였음을 밝힌다.

[표1-1] 2017-2019 부정법 관련 판결문 분석 모수 현황

(단위: 건)

부문	최초건수	통계 모수										
		민사가처분			민사본안			형사			소계	
		분석대상	분석제외	소계	분석대상	분석제외	소계	분석대상	분석제외	소계	분석대상	분석제외
부정경쟁	745	268	12	280	326	12	338	120	7	127	714	31
영업비밀	1,123	298	38	336	385	19	404	382	1	383	1,065	58
중복쟁점	93	23	-	23	70	-	70	-	-	0	93	-
합계	1,961	589	50	639	781	31	812	502	8	510	1,872	89

본 연구는 판결문 모수 정리, 세부 분석지표 설정, 엑셀 로테이터 구축에서부터 통계 전처리, 통계 추출, 통계 기술, 시각화에 이르기까지 전원 변호사 연구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1차적으로 민사가처분(카합·카단·카기·라·마), 민사본안(가합·가단·가소·나·다), 형사(고합·고단·고정·노·도) 사건별, 부정경쟁·영업비밀 별로 총 6개의 엑셀 로테이터를 구축한 후, 2차적으로 전문통계분석프로그램 'R'을 활용하여 복합 통계데이터 추출, 모수 추정 및 고급 시각화를 수행하였다.

2. 주요판례 60선 서지사항·요약문 작성·검수

주요판례 선정 작업 역시 위 전수분석 대상과 동일하게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선고된 총 1,961건의 판결문을 출발점으로 하여, 부정법과 무관한 판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총 1,872건의 판결문을 최종 선정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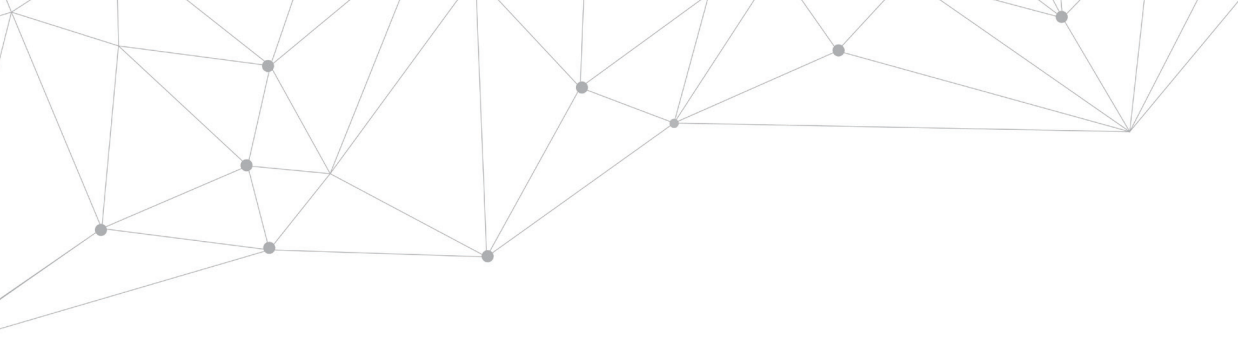
1차 예비선정-2차 예비선정-최종 선정 3단계에 걸쳐 진행하였고, 이때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복 쟁점 판례의 경우, 양 부문에서 모두 선정대상으로 삼되 결과적으로 중복 선정되지는 않도록 하였다. 영업비밀 관련 판례 모수가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례 모수보다 약 1.5배 가량 많은 점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부문에서 35건, 부정경쟁 부문에서 25건을 각 선정하였다.

2차 예비선정 이후 단계부터는 외부 부경법 전문가의 조언 아래 작업을 수행하였다. 최종 선정된 총 60건의 주요 판례에 대한 서지사항과 요약문에 대해 주요 쟁점과 주요 판시사항, 주제어 등을 중심으로 감수를 받았으며, 전반적인 감수의견은 제3장 제1절에 수록하였다.

3. 동종 선행연구 결과와의 연계

본 연구에 대해서는 2015-2016 부경법 관련 판례를 대상으로 한 동종 선행연구가 존재하는바,¹⁾ 특허청으로부터 당시의 엑셀 로데이터를 제공받아 양 연구 결과의 연계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양 연구가 공통적으로 수행한 세부 분석지표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기본적인 통계항목을 추출함으로써, 최근 5개년도 부경법 집행에 대한 연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법무법인 다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 연구”, 특허청 연구용역보고서 (2017.12.).



2017-20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분석 연구

제2장

2017-2019
부경법 판결문 전수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민사 가처분
제3절 민사 본안
제4절 형사

제2장 2017-2019 부경법 판결문 전수분석

제1절 개 관

1. 피해업체 유형별 현황

피해업체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우선 법인격과 영리성 유무에 따라 크게 기업과 개인, 조합 기타로 대별하였고, 기업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타를 분류함에 있어 관련법령상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²⁾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³⁾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말하는 대기업이란, 공정위가 2020. 5. 1. 지정한 대기업집단 64곳(계열사 총 2,284개)을 의미하고,⁴⁾ 중소기업이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을 의미하되 그밖에 공기업, 외국기업, 회생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상법상 회사는 아니지만 유한회사 규정 준용) 등까지 포괄하였다. 조합 기타의 경우, 협회, 연맹, 공제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 외에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대학, 산학협력단 등까지 포괄하되,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분석대상 사건 중 반소, 부존재확인외소, 피고 항변사항으로 부정경쟁행위 내지 영업비밀 침해행위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4) 공정위 2020. 5. 1.자 보도자료, “2020년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 64곳 지정” 참조(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48).

가 주장된 경우에는 원고가 아닌 피고를 피해업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이후의 통계 분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원고가 복수인 사건(기업과 특허권자 개인 등)의 경우,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업 사건으로 분류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기업 사건으로 분류하였다. 분석대상 판결문은 대부분 당사자 정보가 가림 처리되어 있는바, 판결문 본문 내용 및 리서치 등을 통해 피해당사자 유형을 최대한 특정하였고,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불명으로 처리하였다.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문상으로 피해업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피해업체 유형 분석은 제외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피해업체 유형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대기업의 경우, 대체로 민사 본안보다는 가처분에 의한 구제를 선호하였고, 특히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민사 본안에 의한 구제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대부분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1] 2017-2019 피해업체 유형별 부경법 관련 판결문 현황

피해업체		계	민사 가처분				민사 본안				형사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소계
기업	대기업집단	45 (3.3)	10	17	-	27 (4.6)	14	4	-	18 (2.3)	-	-	-
	중소 기타	529 (38.6)	128	72	11	211 (35.8)	135	150	33	318 (40.7)	-	-	-
	불명	445 (32.5)	49	170	8	227 (38.5)	54	147	17	218 (27.9)	-	-	-
개인		316 (23.1)	71	36	2	109 (18.5)	108	81	18	207 (26.5)	-	-	-
조합 기타		29 (2.1)	7	3	2	12 (2.0)	13	2	2	17 (2.2)	-	-	-
불명		6 (0.4)	3	-	-	3 (0.5)	2	1	-	3 (0.4)	-	-	-
합계		1,370 (100)	268	298	23	589 (100)	326	385	70	781 (100)	-	-	-

민사 가처분 사건에서 피해업체가 기업인 사건 446건(부정경쟁 187건, 영업비밀 259건) 중 피해업체 유형이 불명인 경우가 219건(부정경쟁 49건, 영업비밀 170건), 민사 본안 사건에서 피해업체가 기업인 사건 504건(부정경쟁 203건, 영업비밀 301건) 중 피해업체 유형이 불명인 경우가 201건(부정경쟁 54건, 영업비밀 147건)으로, 피해업체가 기업인 사건에서 불명인 경우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확인된 유형을 표본으로 하여 모수를 추정하여 보았다.

① 부정경쟁행위 민사 가처분 : 신청인의 기업 유형이 확인된 138건(대기업집단 10건, 중소기업기타 128건)을 표본으로 하여 모비율의 95% 신뢰구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면, 신청인이 기업인 사건 중 대기업집단일 경우는 2.9~11.5%, 중소기업기타일 경우는 88.5~97.1%이다⁵⁾. 이러한 모비율 추정치와 확인되는 기

업유형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기업인 사건 187건 중 대기업집단이 신청한 사건은 10~21건, 중소기업기타가 신청한 사건은 166~181건일 것으로 추정된다.

② 영업비밀 민사 가처분 : 신청인의 기업 유형이 확인된 89건(대기업집단 17건, 중소기업기타 72건)을 표본으로 하여 모비율의 95% 신뢰구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면, 신청인이 기업인 사건 중 대기업집단일 경우는 10.9~27.3%, 중소기업기타일 경우는 72.7~89.1%이다⁶⁾. 이러한 모비율 추정치에 의하면, 신청인이 기업인 사건 259건 중 대기업집단이 신청한 사건은 29~70건, 중소기업기타가 신청한 사건은 189~230건일 것으로 추정된다.

③ 부정경쟁행위 민사 본안 : 원고의 기업 유형이 확인된 149건(대기업집단 14건, 중소기업기타 135건)을 표본으로 하여 모비율의 95% 신뢰구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면, 원고가 기업인 사건 중 대기업집단일 경우는 4.7~14.1%, 중소기업기타일 경우는 86.3~94.9%이다⁷⁾. 이러한 모비율 추정치와 확인되는 기업유형을 종합하면, 원고가 기업인 사건 203건 중 대기업집단이 원고인 사건은 14~28건, 중소기업기타가 원고인 사건은 175~192건일 것으로 추정된다.

④ 영업비밀 민사 본안 : 원고의 기업 유형이 확인된 154건(대기업집단 4건, 중소기업기타 150건)을 표본으로 하여 기업체유형비율을 추정하고자 했으나, 원고가 대기업집단인 경우가 154건 중 4건에 불과해 모비율 추정을 위한 전제⁸⁾가 충족되지 않아 모비율 추정을 할 수 없었다.

⑤ 중복 쟁점 : 민사 가처분, 민사 본안 모비율 추정을 위한 전제⁹⁾가 충족되지 않아 모비율 추정을 할 수 없었다.

5) 표본(n) = 138, 대기업집단 표본비율 = 10/138(= 0.07246377), 중소기업기타 표본비율 = 128/138(= 0.9275362).

① 대기업집단 모비율의 95% 신뢰구간 산정 : 신뢰수준 95%에 대응되는 신뢰성계수는 1.96, 표준오차 추정량은 0.022. 따라서 대기업집단 모비율의 95% 신뢰구간은 $0.072 \pm 1.96(0.022) = 0.072 \pm 0.043 \rightarrow (0.029, 0.115)$

② 중소기업기타 모비율의 95% 신뢰구간 산정 : 대기업집단 모비율의 95% 신뢰구간 산정과 같은 방법으로 $0.928 \pm 1.96(0.022) = 0.928 \pm 0.043 \rightarrow (0.885, 0.971)$

6) 표본(n) = 89, 대기업집단 표본비율 = 17/89(= 0.191), 중소기업기타 표본비율 = 72/89(= 0.809).

① 대기업집단 모비율의 95% 신뢰구간 산정 : 신뢰수준 95%에 대응되는 신뢰성계수는 1.96, 표준오차 추정량은 0.042. 따라서 대기업집단 모비율의 95% 신뢰구간은 $0.191 \pm 1.96(0.042) = 0.191 \pm 0.082 \rightarrow (0.109, 0.273)$

② 중소기업기타 모비율의 95% 신뢰구간 산정 : 대기업집단 모비율의 95% 신뢰구간 산정과 같은 방법으로 $0.809 \pm 1.96(0.042) = 0.809 \pm 0.082 \rightarrow (0.727, 0.891)$

7) 표본(n) = 149, 대기업집단 표본비율 = 14/149(= 0.09395973), 중소기업기타 표본비율 = 135/149(= 0.9060403).

① 대기업집단 모비율의 95% 신뢰구간 산정 : 신뢰수준 95%에 대응되는 신뢰성계수는 1.96, 표준오차 추정량은 0.024. 따라서 대기업집단 모비율의 95% 신뢰구간은 $0.094 \pm 1.96(0.024) = 0.094 \pm 0.047 \rightarrow (0.047, 0.141)$

② 중소기업기타 모비율의 95% 신뢰구간 산정 : 대기업집단 모비율의 95% 신뢰구간 산정과 같은 방법으로 $0.906 \pm 1.96(0.024) = 0.906 \pm 0.043 \rightarrow (0.863, 0.949)$

8) '표본수 × 표본비율', '표본수 × (1 - 표본비율)'이 모두 5보다 클 때 모비율 추정이 가능하다.

9) '표본수 × 표본비율', '표본수 × (1 - 표본비율)'이 모두 5보다 클 때 모비율 추정이 가능하다.

2. 표준산업분류별 현황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통계법 제22조 참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고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¹⁰⁾ 중 중분류(77개)를 채택하여 산업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가운데 5% 이상의 사건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표준산업분류의 경우 유색 배경으로 별도 표시 하였다.

기본적으로 당해 사건이 발생한 업종을 기준으로 삼았고, 판결문상 업종 불명 시, 피해업체나 침해업체의 KISLINE¹¹⁾ 등록정보상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표2-2] 2017-2019 표준산업분류별 부경법 관련 판결문 현황

표준산업분류		계	민사 가처분				민사 본안				형사		
코드	항목명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소계
01	농업	4 (0.2)	1	-	-	1 (0.2)	-	-	-	-	-	3 (0.6)	
02	임업	-	-	-	-	-	-	-	-	-	-	-	
03	어업	-	-	-	-	-	-	-	-	-	-	-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	-	-	-	-	-	-	-	
06	금속 광업	-	-	-	-	-	-	-	-	-	-	-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 (0.1)	1	-	-	1 (0.2)	-	-	-	-	-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	-	-	-	-	-	-	-	-	-	-	
10	식품 제조업	38 (2.0)	8	9	-	17 (2.9)	6	6	-	12 (1.5)	5	4 (1.8)	
11	음료 제조업	13 (0.7)	5	-	-	5 (0.8)	7	-	-	7 (0.9)	1	1 (0.2)	
12	담배 제조업	-	-	-	-	-	-	-	-	-	-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2 (0.6)	2	1	1	4 (0.7)	3	2	1	6 (0.8)	-	2 (0.4)	
14	의복, 의복	10	3	1	-	4	1	3	-	4	2	2	

10)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분류체계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의 5단계 트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국가간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유엔 통계처(UNSD)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초로 마련되었다. 1963. 3. 우선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하여, 1964. 4. 비제조업부문에 대하여 각 제정된 이래,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개정과 국내의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2008년 제9차 개정 때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2017년 제10차 개정분류를 고시하였다(통계청 고시 2017-13호, 2017. 7. 1. 시행).

11) 기업정보 종합 포털 사이트(<https://www.kisline.com>).

표준산업분류		계	민사 가처분				민사 본안				형사		
코드	항목명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소계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5)				(0.7)				(0.5)			(0.4)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2 (1.2)	11	-	-	11 (1.9)	9	-	-	9 (1.2)	2	-	2 (0.4)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3 (0.2)	1	-	-	1 (0.2)	2	-	-	2 (0.3)	-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 (0.4)	-	-	-	-	3	1	1	5 (0.6)	1	2	3 (0.6)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0.2)	-	-	-	-	-	1	-	1 (0.1)	-	2	2 (0.4)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 (0.1)	-	-	-	-	-	1	-	1 (0.1)	-	1	1 (0.2)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4 (4.5)	16	12	-	28 (4.8)	9	14	3	26 (3.3)	3	27	30 (6.0)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7 (0.4)	1	-	-	1 (0.2)	2	1	1	4 (0.5)	-	2	2 (0.4)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8 (1.5)	6	3	1	10 (1.7)	8	4	-	12 (1.5)	1	5	6 (1.2)
23	비금속제품 제조업	15 (0.8)	1	3	-	4 (0.7)	2	5	-	7 (0.9)	1	3	4 (0.8)
24	1차 금속 제조업	18 (1.0)	-	7	-	7 (1.2)	4	4	-	8 (1.0)	-	3	3 (0.6)
25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8 (2.6)	3	5	2	10 (1.7)	8	9	4	21 (2.7)	1	16	17 (3.4)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성통신장비 제조업	111 (5.9)	3	42	-	45 (7.6)	5	23	-	28 (3.6)	2	36	38 (7.6)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94 (5.0)	11	16	-	27 (4.6)	13	17	5	35 (4.5)	-	32	32 (6.4)
28	전기장비 제조업	61 (3.3)	8	16	1	25 (4.2)	8	9	1	18 (2.3)	5	13	18 (3.6)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0 (8.0)	13	24	3	40 (6.8)	11	38	9	58 (7.4)	2	50	52 (10.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0.7)	-	-	-	-	-	4	1	5 (0.6)	7	1	8 (1.6)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0.9)	1	-	-	1 (0.2)	2	5	2	9 (1.2)	2	4	6 (1.2)
32	가구 제조업	23 (1.2)	3	1	-	4 (0.7)	6	1	-	7 (0.9)	11	1	12 (2.4)
33	기타 제품 제조업	33 (1.8)	9	3	-	12 (2.0)	15	2	1	18 (2.3)	2	1	3 (0.6)

표준산업분류		계	민사 가처분				민사 본안				형사		
코드	항목명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소계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6 (0.3)	1	1	1	3 (0.5)	-	1	2	3 (0.4)	-	-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 (0.2)	-	-	-	-	-	4	-	4 (0.5)	-	-	-
36	수도업	-	-	-	-	-	-	-	-	-	-	-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 (0.1)	-	-	-	-	-	1	-	1 (0.1)	-	-	-
38	폐기물, 온반, 처리 및 재활용업	-	-	-	-	-	-	-	-	-	-	-	-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	-	-	-	-	-
41	종합 건설업	11 (0.6)	2	1	-	3 (0.5)	2	3	1	6 (0.8)	1	1	2 (0.4)
42	전문직별 공공사업	19 (1.0)	1	3	1	5 (0.8)	7	6	1	14 (1.8)	-	-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7 (0.4)	-	-	-	-	1	3	1	5 (0.6)	2	-	2 (0.4)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08 (5.8)	17	15	1	33 (5.6)	36	21	4	61 (7.8)	8	6	14 (2.8)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98 (5.2)	27	9	1	37 (6.3)	33	16	1	50 (6.4)	5	6	11 (2.2)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8 (0.4)	-	-	-	-	2	1	-	3 (0.4)	1	4	5 (1.0)
50	수상 운송업	1 (0.1)	-	-	-	-	-	1	-	1 (0.1)	-	-	-
51	항공 운송업	-	-	-	-	-	-	-	-	-	-	-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5 (0.8)	-	7	-	7 (1.2)	-	3	3	6 (0.8)	-	2	2 (0.4)
55	숙박업	4 (0.2)	-	-	-	-	2	-	-	2 (0.3)	2	-	2 (0.4)
56	음식점 및 주점업	131 (7.0)	36	17	3	56 (9.5)	20	38	10	68 (8.7)	6	1	7 (1.4)
58	출판업	84 (4.5)	17	10	1	28 (4.8)	20	16	2	38 (4.9)	-	18	18 (3.6)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0 (0.5)	1	1	-	2 (0.3)	3	3	-	6 (0.8)	1	1	2 (0.4)
60	방송업	9 (0.5)	-	-	-	-	6	-	-	6 (0.8)	2	1	3 (0.6)
61	우편 및 통신업	2 (0.1)	-	1	-	1 (0.2)	-	-	-	-	-	1	1 (0.2)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합 시스템 관리 및 관리업	12 (0.6)	1	2	-	3 (0.5)	1	6	-	7 (0.9)	-	2	2 (0.4)
63	정보서비스업	9 (0.5)	-	-	-	-	1	3	2	6 (0.8)	-	3	3 (0.6)
64	금융업	4 (0.2)	1	2	-	3 (0.5)	-	1	-	1 (0.1)	-	-	-
65	보험 및 연금업	8 (0.4)	1	-	-	1 (0.2)	-	1	-	1 (0.1)	2	4	6 (1.2)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2 (0.6)	4	1	-	5 (0.8)	-	1	-	1 (0.1)	-	6	6 (1.2)
68	부동산업	11	4	2	-	6	-	2	-	2	-	3	3

표준산업분류		계	민사 가처분				민사 본안				형사		
코드	항목명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소계
		(0.6)				(1.0)				(0.3)			(0.6)
70	연구개발업	12 (0.6)	4	-	-	4 (0.7)	4	2	-	6 (0.8)	-	2	2 (0.4)
71	전문 서비스업	44 (2.4)	2	11	-	13 (2.2)	18	6	3	27 (3.5)	1	3	4 (0.8)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9 (1.0)	2	4	-	6 (1.0)	5	4	-	9 (1.2)	-	4	4 (0.8)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 (0.7)	8	-	-	8 (1.4)	1	1	-	2 (0.3)	3	-	3 (0.6)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 (0.2)	-	1	1	2 (0.3)	-	1	-	1 (0.1)	-	-	-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40 (2.1)	1	15	-	16 (2.7)	5	11	-	16 (2.0)	-	8	8 (1.6)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 (0.1)	-	-	-	-	-	-	-	-	-	1	1 (0.2)
8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	-	-	-	-	-	-	-	-
85	교육 서비스업	97 (5.2)	14	23	1	38 (6.5)	12	34	7	53 (6.8)	3	3	6 (1.2)
86	보건업	14 (0.7)	1	5	-	6 (1.0)	5	2	-	7 (0.9)	-	1	1 (0.2)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1 (0.1)	-	-	-	-	-	1	-	1 (0.1)	-	-	-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 (0.7)	3	-	1	4 (0.7)	4	5	-	9 (1.2)	-	-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7 (0.9)	1	1	1	3 (0.5)	4	6	1	11 (1.4)	-	3	3 (0.6)
94	협회 및 단체	17 (0.9)	2	3	2	7 (1.2)	4	1	2	7 (0.9)	-	3	3 (0.6)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 (0.1)	-	1	-	1 (0.2)	-	-	-	-	-	-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 (2.1)	9	5	1	15 (2.5)	2	16	-	18 (2.3)	4	2	6 (1.2)
97	가구 내 고용활동	-	-	-	-	-	-	-	-	-	-	-	-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	-	-	-	-	-	-	-	-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	-	-	-
	불명	150 (8.0)	1	14	-	15 (2.5)	4	14	1	19 (2.4)	31	85	116 (23.1)
	합계	1,872 (100)	268	298	23	589 (100)	326	385	70	781 (100)	120	382	502 (100)

3. 법원·심급별 현황

지난 2015. 12. 1. 민사소송법¹²⁾ 및 법원조직법¹³⁾ 개정으로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1심은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항소심은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되어 있으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법원·심급별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지원급 이상 전국법원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6개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서울고등(인천), 서울고등(춘천), 대전고등(청주), 부산고등(창원), 광주고등(전주), 광주고등(제주)), 2019. 3. 1. 업무를 개시한 수원고등법원 역시 반영하였다. 지원 사건은 1심을, 지방법원은 1, 2심을, 고등법원은 2심과 파기환송심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사건 중 위 기본 설정에 벗어나는 예가 일부 있었는데, 시군법원(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사건 1건, 서울고등법원 1심 1건,¹⁴⁾ 서울남부지법 재심 1건, 수원지방법원 파기환송심 1건, 춘천지법 강릉지원 2심 2건이었다.

부경법 집행에 있어 5%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법원의 경우, 유색 배경으로 별도 표시하였다.

[표2-3] 2017-2019 법원·심급별 부경법 관련 판결문 현황

전국법원		계	민사 가처분				민사 본안				형사		
법원	심급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소계
대법원	3	69 (3.7)	2	3	-	5 (0.8)	7	13	1	21 (2.7)	1	42	43 (8.6)
특허	2	30 (1.6)	-	-	-	-	27	2	1	30 (3.8)	-	-	-
	환송	1 (0.1)	-	-	-	-	1	-	-	1 (0.1)	-	-	-
서울고등	1	1 (0.1)	-	1	-	1 (0.2)	-	-	-	-	-	-	-
	2	129 (6.9)	20	32	-	52 (8.8)	26	39	8	73 (9.3)	-	4	4 (0.8)

12)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3)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14)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사건의 경우,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안법원이 취소 사건을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01조).

전국법원		계	민사 가처분				민사 본안				형사		
법원	심급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소계
	환송	1 (0.1)	-	-	-	-	-	1	-	1 (0.1)	-	-	-
서울고등 (인천)	2	-	-	-	-	-	-	-	-	-	-	-	-
서울고등 (춘천)	2	1 (0.1)	-	-	-	-	1	-	-	1 (0.1)	-	-	-
	환송	-	-	-	-	-	-	-	-	-	-	-	-
서울중앙	1	486 (26.0)	128	44	9	181 (30.7)	154	81	18	253 (32.4)	10	42	52 (10.4)
	2	32 (1.7)	-	-	-	-	2	3	-	5 (0.6)	-	27	27 (5.4)
서울동부	1	64 (3.4)	6	11	1	18 (3.1)	7	18	3	28 (3.6)	8	10	18 (3.6)
	2	11 (0.6)	-	-	-	-	1	2	-	3 (0.4)	3	5	8 (1.6)
서울남부	1	82 (4.4)	15	19	-	34 (5.8)	8	18	2	28 (3.6)	5	15	20 (4.0)
	2	13 (0.7)	-	-	-	-	2	1	-	3 (0.4)	1	9	10 (2.0)
	재심	1 (0.1)	-	-	-	-	1	-	-	1 (0.1)	-	-	-
서울북부	1	27 (1.4)	4	8	-	12 (2.0)	5	4	1	10 (1.3)	4	1	5 (1.0)
	2	2 (0.1)	-	-	-	-	-	-	-	-	1	1	2 (0.4)
서울서부	1	47 (2.5)	5	10	1	16 (2.7)	6	15	2	23 (2.9)	1	7	8 (1.6)
	2	10 (0.5)	-	-	-	-	1	3	-	4 (0.5)	2	4	6 (1.2)
의정부	1	31 (1.7)	3	9	-	12 (2.0)	5	4	1	10 (1.3)	5	4	9 (1.8)
	2	13 (0.7)	-	-	-	-	1	2	-	3 (0.4)	3	7	10 (2.0)
의정부고양	1	25 (1.3)	-	10	3	13 (2.2)	3	1	1	5 (0.6)	-	7	7 (1.4)
의정부남양주	1	1 (0.1)	-	-	-	-	1	-	-	1 (0.1)	-	-	-
인천	1	45 (2.4)	4	10	-	14 (2.4)	3	16	1	20 (2.6)	5	6	11 (2.2)
	2	13 (0.7)	-	-	-	-	1	1	-	2 (0.3)	-	11	11 (2.2)
인천부천	1	27 (1.4)	3	7	-	10 (1.7)	1	7	2	10 (1.3)	4	3	7 (1.4)
춘천	1	-	-	-	-	-	-	-	-	-	-	-	-
	2	1 (0.1)	-	-	-	-	-	-	-	-	-	1	1 (0.2)
춘천강릉	1	6 (0.3)	2	-1	-	3 (0.5)	-	1	-	1 (0.1)	2	-	2 (0.4)
	2	2 (0.1)	-	-	-	-	-	1	-	1 (0.1)	1	-	1 (0.2)
춘천원주	1	7 (0.4)	3	2	-	5 (0.8)	-	1	-	1 (0.1)	1	-	1 (0.2)
춘천속초	1	-	-	-	-	-	-	-	-	-	-	-	-
춘천영월	1	-	-	-	-	-	-	-	-	-	-	-	-
수원고등	2	3 (0.2)	-	3	-	3 (0.5)	-	-	-	-	-	-	-
	환송	-	-	-	-	-	-	-	-	-	-	-	-
수원	1	117 (6.3)	6	39	3	48 (8.1)	6	22	4	32 (4.1)	10	27	37 (7.4)
	2	41 (2.2)	-	-	-	-	2	5	1	8 (1.0)	1	32	33 (6.6)
	환송	1 (0.1)	-	-	-	-	-	-	-	-	-	1	1 (0.2)
수원성남	1	41 (2.2)	4	17	-	21 (3.6)	-	11	2	13 (1.7)	4	3	7 (1.4)
수원여주	1	5 (0.3)	2	-	-	2 (0.3)	1	-	-	1 (0.1)	2	-	2 (0.4)

전국법원		계	민사 가처분				민사 본안				형사		
법원	심급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소계
수원평택	1	11 (0.6)	1	1	-	2 (0.3)	1	5	-	6 (0.8)	1	2	3 (0.6)
수원안산	1	31 (1.7)	3	5	-	8 (1.4)	2	9	1	12 (1.5)	3	8	11 (2.2)
수원안양	1	32 (1.7)	2	13	1	16 (2.7)	1	10	-	11 (1.4)	-	5	5 (1.0)
대전고등	2	9 (0.5)	3	2	-	5 (0.8)	1	-	3	4 (0.5)	-	-	-
	환송	-	-	-	-	-	-	-	-	-	-	-	-
대전고등 (청주)	2	4 (0.2)	-	-	-	-	1	1	-	2 (0.3)	-	2	2 (0.4)
	환송	-	-	-	-	-	-	-	-	-	-	-	-
대전	1	49 (2.6)	7	11	1	19 (3.2)	7	9	1	17 (2.2)	6	7	13 (2.6)
	2	4 (0.2)	-	-	-	-	-	-	-	-	2	2	4 (0.8)
대전홍성	1	3 (0.2)	1	1	-	2 (0.3)	-	-	-	-	1	-	1 (0.2)
대전공주	1	1 (0.1)	-	-	-	-	-	1	-	1 (0.1)	-	-	-
대전논산	1	1 (0.1)	1	-	-	1 (0.2)	-	-	-	-	-	-	-
대전서산	1	2 (0.1)	-	1	-	1 (0.2)	-	-	-	-	-	1	1 (0.2)
대전천안	1	11 (0.6)	-	2	-	2 (0.3)	-	2	1	3 (0.4)	1	5	6 (1.2)
청주	1	16 (0.9)	1	2	-	3 (0.5)	2	5	-	7 (0.9)	3	3	6 (1.2)
	2	3 (0.2)	-	-	-	-	-	-	-	-	1	2	3 (0.6)
청주충주	1	4 (0.2)	-	-	-	-	1	-	-	1 (0.1)	1	2	3 (0.6)
청주제천	1	-	-	-	-	-	-	-	-	-	-	-	-
청주영동	1	2 (0.1)	-	-	-	-	-	-	-	-	2	-	2 (0.4)
대구고등	2	4 (0.2)	1	-	-	1 (0.2)	1	2	-	3 (0.4)	-	-	-
	환송	-	-	-	-	-	-	-	-	-	-	-	-
대구	1	33 (1.8)	9	4	-	13 (2.2)	7	6	-	13 (1.7)	1	6	7 (1.4)
	2	16 (0.9)	-	-	-	-	2	3	-	5 (0.6)	1	10	11 (2.2)
대구서부	1	16 (0.9)	2	3	-	5 (0.8)	-	6	-	6 (0.8)	1	4	5 (1.0)
대구안동	1	1 (0.1)	-	-	-	-	-	-	-	-	-	1	1 (0.2)
대구경주	1	-	-	-	-	-	-	-	-	-	-	-	-
대구포항	1	2 (0.1)	-	1	-	1 (0.2)	-	-	-	-	1	-	1 (0.2)
대구김천	1	9 (0.5)	-	1	-	1 (0.2)	-	2	-	2 (0.3)	-	6	6 (1.2)
대구상주	1	-	-	-	-	-	-	-	-	-	-	-	-
대구의성	1	-	-	-	-	-	-	-	-	-	-	-	-
대구영덕	1	-	-	-	-	-	-	-	-	-	-	-	-
부산고등	2	14 (0.7)	1	4	-	5 (0.8)	1	6	1	8 (1.0)	-	1	1 (0.2)
	환송	-	-	-	-	-	-	-	-	-	-	-	-
부산고등 (창원)	2	3 (0.2)	-	2	-	2 (0.3)	1	-	-	1 (0.1)	-	-	-
	환송	-	-	-	-	-	-	-	-	-	-	-	-
부산	1	53 (2.8)	10	3	2	15 (2.5)	11	10	7	28 (3.6)	5	5	10 (2.0)
	2	8 (0.4)	-	-	-	-	1	2	-	3 (0.4)	1	4	5 (1.0)
부산동부	1	20 (1.1)	3	1	-	4 (0.7)	5	6	1	12 (1.5)	1	3	4 (0.8)
부산서부	1	5 (0.3)	1	-	-	1 (0.2)	2	1	-	3 (0.4)	-	1	1 (0.2)

전국법원		계	민사 가처분				민사 본안				형사		
법원	심급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소계
울산	1	24 (1.3)	1	4	1	6 (1.0)	1	9	3	13 (1.7)	-	5	5 (1.0)
	2	3 (0.2)	-	-	-	-	-	-	-	-	-	3	3 (0.6)
창원	1	18 (1.0)	1	2	-	3 (0.5)	-	4	2	6 (0.8)	2	7	9 (1.8)
	2	4 (0.2)	-	-	-	-	-	-	-	-	-	4	4 (0.8)
창원마산	1	4 (0.2)	-	-	-	-	-	-	1	1 (0.1)	1	2	3 (0.6)
창원진주	1	6 (0.3)	-	2	-	2 (0.3)	-	1	-	1 (0.1)	3	-	3 (0.6)
창원통영	1	-	-	-	-	-	-	-	-	-	-	-	-
창원밀양	1	1 (0.1)	-	-	-	-	-	-	-	-	-	1	1 (0.2)
창원거창	1	-	-	-	-	-	-	-	-	-	-	-	-
광주고등	2	4 (0.2)	2	-	-	2 (0.3)	1	1	-	2 (0.3)	-	-	-
	환송	-	-	-	-	-	-	-	-	-	-	-	-
광주고등 (전주)	2	1 (0.1)	1	-	-	1 (0.2)	-	-	-	-	-	-	-
	환송	-	-	-	-	-	-	-	-	-	-	-	-
광주고등 (제주)	2	1 (0.1)	1	-	-	1 (0.2)	-	-	-	-	-	-	-
	환송	2 (0.1)	2	-	-	2 (0.3)	-	-	-	-	-	-	-
광주	1	19 (0.1)	3	1	1	5 (0.8)	2	6	1	9 (1.2)	1	4	5 (1.0)
	2	1 (0.1)	-	-	-	-	-	1	-	1 (0.1)	-	-	-
광주목포	1	1 (0.1)	-	-	-	-	-	1	-	1 (0.1)	-	-	-
광주장흥	1	1 (0.1)	-	-	-	-	-	-	-	-	1	-	1 (0.2)
광주순천	1	8 (0.40)	2	-	-	2 (0.3)	1	1	-	2 (0.3)	1	3	4 (0.8)
광주해남	1	-	-	-	-	-	-	-	-	-	-	-	-
전주	1	9 (0.5)	1	5	-	6 (1.0)	-	1	-	1 (0.1)	2	-	2 (0.4)
	2	3 (0.2)	-	-	-	-	-	-	-	-	1	2	3 (0.6)
전주군산	1	7 (0.4)	1	-	-	1 (0.2)	1	2	-	3 (0.4)	1	2	3 (0.6)
전주정읍	1	1 (0.1)	-	1	-	1 (0.2)	-	-	-	-	-	-	-
전주남원	1	-	-	-	-	-	-	-	-	-	-	-	-
제주	1	1 (0.1)	-	-	-	-	-	-	-	-	1	-	1 (0.2)
	2	-	-	-	-	-	-	-	-	-	-	-	-
합계		1,872 (100)	268	298	23	589 (100)	326	385	70	781 (100)	120	382	502 (100)

4. 소제기·선고연도별 현황

대략적인 처리기간 파악을 위해 소제기연도와 선고연도별로 분석함에 있어, 본·반소, 병합사건의 소제기 연도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1차적으로 부정경쟁·영업비밀이 관련된 소를 기준으로 통계 처리하였고, 둘 다 부정경쟁·영업비밀이 관련되어 있거나 불명일 경우에는 먼저 제기된 소를 기준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사건처리에 5년 이상 소요된 경우는 유색 배경으로 별도 표시하였다.

[표2-4] 2017-2019 소제기·선고연도별 부경법 관련 판결문 현황

연도		계	민사 가처분				민사 본안				형사		
선고 연도	소제기 연도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소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소계
2017	2012	1 (0.1)	-	-	-	-	-	-	-	-	-	1	1 (0.2)
	2013	9 (0.5)	-	-	-	-	1	5	1	7 (0.9)	-	2	2 (0.4)
	2014	16 (0.9)	-	1	-	1 (0.2)	3	6	1	10 (1.3)	-	5	5 (1.0)
	2015	62 (3.3)	1	1	-	2 (0.3)	15	21	3	39 (5.0)	1	20	21 (4.2)
	2016	296 (15.8)	20	31	1	52 (8.8)	80	79	11	170 (21.8)	20	54	74 (14.7)
	2017	282 (15.1)	71	69	6	146 (24.8)	32	31	4	67 (8.6)	28	41	69 (13.7)
2018	2012	1 (0.1)	-	-	-	-	-	1	-	1 (0.1)	-	-	-
	2013	-	-	-	-	-	-	-	-	-	-	-	-
	2014	3 (0.2)	-	-	-	-	-	2	-	2 (0.3)	-	1	1 (0.2)
	2015	23 (1.2)	-	-	-	-	4	11	1	16 (2.0)	-	7	7 (1.4)
	2016	69 (3.7)	2	-	-	2 (0.3)	19	27	3	49 (6.3)	2	16	18 (3.6)
	2017	314 (16.8)	34	24	4	62 (10.5)	77	83	19	179 (22.9)	10	63	73 (14.5)
	2018	249 (13.3)	59	76	4	139 (23.6)	14	22	3	39 (5.0)	17	54	71 (14.1)
2019	2012	-	-	-	-	-	-	-	-	-	-	-	-
	2013	2 (0.1)	-	-	-	-	-	1	-	1 (0.1)	-	1	1 (0.2)
	2014	1 (0.1)	-	-	-	-	-	1	-	1 (0.1)	-	-	-
	2015	2 (0.1)	-	-	-	-	-	2	-	2 (0.3)	-	-	-
	2016	16 (0.9)	1	-	-	1 (0.2)	4	5	3	12 (1.5)	-	3	3 (0.6)
	2017	64 (3.4)	1	1	-	2 (0.3)	15	21	5	41 (5.2)	1	20	21 (4.2)
	2018	241 (12.9)	30	29	2	61 (10.4)	49	45	11	105 (13.4)	22	53	75 (14.9)
	2019	221 (11.8)	49	66	6	121 (20.5)	13	22	5	40 (5.1)	19	41	60 (12.0)
합계		1,872 (100)	268	298	23	589 (100)	326	385	70	781 (100)	120	382	502 (100)

5. 부문별 개괄도(생키다이어그램)

생키 다이어그램(Sankey Diagram)은 흐름 다이어그램(Flow Diagram)의 일종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흐름의 너비를 통해 흐름의 양상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2-1]은 주요 표준산업군¹⁵⁾과 관련된 부경법 민사 가치분 사건(부정경쟁·영업비밀 불문)이 권역(圈域)상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각 권역 법원에서의 사건 결과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전체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한 생키 다이어그램이다. 여기서 "KSIC"는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을 의미하고 KSIC 뒤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산업군에 부여된 코드를 의미한다. "서울소재 법원"은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을, "수도권소재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및 지원, 인천지방법원 및 지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및 지원을 의미하며, 이외의 법원은 "지방소재 법원"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생키 다이어그램을 통해,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분야 관련 민사 가치분 사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소재 법원에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교육 서비스업 분야 관련 민사 가치분 사건은 지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는 점, 수도권소재 법원의 민사 가치분 사건 인용률이 다른 지역 법원에 비해 높다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2-2]는 주요 표준산업군¹⁶⁾과 관련된 부경법 민사 본안 사건(부정경쟁·영업비밀 불문)이 권역(圈域)상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각 권역 법원에서의 사건 결과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전체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한 생키 다이어그램이다. 다이어그램의 구성 및 분류는 [그림2-1]과 동일하다. 해당 생키 다이어그램을 통해, 음식점 및 주점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관련 민사 본안 사건의 서울 집중 현상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덜하다는 점, 지방소재 법원의 민사 본안 사건 인용률이 다른 지역 법원에 비해 낮다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2-3]은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된 형사 1심 사건의 범죄 유형, 권역 분포 및 각 권역 법원에서의 사건 결과를 전체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한 생키 다이어그램이다. 부경법 위반 일죄 피고인은 A, 부경법 위반 및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 위반(이하, "특·상·디·저작권법 위반")이 경합하는 피고인은 AB, 부경법 위반 및 기타 법률 위반이 경합하는 피고인은 AC, 부경법 위반, 특·상·디·저작권법 위반, 기타 법률 위반이 경합하는 피고인은 ABC로 분류하였다. 해당 생키 다이어그램을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된 형사 1심 사건에서는 부경법 위반과 특·상·디·저작권법 위반이 경합하는 피고인(AB유형 사건)이 제일 많다는 점, AB 유형 피고인의 경우 지역적 분포가 비교적 균등하다는 점, 서울소재 법원에서의 무죄 기타 판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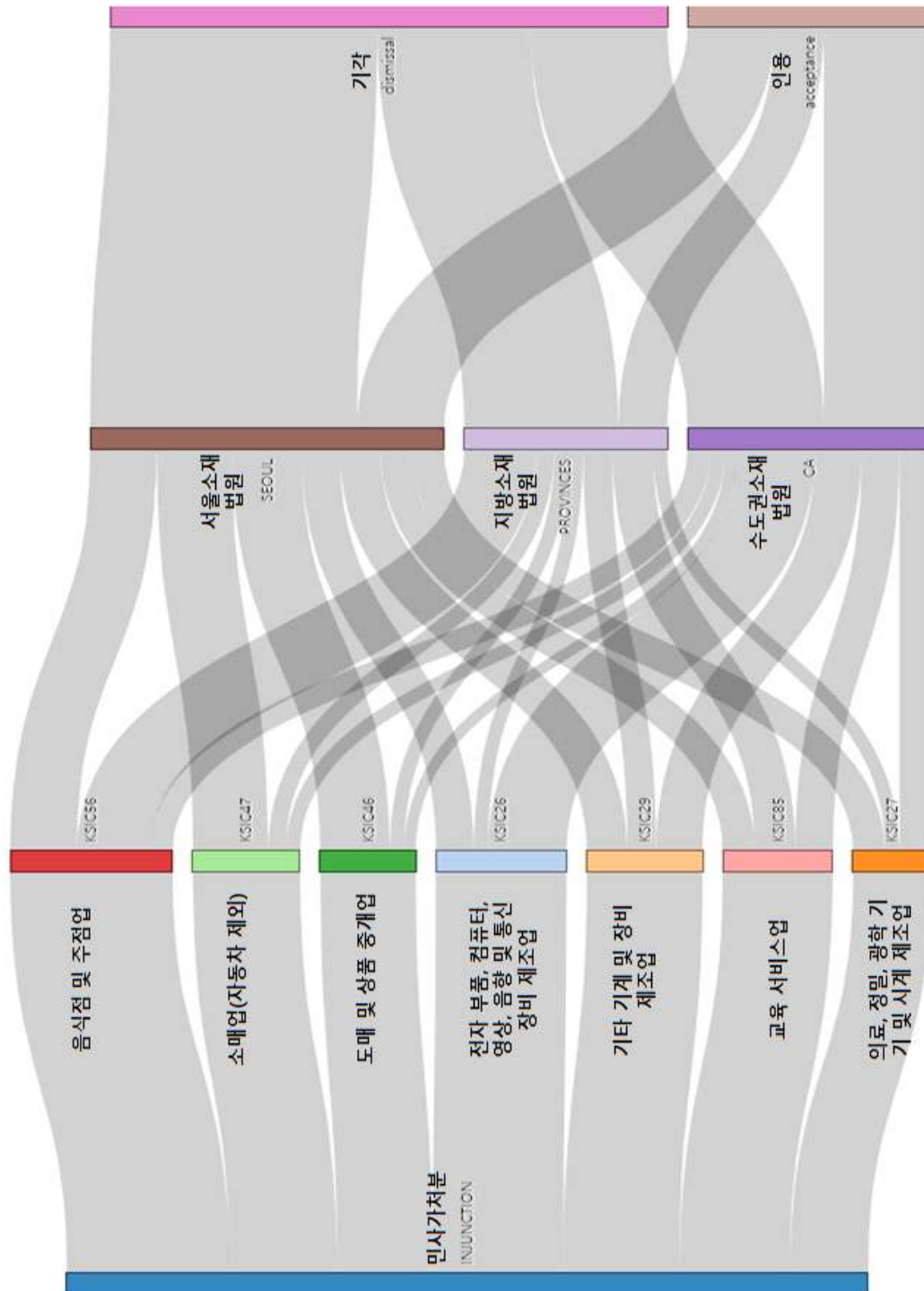
15) [표2-2]에서 유색 배경으로 표시된 7개 표준산업분야를 말한다.

16) 각주 14번과 같은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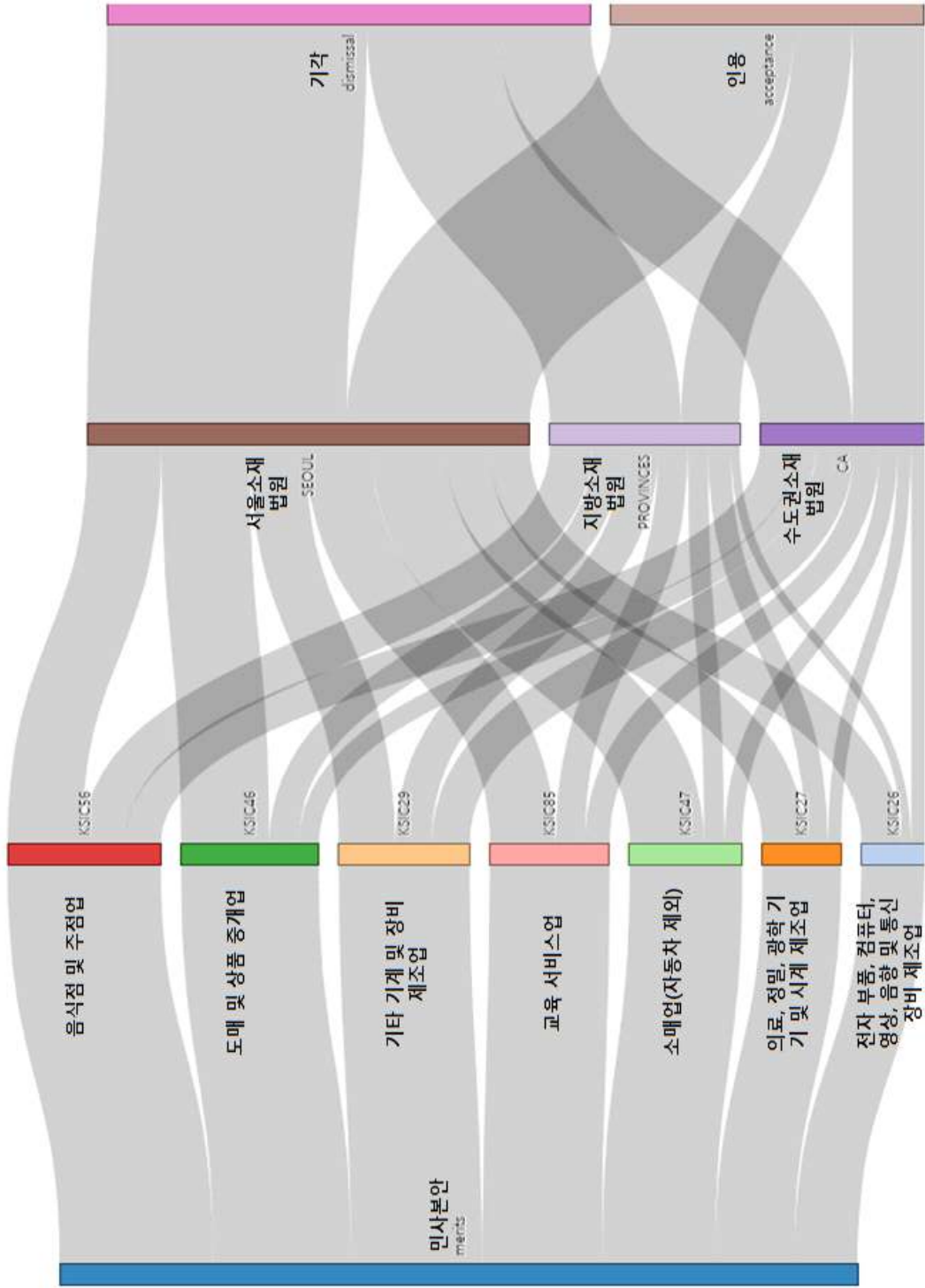
나오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2-4]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문제된 형사 1심 사건의 범죄 유형, 권역 분포 및 각 권역 법원에서의 사건 결과를 전체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한 생키 다이어그램이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경우 실무상 부정법 위반(제18조제1항, 제2항)이 아닌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제2항)로 처벌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부정법위반 뿐 아니라 업무상배임 관련 분석도 진행하였다. 부정법 위반 일죄 피고인은 A, 업무상배임 일죄 피고인은 B, 부정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이 경합하는 피고인은 AB, 부정법 위반 및 기타 법률 위반이 경합하는 피고인은 AC, 업무상배임 및 기타 법률 위반이 경합하는 피고인은 BC, 부정법 위반, 업무상배임, 기타 법률 위반이 경합하는 피고인은 ABC로 분류하였다. 해당 생키 다이어그램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문제된 형사 1심 사건에서는 부정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이 경합하는 피고인(AB유형 사건)이 제일 많은 점, 부정법 위반 일죄 피고인(A유형 사건)의 경우 지역적 분포가 비교적 균등하다는 점, 수도권소재 법원에서의 무죄 기타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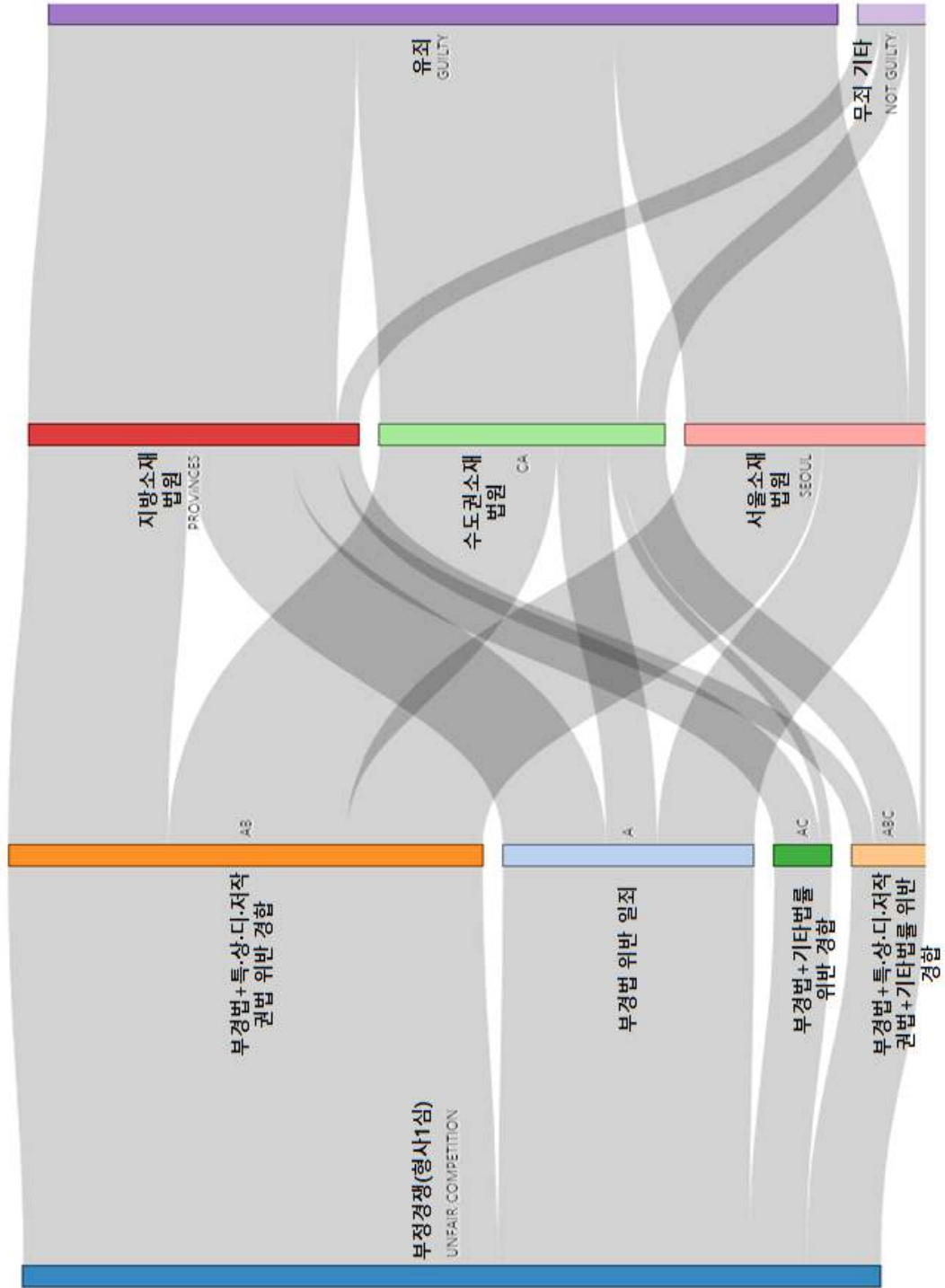
[그림 2-1] 2017-2019 부경법 관련 민사 가처분 사건 개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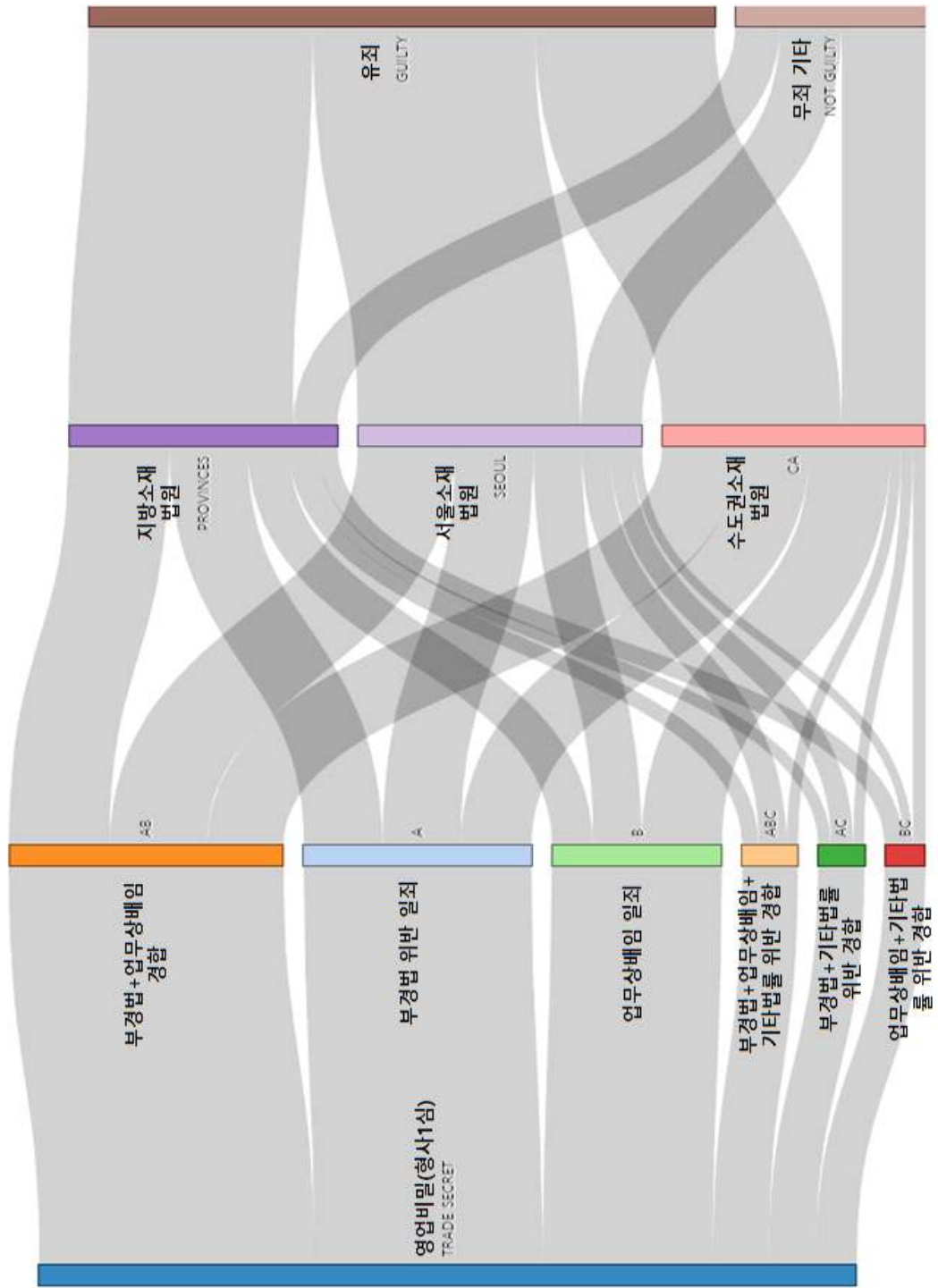
[그림 2-2] 2017-2019 부정경쟁 관련 민사 본안 사건 개괄도



[그림 2-3] 2017-2019 부경법 관련 1심 형사 사건(부정경쟁행위 부문) 개괄도



[그림 2-4] 2017-2019 부정법 관련 1심 형사 사건(영업비밀 침해행위 부문) 개괄도



제2절 민사 가처분

1. 처리결과별 현황(인용률)

가. 신청취지별

(1)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 관련 가처분 사건 중 ① 단순 가처분 사건은 1심 229건, 항고심 24건 합계 총 253건이었고, ② 가처분 이의사건은 1심 6건, 항고심(파기환송심 포함) 7건, 재항고심 2건 합계 총 15건이었으며, ③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사건은 없었다.

235건의 1심 가처분 사건 중 인용된 사건은 인용사유 불문 총 76건으로, 가처분 사건의 1심 인용률은 32.3%로 나타나 가처분 사건 10건 중 3건 정도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⁷⁾. 사법연감에 따른 2017년 일반 가처분신청사건 1심 인용률이 71.5%¹⁸⁾, 2018년 일반 가처분신청사건 1심 인용률이 71.1%¹⁹⁾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사건의 1심 인용률 32.3%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원은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중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19.자 2018카합21708 결정 등 참조), 통상의 가처분의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위와 같은 통계 결과를 나오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31건의 항고심 가처분 사건 중 인용된 사건은 6건으로, 항고심 인용률은 19.4%로 나타나 1심에서의 가처분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가처분 사건 10건 중 2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인용된 76건을 분석한 결과,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인용된 사건이 50건(21.3%), 등록권리침해를 이유로 인용된 사건이 20건(8.5%), 기타 사유로 인용된 사건이 6건(2.5%)이었다. 기타 사유로 가처분 신

17) 항고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있었다. 항고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 및 원인에 따라 주문 변경된 경우 원결정 취소된 경우와 같이, 교환적 변경된 청구 역시 기각된 경우 항고 기각된 경우와 같이 각 통계 처리하였다.

18) 2017년 처리된 가처분 사건 45,913건 중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건은 32,843건이었다(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2018. 9. 17.) 820면 참조).

19) 2018년 처리된 가처분 사건 49,187건 중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건은 34,995건이었다(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2019. 9. 18.) 836면 참조).

청이 인용된 사건 6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법 제23조에 따른 상호사용금지(4건), 계약(게임 퍼블리싱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인정(1건), 약정에 의한 경업금지의무 위반(1건)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표2-5] 신청취지별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신청취지	계	1심				항고심 (파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인가(일부인가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인용-원결정 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소계	취소·변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파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부정경쟁 인정	등록권리 침해	기타사유								
가처분	253	48	19	6	156	229	2	22	24	-	-	-
가처분이의	15	2	1	0	3	6	4	3	7	2	-	2
가처분취소	-	-	-	-	-	-	-	-	-	-	-	-
합계	268	50 (21.3)	20 (8.5)	6 (2.5)	159 (67.7)	235 (100)	6 (19.4)	25 (80.6)	31 (100)	2	-	2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 관련 가처분 사건 중 ① 단순 가처분 사건은 1심 240건, 항고심 34건, 재항고심 3건 합계 총 277건이었고, ② 가처분 이의사건은 1심 11건, 항고심 9건 합계 총 20건이었으며, ③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사건은 1심 1건이었다.

252건의 1심 가처분 사건 중 인용된 사건은 인용사유 불문 총 75건으로, 가처분 사건의 1심 인용률은 29.8%로 나타나 일반 가처분신청 사건은 물론 부정경쟁행위 가처분신청 사건의 경우보다도 약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43건의 항고심 가처분 사건 중 인용된 사건은 7건으로 항고심 인용률은 16.3%로 1심에서의 가처분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항고심 사건의 경우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인용된 75건을 분석한 결과,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인용된 사건이 31건(12.3%), 약정 위반을 이유로 인용된 사건이 41건(16.3%), 기타 사유로 인용된 사건이 3건(1.2%)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건들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인정된 사례, 특허발명에 관한 전용실시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 영업방해에 따른 민법상 일반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였다.

[표2-6] 신청취지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신청취지	계	1심					항고심 (과기 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안(일부인가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인용·원결정 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소계	취소·변 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과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가처분	277	23	40	3	174	240	4	30	34	-	3	3
가처분이의	20	8	1	-	2	11	3	6	9	-	-	-
가처분취소	1	-	-	-	1	1	-	-	-	-	-	-
합계	298	31 (12.3)	41 (16.3)	3 (1.2)	177 (70.2)	252 (100)	7 (16.3)	36 (83.7)	43 (100)	-	3	3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가 함께 문제된 가처분 사건 중 ① 단순 가처분 사건은 1심 22건, ② 가처분 이의사건은 1심 1건이었다. 항고심, 재항고심 사건은 없었다.

23건의 중복쟁점 1심 가처분 사건 중 인용된 사건은 인용사유 불문 총 7건으로, 1심 인용률은 30.4%로 나타나 영업비밀 가처분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1심에서 인용된 7건 중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건이 1건,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건이 5건, 비밀유지약정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건이 1건이었다.

[표2-7] 신청취지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신청취지	계	1심					항고심 (과기 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안(일부인가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인용·원결정 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소계	취소·변 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과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부정경쟁 인정	기타사유								
가처분	22	1	4	1	16	22	-	-	-	-	-	-
가처분이의	1	-	1	-	-	1	-	-	-	-	-	-
가처분취소	-	-	-	-	-	-	-	-	-	-	-	-
합계	23	1	5	1	16	23	-	-	-	-	-	-

나. 피해업체 유형별

(1) 부정경쟁행위

[표2-8] 피해업체 유형별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피해업체	계	1심					항고심 (과기 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안기(일부인용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인용-원결정 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소계	취소·변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과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부정경쟁 인정	등록권리 침해	기타사유									
기업	대기업집단	10 (3.7)	4	-	1	4	9	1	-	1	-	-	-
	중소 기타	128 (47.8)	26	14	1	63	104	4	18	22	2	-	2
	불명	49 (18.3)	7	2	3	34	46	-	3	3	-	-	-
개인	71 (26.5)	10	4	1	52	67	1	3	4	-	-	-	
조합 기타	7 (2.6)	3	-	-	3	6	-	1	1	-	-	-	
불명	3 (1.1)	-	-	-	3	3	-	-	-	-	-	-	
합계	268 (100)	50	20	6	159	235	6	25	31	2	-	2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사건 268건 중 피해업체가 기업인 경우는 187건(69.8%), 개인인 경우는 71건(26.5%), 조합 기타인 경우는 7건(2.6%)이었다.

이 가운데 1심 기업 사건 159건 중 인용된 사건은 58건으로 1심 인용률은 36.5%로 나타났는데, 이를 좀 더 세분하여 보면, 대기업 사건의 인용률은 55.5%(9건 중 5건 인용), 중소기업 기타 사건의 인용률은 39.4%(104건 중 41건 인용)로 대기업 사건의 인용률이 중소기업 기타 사건의 인용률보다 16% 더 높게 나타났다. 부정경쟁행위와 등록권리 침해가 같이 주장했다가 등록권리 침해가 인정되어 인용되는 경우도 20건이나 있었다(이러한 경우 대부분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1심 개인 사건 67건 중 인용된 사건은 15건으로 개인 사건의 1심 인용률은 22.4%에 그쳤으며, 피해업체가 조합 기타인 1심 사건 6건 중 인용된 사건은 3건으로 조합 기타 사건의 1심 인용률은 50%였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표2-9] 피해업체 유형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피해업체	계	1심					항고심 (파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인기(일부인기 포함)			기각 이의사건의 경우, 이의인용-원결정 취소 신청기각	소계	취소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파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기업	대기업집단	17 (5.7)	5	7	-	2	14	1	2	3	-	-	-
	중소 기타	72 (24.2)	4	5	2	38	49	2	18	20	-	3	3
	불명	170 (57.0)	19	24	1	109	153	4	13	17	-	-	-
개인	36 (12.1)	1	5	-	27	33	-	3	3	-	-	-	
조합 기타	3 (1.0)	2	-	-	1	3	-	-	-	-	-	-	
불명	-	-	-	-	-	-	-	-	-	-	-	-	
합계	298 (100)	31	41	3	177	252	7	36	43	-	3	3	

영업비밀 가처분 사건 298건 중 피해업체가 기업인 경우는 259건(86.91%), 개인인 경우는 36건(12.1%), 조합 기타인 경우는 3건(1.0%)이었다.

1심 기업 사건 216건 중 인용된 사건은 67건으로 인용률은 31.0%로 나타났는데, 이를 좀 더 세분하여 보면, 대기업집단 사건의 인용률은 85.7%(14건 중 12건 인용), 중소기업 기타 사건의 인용률은 22.4%(49건 중 11건 인용)로 대기업집단 사건의 인용률이 중소기업 기타 사건의 인용률보다 63% 이상 높았다. 또한 부경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인용되는 경우보다 근로계약·가맹계약 등에 부수하는 비밀유지·전직·경업금지약정을 원인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한편, 1심 개인 사건 33건 중 인용된 사건은 6건으로 개인 사건의 1심 인용률은 18.2%에 그쳤으며, 피해업체가 조합 기타인 1심 사건 3건 중 인용된 사건은 2건으로 조합 기타 사건의 1심 인용률은 66.7%였다.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 쟁점

[표2-10] 피해업체 유형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피해업체	계	1심					항고심 (파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안(일부인용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인용·원결정 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소계	취소·변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파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부정경쟁 인정	기타사유								
기업	대기업집단	-	-	-	-	-	-	-	-	-	-	-
	중소 기타	11 (47.8)	-	3	-	8	11	-	-	-	-	-
	불명	8 (34.8)	1	-	1	6	8	-	-	-	-	-
개인	2 (8.7)	-	-	-	2	2	-	-	-	-	-	-
조합 기타	2 (8.7)	-	2	-	-	2	-	-	-	-	-	-
불명	-	-	-	-	-	-	-	-	-	-	-	-
합계	23 (100)	1	5	1	16	23	-	-	-	-	-	-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를 중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처분 사건은 총 23건으로, 주로 피해업체가 중소기업 기타인 경우에 영업비밀의 요건 결여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부정경쟁행위(주로 카복) 주장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심 인용된 중복쟁점 가처분 사건 7건 중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되어 인용된 사건은 1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부정경쟁행위를 인정받아 인용되었다.

다. 표준산업분류별

(1) 부정경쟁행위

총 268건의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사건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77개) 중 44개 표준산업분야(불명 1건 제외)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산업분야는 ‘음식점 및 주점업’²⁰⁾으로 나타났다(36건, 13.4%). 그 다음으로 ‘소매업; 자동차 제외’²¹⁾ 관련 사건이 27건(10.1%)으로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도매 및 상품 중개업’²²⁾(17건, 6.3%), ‘출판업’²³⁾(17건, 6.3%),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²⁴⁾(16건, 6.0%) 관련사건 순으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었다.

위와 같은 상위 5개 다빈도 산업분야가 전체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1%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이는 유색 배경으로 별도 표시하였다.

상위 5개 다빈도 산업분야의 1심 인용률을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 32.3%(31건 중 10건 인용), ‘소매업; 자동차 제외’ 36.0%(25건 중 9건 인용),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0.0%(15건 중 6건 인용), ‘출판업’ 20%(10건 중 2건 인용),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6.7%(15건 중 4건 인용)로 나타나,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의 인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11] 표준산업분류별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표준산업분류 코드	항목명	계	1심					항고심 (파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안(일부인용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 의 경우, 이의인용·원결 정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소계	취소·변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파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부정경쟁 인정	등록권리침해	기타사유								
01	농업	1 (0.4)	-	-	-	1	1	-	-	-	-	-	-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 (0.4)	-	1	-	-	1	-	-	-	-	-	-
10	식료품 제조업	8 (3.0)	1	1	-	5	7	-	1	1	-	-	-

- 20)接客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接客시설을 갖추고 주류, 다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 21)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 판매, 소비조합, 행사인, 경매 등을 포함한다
- 22)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 23) 서적,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
- 24) 화학적 처리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화학적 처리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을 혼합 및 기타 최종 처리하여 단일 화학물, 혼합 또는 복합 화합물 및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계	1심				항고심 (과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코드	항목명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가각-원결정 안(일부인가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 의 경우, 이의인용-원결 정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소계	취소·변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과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부정경쟁 인정	등록권리침해	기타사유								
11	음료 제조업	5 (1.9)	2	-	-	2	4	-	1	1	-	-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 (0.7)	-	-	-	2	2	-	-	-	-	-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1.1)	-	-	-	3	3	-	-	-	-	-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1 (4.1)	3	2	-	6	11	-	-	-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 (0.4)	1	-	-	-	1	-	-	-	-	-	-
20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제외 의약품 제외	16 (6.0)	3	1	-	11	15	-	1	1	-	-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0.4)	-	-	-	1	1	-	-	-	-	-	-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6 (2.2)	1	-	-	3	4	-	2	2	-	-	-
23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1 (0.4)	-	-	-	1	1	-	-	-	-	-	-
25	금속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 (1.1)	-	-	-	3	3	-	-	-	-	-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 장비 제조업	3 (1.1)	-	-	-	2	2	-	1	1	-	-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 (4.1)	2	1	-	7	10	-	1	1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8 (3.0)	3	-	-	5	8	-	-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4.9)	-	-	-	9	9	-	4	4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0.4)	-	1	-	-	1	-	-	-	-	-	-
32	가구 제조업	3 (1.1)	-	1	-	2	3	-	-	-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9 (3.4)	1	1	1	6	9	-	-	-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 (0.4)	-	-	-	-	-	-	1	1	-	-	-
41	종합 건설업	2 (0.7)	-	1	-	1	2	-	-	-	-	-	-
42	전문직별 공사업	1 (0.4)	1	-	-	-	1	-	-	-	-	-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7 (6.3)	5	1	-	9	15	-	2	2	-	-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27 (10.1)	7	2	-	16	25	-	2	2	-	-	-

표준산업분류		계	1심					항고심 (과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코드	항목명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가-원결정 안가(일부인가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 의 경우, 이의인용-원결 정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소계	취소·변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과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부정경쟁 인정	등록권리침해	기타사유								
56	음식점 및 주점업	36 (13.4)	6	2	2	21	31	1	4	5	-	-	-
58	출판업	17 (6.3)	-	1	1	8	10	2	3	5	2	-	2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 (0.4)	1	-	-	-	1	-	-	-	-	-	-
62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및 관리업	1 (0.4)	-	-	-	1	1	-	-	-	-	-	-
64	금융업	1 (0.4)	-	-	-	1	1	-	-	-	-	-	-
65	보험업 및 연금업	1 (0.4)	1	-	-	-	1	-	-	-	-	-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 (1.5)	1	-	-	3	4	-	-	-	-	-	-
68	부동산업	4 (1.5)	-	1	-	3	4	-	-	-	-	-	-
70	연구개발업	4 (1.5)	1	-	-	2	3	-	1	1	-	-	-
71	전문 서비스업	2 (0.7)	-	1	-	1	2	-	-	-	-	-	-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 (0.7)	-	-	-	2	2	-	-	-	-	-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3.0)	4	-	-	3	7	1	-	1	-	-	-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1 (0.4)	-	-	-	1	1	-	-	-	-	-	-
85	교육 서비스업	14 (5.2)	3	-	1	9	13	1	-	1	-	-	-
86	보건업	1 (0.4)	-	-	-	1	1	-	-	-	-	-	-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 (1.1)	1	-	-	2	3	-	-	-	-	-	-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1 (0.4)	-	-	-	1	1	-	-	-	-	-	-
94	협회 및 단체	2 (0.7)	1	-	-	1	2	-	-	-	-	-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 (3.4)	1	2	1	3	7	1	1	2	-	-	-
	불명	1 (0.4)	-	-	-	1	1	-	-	-	-	-	-
	합계	268 (100)	50	20	6	159	235	6	25	31	2	-	2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총 298건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가처분 사건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77개) 중 38개 표준산업분야(불명 14건 제외)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영업비밀 가처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산업분야는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²⁵⁾으로 나타났다(42건, 14.1%). 그 다음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²⁶⁾이 24건(8.1%)으로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음식점업 및 주점업’²⁷⁾(17건, 5.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²⁸⁾(16건, 5.4%), ‘전기장비 제조업’²⁸⁾(16건, 5.4%) 관련 사건 순으로 영업비밀이 문제되었다.

위와 같은 상위 5개 다빈도 산업분야가 전체 영업비밀 가처분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6%로 부정경쟁행위에 비하여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유색 배경으로 별도 표시하였다.

상위 5개 다빈도 산업분야의 1심 인용률을 보면,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0.3%(37건 중 26건 인용),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3%(21건 중 3건 인용), ‘음식점 및 주점업’ 13.3%(15건 중 2건 인용),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45.5%(11건 중 5건 인용), ‘전기장비 제조업’ 23.1%(13건 중 3건 인용)로 나타나, 산업분야 간 인용률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분야의 인용사건 26건 중 18건의 인용이유가 약정위반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산업분야의 사전 대응이 계약이라는 방법을 통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5) 반도체, 전자 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방송장비, 유선 전신 또는 전화용 기기, 무선 통신기기, 방송 수신기 및 관련 기기, 영상·음성 기록 및 재생기, 음성 증폭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 26) 여러 산업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범용성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특정 산업 혹은 일부 산업에만 이용되는 특수 목적용의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27)接客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接客시설을 갖추고 주류, 다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 28)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별로 상위 5개 다빈도 산업분야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순위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1	음식점 및 주점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식점 및 주점업
4	출판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5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표2-12] 표준산업분류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표준산업분류		계	1심					항고심 (파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코드	항목명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안(일부인가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 의 경우, 이의인용-원결 정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소계	취소·변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파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10	식품 제조업	9 (3.0)	1	-	-	4	5	-	4	4	-	-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 (0.3)	-	-	-	1	1	-	-	-	-	-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0.3)	-	-	-	1	1	-	-	-	-	-	-
20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제외 의약품 제외	12 (4.0)	1	-	-	9	10	1	1	2	-	-	-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 (1.0)	-	-	-	3	3	-	-	-	-	-	-
23	비금속 제품 제조업	3 (1.0)	-	-	-	3	3	-	-	-	-	-	-
24	1차 금속 제조업	7 (2.3)	-	1	1	3	5	1	1	2	-	-	-
25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5 (1.7)	1	-	-	3	4	-	-	-	-	1	1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2 (14.1)	8	18	-	11	37	2	3	5	-	-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5.4)	1	3	1	6	11	-	4	4	-	1	1
28	전기장비 제조업	16 (5.4)	2	1	-	10	13	1	2	3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4 (8.1)	1	2	-	18	21	-	3	3	-	-	-
32	가구 제조업	1 (0.3)	1	-	-	-	1	-	-	-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3 (1.0)	-	1	-	2	3	-	-	-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 (0.3)	-	-	-	1	1	-	-	-	-	-	-
41	종합 건설업	1 (0.3)	-	-	-	1	1	-	-	-	-	-	-
42	전문직별 공사업	3 (1.0)	1	-	-	2	3	-	-	-	-	-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5 (5.0)	2	1	-	9	12	1	1	2	-	1	1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9 (3.0)	-	1	-	7	8	-	1	1	-	-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 (2.3)	1	1	-	3	5	-	2	2	-	-	-

표준산업분류		계	1심					항고심 (과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코드	항목명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간-원결정 인가(일부인가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 의 경우, 이의인용-원결 정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소계	취소·변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과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56	음식점 및 주점업	17 (5.7)	1	1	-	13	15	-	2	2	-	-	-
58	출판업	10 (3.4)	-	1	-	7	8	-	2	2	-	-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 (0.3)	1	-	-	-	1	-	-	-	-	-	-
61	우편 및 통신업	1 (0.3)	-	-	-	-	-	-	1	1	-	-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합 시스템 및 관리업	2 (0.7)	-	-	-	2	2	-	-	-	-	-	-
64	금융업	2 (0.7)	-	1	-	1	2	-	-	-	-	-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 (0.3)	-	-	-	1	1	-	-	-	-	-	-
68	부동산업	2 (0.7)	-	-	-	2	2	-	-	-	-	-	-
71	전문 서비스업	11 (3.7)	-	1	-	7	8	1	2	3	-	-	-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 (1.3)	-	-	-	2	2	-	2	2	-	-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1 (0.3)	-	-	-	1	1	-	-	-	-	-	-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15 (5.0)	3	2	-	8	13	-	2	2	-	-	-
85	교육 서비스업	23 (7.7)	-	5	-	17	22	-	1	1	-	-	-
86	보건업	5 (1.7)	-	-	-	5	5	-	-	-	-	-	-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1 (0.3)	-	-	-	1	1	-	-	-	-	-	-
94	협회 및 단체	3 (1.0)	2	-	-	1	3	-	-	-	-	-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 (0.3)	-	-	-	1	1	-	-	-	-	-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1.7)	1	-	-	4	5	-	-	-	-	-	-
	불명	14 (4.7)	3	1	1	7	12	-	2	2	-	-	-
	합계	298 (100)	31	41	3	177	252	7	36	43	-	3	3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 쟁점

총 23건의 중복쟁점 가처분 사건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77개) 중 17개 표준산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관련 사건이 각 3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유색 배경으로 별도 표시하였다.

[표2-13] 표준산업분류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표준산업분류 코드	항목명	계	1심				항고심 (과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안(일부인용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 의 경우, 이의인용·원결 정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소계	취소·변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과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부정경쟁 인정	기타사유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 (4.3)	-	-	-	1	1	-	-	-	-	-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4.3)	-	-	-	1	1	-	-	-	-	-	-
25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8.7)	-	1	-	1	2	-	-	-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1 (4.3)	-	-	-	1	1	-	-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 (13.0)	-	-	-	3	3	-	-	-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 (4.3)	-	1	-	-	1	-	-	-	-	-	-
42	전문직별 공사업	1 (4.3)	-	-	1	-	1	-	-	-	-	-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 (4.3)	-	-	-	1	1	-	-	-	-	-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 (4.3)	-	-	-	1	1	-	-	-	-	-	-
56	음식점 및 주점업	3 (13.0)	-	1	-	2	3	-	-	-	-	-	-
58	출판업	1 (4.3)	-	-	-	1	1	-	-	-	-	-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 (4.3)	-	-	-	1	1	-	-	-	-	-	-
85	교육 서비스업	1 (4.3)	1	-	-	-	1	-	-	-	-	-	-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4.3)	-	-	-	1	1	-	-	-	-	-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 (4.3)	-	-	-	1	1	-	-	-	-	-	-
94	협회 및 단체	2 (8.7)	-	2	-	-	2	-	-	-	-	-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4.3)	-	-	-	1	1	-	-	-	-	-	-
	불명	-	-	-	-	-	-	-	-	-	-	-	-
	합계	23 (100)	1	5	1	16	23	-	-	-	-	-	-

라. 법원·재판부별

사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경우 신청사건 전담 재판부(제50민사부, 제51민사부, 제60민사부)까지 세분류하여 분석하였다. 5%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법원·재판부는 별도 유색 처리하였다.

(1) 부정경쟁행위

[표2-14] 법원·재판부별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전국법원		계	1심					항고심 (과기 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안개일부인가 포함			소계	항고심		과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법원	재판부	부정경쟁 인정	등록권리침해	기타사유	기각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인용·원결정 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취소·변 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과기환송	재항고 기각
대법원		2 (0.7)	-	-	-	-	-	-	-	-	2	-	2
서울고등		20 (7.5)	-	-	-	-	-	3	17	20	-	-	-
서울중앙	50	10 (3.7)	1	1	-	8	10	-	-	-	-	-	-
	51	-	-	-	-	-	-	-	-	-	-	-	-
	60	118 (44.0)	24	15	2	77	118	-	-	-	-	-	-
서울동부		6 (2.2)	2	-	-	4	6	-	-	-	-	-	-
서울남부		15 (5.6)	4	-	-	11	15	-	-	-	-	-	-
서울북부		4 (1.5)	-	1	-	3	4	-	-	-	-	-	-
서울서부		5 (1.9)	2	-	-	3	5	-	-	-	-	-	-
의정부		3 (1.1)	2	-	-	1	3	-	-	-	-	-	-
인천		4 (1.5)	1	-	-	3	4	-	-	-	-	-	-
인천부천		3 (1.1)	-	-	-	3	3	-	-	-	-	-	-
춘천강릉		2 (0.7)	-	-	1	1	2	-	-	-	-	-	-
춘천원주		3 (1.1)	1	-	-	2	3	-	-	-	-	-	-
수원		6 (2.2)	3	-	-	3	6	-	-	-	-	-	-
수원성남		4 (1.5)	-	2	-	2	4	-	-	-	-	-	-
수원여주		2 (0.7)	1	-	-	1	2	-	-	-	-	-	-
수원평택		1 (0.4)	-	-	-	1	1	-	-	-	-	-	-
수원안산		3 (1.1)	1	-	-	2	3	-	-	-	-	-	-
수원안양		2 (0.7)	1	-	-	1	2	-	-	-	-	-	-
대전고등		3 (1.1)	-	-	-	-	-	-	3	3	-	-	-
대전		7 (2.6)	2	-	-	5	7	-	-	-	-	-	-
대전홍성		1 (0.4)	-	-	-	1	1	-	-	-	-	-	-

전국법원		계	1심				항고심 (파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인가(일부인가 포함))			소계	취소·변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파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법원	재판부	부정경쟁 인정	등록관리침 해	기타사유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인용·원결정 취소, 가처분신청기각								
대전논산		1 (0.4)	-	-	-	1	1	-	-	-	-	-	-
청주		1 (0.4)	-	-	-	1	1	-	-	-	-	-	-
대구고등		1 (0.4)	-	-	-	-	-	1	1	-	-	-	-
대구		9 (3.4)	2	-	1	6	9	-	-	-	-	-	-
대구서부		2 (0.7)	-	-	-	2	2	-	-	-	-	-	-
부산고등		1 (0.4)	-	-	-	-	-	1	-	1	-	-	-
부산		10 (3.7)	2	1	1	6	10	-	-	-	-	-	-
부산동부		3 (1.1)	-	-	-	3	3	-	-	-	-	-	-
부산서부		1 (0.4)	-	-	-	1	1	-	-	-	-	-	-
울산		1 (0.4)	-	-	-	1	1	-	-	-	-	-	-
창원		1 (0.4)	-	-	-	1	1	-	-	-	-	-	-
광주고등		2 (0.7)	-	-	-	-	-	2	2	-	-	-	-
광주고등 (전주)		1 (0.4)	-	-	-	-	-	1	1	-	-	-	-
광주고등 (제주)		3 (1.1)	-	-	-	-	-	2	1	3	-	-	-
광주		3 (1.1)	1	-	-	2	3	-	-	-	-	-	-
광주순천		2 (0.7)	-	-	1	1	2	-	-	-	-	-	-
전주		1 (0.4)	-	-	-	1	1	-	-	-	-	-	-
전주군산		1 (0.4)	-	-	-	1	1	-	-	-	-	-	-
합계		268 (100)	51	20	6	159	235	6	25	31	2	0	2

서울권역(서울고등 및 서울중앙·동·남·북·서부) 법원에서 담당한 사건이 전체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사건의 66.4%인 178건이었고,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당한 사건이 128건(전체 사건의 47.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권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특정 지역에 사건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당한 1심 사건 128건 중 인용 사건은 43건(33.6%)으로, 전국 법원에서의 1심 사건 인용률 32.3%(235건 중 76건)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영업비밀 침해 행위

[표2-15] 법원·재판부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전국법원		계	1심				항고심 (파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인가(일부인가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인용·원결정 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소계	취소·변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파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법원	재판부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대법원		3 (1.0)	-	-	-	-	-	-	-	-	-	3	3
서울고등		33 (11.1)	-	-	-	1	1	6	26	32	-	-	-
서울중앙	50	16 (5.4)	-	3	-	13	16	-	-	-	-	-	-
	51	7 (2.3)	-	-	1	6	7	-	-	-	-	-	-
	60	21 (7.0)	4	1	1	15	21	-	-	-	-	-	-
서울동부		11 (3.7)	1	1	-	9	11	-	-	-	-	-	-
서울남부		19 (6.4)	3	2	-	14	19	-	-	-	-	-	-
서울북부		8 (2.7)	-	1	-	7	8	-	-	-	-	-	-
서울서부		10 (3.4)	2	-	-	8	10	-	-	-	-	-	-
의정부		9 (3.0)	2	1	-	6	9	-	-	-	-	-	-
의정부고양		10 (3.4)	1	7	-	2	10	-	-	-	-	-	-
인천		10 (3.4)	-	1	-	9	10	-	-	-	-	-	-
인천부천		7 (2.3)	1	1	-	5	7	-	-	-	-	-	-
춘천강릉		1 (0.3)	-	-	-	1	1	-	-	-	-	-	-
춘천원주		2 (0.7)	-	-	1	1	2	-	-	-	-	-	-
수원고등		3 (1.0)	-	-	-	-	-	-	3	3	-	-	-
수원		39 (13.1)	7	7	-	25	39	-	-	-	-	-	-
수원성남		17 (5.7)	5	7	-	5	17	-	-	-	-	-	-
수원평택		1 (0.3)	-	-	-	1	1	-	-	-	-	-	-
수원안산		5 (1.7)	-	1	-	4	5	-	-	-	-	-	-
수원안양		13 (4.4)	-	-	-	13	13	-	-	-	-	-	-
대전고등		2 (0.7)	-	-	-	-	-	1	1	2	-	-	-
대전		11 (3.7)	2	3	-	6	11	-	-	-	-	-	-
대전홍성		1 (0.3)	-	-	-	1	1	-	-	-	-	-	-
대전서산		1 (0.3)	-	1	-	-	1	-	-	-	-	-	-
대전천안		2 (0.7)	-	-	-	2	2	-	-	-	-	-	-
청주		2 (0.7)	-	1	-	1	2	-	-	-	-	-	-
대구		4 (1.3)	1	1	-	2	4	-	-	-	-	-	-

전국법원		계	1심				항고심 (파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인가(일부인가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인용·원결정 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소계	취소·변 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파기환송	재항고 기각
법원	재판부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대구서부		3 (1.0)	-	-	-	3	3	-	-	-	-	-
대구포항		1 (0.3)	-	-	-	1	1	-	-	-	-	-
대구김천		1 (0.3)	-	1	-	-	1	-	-	-	-	-
부산고등		4 (1.3)	-	-	-	-	-	4	4	-	-	-
부산고등 (창원)		2 (0.7)	-	-	-	-	-	2	2	-	-	-
부산		3 (1.0)	-	-	-	3	3	-	-	-	-	-
부산동부		1 (0.3)	-	-	-	1	1	-	-	-	-	-
울산		4 (1.3)	2	-	-	2	4	-	-	-	-	-
창원		2 (0.7)	-	-	-	2	2	-	-	-	-	-
창원진주		2 (0.7)	-	-	-	2	2	-	-	-	-	-
광주		1 (0.3)	-	-	-	1	1	-	-	-	-	-
전주		5 (1.7)	-	1	-	4	5	-	-	-	-	-
전주정읍		1 (0.3)	-	-	-	1	1	-	-	-	-	-
합계		298 (100)	32	41	3	177	252	7	36	43	0	3

서울권역(서울고등 및 서울중앙·동·남·북·서부) 법원에서 담당한 사건이 전체 영업비밀 가처분 사건의 41.9%인 125건을 차지하여 서울권 집중 경향이 부정경쟁행위 사건에 비하여는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권역(수원고등 및 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법원에서 담당한 사건이 전체 영업비밀 가처분의 사건의 26.2%인 78건(수원권역에서의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사건은 18건)에 달하였고, 수원권역에 더하여 의정부권역(19건), 인천권역(17건)까지 고려하면 서울 제외 수도권 지역 관할 법원에서의 사건수가 114건에 달하여 서울권역 사건수에 근접하였다.

2019. 3. 1.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면서, 기존 경기 남부 지역의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 고등법원이 아닌 수원고등법원의 관할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부경법 집행에 있어 서울고등법원과 더불어 수원고등법원의 역할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권역 법원에서 담당한 1심 사건 92건 중 인용 사건은 20건(21.7%), 수원권역 법원 1심 사건 75건 중 인용 사건은 27건(36.0%), 의정부권역 법원 1심 사건 19건 중 인용 사건은 11건(57.9%), 인천권역 법원 1심 사건 17건 중 인용 사건은 3건(17.6%)으로, 지역별로 1심 인용률에 편차가 나타났다.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 쟁점

[표2-16] 법원·재판부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전국법원		계	1심					항고심 (파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인가(일부인가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인용·원결정 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소계	취소·변 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파기환송	재항고 기각
법원	재판부	영비침해 인정	부정경쟁 인정	기타사유								
서울중앙	50	-	-	-	-	-	-	-	-	-	-	-
	51	1 (4.3)	-	-	-	1	1	-	-	-	-	-
	60	8 (34.8)	-	1	1	6	8	-	-	-	-	-
서울동부		1 (4.3)	-	-	-	1	1	-	-	-	-	-
서울서부		1 (4.3)	-	-	-	1	1	-	-	-	-	-
의정부고양		3 (13.0)	-	2	-	1	3	-	-	-	-	-
수원		3 (13.0)	1	-	-	2	3	-	-	-	-	-
수원안양		1 (4.3)	-	-	-	1	1	-	-	-	-	-
대전		1 (4.3)	-	1	-	-	1	-	-	-	-	-
부산		2 (8.7)	-	-	-	2	2	-	-	-	-	-
울산		1 (4.3)	-	-	-	1	1	-	-	-	-	-
광주		1 (4.3)	-	1	-	-	1	-	-	-	-	-
합계		23 (100)	2	5	1	16	23	-	-	-	-	-

중복쟁점 가처분 사건 23건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관할 법원의 사건이 18건으로 78.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영업비밀 가처분 사건의 지역적 경향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마. 소제기·선고연도별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다. 따라서 가처분의 성격상 그 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부정경쟁행위

[표2-17] 소제기·선고연도별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연도		계	1심					항고심 (파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선고연도	소제기연도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인가(일부인가 포함))			소계	취소·변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파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부정경쟁 인정	등록권리침해	기타사유								기각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인용·원결정 정취소, 가처분신청기각
2017	2015	1	-	-	-	-	-	1	1	-	-	-	
	2016	20	3	3	1	12	19	1	-	1	-	-	
	2017	71	9	5	1	52	67	1	3	4	-	-	
2018	2016	2	-	-	-	-	-	2	2	-	-	-	
	2017	34	5	5	-	15	25	-	7	7	2	-	
	2018	59	14	5	3	31	53	-	6	6	-	-	
2019	2016	1	-	-	-	-	-	1	1	-	-	-	
	2017	1	-	-	-	1	1	-	-	-	-	-	
	2018	30	4	-	-	21	25	3	2	5	-	-	
	2019	49	15	2	1	27	45	1	3	4	-	-	
합계		268	50	20	6	159	235	6	25	31	2	0	2

대부분의 사건은 가처분 신청을 한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제기 연도 2년 뒤에 결정이 내려진 1심 사건이 1건, 항고 후 2~3년 뒤에 결정이 내려진 항고심 사건이 4건 있었다. 2017년 가처분 신청 후 2019년 결정이 내려진 1심 사건(2017카합150)의 경우, 2017. 9. 13.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어 2019. 7. 11. 결정이 내려졌는데, 심문기일이 11회 열리는 등 본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심리절차가 진행되었다.

2017년 선고된 1심 사건 86건 중 인용 사건은 22건(25.6%), 2018년 선고된 1심 사건 78건 중 인용 사건은 32건(41.0%), 2019년 선고된 1심 사건 71건 중 인용 사건은 22건(31.0%)으로, 2018년 선고 사건의 인용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업비밀 침해 행위

[표2-18] 소제기·선고연도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연도		계	1심					항고심 (과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선고연도	소제기연도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안개(일부안가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 의 경우, 이의인용·원결 정취소 가처분신청기 각	소계	취소·변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과기환송	재항 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2017	2014	1	1	-	-	-	1	-	-	-	-	-	-
	2015	1	-	-	-	-	-	-	1	1	-	-	-
	2016	31	3	2	-	14	19	1	10	11	-	1	1
2018	2017	69	6	12	1	42	61	1	7	8	-	-	-
	2017	24	2	3	1	16	22	-	2	2	-	-	-
	2018	76	6	13	-	48	67	1	7	8	-	1	1
2019	2017	1	-	-	-	-	-	1	-	1	-	-	-
	2018	29	4	1	-	21	26	-	2	2	-	1	1
	2019	66	9	10	1	36	56	3	7	10	-	-	-
합계		298	31	41	3	177	252	7	36	43	0	3	3

영업비밀 가처분 사건 역시 가처분 신청을 한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이 대부분이었으며, 예외적으로 소제기 연도 3년 뒤에 결정이 내려진 1심 사건이 1건, 항고 후 2년 뒤에 결정이 내려진 항고심 사건이 2건 있었다. 2014년 가처분 신청 후 2017년 결정이 내려진 1심 사건(2014카합3109)의 경우, 2014. 11. 4.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어 2017. 1. 19. 결정이 내려졌는데, 심문기일이 10회 열리는 등 본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심리절차가 진행되었다.

2017년 선고된 1심 사건 81건 중 인용 사건은 25건(30.9%), 2018년 선고된 1심 사건 89건 중 인용 사건은 25건(28.1%), 2019년 선고된 1심 사건 82건 중 인용 사건은 25건(30.5%)으로, 2018년 선고 사건의 인용률이 다소 낮지만 대체적으로 30%선의 인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표2-19] 소제기·선고연도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연도		계	1심					항고심 (파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선고연도	소제기연도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안개 일부인가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 의 경우, 이의인용-원결 정취소 가처분신청기 각	소계	취소·변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파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부정경쟁 인정	기타사유								
2017	2016	1	-	-	-	1	1	-	-	-	-	-	-
	2017	6	-	1	-	5	6	-	-	-	-	-	-
2018	2017	4	-	-	1	3	4	-	-	-	-	-	-
	2018	4	1	1	2	-	4	-	-	-	-	-	-
2019	2018	2	-	-	-	2	2	-	-	-	-	-	-
	2019	6	-	3	-	3	6	-	-	-	-	-	-
합계		23	1	5	3	14	23	-	-	-	-	-	-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가 함께 문제된 중복쟁점 가처분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장기간 처리기간이 소요된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바. 영업비밀 유형별

영업비밀의 유형별로 분석함에 있어서는 부정법 제2조제2호가 정의하고 있는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상에 있는 전직/경업금지 약정에서의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업무상배임에서의 “영업용 주요자산”의 개념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 영업비밀 침해행위

[표2-20] 영업비밀 유형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신청취지	계	1심					항고심 (파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인가(일부인가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 의 경우, 이의인용-원결 정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소계	취소·변 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파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기술정보	108 (36.2)	10	22	2	50	84	4	19	23	-	1	1
경영정보	115 (38.6)	11	13	-	79	103	1	11	12	-	-	-
기술·경영	57 (19.1)	9	5	-	37	51	-	4	4	-	-	-
불명	18 (6.0)	1	1	1	11	14	2	2	4	-	2	2
합계	298 (100)	31	41	3	177	252	7	36	43	-	3	3

가처분 사건 중 기술정보 관련 사건은 108건(36.2%), 경영정보 관련 사건은 115건(38.6%)으로, 경영정보 관련 사건이 약간 더 많았으나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기술정보 관련 1심 가처분 사건 84건 중 인용된 사건은 34건(인용률 40.5%), 경영정보 관련 1심 가처분 사건 103건 중 인용된 사건은 24건(인용률 23.3%),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관련 1심 가처분 사건 51건 중 인용된 사건은 14건(인용률 27.5%)으로 나타나, 기술정보 관련 사건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경영정보 관련 사건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심 인용 사건 가운데 기술정보 관련 사건은 비밀유지·전직·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2)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 쟁점

[표2-21] 영업비밀 유형별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처리결과(인용률)

신청취지	계	1심					항고심 (파기환송심 포함)			재항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이의(취소)사건의 경우, 이의기각·원결정 안가(일부인가 포함)			기각 이의(취소)사건 의 경우, 이의인용·원결 정취소 가처분신청기각	소계	취소·변 경 (항고인용)	항고 기각	소계	파기환송	재항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부정경쟁 인정	기타사유								
기술정보	6 (26.1)	-	-	-	6	6	-	-	-	-	-	-
경영정보	14 (60.9)	1	4	1	8	14	-	-	-	-	-	-
기술·경영	3 (13.0)	-	1	-	2	3	-	-	-	-	-	-
불명	-	-	-	-	-	-	-	-	-	-	-	-
합계	23 (100)	1	5	1	16	23	-	-	-	-	-	-

중복쟁점 가처분 사건 23건 중 기술정보 관련은 6건(26.1%), 경영정보 관련은 14건(60.9%),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관련은 3건(13.0%)이었다.

기술정보 관련 1심 가처분 사건 6건은 모두 기각되었고, 경영정보 관련 1심 가처분 사건 14건 중 인용된 사건은 6건(인용률 42.9%),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관련 1심 가처분 사건 3건 중 인용된 사건은 1건(인용률 33.3%)으로 나타났다.

2. 행위유형별 현황(기각사유)

가. 부정경쟁 행위

1개 사건에서 여러 개의 부정경쟁행위(부경법 제2조제1호 각목의 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를 통계에 반영하였고, 하나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하여 여러 개의 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기각사유를 통계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사건수를 기준으로 한 통계 모수와 행위유형별, 기각사유별 통계 모수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행위유형은, ①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가, 나목), ② 저명상표희석(다목), ③ 원산지·생산지·품질 오인유발행위(라, 마, 바목), ④ 대리인의 무단사용(사목, 2001년 신설), ⑤ 도메인이름사용-사이버스쿼팅(아목, 2004년 신설), ⑥ 상품형태모방-데드카피(자목, 2004년 신설), ⑦ 아이디어 탈취(차목, 2018년 신설), ⑧ 타인성과 무단사용(카목, 2013년 구법차목으로 신설되었다가 2018년 카목으로 변경) 등으로 분류하였다.

기각사유는 크게 가처분 신청사건의 요건사실인 ‘피보전권리 부존재’, ‘보전 필요성 부존재’로 구분하였고, 피보전권리 부존재 부분은 다시 부정경쟁행위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요건사실에 따라 ① 주지·저명성²⁹⁾, ② 동일·유사·모방³⁰⁾, ③ 정형성(자목)³¹⁾, ④ 3년경과/통상형태(자목 단서), ⑤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카목), ⑥ 특별한 사정(카목)³²⁾으로 분류하고, 위 요건사실 외 다른 사유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사건 중에는 등록권리 침해를 같이 주장하는 사건이 다수 있는바, 등록권리 침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단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29) 부경법 제2조제1호 가, 나목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30) 부경법 제2조제1호 가, 나목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자목 “모방한 상품”

31) 법원은 부경법 제2조제1호 자목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자목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정형화된 것”이라는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참조).

32) 법원은 부경법 제2조제1호 카목을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파악하면서도, 카목 적용을 위해서는 “경쟁자가 영업표지 등을 사용한 '행위 대상'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위법하여 그러한 무단사용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카목을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라는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자 2019카합21496 결정 등 참조).

【표2-22】 부정경쟁행위 민사가처분 행위유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행위유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항목명	목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주지 저명성	동일유사 모방	자목 정형성	자목 단서 (3년경과 통상형태)	카목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카목 특별한 사정	기타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초래	가	78 (19.6)	13	9	56	60	41	6	-	-	-	-	11	2
	나	83 (20.9)	19	9	55	61	31	10	-	-	-	-	16	4
저명상표희석	다	14 (3.5)	1	2	11	14	6	3	-	-	-	-	5	-
원산지·생산지·품질 오인유발	라	1 (0.3)	-	-	1	1	-	-	-	-	-	-	1	-
	마	1 (0.3)	-	-	1	1	-	-	-	-	-	-	1	-
	바	16 (4.0)	2	-	14	14	-	-	-	-	-	-	12	2
대리인의 무단사용	사	-	-	-	-	-	-	-	-	-	-	-	-	-
도메인 부당선점 (사이버스쿼팅)	아	5 (1.3)	-	-	5	6	2	2	-	-	-	-	2	-
상품형태 모방 (데드카피)	자	64 (16.1)	13	3	48	51	-	13	3	28	-	-	3	4
아이디어 탈취	차	5 (1.3)	-	-	5	5	-	-	-	-	-	-	5	-
타인성과 무단사용	카	131 (32.9)	14	17	100	106	-	-	-	-	57	22	22	5
합계		398 (100)	62	40	296	319	80	34	3	28	57	22	78	17

채권자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가목 78개, 나목 8개 총 161개)로 40.5%, 두 번째로 많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보충적 일반조항인 타인성과 무단사용(카목 131개)으로 32.9%의 비중을 차지했다. 위 두 유형 이후로는 상품형태 모방(데드카피), 원산지·생산지·품질오인유발, 저명상표희석, 도메인 부당선점(사이버스쿼팅), 아이디어 탈취 순으로 주장이 있었다. 대리인의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사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주장 161개 중 인용된 경우는 32개(인용률 19.9%), 상품형태 모방 주장 64개 중 인용된 경우는 13개(인용률 20.3%)인 반면, 타인성과 무단사용 주장 131개 중 인용된 경우는 14개(인용률 10.6%)로 나타나, 타인성과 무단사용 주장의 인용가능성이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초래 내지 상품형태 모방 주장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주장의 경우, 주로 주지·저명성 요건 결여를 이유로 기각된 비율이 59.5%(기각사유 121개 중 72개), 타인성과 무단사용 주장의 경우, 주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비율이 53.8%(기각사유 106개 중 57개), 상품형태 모방(데드카피)

주장의 경우, 주로 부정법 제2조제1호 자목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54.9%(기각사유 51개 중 28개)에 달하였다.

나. 영업비밀 침해 행위

행위유형별 분석에 있어, 전직/경업금지약정 위반 및 유효성 판단 내용에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실시되지 아니한 단순 전직/경업금지 약정 사건은 통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개 사건에서 여러 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부정법 제2조제3호 각목의 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를 통계에 반영하였고, 하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주장에 대하여 여러 개의 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기각사유를 통계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사건수를 기준으로 한 통계 모수와 행위유형별, 기각사유별 통계 모수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부정법 제2조제3호 각목의 행위는 크게 제3자의 영업비밀 부정취득(가, 나, 다목), 비밀유지의무자의 영업비밀 부정공개(라, 마, 바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행위유형은 위와 같은 이분법에 의하였고, 행위유형을 명시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불명’으로 처리하였다.

기각사유는 크게 가처분 신청사건의 요건사실인 ‘피보전권리 부존재’, ‘보전 필요성 부존재’로 구분하였고, 피보전권리 부존재 부분은 다시 ① 영업비밀 특정, ② 비공지성³³⁾, ③ 경제적 유용성³⁴⁾, ④ 비밀관리성³⁵⁾, ⑤ 보호·금지기간 도과, ⑥ 전직·경업금지 약정 무효로 분류하고, 위 6가지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영업비밀 가처분 사건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정 위반이 인정되어 채권자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영업비밀 침해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으므로 “판단없음” 처리하였다.

33) 부정법 제2조제2호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34) 부정법 제2조제2호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35) 부정법 제2조제2호 “비밀로 관리된”

[표2-23]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가처분 행위유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행위유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항목명	목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영업비밀 특정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보호·금 지기간 도과	전직·경 업금지약 정 무효	기타	
1 제3자 부정취득	가	20 (11.3)	6	-	14	26	4	3	4	7	2	1	5	-
	나													
	다													
2 비밀유지의무자 부정공개	라	24 (13.6)	4	-	20	39	5	5	5	12	3	3	6	-
	마													
	바													
불명		133 (75.1)	20	10	103	218	27	40	25	54	12	24	24	12
합계		177 (100)	30	10	137	283	36	48	34	73	17	28	35	12

영업비밀 가처분 사건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75.1%(177개 중 133개)에 달했다.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영업비밀의 경우 특별히 유형론이 학문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점, 실무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구분의 실익이 적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영업비밀 제3자 부정취득 주장 20개 중 인용된 경우는 6개(인용률 30.0%), 영업비밀 비밀유지의무자 부정공개 주장 24개 중 인용된 경우는 4개(인용률 16.7%), 침해 유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133개 중 인용된 경우는 20개(인용률 15.0%)였다.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기각된 사유 중 비밀관리성이 부정된 비율이 25.8%(기각사유 283개 중 73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비공지성이 부정된 비율 17.0%(기각사유 283개 중 48개), 영업비밀의 특징이 부정된 비율 12.7%(기각사유 283개 중 36개), 경제적 유용성이 부정된 비율 12.0%(기각사유 283개 중 34개)로, “영업비밀 침해”를 판단하기 이전에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전직·영업금지 약정이 무효라고 본 비율은 9.9%(기각사유 283개 중 28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내지 침해금지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비율은 6.0%(기각사유 283개 중 17개)였다.

다.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표2-24]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행위유형별 현황 I (인용률·기각사유)

행위유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항목명	목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주지 저명성	동일유사 모방	자목 정형성	자목 단서 (3년경과 통상형태)	카목 상당한 투자나 노력	카목 특별한 사정	기타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초래	가	1(2.8)	-	-	1	1	1	-	-	-	-	-	-	-
	나	6(17.1)	-	-	6	7	4	1	-	-	-	-	-	2
저명상표희석	다	1(2.8)	-	-	1	1	1	-	-	-	-	-	-	-
원산지·생산지·품질 오인유발	라	-	-	-	-	-	-	-	-	-	-	-	-	-
	마	-	-	-	-	-	-	-	-	-	-	-	-	-
	바	2(5.7)	-	-	2	2	-	-	-	-	-	-	1	1
대리인의 무단사용	사	-	-	-	-	-	-	-	-	-	-	-	-	-
도메인 무단전점 (사이버스쿼팅)	아	-	-	-	-	-	-	-	-	-	-	-	-	-
상품형태 모방 (데드카피)	자	3(8.5)	1	-	2	2	-	-	1	1	-	-	-	-
아이디어 탈취	차	1(2.8)	-	1	-	-	-	-	-	-	-	-	-	-
타인성과 무단사용	카	21(60.0)	5	2	14	15	-	-	-	-	12	2	1	-
합계		35(100)	6	3	26	28	6	1	1	1	12	2	2	3

[표2-25] 중복쟁점 민사가처분 행위유형별 현황 II (인용률·기각사유)

행위유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항목명	목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영업비밀 특정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보호·금지기간 도과	전직·경업금지약정 무효		기타
제3자 부정취득	가	6(24.0)	-	-	6	7	2	-	-	2	-	-	3	-
	나													
	다													
비밀유지의무자 부정공개	라	6(24.0)	-	-	6	15	4	3	2	4	-	1	-	1
	마													
	바													
불명		13(52.0)	1	-	12	19	1	5	3	9	-	-	1	-
합계		25(100)	1	-	24	41	7	8	5	15	-	1	4	1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함께 문제된 가치분 사건에서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35개였는데 가장 많이 주장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타인성과 무단사용으로 21개(60.0%)였다.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25개였으며 이 중 침해 유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3개(52.0%)였다.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용된 경우는 6개(인용률 17.1%),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인용된 경우는 1개(인용률 4.0%)였다.

3. 최근 법개정사항 적용 추이

가. 타인성과 무단사용

(1)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과거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조항에 의해 보호되어 오던 타인성과 무단사용 행위는 2013년 개정법에서 차목으로 신설되었고, 이후 2018년 개정법에서 후술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아이디어 탈취를 별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와 같다.

[표2-26] 2013년 개정 부경법 신구조문대비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12호, 2011. 12. 2.,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63호, 2013. 7. 30., 일부개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 자.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 자. (현행과 같음)</p> <p>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p>

[표2-27] 2018년 개정 부경법 신구조문대비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80호, 2018. 4. 17., 일부개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생략)</p> <p>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p> <p>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p> <p>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p>

<p>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p>	<p>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p>
<p>라. ~ 자. (생략)</p>	<p>라. ~ 자. (현행과 같음)</p>
<p>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p>	<p>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 설></p>	<p>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p>

그동안 카목(구법 차목)의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방탄소년단(BTS) 화보잡지 사건³⁶⁾과 골프존 사건,³⁷⁾ 에르메스 눈알가방 사건³⁸⁾ 등에 대한 대법원 판시를 통해 명시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는 동 조항이 지난 2013. 7. 30. 법개정(2014. 1. 31. 시행)을 통해 차목으로 최초 신설된 이래 약 7년만의 일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판례들은 위 대법원 판시 이전인 2017-2019 판결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카목의 보충적 일반조항적 성격상 현행 카목과 구법 차목 간 요건사실 및 범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트레이드 드레스, 아이디어 탈취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카목이 포섭할 수 있는 범주에 변경이 생겼는 바, 선고연도별뿐만 아니라 행위시법을 기준으로 구법 차목이 적용된 사건과 현행 카목이 적용된 사건을 구별하여 카목(구법 차목)의 적용 추이를 고찰하였다. 법개정 전후에 걸쳐져 있는 사건의 경우, 다수개 처리하였다. 여기서는 부정경쟁행위 단독쟁점 판례와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 쟁점 판례를 한꺼번에 분석하였다.

선고연도 및 행위시법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민사 가치분 사건에 있어 카목(구법 차목) 주장의 개수 자

36)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37)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38)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체는 2019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인용률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단순 판결선고연도 기준 2017년 3.7%, 2018년 9.2%, 2019년 26.6%로 상승하였고, 행위시법 기준으로 하더라도 구법 차목 하에서 6.4%에 불과하던 인용률이 현행 카목 하에서 27.9%로 대폭 상승하였다.

[표2-28] 카목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 (인용률·기각사유)

선고연도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특별한 사정	기타	
2017	53 (100)	2 (3.7)	8	43	46	22	13	9	2
2018	54 (100)	5 (9.2)	7	42	45	30	3	10	2
2019	45 (100)	12 (26.6)	4	29	30	17	8	4	1
합계	152 (100)	19 (12.5)	19	114	121	69	24	23	5

[표2-29] 카목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I (인용률·기각사유)

행위시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특별한 사정	기타	
구법 차목 (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	109 (100)	7 (6.4)	15	87	94	55	18	17	4
현행 카목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	43 (100)	12 (27.9)	4	27	27	14	6	6	1
합계	152 (100)	19 (12.5)	19	114	121	69	24	23	5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선고연도·행위시법별, 가처분·본안별 인용률 편차가 매우 크고, 일정한 추세선이 보이지 않는 등 아직까지 수범자들 사이에 카목 관련 법리나 적용 범위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위유형별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11개의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상대적으로 다빈도 유형이면서 긴 집행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나·목 상품주체·영업주체 사칭(passing-off 또는 palming-off, 1961년 제정법), 자목 상품형태모방(dead copy, 2004년 신설)의 경우 대체로 평균 20%대의 인용률을 보인다.

한편 카목 주장 기각사유 중에는 법문에도 없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위법하여 그러한 무단 사용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결여를 이유로 기각한 사례가 24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에르메스 눈 알가방 사건에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특별한 사정’ 결여를 이유로 카목 주장을 기각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³⁹⁾

위 두 표를 하나의 표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표2-30] 카목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Ⅲ(인용률·기각사유)

선고연도	행위시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주장인용	판단없음	주장기각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특별한 사정	기타	
2017	구법 카목 (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	53	2	8	43	46	22	13	9	2
2018	구법 카목 (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	47	3	7	37	40	28	3	7	2
	현행 카목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	7	2	-	5	5	2	-	3	-
2019	구법 카목 (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	9	2	-	7	8	5	2	1	-
	현행 카목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	36	10	4	22	22	12	6	3	1
합계		152	19	19	114	121	69	24	23	5

39)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나2035091 판결).

(2) 카목 세부유형별 현황

카목(구법 차목)의 세부유형 분류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충적 일반조항적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⁴⁰⁾ 즉, 특허관련영역(기술정보), 상표관련영역(출처표시), 디자인관련영역, 저작권관련영역, 기타 성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고, 1개 카목 주장에 여러 세부유형 있을 경우 복수개 처리하였다.

카목 주장 인용률은 5개 세부유형 중 기타 성과> 저작권 관련영역> 상표 관련영역> 디자인 관련영역> 특허 관련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허 관련영역의 경우 전건 주장 기각되었다.

[표2-31] 카목 세부유형별 민사가처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카목 세부유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카목 상당한 투자나 노력	카목 특별한 사정	기타	
특허 관련영역 (기술정보)	17 (10.1)	-	-	17	18 (13.2)	7	4	5	2
상표 관련영역 (출처표시)	34 (20.2)	4	6	24	25 (18.4)	8	11	6	-
디자인 관련영역	55 (32.7)	3	8	44	47 (34.6)	25	13	6	3
저작권 관련영역	38 (22.6)	5	7	26	29 (21.3)	20	4	4	1
기타 성과	24 (14.3)	7	-	17	17 (12.5)	13	-	3	1
합계	168 (100)	19	21	128	136 (100)	73	32	24	7

40) 이규홍,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변경 후 카목)에 대한 연구 -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교차점-”, 정보법학 제22권 제2호 (2018) 88-95.

나. 트레이드 드레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란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종합적인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례법상 기존 구법 차목에 의해 보호되어 오던 것을 2018년 개정법에서 나·다목의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시’의 범위에 트레이드 드레스를 확장 명시하는 방식으로 입법화 되었다. 참고로 트레이드 드레스의 입법 과정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국내 사건은 별집채꿀 아이스크림 사건⁴¹⁾과 단팥빵집 사건⁴²⁾이다.

[표2-32]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 (인용률·기각사유)

선고연도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주지 저명성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특별한 사정	기타	
2017	4	-	-	4	5	-	3	2	-	-
2018	-	-	-	-	-	-	-	-	-	-
2019	3	-	-	3	3	2	-	1	-	-
합계	7	-	-	7	8	2	3	3	-	-

[표2-33]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I (인용률·기각사유)

선고연도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주지 저명성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특별한 사정	기타	
구법 차목 (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	5	-	-	5	6	-	3	3	-	-
현행 나·다목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	2	-	-	2	2	2	-	-	-	-
합계	7	-	-	7	8	2	3	3	-	-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524716 판결.

42)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

분석대상 가처분 판례 중 종합적인 영업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이 쟁점이 되었으나 행위시법주의 원칙상 여전히 구법 차목이 적용된 사건이 총 5건 있었다. 그러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보기 어렵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위법하여 그러한 무단 사용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결여를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최근 광주 이베리코 후웨이 프랜차이즈 사건⁴³⁾과 부산 막국수 프랜차이즈 사건⁴⁴⁾에서 개정법 나·다목이 처음으로 적용되었으나, 주지·저명성 결여를 이유로 모두 주장 기각되었다. 다만 그중 이베리코 후웨이 프랜차이즈 사건의 경우, “종합적 영업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이 널리 인식된 채권자의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단 사용 행위의 태양이 현저히 위법하여 이를 금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카목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주지저명성이 결여된 트레이드 드레스의 경우,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목에 의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사료된다.⁴⁵⁾

위 두 표를 하나의 표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표2-34]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Ⅲ(인용률·기각사유)

선고연도	행위시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주지 저명성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특별한 사정	기타	
2017	구법 차목 (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	4 (57.1)	-	-	4	5	-	3	2	-	-
2018	구법 차목 (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	-	-	-	-	-	-	-	-	-	-
	현행 나·다목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	-	-	-	-	-	-	-	-	-	-
2019	구법 차목 (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	1 (14.3)	-	-	1	1	-	-	1	-	-
	현행 나·다목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	2 (28.6)	-	-	2	2	2	-	-	-	-
합계		7 (100)	-	-	7	8	2	3	3	-	-

43) 광주지방법원 2019. 5. 3.자 2019카합50145 결정.

44) 부산지방법원 2019. 1. 30.자 2019카합10283 결정.

45) 다만 후술하는 민사본안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종사건의 민사본안 사건에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카목 주장 역시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 광주지방법원 2019. 12. 27. 선고 2019가합52923 판결.

다. 아이디어 탈취

아이디어 탈취는 앞서 살펴본 트레이드 드레스와 함께 2018년 개정법(2018. 7. 18. 시행)에서 차목으로 신설되었다. 종래 아이디어는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범리상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 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면서,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신설되었다.⁴⁶⁾ 참고로 차목 신설 전에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하여 보충적 일반조항(구법 차목)의 적용 가부 등이 논의되었으나, 아이디어나 콘셉트 자체를 타인 성과로 포섭하여 보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분석대상 가처분 판례 중 아이디어 탈취 신설 규정(차목)이 주장된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하였는데, 그 중 1건은 영업비밀 침해로도 중복 주장된 관계로 차목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5건은 모두 주장 기각되었다. 주장 기각된 사건 중 일응 차목 신설의 취지와 가장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판례는,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부산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제공했던 ‘장경간 복합 강관 트러스 거더교 기술’ 기술제안서 무단 사용이 문제된 사안(특허청 산업재산조사사건 제2018-30호)으로서, 차목 단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특허청 조사사건 결과와는 달리, 주장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⁴⁷⁾

[표2-35] 아이디어 탈취 민사가처분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선고연도	행위시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거래교섭 거래과정	제공목적 위반 부정사용	공지된 아이디어 (차목 단서)	기타	
2017	-	-	-	-	-	-	-	-	-	-	-
2018	현행 차목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	-	-	-	-	-	-	-	-	-	-
2019	현행 차목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	6 (100)	-	1	5	6 (100)	-	1	1	3	1
합계		6 (100)	-	1	5	6 (100)	-	1	1	3	1

46) 2018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자 2019카합20666 결정(공사증지가처분).

다만 시행 3년차인 2020년 올해 처음으로 치킨프랜차이즈 광고용역계약(치킨 네이밍 및 광고 콘티 제작)과 관련하여 차목 주장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⁴⁸⁾ 및 대법원⁴⁹⁾ 판시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사 본안 부분에서 후술한다.

48)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의 계약 기간이 두 달여 남은 때에 을 회사에 곧 출시할 예정인 치킨 제품의 네이밍 등 광고용역을 의뢰하자, 을 회사가 위 제품의 네이밍을 '씨프라이드'로 하는 TV 방송용 광고 콘티를 작성하여 갑 회사에 제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광고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설명 없이 위 제품의 출시와 광고촬영 일정을 연기하던 갑 회사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을 회사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다음 다른 광고업체인 병 회사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씨프라이드'라는 네이밍으로 병 주식회사가 제작한 TV 방송용 광고와 각종 광고물을 위 제품의 광고에 사용한 사안(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49)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라.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상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중소기업에게는 이러한 비밀관리성의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의 부경법 개정을 통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다시 '합리적 노력'조차 삭제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왔는데,⁵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래 신구조문대비표와 같다.

[표2-36] 2015년 개정 부경법 신구조문대비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63호, 2013. 7. 30.,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81호, 2015. 1. 28., 일부개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p> <p>3.·4. (생략)</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p> <p>3.·4. (현행과 같음)</p>

[표2-37] 2019년 개정 부경법 신구조문대비표(비밀관리성 관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80호, 2018. 4. 17.,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p> <p>3.·4. (생략)</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p> <p>3.·4. (현행과 같음)</p>

50) 2015년, 2019년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개정법의 재판 반영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행위시법별로 비밀관리성이 쟁점이 된 사건을 분석하였다. 법개정 전후에 걸쳐져 2가지 행위시법이 모두 문제된 사건의 경우, 다수개 처리하였다.

분석대상 가처분 사건 중 행위시법주의 원칙상 아직까지 2019년 개정법이 적용된 사건은 없었고, 2015년 개정전 법률이 적용된 사건이 29건, 2015년 개정법이 적용된 사건은 67건 있었다.

우선 결과적인 비밀관리성 인용률 면에서, 개정전 법률 적용 사건 34.4%, 개정법 적용 사건 22.3%로 나타나,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용률이 1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표2-38]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인용률

행위시법		계	비밀관리성 인용률	
			인정	불인정
2015년 개정전 법률	상당한 노력	29 (100)	10 (34.4)	19
2015년 개정법 (2015.1.28.개정) (2015.7.29.시행)	합리적 노력	67 (100)	15 (22.3)	52
2019년 개정법 (2019.1.8.개정) (2019.7.9.시행)	합리적 노력 삭제	-	-	-
합계		96 (100)	25 (26.0)	71

또한 2015년 개정법 적용사건 67건 중 결과적인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시과정에서 법 개정 완화 취지가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의 법개정 사실과 함께 그 개정취지가 판단기준 완화에 있다는 점까지 실시하면서 판시한 사건은 비밀관리성 인정·불인정 사건 합계 총 7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60건⁵¹⁾은 아예 법 개정 사실 자체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그 판단기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9.자 2017카합50049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7. 6. 9.자 2017카합10011 결정 등(“상당한 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표2-39]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

행위시법		계	비밀관리성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							
			비밀관리성 인정				비밀관리성 불인정			
			판단기준 완화 인정	판단기준 완화 불인정	법개정 사실 설시 없음	소계	판단기준 완화 인정	판단기준 완화 불인정	법개정 사실 설시 없음	소계
2015년 개정법 (2015.1.28.개정) (2015.7.29.시행)	합리적 노력	67	6	-	9	15	1	3	48	52
2019년 개정법 (2019.1.8.개정) (2019.7.9.시행)	합리적 노력 삭제	-	-	-	-	-	-	-	-	-
합계		67	6	-	9	15	1	3	48	52

선고연도별로 위 비밀관리성 인용률 및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을 하나의 표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표2-40] 선고연도별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인용률 및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

선고연도	행위시법		계	비밀관리성 인용률 및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							
				비밀관리성 인정				비밀관리성 불인정			
				판단기준 완화 인정	판단기준 완화 불인정	법개정 사실 설시 없음	소계	판단기준 완화 인정	판단기준 완화 불인정	법개정 사실 설시 없음	소계
2017	2015년 개정 전 법률	상당한 노력	17 (17.7)	-	-	-	4	-	-	-	13
	2015년 개정법 (2015.1.28.개정) (2015.7.29.시행)	합리적 노력	26 (27.1)	1	-	5	6	1	2	17	20
2018	2015년 개정 전 법률	상당한 노력	7 (7.3)	-	-	-	4	-	-	-	3
	2015년 개정법 (2015.1.28.개정) (2015.7.29.시행)	합리적 노력	25 (26.0)	4	-	-	4	-	1	20	21
2019	2015년 개정 전 법률	상당한 노력	5 (5.2)	-	-	-	2	-	-	-	3
	2015년 개정법 (2015.1.28.개정) (2015.7.29.시행)	합리적 노력	16 (16.7)	1	-	4	5	-	-	11	11
	2019년 개정법 (2019.1.8.개정) (2019.7.9.시행)	합리적 노력 삭제	-	-	-	-	-	-	-	-	-
합계			96 (100)	6	-	9	25	1	3	48	71

제3절 민사 본안

1. 처리결과별 현황(인용률/파기율)

가. 청구취지별

(1) 부정경쟁행위

청구취지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존재확인·기타로 분류하였고, 1개의 소에 청구가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청구를 통계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사건수를 기준으로 한 통계 모수와 청구취지별 통계 모수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부정경쟁행위와 다른 사유(등록권리 침해, 민법상 불법행위 등)가 중첩적으로 인용될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통계에 반영하였다.

[표2-41] 청구취지별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청구취지	계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 인소송의 경우, 원고청구인용	소계	취소·변 경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파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부정경쟁 인정	등록권리침 해	기타사유								
금지	197 (41.6)	25	27	9	86	147	20	27	47	-	3	3
손해배상	276 (58.2)	29	37	18	124	208	26	37	63	2	3	5
신용회복	1 (0.2)	-	-	-	1	1	-	-	-	-	-	-
부존재확인 기타	-	-	-	-	-	-	-	-	-	-	-	-
합계	474 (100)	54	64	27	211	356	46	64	110	2	6	8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사건 중 금지청구가 포함된 사건은 1심 147건, 항소심 47건, 상고심 3건으로 총 197건이었고,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사건은 1심 208건, 항소심 63건, 상고심 5건으로 총 276건이었으며, 신용회복청구가 포함된 사건은 1심 1건이 있었다. 부존재확인·기타 청구는 없었다.

금지청구가 포함된 1심 사건 147건 중 인용된 사건은 61건(41.5%),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1심 사건 208건 중 인용된 사건은 84건(40.4%)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전체 민사본안사건 1심 인용률이 58.1%⁵²⁾, 2018년 전체 민사본안사건 1심 인용률이 56.3%⁵³⁾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의 1심 인용률은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심에서 인용된 145건을 분석한 결과, 145건 중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인용된 경우는 54건(37.2%), 등록권리침해를 이유로 인용된 경우는 64건(44.1%), 기타 사유로 인용된 경우는 27건(18.6%)이었다. 기타 사유로 인용된 경우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⁵⁴⁾,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인용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금지청구가 포함된 항소심 사건 47건 중 항소기각 사건은 27건(57.4%),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항소심 사건 63건 중 항소기각 사건은 37건(58.7%)으로 나타났다.

52) 2017년 처리된 전체 민사본안 1심 사건 1,029,717건 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일부 승소 포함)은 597,753건이었다(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2018. 9. 17.) 724면 참조).

53) 2018년 처리된 전체 민사본안 1심 사건 939,208건 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일부 승소 포함)은 529,065건이었다(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2019. 9. 18.) 740면 참조).

54)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청구취지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존재확인·기타로 분류하였고, 1개의 소에 청구가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청구를 통계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사건수를 기준으로 한 통계 모수와 청구취지별 통계 모수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영업비밀침해행위와 다른 사유(약정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 등)가 중첩적으로 인용될 경우에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인정 한 것으로 통계에 반영하였다.

[표2-42] 청구취지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청구취지	계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원고청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의 경우,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 인의 경우, 원고청구인용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파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금지	75 (17.1)	9	4	3	33	49	11	7	18	-	8	8
손해배상	359 (81.8)	21	53	36	173	283	37	34	71	-	5	5
신용회복	-	-	-	-	-	-	-	-	-	-	-	-
부존재확인 기타	5 (1.1)	-	1	-	2	3	1	-	1	-	1	1
합계	439 (100)	30	58	39	208	335	49	41	90	-	14	14

영업비밀 민사본안 사건 중 금지청구가 포함된 사건은 1심 49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8건으로 총 75건 이었고,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사건은 1심 283건, 항소심 71건, 상고심 5건으로 총 359건이었으며, 부존재 확인·기타 청구가 포함된 사건은 1심 3건, 항소심 1건, 상고심 1건으로 총 5건이 있었다. 신용회복청구가 포 함된 사건은 없었다.

금지청구가 포함된 1심 사건 49건 중 인용된 사건은 16건(32.7%),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1심 사건 283 건 중 인용된 사건은 110건(38.9%)으로 나타나, 전체 민사본안사건 1심 인용률(2017년 58.1%, 2018년 56. 3%) 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 민사 본안 인용률 보다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1심에서 인용된 127건을 분석한 결과, 127건 중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이유로 인용된 경우는 30건(23.6%), 당사자간 약정 위반을 이유로 인용된 경우는 58건(45.7%), 기타 사유로 인용된 경우는 39건(30.7%)이었다. 기타 사유로 인용된 경우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반도체설계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근거로 인용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금지청구가 포함된 항소심 사건 18건 중 항소기각 사건은 7건(38.9%),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항소심 사건 71건 중 항소기각 사건은 34건(47.9%)으로 나타났다.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표2-43] 청구취지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청구취지	계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원고청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인 인용의 경우 원고청구인용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파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부정경쟁 인정	기타사유								
금지	40 (37.0)	2	4	3	23	32	4	3	7	1	-	1
손해배상	67 (62.0)	2	5	9	37	53	6	8	14	-	-	-
신용회복	1 (0.9)	-	-	-	1	1	-	-	-	-	-	-
부존재확인 기타	-	-	-	-	-	-	-	-	-	-	-	-
합계	108 (100)	4	9	12	61	86	10	11	21	1	-	1

중복쟁점 민사본안 사건 중 금지청구가 포함된 사건은 40건(1심 32건, 항소심 7건, 상고심 1건),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사건은 67건(1심 53건, 항소심 14건), 신용회복청구가 포함된 사건은 1심 1건이었다.

금지청구가 포함된 1심 사건 32건 중 인용된 사건은 9건(28.1%),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1심 사건 53건 중 인용된 사건은 16건(30.2%)으로 나타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침해행위가 단독으로 문제되는 경우보다 인용가능성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인용된 25건 중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이유로 인용된 경우는 4건(16.0%),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인용된 경우는 9건(36.0%), 영업비밀 침해 내지 부정경쟁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용된 경우는 12건(48.0%)이었다. 기타 사유로 인용된 경우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인용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나. 피해업체 유형별

(1) 부정경쟁행위

[표2-44] 피해업체 유형별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피해업체	계	1심					항소심 (과기 환송심 포함)			상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 인소송의 경우, 원고청구인용	소계	취소·변 경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과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부정경쟁 인정	등록권리침 해	기타사유									
기업	대기업집단	14 (4.3)	2	5	2	-	9	2	2	4	1	-	1
	중소 기타	135 (41.4)	25	19	5	46	95	19	18	37	1	2	3
	불명	54 (16.6)	3	1	5	36	45	-	9	9	-	-	-
개인	108 (33.1)	7	12	7	59	85	8	13	21	-	2	2	
조합 기타	13 (4.0)	2	3	-	4	9	-	3	3	-	1	1	
불명	2 (0.6)	-	-	-	1	1	1	-	1	-	-	-	
합계	326 (100)	39	40	19	146	244	30	45	75	2	5	7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사건 326건 중 피해업체가 기업인 경우는 203건(62.3%), 개인인 경우는 108건(33.1%), 조합 기타인 경우는 13건(4.0%)이었다.

1심 기업 피해사건 149건 중 인용된 사건은 67건으로 인용률은 45.0%로 나타났는데, 이를 좀 더 세분하여 보면, 대기업집단 피해사건의 인용률은 100%(9건 중 9건 인용), 중소기업 기타 피해사건의 인용률은 51.6%(95건 중 49건 인용)로 대기업집단 피해사건의 인용률이 중소기업 기타 피해사건의 인용률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피해업체가 개인인 1심 사건 85건 중 인용된 사건은 26건으로 개인 피해사건의 1심 인용률은 30.6%에 그쳤으며, 피해업체가 조합 기타인 1심 사건 9건 중 인용된 사건은 5건으로 조합 기타 피해사건의 1심 인용률은 55.6%였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표2-45] 피해업체 유형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피해업체	계	1심					항소심 (과기 환송심 포함)			상고심			
		원고청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인 경우,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 인인 경우, 원고청구인용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과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기업	대기업집단	4 (1.0)	-	3	-	-	3	-	1	1	-	-	-
	중소 기타	150 (39.0)	17	18	13	65	113	17	13	30	-	7	7
	불명	147 (38.2)	2	23	18	71	114	14	13	27	-	6	6
개인	81 (21.0)	2	10	4	47	63	7	11	18	-	-	-	
조합 기타	2 (0.5)	-	1	1	-	2	-	-	-	-	-	-	
불명	1 (0.3)	-	-	-	1	1	-	-	-	-	-	-	
합계	385 (100)	21	55	36	184	296	38	38	76	-	13	13	

영업비밀 민사본안 사건 385건 중 피해업체가 기업인 경우는 301건(78.2%), 원고가 개인인 경우는 81건(21.0%), 조합 기타인 경우는 2건(0.5%)이었다.

1심 기업 피해사건 230건 중 인용된 사건은 94건으로 인용률은 40.9%로 나타났는데, 이를 좀 더 세분하여 보면, 대기업집단 피해사건의 인용률은 100%(3건 중 3건 인용), 중소기업 기타 피해사건의 인용률은 42.5%(113건 중 48건 인용)로 대기업집단 피해사건의 인용률이 중소기업 기타 피해사건의 인용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부경법이 아니라 약정위반을 원인으로 영업비밀 유출이 문제되는 사안을 전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업체가 개인인 1심 사건 63건 중 인용된 사건은 16건으로 개인 피해사건의 1심 인용률은 25.4%에 그쳤으며, 피해업체가 조합 기타인 1심 사건 2건 중 인용된 사건은 2건으로 조합 기타 피해사건의 1심 인용률은 100%였다.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 쟁점

[표2-46] 피해업체 유형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피해업체	계	1심					항소심 (과기 환송심 포함)			상고심			
		원고청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인 경우,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 인인 경우, 원고청구인용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과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부정경쟁 인정	기타사유									
기업	대기업집단	-	-	-	-	-	-	-	-	-	-	-	
	중소 기타	33 (47.1)	-	1	2	21	24	5	3	8	1	-	1
	불명	17 (24.3)	2	1	1	10	14	1	2	3	-	-	-
개인	18 (25.7)	-	1	6	8	15	-	3	3	-	-	-	
조합 기타	2 (2.9)	-	2	-	-	2	-	-	-	-	-	-	
불명	-	-	-	-	-	-	-	-	-	-	-	-	
합계	70 (100)	2	5	9	39	55	6	8	14	1	-	1	

중복쟁점 민사본안 사건 70건 중 피해업체가 기업인 경우는 50건(71.4%), 원고가 개인인 경우는 18건(25.7%), 조합 기타인 경우는 2건(2.9%)이었다. 중복쟁점 사건은 중소기업 부문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었고, 중복쟁점 사건이 인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정경쟁행위나 기타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 표준산업분류별

(1)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사건은 총 44개 표준산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산업분야는 ‘도매 및 상품 중개업’⁵⁵⁾으로 나타났다(36건, 11.0%). 그 다음으로 ‘소매업; 자동차 제외’⁵⁶⁾ 관련 사건이 33건(10.1%)으로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음식점 및 주점업’⁵⁷⁾(20건, 6.1%), ‘출판업’⁵⁸⁾(20건, 6.1%), ‘전문 서비스업’⁵⁹⁾(18건, 5.5%) 관련 사건 순으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었다.

위와 같은 상위 5개 다빈도 산업분야가 전체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9%였다. 위 산업분야는 유색 배경으로 별도 표시하였다.

상위 5개 다빈도 산업분야의 1심 인용률을 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51.9%(27건 중 14건 인용), ‘소매업; 자동차 제외’ 39.3%(28건 중 11건 인용), ‘음식점 및 주점업’ 36.8%(19건 중 7건 인용), ‘출판업’ 54.5%(11건 중 6건 인용),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0%(6건 중 3건 인용)로 나타나, ‘출판업’의 인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47] 표준산업분류별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표준산업분류 코드	항목명	계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원고창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소계	취소·변경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파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부정경쟁 인정	등록권리침해	기타사유							
10	식료품 제조업	6 (1.8)	2	1	-	-	-	2	3	-	-	-
11	음료 제조업	7 (2.1)	1	1	-	2	4	1	2	3	-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3 (0.9)	-	2	-	-	2	1	-	1	-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0.3)	-	-	-	1	1	-	-	-	-	-

- 55)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 56)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 판매, 소비조합, 행사인, 경매 등을 포함한다.
- 57)接客시설을 갖추고 국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接客시설을 갖추고 주류, 다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 58) 서적,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
- 59) 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 기록 및 감사, 광고 대행, 시장 및 여론 조사, 경영관련 계획 수립, 자문 및 관련 컨설팅 제공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계	1심					항소심 (과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코드	항목명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원고창구기간(일부 기간 포함)			기간 반소·부존재확인 인소송의 경우; 원고창구인용	소계	취소·변경 (항소인용)	항소 기간	소계	과기환송	상고 기간	소계
			부정경쟁 인정	등록권리침해	기타사유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 (2.8)	1	-	-	8	9	-	-	-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2 (0.6)	-	-	-	2	2	-	-	-	-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0.9)	-	-	-	3	3	-	-	-	-	-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제외 의약품 제조업	9 (2.8)	-	2	1	3	6	2	-	2	-	1	1
21	의약품 제조업	2 (0.6)	-	1	-	1	2	-	-	-	-	-	-
22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및 섬유제품	8 (2.5)	1	-	1	4	6	1	1	2	-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 (0.6)	-	-	-	1	1	1	-	1	-	-	-
24	1차 제조업	4 (1.2)	1	-	-	3	4	-	-	-	-	-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 (2.5)	1	-	1	4	6	-	2	2	-	-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 (1.5)	-	-	-	3	3	-	2	2	-	-	-
27	의류,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3 (4.0)	3	-	1	4	8	2	3	5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8 (2.5)	3	-	2	2	7	-	1	1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 (3.4)	-	-	-	8	8	2	1	3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0.6)	-	-	-	2	2	-	-	-	-	-	-
32	가구 제조업	6 (1.8)	-	2	-	2	4	-	2	2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15 (4.6)	2	1	-	7	10	3	2	5	-	-	-
41	종합 건설업	2 (0.6)	-	-	-	2	2	-	-	-	-	-	-
42	전문직별 공사업	7 (2.1)	-	-	1	3	4	1	1	2	1	-	1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 (0.3)	-	-	-	1	1	-	-	-	-	-	-
46	도매 및 중개업	36 (11.0)	8	4	2	13	27	3	6	9	-	-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33 (10.1)	5	5	1	17	28	2	3	5	-	-	-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0.6)	-	1	-	1	2	-	-	-	-	-	-
55	숙박업	2 (0.6)	-	2	-	-	2	-	-	-	-	-	-
56	음식점 및 주점업	20 (6.1)	-	3	4	12	19	1	-	1	-	-	-

표준산업분류		계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코드	항목명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원고창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 인소송의 경우; 원고창구인용	소계	취소·변경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파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부정경쟁 인정	등록권리침 해	기타사유								
58	출판업	20 (6.1)	1	4	1	5	11	2	6	8	-	1	1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 (0.9)	-	-	1	2	3	-	-	-	-	-	-
60	방송업	6 (1.8)	1	1	-	-	2	2	-	2	1	1	2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합 시스템 및 관리업	1 (0.3)	-	-	-	-	-	-	1	1	-	-	-
63	정보서비스업	1 (0.3)	-	-	-	1	1	-	-	-	-	-	-
70	연구개발업	4 (1.2)	1	-	-	1	2	-	1	1	-	1	1
71	전문 서비스업	18 (5.5)	3	3	1	7	14	1	3	4	-	-	-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 (1.5)	1	2	-	1	4	1	-	1	-	-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3)	-	-	-	1	1	-	-	-	-	-	-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5 (1.5)	3	2	-	-	5	-	-	-	-	-	-
85	교육 서비스업	12 (3.7)	1	-	2	6	9	2	1	3	-	-	-
86	보건업	5 (1.5)	-	-	-	4	4	1	-	1	-	-	-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1.2)	-	2	-	-	2	-	1	1	-	1	1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4 (1.2)	-	-	-	3	3	-	1	1	-	-	-
94	협회 및 단체	4 (1.2)	-	1	-	2	3	-	1	1	-	-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0.6)	-	-	-	2	2	-	-	-	-	-	-
	불명	4 (1.2)	-	-	-	2	2	-	2	2	-	-	-
	합계	326 (100)	40	40	19	146	244	30	45	75	2	5	7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 민사본안 사건은 총 53개 표준산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산업분야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⁶⁰⁾(38건, 9.9%)과 ‘음식점 및 주점업’⁶¹⁾(38건, 9.9%)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⁶²⁾이 34건(8.8%)으로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⁶³⁾(23건, 6.0%), ‘도매 및 상품 중개업’⁶⁴⁾(21건, 5.5%) 순으로 문제되었다.

위와 같은 상위 5개 산업분야가 전체 영업비밀 민사본안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0%로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사건의 경우와 비슷한 비중이다. 위 산업분야는 유색 배경으로 별도 표시하였다.

상위 5개 다빈도 산업분야의 1심 인용률을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3.6%(28건 중 15건 인용), ‘음식점 및 주점업’ 44.4%(27건 중 12건 인용), ‘교육 서비스업’ 33.3%(30건 중 10건 인용),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7.4%(19건 중 9건 인용),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5.0%(16건 중 4건 인용)로 나타났다.

[표2-48] 표준산업분류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표준산업분류	코드	항목명	계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원고청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인 인용의 경우, 원고청구인용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파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10		식료품 제조업	6 (1.6)	1	2	-	3	6	-	-	-	-	-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 (0.5)	-	-	-	2	2	-	-	-	-	-	-

- 60) 여러 산업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범용성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특정 산업 혹은 일부 산업에만 이용되는 특수 목적용의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61)接客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接客시설을 갖추고 주류, 다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 62) 초등(학령 이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교육기관, 직원 훈련기관, 직업 및 기술 훈련학원, 성인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 63) 반도체, 전자 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방송장비, 유선 전신 또는 전화용 기기, 무선 통신기기, 방송 수신기 및 관련 기기, 영상·음성 기록 및 재생기, 음성 증폭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 64)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별로 상위 5개 다빈도 산업분야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순위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3	음식점 및 주점업	교육 서비스업
4	출판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	전문 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표준산업분류		계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코드	항목명		원고창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인 경우; 원고창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 인인 경우; 원고창구인용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파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0.8)	1	-	-	1	2	1	-	1	-	-	-
17	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 (0.3)	-	1	-	-	1	-	-	-	-	-	-
18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1 (0.3)	-	-	-	-	-	1	-	1	-	-	-
19	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 (0.3)	-	-	-	1	1	-	-	-	-	-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제외 의약품	14 (3.6)	3	2	1	4	10	1	2	3	-	1	1
21	의료용 및 의약품 제조업	1 (0.3)	-	1	-	-	1	-	-	-	-	-	-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4 (1.0)	1	1	1	-	3	1	-	1	-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3)	1	-	-	2	3	-	2	2	-	-	-
24	1차 금속 제조업	4 (1.0)	-	-	-	2	2	1	-	1	-	1	1
25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9 (2.3)	-	-	2	7	9	-	-	-	-	-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6.0)	4	4	1	10	19	2	2	4	-	-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7 (4.4)	2	2	1	7	12	4	1	5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9 (2.3)	1	1	1	4	7	-	1	1	-	1	1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 (9.9)	3	9	3	13	28	5	3	8	-	2	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 (1.0)	-	-	1	2	3	1	-	1	-	-	-
31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5 (1.3)	-	-	1	2	3	1	-	1	-	1	1
32	가구 제조업	1 (0.3)	-	-	-	1	1	-	-	-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2 (0.5)	-	1	-	1	2	-	-	-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 (0.3)	-	-	-	1	1	-	-	-	-	-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업	4 (1.0)	-	-	-	-	-	1	1	2	-	2	2
37	하수, 폐수 및 처리업	1 (0.3)	-	-	1	-	1	-	-	-	-	-	-

표준산업분류		계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코드	항목명		원고창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인 경우; 원고창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 인인 경우; 원고창구인용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파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41	종합 건설업	3 (0.8)	-	-	-	2	2	-	1	1	-	-	-
42	전문직별 건축사업	6 (1.6)	-	-	1	4	5	-	1	1	-	-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 (0.8)	-	-	2	1	3	-	-	-	-	-	-
46	도매 및 중개업	21 (5.5)	1	2	1	12	16	2	3	5	-	-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6 (4.2)	-	-	2	12	14	1	1	2	-	-	-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 (0.3)	-	1	-	-	1	-	-	-	-	-	-
50	수상 운송업	1 (0.3)	-	-	-	1	1	-	-	-	-	-	-
5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3 (0.8)	-	-	-	3	3	-	-	-	-	-	-
56	음식점 및 주점업	38 (9.9)	1	7	4	15	27	4	7	11	-	-	-
58	출판업	16 (4.2)	-	-	2	8	10	3	2	5	-	1	1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 (0.8)	-	-	1	1	2	-	1	1	-	-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 (1.6)	-	-	-	4	4	1	1	2	-	-	-
63	정보서비스업	3 (0.8)	-	-	-	2	2	1	-	1	-	-	-
64	금융업	1 (0.3)	-	1	-	-	1	-	-	-	-	-	-
65	보험 및 연금업	1 (0.3)	-	1	-	-	1	-	-	-	-	-	-
66	금융 보험 관련 서비스업	1 (0.3)	-	-	1	-	1	-	-	-	-	-	-
68	부동산업	2 (0.5)	-	-	-	1	1	-	1	1	-	-	-
70	연구개발업	2 (0.5)	-	-	-	1	1	-	1	1	-	-	-
71	전문 서비스업	6 (1.6)	-	1	1	4	6	-	-	-	-	-	-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 (1.0)	-	-	-	2	2	-	2	2	-	-	-
73	기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1 (0.3)	-	-	1	-	1	-	-	-	-	-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서비스업	1 (0.3)	-	-	-	1	1	-	-	-	-	-	-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11 (2.9)	-	1	3	5	9	1	1	2	-	-	-
85	교육 서비스업	34 (8.8)	-	9	1	20	30	2	2	4	-	-	-
86	보건업	2 (0.5)	-	-	-	2	2	-	-	-	-	-	-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1 (0.3)	-	-	-	1	1	-	-	-	-	-	-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1.3)	-	3	-	2	5	-	-	-	-	-	-

표준산업분류		계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코드	항목명		원고청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의 경우;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 인의 경우; 원고청구인용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파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6 (1.6)	-	3	-	3	6	-	-	-	-	-	-
94	협회 및 단체	1 (0.3)	-	-	1	-	1	-	-	-	-	-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 (4.2)	1	1	1	10	13	3	-	3	-	-	-
	불명	14 (3.6)	1	1	1	4	7	1	2	3	-	4	4
	합계	385 (100)	21	55	36	184	296	38	38	76	-	13	13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 쟁점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가 함께 문제된 민사본안 사건(총 70건)의 경우, 총 25개 표준산업분야에서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 ‘음식점 및 주점업’(10건, 14.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9건, 12.9%), ‘교육 서비스업’(7건, 10.0%)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산업분야는 유색 배경으로 별도 표시하였다.

[표2-49] 표준산업분류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표준산업분류 코드	항목명	계	1심					항소심 (과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원고청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인 경우;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 인인 경우; 원고청구인용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과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부정경쟁 인정	기타사유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1 (1.4)	-	-	1	-	1	-	-	-	-	-	-
17	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 (1.4)	-	-	-	1	1	-	-	-	-	-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 (4.3)	-	-	-	2	2	-	-	-	1	-	1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1.4)	-	-	-	1	1	-	-	-	-	-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 (5.7)	-	-	1	3	4	-	-	-	-	-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5 (7.1)	-	-	1	3	4	-	1	1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1 (1.4)	-	-	-	1	1	-	-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12.9)	-	1	1	4	6	2	1	3	-	-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 (1.4)	-	-	-	1	1	-	-	-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2.9)	-	-	-	2	2	-	-	-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1 (1.4)	1	-	-	-	1	-	-	-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 (2.9)	-	-	-	1	1	1	-	1	-	-	-
41	종합 건설업	1 (1.4)	-	-	-	-	-	-	1	1	-	-	-
42	전문직별 공사업	1 (1.4)	-	-	-	-	-	-	1	1	-	-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 (1.4)	-	-	-	-	-	1	-	1	-	-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 (5.7)	-	1	-	3	4	-	-	-	-	-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 (1.4)	-	-	-	-	-	-	1	1	-	-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 (4.3)	-	-	-	1	1	1	1	2	-	-	-

표준산업분류		계	1심					항소심 (과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코드	항목명		원고창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의 경우; 원고창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 인의 경우; 원고창구인용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과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부정경쟁 인정	기타사유								
56	음식점 및 주점업	10 (14.3)	-	-	1	8	9	-	1	1	-	-	-
58	출판업	2 (2.9)	-	-	1	1	2	-	-	-	-	-	-
63	정보서비스업	2 (2.9)	-	-	1	1	2	-	-	-	-	-	-
71	전문 서비스업	3 (4.3)	-	-	1	2	3	-	-	-	-	-	-
85	교육 서비스업	7 (10.0)	1	1	1	3	6	1	-	1	-	-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 (1.4)	-	-	-	1	1	-	-	-	-	-	-
94	협회 및 단체	2 (2.9)	-	2	-	-	2	-	-	-	-	-	-
	불명	1 (1.4)	-	-	-	-	-	-	1	1	-	-	-
	합계	70 (100)	2	5	9	39	55	6	8	14	1	-	1

라. 법원·재판부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경우 지식재산전담재판부(제60민사부, 제61민사부, 제62민사부, 제63민사부, 제63-1,2,3민사부)까지 세분류하여 분석하였다. 5%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법원·재판부는 별도 유색 처리하였다.

(1) 부정경쟁행위

서울권역(서울고등 및 서울중앙·동·남·북·서부) 법원에서 담당한 사건이 전체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사건의 65.3%인 213건이었고,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당한 사건이 156건(전체 사건의 47.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권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특정 지역에 사건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특허법원은 28건(전체 사건의 8.6%)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사건 중 지식재산전담재판부가 125건(1심 124건, 항소심 1건, 서울중앙지법 관할 사건의 80.1%)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식재산전담재판부가 담당한 1심 사건 124건 중 인용 사건은 38.7%인 48건으로, 전국 법원에서의 1심 사건 인용률 40.2%(244건 중 98건)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50] 법원·재판부별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전국법원		계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 인소송의 경우, 원고청구인용	소계	취소·변 경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파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법원	재판부	부정경쟁 인정	등록권리침 해	기타사유									
대법원		7 (2.1)	-	-	-	-	-	-	-	-	2	5	7
특허		28 (8.6)	-	-	-	-	-	12	16	28	-	-	-
서울고등		26 (8.0)	-	-	-	-	-	13	13	26	-	-	-
서울고등 (춘천)		1 (0.3)	-	-	-	-	-	-	1	1	-	-	-
서울중앙	60	5 (1.5)	2	1	-	2	5	-	-	-	-	-	-
	61	36 (11.0)	8	8	3	17	36	-	-	-	-	-	-
	62	48 (14.7)	6	6	2	33	47	-	1	1	-	-	-
	63	36 (11.0)	6	5	1	24	36	-	-	-	-	-	-
	기타	22 (6.7)	2	7	1	11	21	-	1	1	-	-	-
	단독	9 (2.8)	1	2	1	5	9	-	-	-	-	-	-
서울동부		8 (2.5)	2	-	-	5	7	-	1	1	-	-	-

전국법원		계	1심				항소심 (과기 환송심 포함)			상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소계	취소·변경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과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법원	재판부	부정경쟁 인정	등록관리침 해	기타사유	반소·부존재확 인소송의 경우; 원고청구인용								과기환송
서울남부		11 (3.4)	2	3	-	3	8	1	2	3	-	-	-
서울북부		5 (1.5)	1	-	1	3	5	-	-	-	-	-	-
서울서부		7 (2.1)	-	1	1	4	6	-	1	1	-	-	-
의정부		6 (1.8)	-	2	-	3	5	-	1	1	-	-	-
의정부고양		3 (0.9)	2	-	-	1	3	-	-	-	-	-	-
의정부남양주		1 (0.3)	-	-	-	1	1	-	-	-	-	-	-
인천		4 (1.2)	1	1	-	1	3	-	1	1	-	-	-
인천부천		1 (0.3)	-	-	-	1	1	-	-	-	-	-	-
수원		8 (2.5)	-	-	2	4	6	2	-	2	-	-	-
수원여주		1 (0.3)	-	-	-	1	1	-	-	-	-	-	-
수원평택		1 (0.3)	-	-	-	1	1	-	-	-	-	-	-
수원안산		2 (0.6)	-	-	-	2	2	-	-	-	-	-	-
수원안양		1 (0.3)	-	-	-	1	1	-	-	-	-	-	-
대전고등		1 (0.3)	-	-	-	-	-	-	1	1	-	-	-
대전고등 (청주)		1 (0.3)	-	-	-	-	-	-	1	1	-	-	-
대전		7 (2.1)	3	-	1	3	7	-	-	-	-	-	-
청주		2 (0.6)	-	-	-	2	2	-	-	-	-	-	-
청주충주		1 (0.3)	-	-	1	-	1	-	-	-	-	-	-
대구고등		1 (0.3)	-	-	-	-	-	-	1	1	-	-	-
대구		9 (2.8)	1	2	-	4	7	-	2	2	-	-	-
부산고등		1 (0.3)	-	-	-	-	-	1	-	1	-	-	-
부산고등 (창원)		1 (0.3)	-	-	-	-	-	-	1	1	-	-	-
부산		12 (3.7)	2	1	4	4	11	-	1	1	-	-	-
부산동부		5 (1.5)	-	-	1	4	5	-	-	-	-	-	-
부산서부		2 (0.6)	-	1	-	1	2	-	-	-	-	-	-
울산		1 (0.3)	-	-	-	1	1	-	-	-	-	-	-
광주고등		1 (0.3)	-	-	-	-	-	1	-	1	-	-	-
광주		2 (0.6)	-	-	-	2	2	-	-	-	-	-	-
광주순천		1 (0.3)	-	-	-	1	1	-	-	-	-	-	-
전주군산		1 (0.3)	-	-	-	1	1	-	-	-	-	-	-
합계		326 (100)	40	40	19	146	244	30	45	75	2	5	7

(2) 영업비밀 침해 행위

[표2-51] 법원·재판부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전국법원		계	1심					항소심 (과기 환송심 포함)			상고심		
			원고청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 인인 경우, 원고청구인용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과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법원	재판부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대법원		13 (3.4)	-	-	-	-	-	-	-	-	-	13	13
특허		2 (0.5)	-	-	-	-	-	-	2	2	-	-	-
서울고등		40 (10.4)	-	-	-	-	-	21	19	40	-	-	-
서울중앙	60	1 (0.3)	-	-	1	-	1	-	-	-	-	-	-
	61	7 (1.8)	3	1	1	2	7	-	-	-	-	-	-
	62	9 (2.3)	1	1	1	6	9	-	-	-	-	-	-
	63	15 (3.9)	2	2	1	10	15	-	-	-	-	-	-
	기타	29 (7.5)	1	7	3	15	26	2	1	3	-	-	-
	단독	23 (6.0)	1	4	3	15	23	-	-	-	-	-	-
서울동부		20 (5.2)	-	4	2	12	18	-	2	2	-	-	-
서울남부		19 (4.9)	-	1	3	14	18	-	1	1	-	-	-
서울북부		4 (1.0)	-	2	-	2	4	-	-	-	-	-	-
서울서부		18 (4.7)	2	3	1	9	15	3	-	3	-	-	-
의정부		6 (1.6)	1	-	1	2	4	1	1	2	-	-	-
의정부고양		1 (0.3)	-	-	-	1	1	-	-	-	-	-	-
인천		17 (4.4)	-	4	2	10	16	1	-	1	-	-	-
인천부천		7 (1.8)	1	1	-	5	7	-	-	-	-	-	-
춘천강릉		2 (0.5)	-	-	-	1	1	-	1	1	-	-	-
춘천원주		1 (0.3)	-	-	1	-	1	-	-	-	-	-	-
수원		27 (7.0)	2	10	1	9	22	2	3	5	-	-	-
수원성남		11 (2.9)	2	3	2	4	11	-	-	-	-	-	-
수원평택		5 (1.3)	1	-	-	4	5	-	-	-	-	-	-
수원안산		9 (2.3)	-	2	1	6	9	-	-	-	-	-	-
수원안양		10 (2.6)	-	1	2	7	10	-	-	-	-	-	-
대전고등 (청주)		1 (0.3)	-	-	-	-	-	-	1	1	-	-	-
대전		9 (2.3)	1	3	1	4	9	-	-	-	-	-	-
대전공주		1 (0.3)	-	-	-	1	1	-	-	-	-	-	-
대전천안		2 (0.5)	-	1	-	1	2	-	-	-	-	-	-
청주		5 (1.3)	-	-	1	4	5	-	-	-	-	-	-

전국법원		계	1심				항소심 (과기 환송심 포함)				상고심		
			원고청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인 경우,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 인인 경우, 원고청구인용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과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법원	재판부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대구고등		2 (0.5)	-	-	-	-	2	-	2	-	-	-	
대구		9 (2.3)	-	-	2	4	6	1	2	3	-	-	
대구서부		6 (1.6)	2	-	1	3	6	-	-	-	-	-	
대구김천		2 (0.5)	1	-	-	1	2	-	-	-	-	-	
부산고등		6 (1.6)	-	-	-	-	-	3	3	6	-	-	
부산		12 (3.1)	-	3	1	6	10	1	1	2	-	-	
부산동부		6 (1.6)	-	-	2	4	6	-	-	-	-	-	
부산서부		1 (0.3)	-	-	-	1	1	-	-	-	-	-	
울산		9 (2.3)	-	-	2	7	9	-	-	-	-	-	
창원		4 (1.0)	-	-	-	4	4	-	-	-	-	-	
창원진주		1 (0.3)	-	-	-	1	1	-	-	-	-	-	
광주고등		1 (0.3)	-	-	-	-	-	-	1	1	-	-	
광주		7 (1.8)	-	1	-	5	6	1	-	1	-	-	
광주목포		1 (0.3)	-	-	-	1	1	-	-	-	-	-	
광주순천		1 (0.3)	-	-	-	1	1	-	-	-	-	-	
전주		1 (0.3)	-	1	-	-	1	-	-	-	-	-	
전주군산		2 (0.5)	-	-	-	2	2	-	-	-	-	-	
합계		385 (100)	22	55	36	159	296	38	38	76	-	13	13

서울권역(서울고등 및 서울중앙·동·남·북·서부) 법원에서 담당한 사건이 전체 영업비밀 민사본안 사건의 48.1%인 185건을 차지하여 서울권 집중 경향이 부정경쟁행위 사건에 비하여는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당한 사건은 84건(전체 사건의 21.8%)이었는데 이 중 지식재산전담재판부가 32건(1심 32건, 서울중앙지법 담당 사건의 38.1%)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에서의 지식재산전담재판부 집중(서울중앙지법 담당 사건의 80.1%)과 대조를 보였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경우 약정금·로열티·위약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해고무효 및 퇴직금, 업무방해, 공사금지, 전적·경업금지 등 부정경쟁행위보다 훨씬 복잡다단한 국면에서 분쟁화 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권역(수원고등 및 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법원에서 담당한 사건이 전체 영업비밀 민사본안

사건의 16.1%인 62건으로, 영업비밀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의 수원권역 비중(전체 영업비밀 가처분의 사건의 26.2%)보다는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권역에 더하여 의정부권역(7건), 인천권역(24건)까지 고려한 서울 제외 수도권 지역 관할 법원에서의 사건수는 93건으로, 영업비밀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권역 사건 수에 근접하는 경향과는 차이가 있었다.⁶⁵⁾

서울권역 법원에서 담당한 1심 사건 136건 중 인용 사건은 51건(37.5%), 수원권역 법원 1심 사건 57건 중 인용 사건은 27건(47.4%), 의정부권역 법원 1심 사건 5건 중 인용 사건은 2건(40.0%), 인천권역 법원 1심 사건 23건 중 인용 사건은 8건(34.8%)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수원권역 법원의 1심 사건 인용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재판부가 담당한 1심 사건 32건 중 인용 사건은 43.7%인 14건이었다.

특허법원에서 처리한 영업비밀 민사본안 사건은 2건으로 부정경쟁 민사본안 사건을 28건 처리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65) 영업비밀 가처분 사건과 민사본안 사건의 서울권역, 수도권역의 지역 비중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영업비밀 가처분	영업비밀 민사본안
서울권역	41.9%	48.1%
서울 제외 수도권역	26.2%	16.1%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 쟁점

중복쟁점 민사본안 사건 70건 중 서울권역 사건은 34건(48.5%), 수도권역(의정부, 수원, 인천권역) 13건(18.6%)으로 영업비밀 민사본안 사건의 지역적 경향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표2-52] 법원·재판부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전국법원		계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영비침해 인정	부정경쟁 인정	기타사유	기각 반소·부존재화 인의 경우,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파기환송	상고 기각
법원	재판부											
대법원		1 (1.4)	-	-	-	-	-	-	-	1	-	1
특허		1 (1.4)	-	-	-	-	-	-	1	1	-	-
서울고등		8 (11.4)	-	-	-	-	-	5	3	8	-	-
서울중앙	60	-	-	-	-	-	-	-	-	-	-	-
	61	4 (5.7)	-	1	-	3	4	-	-	-	-	-
	62	4 (5.7)	-	1	1	2	4	-	-	-	-	-
	63	6 (8.6)	-	-	1	5	6	-	-	-	-	-
	기타	4 (5.7)	-	1	-	3	4	-	-	-	-	-
	단독	-	-	-	-	-	-	-	-	-	-	-
서울동부		3 (4.3)	1	-	2	-	3	-	-	-	-	-
서울남부		2 (2.9)	-	-	-	2	2	-	-	-	-	-
서울북부		1 (1.4)	-	-	-	1	1	-	-	-	-	-
서울서부		2 (2.9)	-	-	1	1	2	-	-	-	-	-
의정부		1 (1.4)	-	-	-	1	1	-	-	-	-	-
의정부고양		1 (1.4)	-	-	-	1	1	-	-	-	-	-
인천		1 (1.4)	-	-	-	1	1	-	-	-	-	-
인천부천		2 (2.9)	-	-	-	2	2	-	-	-	-	-
수원		5 (7.1)	1	-	1	2	4	-	1	1	-	-
수원성남		2 (2.9)	-	-	1	1	2	-	-	-	-	-
수원안산		1 (1.4)	-	-	-	1	1	-	-	-	-	-
대전고등		3 (4.3)	-	-	-	-	-	1	2	3	-	-
대전		1 (1.4)	-	-	-	1	1	-	-	-	-	-
대전천안		1 (1.4)	-	-	-	1	1	-	-	-	-	-
부산고등		1 (1.4)	-	-	-	-	-	-	1	1	-	-
부산		7 (10.0)	-	-	2	5	7	-	-	-	-	-
부산동부		1	-	-	-	1	1	-	-	-	-	-

전국법원		계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원고청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의 경우;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파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법원	재판부	영비침해 인정	부정경쟁 인정	기타사유	기각 반소·부존재확 인의 경우; 원고청구인용								
울산		3 (4.3)	-	2	-	1	3	-	-	-	-	-	-
창원		2 (2.9)	-	-	-	2	2	-	-	-	-	-	-
창원마산		1 (1.4)	-	-	-	1	1	-	-	-	-	-	-
광주		1 (1.4)	-	-	-	1	1	-	-	-	-	-	-
합계		70 (100)	3	5	9	39	55	6	8	14	1	0	1

마. 소제기·선고연도별 현황

(1) 부정경쟁행위

[표2-53] 소제기·선고연도별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선고연도	소제기연도	계	1심				항소심 (과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소계	취소·변경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과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부정경쟁 인정	등록권리침 해	기타사유								반소·부존재확 인소송의 경우; 원고청구인용
2017	2013	1 (0.3)	-	1	-	-	1	-	-	-	-	-	-
	2014	3 (0.9)	-	1	-	-	1	-	1	1	1	-	1
	2015	15 (4.6)	4	2	1	5	12	1	1	2	-	1	1
	2016	80 (24.5)	9	16	6	31	62	9	9	18	-	-	-
	2017	32 (9.8)	2	-	2	20	24	1	5	6	-	2	2
2018	2015	4 (1.2)	1	-	-	-	1	3	-	3	-	-	-
	2016	19 (5.8)	3	2	-	13	18	1	-	1	-	-	-
	2017	77 (23.6)	9	7	5	36	57	8	12	20	-	-	-
	2018	14 (4.3)	2	2	1	2	7	1	4	5	1	1	2
2019	2016	4 (1.2)	-	3	-	1	4	-	-	-	-	-	-
	2017	15 (4.6)	3	2	2	7	14	1	-	1	-	-	-
	2018	49 (15.0)	4	4	2	26	36	3	10	13	-	-	-
	2019	13 (4.0)	2	-	-	5	7	2	3	5	-	1	1
합계		326 (100)	39	40	19	146	244	30	45	75	2	5	7

소제기 연도의 다음 연도에 선고된 사건이 206건(63.2%), 소제기 당해 연도에 선고된 사건이 59건(18.1%), 소제기 연도 2년 뒤에 선고된 사건이 49건(15.0%)으로, 소를 제기한 후 2년 정도 내에 선고되는 사건이 314건(96.3%)이었다.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사건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4051 사건으로 보안 솔루션 개발업 관련 사건이었는데, 2013년 7월 25일 소 제기 후 2017년 6월 28일 판결이 선고되어 3년 11개월이 소요되었다.

2017년 선고된 1심 본안사건 100건 중 인용 사건은 44건(44.0%), 2018년 선고된 1심 사건 83건 중 인용 사건은 32건(38.6%), 2019년 선고된 1심 사건 61건 중 인용 사건은 22건(36.1%)으로, 지난 3년간의 1심 인용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영업비밀 침해 행위

[표2-54] 소제기·선고연도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연도		계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선고연도	소제기연도		원고청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인 경우,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인 인 경우, 원고청구인용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파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2017	2013	5 (1.3)	-	-	2	1	3	-	1	1	-	1	1
	2014	6 (1.6)	-	1	3	1	5	1	-	1	-	-	-
	2015	21 (5.5)	2	4	3	11	20	1	-	1	-	-	-
	2016	79 (20.5)	5	13	4	44	66	7	6	13	-	-	-
	2017	31 (8.1)	1	3	2	13	19	3	6	9	-	3	3
2018	2012	1 (0.3)	1	-	-	-	1	-	-	-	-	-	-
	2013	-	-	-	-	-	-	-	-	-	-	-	-
	2014	2 (0.5)	-	-	-	1	1	1	-	1	-	-	-
	2015	11 (2.9)	3	3	-	2	8	2	1	3	-	-	-
	2016	27 (7.0)	3	2	7	15	27	-	-	-	-	-	-
	2017	83 (21.6)	2	11	8	45	66	9	7	16	-	1	1
	2018	22 (5.7)	-	1	1	6	8	5	8	13	-	1	1
2019	2013	1 (0.3)	-	-	1	-	1	-	-	-	-	-	-
	2014	1 (0.3)	-	-	-	1	1	-	-	-	-	-	-
	2015	2 (0.5)	1	-	-	1	2	-	-	-	-	-	-
	2016	5 (1.3)	1	-	-	1	2	2	-	2	-	1	1
	2017	21 (5.5)	1	4	2	9	16	2	1	3	-	2	2
	2018	45 (11.7)	1	8	2	23	34	3	5	8	-	3	3
	2019	22 (5.7)	-	5	1	10	16	2	3	5	-	1	1
합계		385 (100)	21	55	36	184	296	38	38	76	-	13	13

소제기 연도의 다음 연도에 선고된 사건이 207건(53.8%), 소제기 당해 연도에 선고된 사건이 59건(19.5%), 소제기 연도 2년 뒤에 선고된 사건이 69건(17.9%)으로, 소를 제기한 후 2년 정도 내에 선고되는 사건이 335건(87.0%)이었는데,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사건의 경우보다 장기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는 사건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민사본안 사건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0820 사건으로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⁶⁶⁾ 관련 사건이었는데, 2012. 11. 29. 소제기 후 2018. 11. 16. 판결이 선고되어 6년이 소요되었다.

66) 벌크 또는 충전 상태의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

2017년 선고된 1심 사건 113건 중 인용 사건은 43건(38.1%), 2018년 선고된 1심 사건 111건 중 인용 사건은 42건(37.8%), 2019년 선고된 1심 사건 72건 중 인용 사건은 27건(37.5%)으로, 지난 3년간의 1심 인용률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표2-55] 소제기·선고연도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연도		계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선고 연도	소제기 연도		원고청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 인 원고청구인용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파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부정경쟁 인정	기타사유								
2017	2013	1 (1.4)	-	-	-	1	1	-	-	-	-	-	-
	2014	1 (1.4)	-	-	-	-	-	-	1	1	-	-	-
	2015	3 (4.3)	-	-	1	2	3	-	-	-	-	-	-
	2016	11 (15.7)	-	-	-	10	10	-	1	1	-	-	-
	2017	4 (5.7)	-	-	1	1	2	1	1	2	-	-	-
2018	2015	1 (1.4)	-	-	-	1	1	-	-	-	-	-	-
	2016	3 (4.3)	1	1	1	-	3	-	-	-	-	-	-
	2017	19 (27.1)	-	2	3	10	15	3	1	4	-	-	-
	2018	3 (4.3)	-	1	-	1	2	1	-	1	-	-	-
2019	2016	3 (4.3)	1	-	1	-	2	-	-	-	1	-	1
	2017	5 (7.1)	-	1	-	3	4	-	1	1	-	-	-
	2018	11 (15.7)	-	-	2	7	9	-	2	2	-	-	-
	2019	5 (7.1)	-	-	-	3	3	1	1	2	-	-	-
합계		70 (100)	2	5	9	39	55	6	8	14	1	-	1

소제기 연도의 다음 연도에 선고된 사건이 41건(58.6%), 소제기 당해 연도에 선고된 사건이 12건(17.1%), 소제기 연도 2년 뒤에 선고된 사건이 11건(15.7%)으로, 소를 제기한 후 2년 정도 내에 선고되는 사건이 64건(91.4%)이었는데, 장기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는 사건의 비중이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사건의 경우보다 조금 높고, 영업비밀 민사본안사건의 경우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가 함께 문제된 민사본안 사건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2369 사건으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⁶⁷⁾ 관련 사건이었는데, 2013년 6월 26일 소 제기 후 2017년 9월 28일 판결이 선고되어 4년 3개월이 소요되었다.

2017년 선고된 1심 사건 16건 중 인용 사건은 2건(12.5%), 2018년 선고된 1심 사건 21건 중 인용 사건은 9건(42.9%), 2019년 선고된 1심 사건 18건 중 인용 사건은 5건(27.8%)으로, 지난 3년간의 1심 인용률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67) 각종 선박 또는 수상 부유 구조물의 구성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바. 영업비밀 유형별 현황

영업비밀의 유형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부경법 제2조제2호가 정의하고 있는 엄밀한 의미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전직/경업금지 약정에서의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용 주요자산”의 개념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 영업비밀 침해행위

[표2-56] 영업비밀 유형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신청취지	계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원고청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인 경우,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인 인 경우, 원고청구인용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파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약정위반	기타사유								
기술정보	112 (29.1)	12	7	10	52	81 (27.4)	12	13	25 (32.9)	-	6	6 (46.2)
경영정보	133 (34.5)	3	14	16	77	110 (37.2)	10	13	23 (30.3)	-	-	-
기술·경영	63 (16.4)	6	16	6	23	51 (17.2)	7	5	12 (15.8)	-	-	-
불명	77 (20.0)	-	18	4	32	54 (18.2)	9	7	16 (21.1)	-	7	7 (53.8)
합계	385 (100)	21	55	36	184	296 (100)	38	38	76 (100)	-	13	13 (100)

기술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사건은 112건(29.1%), 경영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사건은 133건(34.5%)로 나타나, 경영정보 사건이 약간 더 많았으나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영업비밀 침해유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385건 중 77건으로 전체 영업비밀 민사본안 사건 중 20.0%를 차지하여, 영업비밀 침해 유형이 확인된 308건을 표본으로 하여 영업비밀 침해유형을 추정해 보았다. 모비율의 95% 신뢰구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면, 기술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일 경우는 31.1~41.7%, 경영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일 경우는 37.7~48.7%, 기술·경영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일 경우는 16.0~25.0%이다⁶⁸⁾. 이러한 모비율 추정치와 확인되는 침해유형을 종합하면, 영업비밀 민사본안 385건 중 기

68) 표본(n) = 308, 기술정보 표본비율 = 112/308(= 0.364), 경영정보 표본비율 = 133/308(= 0.432), 기술·경영정보 표본비율 = 63/308(= 0.205).

① 기술정보 모비율의 95% 신뢰구간 산정 : 신뢰수준 95%에 대응되는 신뢰성계수는 1.96, 표준오차 추정량은 0.027. 따라서 기술정보 모비율의 95% 신뢰구간은 $0.364 \pm 1.96(0.027) = 0.364 \pm 0.053 \rightarrow (0.311, 0.417)$

② 경영정보 모비율의 95% 신뢰구간 산정 : 기술정보 모비율의 95% 신뢰구간 산정과 같은 방법으로 $0.432 \pm 1.96(0.028) = 0.432 \pm 0.055 \rightarrow (0.377, 0.487)$

③ 기술·경영정보 모비율의 95% 신뢰구간 산정 : 앞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0.205 \pm 1.96(0.023) = 0.205 \pm 0.045 \rightarrow$

술정보 침해 관련 사건은 119~160건, 경영정보 침해 관련 사건은 145~187건, 기술·경영정보 침해 관련 사건은 63~96건 사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민사본안 1심 사건 81건 중 인용된 사건은 29건(35.8%), 경영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민사본안 1심 사건 110건 중 인용된 사건은 33건(30.0%), 기술·경영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민사본안 1심 사건 51건 중 인용된 사건은 28건(54.9%)으로 나타나, 기술·경영정보 침해 주장 시의 인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 쟁점

[표2-57] 영업비밀 유형별 중복쟁점 민사본안 처리결과(인용률)

신청취지	계	1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포함)				상고심		
		원고청구 인용(일부인용 포함) 반소·부존재확인인 경우, 원고청구기각(일부 기각 포함)			기각 반소·부존재확인 인 경우, 원고청구인용	소계	취소 (항소인용)	항소 기각	소계	파기환송	상고 기각	소계
		영비침해 인정	부정경쟁 인정	기타사유								
기술정보	28 (40.0)	-	1	3	17	21 (38.2)	1	5	6 (42.9)	1	-	1 (100)
경영정보	30 (42.9)	1	3	4	15	23 (41.8)	4	3	7 (50.0)	-	-	-
기술·경영	10 (14.3)	1	1	1	6	9 (16.4)	1	-	1 (7.1)	-	-	-
불명	2 (2.9)	-	-	1	1	2 (3.6)	-	-	-	-	-	-
합계	70 (100)	2	5	9	39	55 (100)	6	8	14 (100)	1	-	1 (100)

중복쟁점 민사본안 70건 중 기술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사건은 28건(40.0%), 경영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사건은 30건(42.9%),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를 모두 주장한 사건은 10건(14.3%)이었다.

기술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민사본안 1심 사건 21건 중 인용된 사건은 4건(19.0%), 경영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민사본안 1심 사건 23건 중 인용된 사건은 8건(34.8%), 기술·경영정보 관련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민사본안 1심 사건 9건 중 인용된 사건은 3건(33.3%)으로 나타났다.

(0.160, 0.250)

2. 행위유형별 현황(기각사유)

행위유형별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 기준은 앞서 제2장 제2절 민사 가처분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사건수를 기준으로 한 통계 모수와 행위유형별, 기각사유별 통계 모수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가. 부정경쟁행위

[표2-58]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 행위유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행위유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항목명	목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주지 저명성	동일·유사·모방	자목 정형성	자목 단서 (3년경과 통상형태)	카목 상당한 투자나 노력	카목 특별한 사정	기타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초래	가	87 (18.5)	21	9	57	59 (16.0)	47	3	-	-	-	-	9
	나	68 (14.5)	8	13	47	47 (12.7)	41	-	-	-	-	-	6
저명상표희석	다	26 (5.5)	1	10	15	16 (4.3)	8	1	-	-	-	-	7
원산지·생산지·품질 오인유발	라	1 (0.2)	-	-	1	1 (0.3)	-	-	-	-	-	-	1
	마	2 (0.4)	-	-	2	2 (0.5)	-	-	-	-	-	-	2
	바	17 (3.6)	6	-	11	11 (3.0)	-	-	-	-	-	-	11
대리인의 무단사용	사	1 (0.2)	-	-	1	1 (0.3)	-	-	-	-	-	-	1
도메인 부당선점 (사이버스쿼팅)	아	4 (0.9)	-	1	3	3 (0.8)	1	-	-	-	-	-	2
상품형태 모방 (데드카피)	자	71 (15.1)	15	4	52	56 (15.2)	-	29	2	16	-	-	9
아이디어 탈취	차	4 (0.9)	-	-	4	4 (1.1)	-	-	-	-	-	-	4
타인성과 무단사용	카	189 (40.2)	13	29	147	169 (45.8)	-	-	-	-	77	7	85
합계		470 (100)	64	66	340	369 (100)	97	33	2	16	77	7	137

민사본안에서 원고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타인성과 무단사용(카목 189개)으로 40.2%, 두 번째로 많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가목 87개, 나목 68개 총 155개)로 33.0%의 비중을 차지했다. 위 두 유형 이후로는 상품형태 모방(데드카피) 71개, 저명상표희석 26개, 원산지·생산지·품질오인유발 20개, 도메인 부당선점(사이버스쿼팅)과 아이디어 탈취 각 4개, 대리인의 무단사용 1개 순이었다.

타인성과 무단사용 주장 189개 중 인용된 경우는 13개(인용률 6.9%),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주장 155개 중 인용된 경우는 29개(인용률 18.7%), 상품형태 모방 주장 71개 중 인용된 경우는 19개(인용률 21.1%)로 나타나, 카목 주장 인용률이 다른 사유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인성과 무단사용 주장이 기각된 사유를 보면, 상당한 투자나 노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비율이 45.6%(기각사유 169개 중 77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비율이 4.1%(기각사유 169개 중 7개)였으며, 정형적인 기각 사유에 포섭되지 않는 기타사유가 50.3%(기각사유 169개 중 85개)였다.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주장이 기각된 사유를 보면, 주지·저명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비율이 83.0%(기각사유 106개 중 88개), 동일·유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비율이 2.8%(기각사유 106개 중 3개)로 주지·저명성 요건을 이유로 한 기각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영업주체 혼동초래(나목)를 주장한 사안에서 동일·유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은 없었다.

상품형태 모방(테드카피) 주장이 기각된 사유의 경우, 모방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본 경우가 51.8%(기각사유 56개 중 29개), 부정법 제2조제1호 자목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28.6%(기각사유 56개 중 29개)로 나타나, 가처분 사건에서의 기각 양상⁶⁹⁾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69) 민사 가처분 사건에서 자목 상품형태 모방 주장이 기각된 경우를 보면, 부정법 제2조제1호 자목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54.9%(기각사유 51개 중 28개), 모방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본 경우가 25.5%(기각사유 51개 중 13개)이다.

나. 영업비밀 침해 행위

[표2-59]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본안 행위유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행위유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항목명	목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영업비밀 특정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보호·금지 기간 도과	전직·경업 금지약정 무효	기타
1 제3자 부정취득	가 나 다	28 (12.4)	11	-	17	29	2	9	4	7	-	1	6
2 비밀유지의무자 부정공개	라 마 바	31 (13.7)	14	-	17	31	2	8	6	6	-	2	7
불명		167 (73.9)	27	2	138	229	17	51	41	74	-	15	31
합계		226 (100)	52	2	172	289	21	68	51	87	-	18	44

영업비밀 가치분과 마찬가지로, 민사본안에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73.9%(226개 중 167개)에 달했다.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영업비밀의 경우 특별히 유형론이 학문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점, 실무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구분의 실익이 적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영업비밀 제3자 부정취득 주장 28개 중 인용된 경우는 11개(39.3%), 영업비밀 비밀유지의무자 부정공개 주장 31개 중 인용된 경우는 14개(45.2%), 침해 유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167개 중 인용된 경우는 27개(인용률 16.2%)로, 영업비밀 침해 유형을 분명히 주장할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인용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기각된 사유 중 비밀관리성이 부정된 비율이 30.1%(기각사유 289개 중 87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비공지성이 부정된 비율 23.5%(기각사유 289개 중 68개), 경제적 유용성이 부정된 비율 17.6%(기각사유 289개 중 51개), 영업비밀의 특정이 부정된 비율 7.3%(기각사유 289개 중 21개)로,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직·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라는 본 비율은 6.2%(기각사유 289개 중 18개)였으며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내지 침해금지 기간이 도과를 이유로 기각한 사례는 없었다.

다.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표2-60] 중복쟁점 민사본안 행위유형별 현황 I (인용률·기각사유)

행위유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항목명	목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주지 저명성	동일·유사·모방	자목 정형성	자목 단서 (3년경과 통상형태)	카목 상당한 투자나 노력	카목 특별한 사정	기타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조례	가	4 (4.7)	-	-	4	4	3	1	-	-	-	-	-
	나	9 (10.5)	-	-	9	9	6	1	-	-	-	-	2
저명상표희석	다	1 (1.1)	-	-	1	1	1	-	-	-	-	-	-
원산지·생산지·품질 오인유발	라	-	-	-	-	-	-	-	-	-	-	-	-
	마	-	-	-	-	-	-	-	-	-	-	-	-
	바	-	-	-	-	-	-	-	-	-	-	-	-
대리인의 무단사용	사	-	-	-	-	-	-	-	-	-	-	-	-
도메인 부당전점 (사이버스쿼팅)	아	-	-	-	-	-	-	-	-	-	-	-	-
상품형태 모방 (데드카피)	자	6 (7.0)	-	-	6	6	-	3	1	2	-	-	-
아이디어 탈취	차	2 (2.3)	-	-	2	2	-	-	-	-	-	-	2
타인성과 무단사용	카	63 (74.1)	7	1	55	58	-	-	-	34	4	20	
합계		85 (100)	7	1	77	80	10	5	1	2	34	4	24

[표2-61] 중복쟁점 민사본안 행위유형별 현황 II (인용률·기각사유)

행위유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항목명	목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영업비밀 특정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보호·금지 기간 도과	전직·경업 금지약정 무효	기타
제3자 부정취득	가	10 (15.9)	2	-	8	12 (13.7)	-	4	3	2	-	1	2
	나												
비밀유지의무자 부정공개	라	13 (20.6)	3	1	9	15 (17.2)	1	5	3	4	-	1	1
	마												
불명	바	40 (63.5)	-	1	39	60 (68.9)	4	12	10	26	-	2	6
	사												
합계		63 (100)	5	2	56	87	5	21	16	32	-	4	9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함께 문제된 민사본안 사건에서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85개였는데 가장 많이 주장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타인성과 무단사용으로 63개(74.1%)였다.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63개였으며 이 중 침해 유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40개(63.5%)였다.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용된 경우는 7개(인용률 8.2%),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인용된 경우는 5개(인용률 7.9%)였다.

3. 최근 법개정사항 적용 추이

가. 타인성과 무단사용

(1)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타인성과 무단사용행위의 입법경위와 보충적 일반조항적 성격에 대해서는 앞서 제2장 제2절 민사 가처분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법개정 전후에 걸쳐져 있는 사건의 경우, 다수개 처리하였다. 여기에는 부정경쟁행위 단독쟁점 판례뿐만 아니라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판례도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다.

[표2-62] 카목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 (인용률·기각사유)

선고연도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특별한 사정	기타
2017	84	6	8	70	73	37	3	33
2018	89	8	11	70	86	40	1	45
2019	79	6	11	62	68	34	7	27
합계	252	20	30	202	227	111	11	105

[표2-63] 카목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I (인용률·기각사유)

행위시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특별한 사정	기타
구법 카목 (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	209	17	22	170	191	90	10	91
현행 카목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	43	3	8	32	36	21	1	14
합계	252	20	30	202	227	111	11	105

앞서 살펴본 가치분 사건과는 달리 민사 본안 사건의 경우, 카목(구법 차목) 주장 인용률이 선고연도별 기준 2017년 8.2%, 2018년 8.9%, 2019년 7.3%, 행위시법 기준 구법 차목 하에서 8.0%, 현행 카목 하에서 6.6% 수준으로서 극히 미미한 담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정보를 침해한 경우 역시 카목 적용을 인정한 판례⁷⁰⁾와 카목 적용을 부정하되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포섭한 판례⁷¹⁾가 혼재하고 있다.

한편 카목 주장 기각사유 중 법문에도 없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위법하여 그러한 무단 사용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결여를 이유로 기각한 사례가 11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에르메스 눈알 가방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는바,⁷²⁾ 그동안 하급심에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특별한 사정’ 결여를 이유로 카목 주장을 기각하던 경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위 두 표를 하나의 표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표2-64] 카목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Ⅲ(인용률·기각사유)

선고연도	행위시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특별한 사정	기타
2017	구법 차목 (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	84	6	8	70	73	37	3	33
2018	구법 차목 (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	83	7	10	66	81	38	1	42
	현행 카목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	6	1	1	4	5	2	-	3
2019	구법 차목 (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	42	4	4	34	37	15	6	16
	현행 카목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	37	2	7	28	31	19	1	11
합계		252	20	30	202	227	111	11	105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합5796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410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7가합528313 판결 등.

71)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7나201006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가합440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2017나2052666, 2017나2052673 (병합) 판결 등.

7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나2035091 판결).

(2) 카목 세부유형별 현황

카목 세부유형은 앞서 민사 가처분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충적 일반조항의 성격이 가장 잘 반영된 분류방식에 따랐다.⁷³⁾ 즉, 본 연구에서는 특허관련영역(기술정보), 상표관련영역(출처표시), 디자인관련영역, 저작권관련영역(아이디어), 기타 성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고, 1개 카목 주장에 여러 세부유형 있을 경우 복수개 처리하였다.

민사 본안 사건에서 카목 주장 인용률은 저작권 관련영역 > 기타 성과 > 특허 관련영역 > 상표 관련영역 > 디자인 관련영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2-65] 카목 세부유형별 민사본안 현황(인용률·기각사유)

카목 세부유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카목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카목 특별한 사정	기타
특허 관련영역 (기술정보)	36	3	-	33	35	19	4	12
상표 관련영역 (출처표시)	22	1	2	19	20	10	1	9
디자인 관련영역	68	2	9	57	67	36	2	29
저작권 관련영역 (아이디어)	59	7	14	38	41	14	4	23
기타 성과	75	7	5	63	72	39	-	33
합계	260	20	30	210	235	118	11	106

73) 이규홍,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변경 후 카목)에 대한 연구 -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교차점-”, 정보법학 제22권 제2호 (2018) 88-95.

나. 트레이드 드레스

트레이드 드레스(종합적인 영업외관)의 입법 경위는 제2장 제2절 민사가처분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민사본안 판결문 분석 결과, 트레이드 드레스가 쟁점이 된 판례 중 구법 차목이 적용된 판례는 6건, 개정법 나·다목이 적용된 판례는 5건이 있었으나, 인용된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법 하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 사건은 나·다목과 함께 모두 카목도 아울러 주장하였으나, 나·다목은 주지저명성이 없다는 이유로, 카목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양 주장 모두 기각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동일사안에 대한 선행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는 나·다목 주장은 배척하되 카목 주장은 인용하였던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⁷⁴⁾ 향후 이러한 판시 경향이 굳어질 경우,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범위가 사실상 주지·저명성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는 등 입법화 이전보다 오히려 축소될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2-66]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 I (인용률·기각사유)

선고연도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주지 저명성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특별한 사정	기타	
2017	3	-	-	3	3	-	2	-	1	-
2018	1	-	-	1	1	-	-	-	1	-
2019	7	-	-	7	8	5	2	-	1	-
합계	11	-	-	11	12	5	4	-	3	-

74) 광주 이베리코 흑돼지 프랜차이즈 사건(광주지방법원 2019. 5. 3.자 2019카합50145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9. 12. 27. 선고 2019가합52923 판결).

[표2-67]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Ⅱ(인용률·기각사유)

행위시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주지 저명성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특별한 사정	기타	
구법 차목 (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	6	-	-	6	6	-	4	-	2	-
현행 나·다목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	5	-	-	5	6	5	-	-	1	-
합계	11	-	-	11	12	5	4	-	3	-

[표2-68] 트레이드 드레스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Ⅲ(인용률·기각사유)

선고 연도	행위시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주지 저명성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특별한 사정	기타	
2017	구법 차목 (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	3	-	-	3	3	-	2	-	1	-
2018	구법 차목 (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	1	-	-	1	1	-	-	-	1	-
	현행 나·다목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	-	-	-	-	-	-	-	-	-	-
2019	구법 차목 (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	2	-	-	2	3	-	2	-	1	-
	현행 나·다목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	5	-	-	5	5	5	-	-	-	-
합계		11	-	-	11	12	5	4	-	3	-

다. 아이디어 탈취

아이디어 탈취는 트레이드 드레스와 함께 2018년 개정법에 신설된 행위유형으로, 상세한 입법 경위는 앞서 제2장 제2절 민사가처분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분석대상 민사본안 사건 중 아이디어 탈취 신설 규정(차목)이 주장된 사례 6건은 전부 주장 기각되었다. 그중 1건은 성남시가 발주한 교량공사와 관련하여 주계약업체(대기업)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프리카스트공법 제안서’가 문제되었는데,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기술이거나 사용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⁷⁵⁾ 나머지 5건은 차목 시행전의 행위라는 등의 기타 사유로 주장기각되었다.

[표2-69] 아이디어 탈취 민사본안 선고연도·행위시법별 현황(인용률·기각사유)

선고연도	행위시법	계	인용여부			계	기각사유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거래교섭 거래과정	제공목적 위반 부정사용	공지된 아이디어 (차목 단서)	기타
2017	-	-	-	-	-	-	-	-	-	-
2018	현행 차목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	-	-	-	-	-	-	-	-	-
2019	현행 차목 (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	6 (100)	-	-	6	6 (100)	-	-	1	5
합계		6 (100)	-	-	6	6 (100)	-	-	1	5

다만 시행 3년차인 2020년 올해 처음으로 치킨프랜차이즈 광고용역계약(치킨 네이밍 및 광고 콘티 제작)과 관련하여 차목 주장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⁷⁶⁾ 및 대법원⁷⁷⁾ 판시가 나왔는바, 그동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마케팅 광고업계⁷⁸⁾에서 동 조항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8가합576074 판결.

76)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의 계약 기간이 두 달여 남은 때에 을 회사에 곧 출시할 예정인 치킨 제품의 네이밍 등 광고용역을 의뢰하자, 을 회사가 위 제품의 네이밍을 ‘씨프라이드’로 하는 TV 방송용 광고 콘티를 작성하여 갑 회사에 제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광고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설명 없이 위 제품의 출시와 광고촬영 일정을 연기하던 갑 회사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을 회사에 계약 종료료를 통보한 다음 다른 광고업체인 병 회사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씨프라이드’라는 네이밍으로 병 주식회사가 제작한 TV 방송용 광고와 각종 광고물을 위 제품의 광고에 사용한 사안(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77)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78) 서울고등법원 1998.4.28. 선고 97나15229 판결(하이트 맥주 광고 사건,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눈으로 확인하세요.”라는 문구에 대해 ‘맛있는 온도를 눈으로 알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형식에 위 내용 외에 어떤 보호할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차목 적용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1심⁷⁹⁾은 이 사건 네이밍 및 콘티 제공 시점이 차목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차목 적용을 부정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은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7가합590127 판결.

라.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와 관련한 일련의 개정 연혁은 앞서 민사 가치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개정법의 판례 반영 추이를 선고연도와 행위시법별로 분석함에 있어 법개정 전후에 걸쳐져 2가지 행위시법이 모두 문제된 사건의 경우, 다수개 처리하였다.

분석 대상 민사본안 사건 중 행위시법주의 원칙상 2015년 개정전 법률이 적용된 사건은 90건, 2015년 개정법이 적용된 사건은 58건, 2019년 개정법이 적용된 사건은 3건 있었다.

우선 결과적인 비밀관리성 주장 인용률 면에서 2015년 개정전 법률이 적용된 사건은 25.5%, 2015년 개정법이 적용된 사건은 18.9%, 2019년 개정법이 적용된 사건은 0%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2-70] 영업비밀 민사본안 비밀관리성 인용률

행위시법		계	비밀관리성 인용률	
			인정	부정
2015년 개정전 법률	상당한 노력	90 (100)	23 (25.5)	67
2015년 개정법 (2015.1.28.개정) (2015.7.29.시행)	합리적 노력	58 (100)	11 (18.9)	47
2019년 개정법 (2019.1.8.개정) (2019.7.9.시행)	합리적 노력 삭제	3 (100)	0 (0)	3
합계		151 (100)	34 (22.5)	117

또한 2015년 개정법과 2019년 개정법이 적용된 사건 61건 중에서 결과적인 주장 인용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시과정에서 법개정 취지가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의 법개정 사실 또는 ‘합리적 노력’ 삭제 사실과 함께 그 개정취지가 판단기준 완화에 있다는 점까지 실시하면서 판시한 사건은 총 4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50건⁸⁰⁾은 아예 법 개정 사실 자체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그 판단기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0)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7나20025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나2030154 판결 등(“상당한 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비밀유지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표2-71] 영업비밀 민사본안 비밀관리성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

행위시법		계	비밀관리성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							
			비밀관리성 인정				비밀관리성 불인정			
			판단기준 완화 인정	판단기준 완화 불인정	법개정 사실 설시 없음	소계	판단기준 완화 인정	판단기준 완화 불인정	법개정 사실 설시 없음	소계
2015년 개정법 (2015.1.28.개정) (2015.7.29.시행)	합리적 노력	58	3	-	8	11	1	4	42	47
2019년 개정법 (2019.1.8.개정) (2019.7.9.시행)	합리적 노력 삭제	3	-	-	-	-	-	2	1	3
합계		61	3	-	8	11	1	6	43	50

선고연도별로 위 비밀관리성 인용률 및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을 하나의 표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표2-72] 선고연도별 영업비밀 민사본안 비밀관리성 인용률 및 완화 개정취지 반영률

선고연도	행위시법		계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인정				부정			
				판단기준 완화 인정	판단기준 완화 불인정	법개정 사실 설시 없음	소계	판단기준 완화 인정	판단기준 완화 불인정	법개정 사실 설시 없음	소계
2017	2015년 개정 전 법률	상당한 노력	40 (26.5)	-	-	-	8 (23.5)	-	-	-	32 (27.4)
	2015년 개정법 (2015.1.28.개정) (2015.7.29.시행)	합리적 노력	29 (19.2)	2	-	5	7 (20.6)	-	4	18	22 (18.8)
2018	2015년 개정 전 법률	상당한 노력	29 (19.2)	-	-	-	10 (29.4)	-	-	-	19 (16.2)
	2015년 개정법 (2015.1.28.개정) (2015.7.29.시행)	합리적 노력	20 (13.2)	1	-	2	3 (8.8)	1	-	16	17 (14.5)
2019	2015년 개정 전 법률	상당한 노력	21 (13.9)	-	-	-	5 (14.7)	-	-	-	16 (13.7)
	2015년 개정법 (2015.1.28.개정) (2015.7.29.시행)	합리적 노력	9 (6.0)	-	-	1	1 (2.9)	-	-	8	8 (6.8)
	2019년 개정법 (2019.1.8.개정) (2019.7.9.시행)	합리적 노력 삭제	3 (2.0)	-	-	-	-	-	2	1	3 (2.6)
합계			151 (100)	3	-	7	34 (100)	1	6	43	117 (100)

마. 징벌적 손해배상(3배 상한제)

2019년 개정법은 기존의 손해액 추정규정에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3배 상한제 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래 신구조문대비표와 같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7. 9.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바, 분석대상 판례 중 아직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산정된 경우는 없었다.

[표2-73] 2019년 개정 부경법 신구조문대비표(14조의2 관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80호, 2018. 4. 17.,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⑤ (생략) <신 설> <신 설>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4. 손해배상액 분석

가. 인용액 분석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받아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부경법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등록권리 침해, 위약금 약정, 민법 불법행위, 부당이득, 무변론승소 등은 제외). 법률심인 상고심은 제외하고 1, 2심만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판결문상 부경법 제14조의2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 역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판결문의 내용을 통해 근거 조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처리하였고 ②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불명’으로 처리하였다. 1개의 사건에서 산정근거조항을 여러 개 실시한 경우에는 통계상 다수개로 처리하였다(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근거조항에 따라 금액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액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평균값과 함께 중간값을 사용하였다. 평균값은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정규분포를 갖지 못하는 경우) 평균값은 대표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으나, 중간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였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므로 데이터 분포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는 평균값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여 부경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건은 총 34건이었는데 산정근거조항을 2개 실시한 경우가 1건 있었으므로 부경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총 35개였다. 35개 중 1항을 근거로 한 것이 3개(8.57%), 2항을 근거로 한 것이 2개(5.71%), 3항을 근거로 한 것이 1개(2.86%)였으며, 나머지 29개(82.86%)은 모두 5항을 근거로 손해액이 산정되었다⁸¹⁾. 이는 2013년 선행 논문에서, 부경법뿐만 아니라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 등까지 포괄하여 ‘법원이

81) 통계분석상 어려움이 있었던 몇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① 2016나1202 사건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선택적으로 청구한 사안이었었는데,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실시한 후,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 각주로 (1) 부경법 제2조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 (2)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결국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같은 결론(2억 원)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실시하며 부경법 위반에 관한 자세한 이유 기재는 생략한다고 하였다. 판결 취지상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통계에 반영하였다. ② 1개 사건에서 여러 개 산정근거조항을 실시하여 각 근거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경우(2015가합579676 사건)에 있어서의 인용률은 전체 청구금액에서 해당 근거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평가하였다. ③ 원고(영국 법인)가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미화 달러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2017가합45298), 원고가 불법행위종료일로 주장하는 날(2016년 6월 27일)의 기준환율(1,168.50원/달러)로 청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인용률을 계산하였다.

인정하는 상당 손해액' 조항 활용률을 분석한 수치인 71.92%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다만 해당 논문에서도 부경법에 한정하여 볼 경우, 손해배상 인정 건수 총 7건 중 6건이 상당 손해액 조항에 의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⁸²⁾

가장 적은 인용액은 3백만 원, 가장 많은 인용액은 3억 원이었다. 인용액 평균값은 51,844,067원이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2,700만 원으로 평균값과 2,5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인용액이 적은 금액에 몰려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액 대비 인용률 평균은 35.63%이지만, 인용률 중간값은 20.29%로 평균과 15%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청구액 대비 인용률이 작은 경우에 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74]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인용액 분석

산정근거		계	배상액 분포							배상액 분석		
항목명	항		1천만원이하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3억원이하	5억원이하	5억원초과	최저값	평균값	청구액대비 인용률 평균값
										최고값	중간값	청구액대비 인용률 중간값
침해물건 양도수량 ×피해자의 단위 이익액(이익률)	1	3 (8.6)	2	-	-	1	-	-	-	3,650,915	31,926,014	55.27%
										86,169,000	5,958,126	52.48%
침해자의 이익액	2	2 (5.7)	-	1	-	-	1	-	-	12,008,618	94,004,309	25.23%
										176,000,000	94,004,309	25.23%
통상사용료 상당액 및 그 초과분	3	1 (2.9)	-	1	-	-	-	-	-	15,498,700	15,498,700	100%
										15,498,700	15,498,700	100%
	4	0	-	-	-	-	-	-	-	-	-	-
										-	-	-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 손해액	5	29 (82.9)	7	7	7	4	4	-	-	3,000,000	52,250,241	32.09%
										300,000,000	35,000,000	20.00%
불명	-	0	-	-	-	-	-	-	-	-	-	-
										-	-	-
합계		35 (100)	9	9	7	5	5	-	-	3,000,000	51,844,067	35.63%
										300,000,000	27,000,000	20.29%

82) 박준석, “지적재산권 침해의 손해액 입증 곤란시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에 관하여”, 인권과정의 (2013.12.) 83-86.

(2) 영업비밀 침해행위

[표2-75]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배상 인용액 분석

산정근거		계	배상액 분포							배상액 분석		
항목명	항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최저값	평균값	청구액대비 인용률 평균값
										최고값	중간값	청구액대비 인용률 중간값
침해물건 양도수량 × 피해자의 단위 이익액(이익률)	1	2 (7.7)	-	-	-	-	1	-	1	210,000,000	4,357,472,885	51.33%
			8,504,945,770	4,357,472,885	51.33%							
침해자의 이익액	2	3 (11.5)	2	-	-	-	-	-	1	4,040,650	306,770,287	56.46%
			909,637,359	6,632,851	68.72%							
통상사용료 상당액 및 그 초과분	3	1 (3.8)	-	-	-	1	-	-	-	75,866,024	75,866,024	65.50%
			75,866,024	75,866,024	65.50%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 손해액	5	20 (76.9)	-	-	-	-	-	-	-	-	-	-
			1	6	4	2	2	1	4	3,000,000	298,446,424	36.69%
불명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26 (100)	3	6	4	3	3	1	6	3,000,000	603,078,890	41.21%
			8,504,945,770	62,933,012	22.49%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여 부정경쟁 제14조의2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건은 총 26건이었는데, 1항을 근거로 한 것이 2건(7.69%), 2항을 근거로 한 것이 3건(11.54%), 3항을 근거로 한 것이 1건(3.85%)이었으며, 나머지 20건(76.92%)은 모두 5항을 근거로 손해액이 산정되었다.

가장 적은 인용액은 3백만 원, 가장 많은 인용액은 8,504,945,770원이었다. 인용액 평균값은 603,078,890원이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62,933,012원으로 평균값과 중간값 사이의 괴리가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보다 더욱 심했는데, 인용액이 적은 금액에 몰려있는 경향이라는 점은 부정경쟁행위의 경우와 다를바 없으나, 부정경쟁 사건의 경우 인용액이 3억 원을 넘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영업비밀 사건의 경우 3억 원을 넘는 사건이 7건 존재한다는 점이 평균값과 중간값의 괴리를 크게 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청구액 대비 인용률 평균은 41.21%이지만, 인용률 중간값은 부정경쟁 사건에서의 인용률 중간값(20.29%)과 비슷한 22.49%로 나타나 영업비밀 사건 역시 청구액 대비 인용률이 작은 경우에 쏠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표2-76] 중복쟁점 손해배상 인용액 분석

산정근거		계	배상액 분포							배상액 분석		
항목명	항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최저값	평균값	청구액대비 인용률 평균값
									최고값	중간값	청구액대비 인용률 중간값	
침해물건 양도수량 × 피해자의 단위 이익액(이익률)	1	-	-	-	-	-	-	-	-	-	-	-
		-	-	-	-	-	-	-	-	-	-	-
침해자의 이익액	2	-	-	-	-	-	-	-	-	-	-	-
		-	-	-	-	-	-	-	-	-	-	-
통상사용료 상당액 및 그 초과분	3	-	-	-	-	-	-	-	-	-	-	-
		-	-	-	-	-	-	-	-	-	-	-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 손해액	5	10 (100)	3	3	1	1	1	1	-	0	77,000,000	16.83%
		-	-	-	-	-	-	-	-	400,000,000	20,000,000	10.03%
불명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10 (100)	3	3	1	1	1	1	-	0	77,000,000	16.83%
		-	-	-	-	-	-	-	-	400,000,000	20,000,000	10.03%

부경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건 중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가 함께 쟁점이 되었던 경우는 총 10건이었는데, 10건 모두 5항을 근거로 손해액이 산정되었다(83)(84).

83) 2016가합82382 사건의 경우 피고 2인 중 1인은 자백간주되어 전부인용되었으나, 나머지 1인(법인)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고 결과적으로 1심은 나머지 1인(법인)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부 인용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 부분만을 통계에 반영하였다.

84) 2017가합25648 사건은 원고가 2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는데, 손해액 일부는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손해액 98,952,990원을 피고가 배상하라는 내용의 청구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경법 제14조의2 제5항에 근거 원고의 손해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평가하면서, 원고가 피고 아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 원리금 159,246,574원을 지급받아 피고의

가장 많은 인용액은 4억 원이었으며, 인용액 평균값은 7,700만 원, 인용액 중간값은 2,000만 원으로 앞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인용액이 적은 금액에 몰려있는 경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해배상청구액 대비 인용률 평균은 16.83%이지만, 인용률 중간값은 10.03%로 나타나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이 중복되는 사건 역시 청구액 대비 인용률이 작은 경우에 쏠려있음을 알 수 있으나, 쏠림 정도는 다른 앞선 사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이 부경법에 따라 손해액 산정을 한 후 변제에 따른 채무소멸을 인정한 사안이므로 인용액을 0원으로 하여 통계에 반영하였다.

나. 청구액 분석(산정근거주장 배척사유)

부경법 제14조의2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된 인용사건 중 부경법 제14조의2 제5항 외의 산정근거가 주장 또는 쟁점이 되었으나 배척된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인용액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심인 상고심은 제외하고 1, 2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개의 사건에서 산정근거조항을 여러 개 실시한 경우에는 통계상 다수개로 처리하였다(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근거조항에 따라 금액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액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1개 사건에서 법원의 주장배척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 역시 통계상 다수개로 처리하였다.

(1) 부정경쟁행위

[표2-77]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액 분석(주장배척사유)

산정근거		계	청구액 분포							계	주장 배척 사유		
항목명	항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입증부족	반증인정	기타
침해물건 양도수광 ×피해자의 단위 이익액(이익률)	1	6 (24.0)	-	1	-	-	3	-	2	6 (20.7)	5	-	1
침해자의 이익액	2	16 (64.0)	-	2	-	2	10	-	2	19 (65.5)	13	2	4
통상사용료 상당액 및 그 초과분	3	3 (12.0)	-	-	-	2	1	-	-	4 (13.8)	3	-	1
	4	-	-	-	-	-	-	-	-	-	-	-	-
합계		25 (100)	-	3	-	4	14		4	29 (100)	21	2	6

부경법 제14조의2 제5항 외의 산정근거가 주장 또는 쟁점이 되었으나 배척된 경우를 보면, 1항을 산정근거로 주장한 경우가 6개, 2항을 산정근거로 주장한 경우가 16개, 3항을 산정근거로 주장한 경우가 3개였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중 원고의 입증부족을 사유로 한 경우는 21개, 피고의 반증을 인정한 경우가 2개, 입증부족 내지 반증 인정이 아닌 기타 사유에 의한 경우가 6개였다.

기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근거 주장을 배척한 경우를 보면, 대부분 피고의 부정경쟁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였고⁸⁵⁾,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로 동종 영업을 하고

85)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05281 :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0626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매출액에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와 관계 없는 다른 사업에 관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1469 : 피고는 부정경쟁행위 이전에도 피고 제품을 판매하여 왔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출액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상 이익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었다⁸⁶⁾.

원고의 산정근거 주장을 배척한 사건들의 청구액을 살펴보면, 가장 적은 청구액은 2,100만 원이었고, 가장 많은 청구액은 1,105,569,462원⁸⁷⁾이었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표2-78]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배상 청구액 분석(주장배척사유)

산정근거		계	청구액 분포							계	주장 배척 사유		
항목명	항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입증부족	반증인정	기타
침해물건 양도수량 × 피해자의 단위 이익액(이익률)	1	3 (30.0)	-	-	-	-	-	-	3	5 (33.3)	3	1	1
침해자의 이익액	2	6 (60.0)	-	-	-	-	-	2	4	8 (53.3)	6	1	1
통상사용료 상당액 및 그 초과분	3	1 (10.0)	-	-	-	-	-	-	1	2 (13.3)	1	-	1
	4		-	-	-	-	-	-	-	-	-	-	-
합계		10 (100)	-	-	-	-	-	2	8	15 (100)	10	2	3

부경법 제14조의2 제5항 외의 산정근거가 주장 또는 쟁점이 되었으나 배척된 경우를 보면, 1항을 산정근거로 주장한 경우가 3개, 2항을 산정근거로 주장한 경우가 6개, 3항을 산정근거로 주장한 경우가 1개였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중 원고의 입증부족을 사유로 한 경우는 10개, 피고의 반증을 인정한 경우가 2개, 입증부족 내지 반증 인정이 아닌 기타 사유에 의한 경우가 3개였다.

이 성장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기간 동안 얻은 영업상 이익 전부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영업상이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6나1202 : 피고가 얻은 이익 전부를 곧바로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86)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36473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및 제2항의 보충적 규정으로서의 같은 조 제5항은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일실이익 상당의 영업상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인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일실이익 상당의 영업상 손해를 입었음을 사실상 추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피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동종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일실이익 상당의 영업상 손해를 입었음을 사실상 추정해 주는 위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다만, 이 사건에서 무형의 손해 주장 부분은 부경법 제14조의2 제5항에 근거하여 인정).

87) 가장 많은 청구금액을 주장한 사건은 원래 원고(영국 법인)가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면서 946,144달러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사건이었다. 원고가 불법행위종료일로 주장하는 날(2016년 6월 27일)의 기준환율(1,168.50원/달러)로 청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통계에 반영하였다.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중에서 입증부족 문제를 이유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입증 부족과 함께 반증을 인정한 경우가 2건(2014나4592, 2016가합102720), 입증 부족과 함께 기타사유(인과관계 부재)를 거론한 경우가 1건(2018나2012375)이었다⁸⁸⁾.

원고의 산정근거 주장을 배척한 사건들의 청구액을 살펴보면, 가장 적은 청구액은 3억 1천만 원이었고, 가장 많은 청구액은 700억 원이었으며,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5억 원을 넘는 손해를 주장하였다.

(3)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쟁점

[표2-79] 중복쟁점 손해배상 청구액 분석(주장배척사유)

산정근거		계	청구액 분포							계	주장 배척 사유		
항목명	항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입증부족	반증인정	기타
침해물건 양도수량 ×피해자의 단위 이익액(이익률)	1	2 (33.3)	-	-	-	-	-	1	1	2 (28.6)	1	-	1
침해자의 이익액	2	4 (66.7)	-	-	-	1	1	2	-	5 (71.4)	4	-	1
통상사용료 상당액 및 그 초과분	3	-	-	-	-	-	-	-	-	-	-	-	-
	4	-	-	-	-	-	-	-	-	-	-	-	-
합계		6 (100)	-	-	-	1	1	3	1	7 (100)	5	-	2

부경법 제14조의2 제5항 외의 산정근거가 주장 또는 쟁점이 되었으나 배척된 경우를 보면, 1항을 산정근거로 주장한 경우가 2개, 2항을 산정근거로 주장한 경우가 4개였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중 원고의 입증부족을 사유로 한 경우는 5개, 피고의 반증을 인정한 경우는 없었으며, 입증부족 내지 반증 인정이 아닌 기타 사유에 의한 경우가 2개였다.

기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근거 주장을 배척한 2개 중 하나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였고⁸⁹⁾, 다른 하나는 ① 2014. 1. 31. 이전의 타인 성과물

88)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2375 사건의 경우, 판결문상 원고가 손해배상의 범위 주장에 있어 부경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였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판결문상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추정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라는 문장은 원고의 주장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액을 주장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시도 있는바, 이는 원고 주장 손해가 부정경쟁행위와 인과관계 없음을 주장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89) 대전고등법원 2019나11959 : 피고들이 사업 초기 3년 동안 올린 매출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이익 전부가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는 것이고, ② 2014. 1. 31. 이후의 부정경쟁 행위 부분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이 잘못되었다⁹⁰⁾는 것이었다.

원고의 산정근거 주장을 배척한 사건들의 청구액을 살펴보면, 가장 적은 청구액은 98,952,990원이었고, 가장 많은 청구액은 2,062,905,010원⁹¹⁾이었다.

90)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8313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원고의 피침해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단위수량당 이익액' 대신 '원고의 한계이익율'을 계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원고의 전체 매출액 대비 한계이익율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피침해제품 단위당 매출액 대비 한계이익율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원고의 전체 매출액 대비 한계 이익율만을 계산하였을 뿐이다.

91) 가장 많은 청구금액을 주장한 사건은 원래 원고(영국 법인)가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면서 946,144달러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사건이었다. 원고가 불법행위종료일로 주장하는 날(2016년 6월 27일)의 기준환율(1,168.50원/달러)로 청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통계에 반영하였다.

제4절 형 사

형사사건 통계는 기본적으로 사건수가 아니라 피고인 인원수를 기준으로, 경합사건의 죄명은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명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다(사법연감 일러두기). 그러나 부경법 분석을 위한 본 용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수죄 경합사건 죄명의 경우, 더 중한 죄가 있더라도 부경법위반죄(교사·방조·미수·예비음모 포함)를 기준으로 유무죄·양형 파악하였다. 형이 병과된 경우, 중한 형으로 포함하였다. 병합사건의 경우, 부경법위반죄가 문제된 사건만을 기준으로 유무죄·양형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소된 죄명과 변경·인정된 죄명이 다를 경우, 변경·인정된 죄명 기준으로 처리하였고, 부경법위반(단, 업무상배임 포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긴 하였으나, 부경법위반죄(단, 업무상배임 포함)가 아니라 타법률위반죄로만 의율된 부수적 피고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을 미리 일러둔다.

사건 수가 아니라 피고인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2017-2019 부경법 형사 판결문 모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2-80] 2017-2019 부경법 관련 형사 판결문 모수 현황(피고인 인원수 기준)

(단위: 건, 명)

부문	사건 수	피고인 인원 수				
		분석대상			분석제외 (부수적 피고인)	계
		일죄 (업무상배임 포함)	경합범 (업무상배임 포함)	소계		
부정경쟁	120	53	121	174	4	178
영업비밀	382	390	450	840	17	857
합계	502	443	571	1,014	21	1,035

1. 처리결과별 현황

가. 무죄율·집행유예율

(1) 부정경쟁행위

부경법 위반 피고인은 일련의 부정경쟁행위에 부수하는 여러 범죄행위들로 인해 대부분 부경법위반 일

죄가 아니라 수죄 경합범이다.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부경법 위반죄(제18조 제3항 각호 위반) 경합범의 경우, 크게 등록권리침해(저작권 포함)죄⁹²⁾와의 경합범과 기타법률위반죄⁹³⁾와의 경합범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등록권리·저작권침해 및 기타법률위반 전부다 경합된 경우, 등록권리침해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지난 3년간 부정경쟁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 피고인(제18조 제3항 각호 위반)은 일죄 53명, 경합범 121명 합계 총 174명이다. 그중 1심 피고인은 총 150명으로, 이들의 부경법위반죄 1심 무죄율은 8.0%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연감⁹⁴⁾에 따른 1심 전체 형사공판사건 무죄율⁹⁵⁾ 2018년 3.41%, 2017년 3.65%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자유형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단 8명에 불과하였다. 1심 집행유예율 역시 7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사법연감⁹⁶⁾에 따른 1심 전체 형사공판사건 집행유예율⁹⁷⁾ 2018년 57.2%, 2017년 59.8%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항소심·상고심 피고인은 총 24명으로, 그 가운데 66.6%에 달하는 16명의 피고인이 하급심과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표2-81] 부정경쟁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 피고인 현황

죄수관계	계	1심							항소심 (파기 환송심 포함)			상고심			
		부경법위반 유죄				부경법 위반 무죄	부경법 위반 공소 기각· 면소 기타	소계	파기	항소 기각	소계	파기 환송	상고 기각	소계	
		자유형		재산형 (벌금)	선고 유예										
		실형	집행 유예												
부경법위반 일죄	53	-	2	35	1	6	-	44	3	5	8	-	1	1	
부경법 위반 경합범	등록권리· 저작권침해	110	8	22	57	3	6	-	96	12	2	14	-	-	-
	기타법률 위반	11	-	2	8	-	-	-	10	1	-	1	-	-	-
합계	174	8	26	100	4	12 (8.0)	-	150 (100)	16	7	23	-	1	1	

92) 특·상·디, 저작권법위반 포함

93) 사기, 사문서위조동행사, 공문서위조동행사, 업무방해, 의료기기법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 보호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94) 2019 사법연감 (2019. 9. 18.) 700-701면.

95) 사법연감에 따른 무죄율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2019 사법연감 701면 참조).

$$\text{무죄율}(\%) = \frac{\text{무죄인원}}{\text{판결인원}} \times 100$$

96) 2019 사법연감 (2019. 9. 18.) 700-701면.

97) 사법연감에 따른 집행유예율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2019 사법연감 701면 참조).

$$\text{집행유예율}(\%) = \frac{\text{집행유예}}{\text{자유형}} \times 100$$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경우, 실무상 부경법위반(제18조 제1항, 제2항)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로 처벌되는 경우도 빈번한바, 부경법위반죄뿐만 아니라 업무상배임죄의 관점에서도 유무죄·양형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부경법 위반 피고인(제18조 제1항, 제2항 위반) 역시 일죄보다는 경합범이 대다수인바, 크게 형법 업무상배임죄와의 경합범과 기타법률위반죄⁹⁸⁾와의 경합범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업무상배임 외에 타법률위반죄까지 모두 경합된 경우, 업무상배임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우선 부경법위반죄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3년간 영업비밀 누설 등에 따른 부경법위반 피고인은 일죄 245명, 경합범 414명 합계 총 659명이다. 이 가운데 1심 피고인은 324명으로, 이들의 부경법위반죄 1심 무죄율은 34.5%로, 이는 앞서 언급한 사법연감⁹⁹⁾에 따른 1심 전체 형사공판사건 무죄율 2018년 3.41%, 2017년 3.65% 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부경법위반 피고인보다도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대부분 자유형이 선고되긴 하였으나, 1심 집행유예율이 75.3%로 나타나, 앞서 언급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부경법 위반 피고인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항소심·상고심 피고인은 총 335명으로, 그 가운데 34.6%에 달하는 116명의 피고인이 하급심과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표2-82]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 피고인 현황

죄수관계	계	1심							항소심 (파기 환송심 포함)			상고심			
		부경법위반 유죄				부경법 위반 무죄	부경법 위반 공소 기각· 면소 기타	소계	파기	항소 기각	소계	파기 환송	상고 기각	소계	
		자유형		재산형 (벌금)	선고 유예										
		실형	집행 유예												
부경법위반 일죄	245	10	35	29	-	47	1	122	29	71	100	-	23	23	
부경법 위반 경합범	업무상배임	362	23	73	23	1	57	-	177	72	65	137	3	45	48
	타법률위반	52	4	5	8	-	8	-	25	7	9	16	5	6	11
합계	659	37	113	60	1	112 (34.5)	1	324 (100)	108	145	253	8	74	82	

98)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동행사, 배임중재, 배임수재, 업무상형량, 업무방해, 입찰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산업기술포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입찰방해,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99) 2019 사법연감 (2019. 9. 18.) 700-701면.

다음으로 업무상배임죄¹⁰⁰⁾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3년간 영업비밀과 경계선에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침해에 따른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일죄 145명, 경합범 398명 합계 총 543명으로, 부정법 위반 피고인 수에 비해서는 100여명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심 피고인은 290명으로, 이들의 업무상배임죄 1심 무죄율은 전체 21.3%로 나타났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사법연감¹⁰¹⁾에 따른 1심 전체 형사공판사건 무죄율 2018년 3.41%, 2017년 3.65% 보다는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영업비밀누설에 따른 부정법 위반 피고인 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대부분 자유형이 선고되긴 하였으나, 1심 집행유예율이 80.8%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누설 등에 따른 부정법위반 피고인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항소심·상고심 피고인은 총 252명으로, 그 가운데 38.8%에 달하는 98명의 피고인이 하급심과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표2-83] 영업상 주요한 자산 침해에 따른 업무상배임 피고인 현황

죄수관계	계	1심							항소심 (파기 환송심 포함)			상고심			
		업무상배임 유죄				업무상 배임 무죄	소계	파기	항소 기각	소계	파기 환송	상고 기각	소계		
		자유형		재산형 (벌금)	선고 유예										
		실형	집행 유예												
업무상배임 일죄	145	5	48	16	-	22	1	92	19	28	47	-	6	6	
업무상 배임 경합범	부경법위반	362	27	83	32	2	33	-	177	72	65	137	3	45	48
	타법률위반	36	1	8	5	-	7	-	21	4	7	11	-	4	4
합계	543	33	139	53	2	62 (21.3)	1	290 (100)	95	100	195	3	55	58	

100) 후술하는 행위유형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히 예외적으로 단순배임 피고인이 2명 포함되어 있다(1·2심 모두 무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9. 21. 선고 2016고단275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노7209 판결 각 참조).

101) 2019 사법연감 (2019. 9. 18.) 700-701면.

나. 양형 분포

(1) 부정경쟁행위

현행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기본양형기준은 6월~1년4월로,¹⁰²⁾ 지난 2017년 양형기준 개정 때 영업비밀 양형기준의 상한만 6월씩 상향되었을 뿐, 부정경쟁행위 양형기준은 2012년 양형기준 제정 이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양형 분포를 분석함에 있어 법률심인 상고심 피고인은 제외하고 1,2심 피고인들만 포함하였다. 다만 2심 피고인들 중 양형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자유형 양형 분석 결과 대부분 기본양형기준의 범위 내에 있었고, 기본양형기준을 벗어나 1년 4월 이상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부경법위반 외에 등록권리침해 등 타법률위반과의 경합범 가중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 최고액은 1억7천5백만원으로,¹⁰³⁾ 부경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경합범으로서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은 경우로 확인되었다(상표법 제235조,¹⁰⁴⁾ 제230조, 부경법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표2-84] 부정경쟁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사범 양형 분포

죄수	계	자유형 분포(집행유예 포함)						계	재산형 분포					
		6월 이하	12월 (1년) 이하	16월 (1년 4월) 이하	24월 (2년) 이하	24월 (2년) 초과	최저형		1백만원 이하	3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상	최저액
부경법위반 일죄	2	-	2	-	-	-	12 12	39	7	20	7	4	1	400,000 20,000,000
부경법 위반 경합범	37	5	20	-	9	3	4 36	63	10	28	16	7	2	500,000 175,000,000
							6 24							1,000,000 15,000,000
타법률위반	3	1	1	-	1	-	6 24	9	2	1	4	1	1	1,000,000 15,000,000
합계	42	6	23	-	10	3	4 36	111	19	49	27	12	4	400,000 175,000,000

102) 대법원 양형위원회, 현행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2017. 4. 10.의결, 2017. 5. 15.시행), 구.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2012. 6. 18.의결, 2012. 7. 1.시행).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경쟁행위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1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고단5011 판결, 피고인2.

104) 상표법 제2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 제233조 또는 제2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0조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33조 또는 제234조를 위반한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경우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구성요건에 따라 국내침해와 국외침해로 나누어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바, 부정법위반 일죄 피고인의 경우, 국내침해와 국외침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때 1명의 피고인이 둘 다 해당될 경우 중한 죄인 국외침해로 포함하였다. 양형 분포를 분석함에 있어 법률심인 상고심 피고인은 제외하고 1,2심 피고인들만 포함하였다. 다만 2심 피고인들 중 양형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현행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기본양형기준은 국내침해 8월~2년, 국외침해 1년~3년6월으로서,¹⁰⁵⁾ 2017년 양형기준 개정을 통하여 상한이 6월씩 상향되었다.¹⁰⁶⁾

자유형 양형 분석 결과 부정법위반 일죄 피고인들은 전원 현행 기본양형기준의 범위 내에 있었다. 다만 국외침해 사범의 경우 법정형 및 양형기준과는 달리 선고 최고형이 12월로, 사실상 국내 침해 사범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합범의 경우에도 대부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기본양형기준인 2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 중에는 필요적 감경사유인 방조범이 3명 포함되어 있었음을 밝힌다. 한편 최고 벌금액은 10억원으로,¹⁰⁷⁾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 적용된 사례로 확인되었다.

105) 대법원 양형위원회, 현행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2017. 4. 10.의결, 2017. 5. 15.시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2년	1년 ~ 4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6월	2년 ~ 6년

106) 대법원 양형위원회, 구.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2012. 6. 18.의결, 2012. 7. 1.시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5년

10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노1185 판결, 피고인4.

[표2-85]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사범 양형 분포

죄수관계		계	자유형 분포(집행유예 포함)						계	재산형 분포						
			8월 이하	1년 4월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최저형		1백만원 이하	3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최저액
								최고형								최고액
부경법 위반 일죄	국외침해	10	2	8	-	-	-	5 12	4	-	-	-	4	-	-	7,000,000 10,000,000
	국내침해	53	25	16	12	-	-	4 24	36	-	8	9	11	6	2	2,000,000 1,000,000,000
	불명	6	2	4	-	-	-	6 12	5	-	-	4	-	1	-	5,000,000 15,000,000
부경법 위반 경합범	업무상배임	185	70	69	43	2	1	4 48	52	2	18	15	15	2	-	1,000,000 20,000,000
	타법률위반	20	4	8	7	-	1	6 48	10	-	1	-	3	5	1	3,000,000 50,000,000
합계		274	103	105	62	2	2	4 48	107	2	27	28	33	14	3	1,000,000 1,000,000,000

다음으로 영업비밀과 경계선에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침해에 따른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사범의 경우, 일반적인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상 피해금액대별로 5단계의 양형기준을 두고 있긴 하나,¹⁰⁸⁾ 실제로는 대체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부경법위반죄와 유사한 양형으로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업무상 배임에 관한 형법 제356조 중 제35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구. 부경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상 주요자산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까지 처벌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은 합헌 결정되었다.¹⁰⁹⁾

108)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2009. 4. 24.의결, 2009.7.1.시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	1억원이상, 5억원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3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4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5	300억원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109) 헌재 2019. 12. 27. 2017헌가18 결정(“심판대상조항은 업무상 신임관계의 배반 및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업무상 신임관계를 침해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표2-86] 영업상 주요한 자산 침해에 따른 업무상배임 사범 양형 분포

죄수관계	계	자유형 분포(집행유예 포함)						계	재산형 분포						
		8월 이하	1년 4월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최저형		1백 만원 이하	3백 만원 이하	5백 만원 이하	1천 만원 이하	3천 만원 이하	3천 만원 초과	최저액
							최고형								최고액
업무상배임 일죄	81	52	21	7	-	1	4 60	30	12	10	5	2	1	-	500,000 30,000,000
업무상 배임 경합범	부경법위반 185	70	69	43	2	1	4 48	52	2	18	15	15	2	-	1,000,000 20,000,000
							6 24								15
합계	280	128	92	56	2	2	4 60	97	23	33	21	17	3	0	300,000 30,000,000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법원은 영업비밀의 범위를 법문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만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경우 기업의 기술 및 재산을 충실히 보호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에 부족하다. 한편 대법원은 기업의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과 같은 것에 한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경우에만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영업상 주요자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면서 기술력이 가진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정보유출에 따른 기업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행위유형별 현황(무죄사유)

가. 부정경쟁행위(제18조 제3항 각호 위반)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부경법위반죄는 1호 위반죄와 2호 위반죄로 나눌 수 있다. 1호 위반죄의 경우, 민사사건에서와 달리, 형사제재의 대상에 아목(도메인 부당선점-사이버스쿼팅), 차목(아이디어 탈취), 카목(타인성과 도용)은 제외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제18조 제3항 제1호). 2호 위반죄의 경우, 제3조(국가·국장 사용금지)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1명의 피고인이 여러 행위유형 위반하였을 경우 다수개 처리하였다.

형사사건에 있어 상위 3개 다빈도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가목>나목>바목 순으로 나타났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대부분 주지·저명성 탈락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87] 부정경쟁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 피고인 행위유형별 무죄사유

행위유형			계	유무죄 여부			계	무죄 사유			
죄명	항목명	목		유죄	무죄	공소기각·면소기타		주지·저명성	동일·유사·모방	정형성	기타
1호 위반죄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초래	가	81 (50.6)	70	11	-	18	9	7	-	2
		나	50 (31.2)	45	5	-	7	4	3	-	-
	저명상표희석	다	8 (5.0)	8	-	-	-	-	-	-	
	원산지·생산지·품질 오인유발	라	1 (0.6)	1	-	-	-	-	-	-	-
		마	-	-	-	-	-	-	-	-	-
	대리인의 무단사용	바	13 (8.1)	13	-	-	-	-	-	-	-
	상품형태 모방 (테드키패)	사	-	-	-	-	-	-	-	-	-
2호 위반죄	국가·국장 사용금지	자	6 (3.7)	2	4	-	4	-	2	2	-
		-	1 (0.6)	1	-	-	-	-	-	-	-
합계			160 (100)	140	20	0	29	13	12	2	2

나. 영업비밀 침해 행위(제18조 제1항, 제2항 위반)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9년 개정법(2019. 7. 9.시행)은 영업비밀침해죄의 벌칙 구성요건을 구체화하였으나, 행위시법주의 원칙상(형법 제1조) 분석대상 판례 중 신법이 적용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구법상 구성요건에 따라 크게 국외침해(제18조 제1항)와 국내침해(제18조 제2항)으로 구분한 후 구법상 행위유형인 취득·사용·누설로 구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행위유형별 분석결과, 국외침해와 국내침해 둘다 영업비밀 사용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었고, 무죄사유 중에는 비밀관리성 탈락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참고로 공소기각·면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8조에 따른 공소사실(영업비밀) 불특정, 법인합병소멸, 공소시효완성 등이 있었고, 기타 무죄사유에는 압수수색절차 위법에 따른 증거능력 없음 등이 있었다.

[표2-88]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부경법 위반 피고인 행위유형별 무죄사유

행위유형	계	유무죄 여부			계	무죄 사유						
		유죄	무죄	공소기각· 면소 기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	단순 반출 및 사용	기타	
1항 위반죄 (국외침해)	취득	16	15	1	-	1	-	-	-	1	-	-
	사용	28	24	4	-	10	2	4	4	-	-	-
	누설	19	15	4	-	8	2	4	2	-	-	-
2항 위반죄 (국내침해)	취득	178	106	72	-	93	20	15	45	6	2	5
	사용	282	156	126	-	158	31	29	84	4	3	7
	누설	119	66	52	1	71	14	14	34	5	-	4
합계	642	382	259	1	341	69	66	169	16	5	16	

다음으로 영업비밀과 경계선상에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침해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단순배임으로 기소된 경우가 있었으나 타인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업무상배임죄의 무죄 사유는 영업상 주요자산 아님 > 배임고의 없음 > 타인사무처리자 아님 순으로 나타났다.

[표2-89] 영업상 주요한 자산 침해에 따른 업무상배임 피고인 행위유형별 현황

행위 유형	계	유무죄 여부			계	무죄 사유				
		유죄	무죄	공소기각 기타		영업상 주요자산	타인사무 처리자	재산상 이익 ·손해발생	배임고의	기타
업무상배임	463 (99.6)	351	111	1	111	70	15	2	23	1
단순배임	2 (0.4)	-	2	-	2	-	2	-	-	-
합계	465 (100)	351	113	1	113	70	17	2	23	1

3. 최근 법개정사항 적용 추이

가.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부경법 개정 연혁상,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이 최근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완화되어 온 것은 앞서 민사 가처분 및 본안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비밀관리성이 쟁점이 된 피고인들만을 대상으로 행위시법별로 분석한 결과, 형사사건에서는 아직까지 2019년 개정법이 적용된 피고인은 없었고, 2015년 개정전 법률이 적용된 피고인이 197명, 2015년 개정법이 적용된 피고인이 110명 있었다.

우선 결과적인 비밀관리성 인용률과 관련하여, 개정전 법률 적용 피고인 45.6%, 개정법 적용 피고인 45.4%,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90] 영업비밀 형사 비밀관리성 인용률

행위시법		계	비밀관리성 인용률	
			인정	불인정
2015년 개정전 법률	상당한 노력	197 (100)	90 (45.6)	107
2015년 개정법 (2015.1.28.개정) (2015.7.29.시행)	합리적 노력	110 (100)	50 (45.4)	60
2019년 개정법 (2019.1.8.개정) (2019.7.9.시행)	합리적 노력 삭제	-	-	-
합계		307 (100)	140 (45.6)	167

다음으로 개정법이 적용된 110명 중 결과적인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시과정에서 법개정 완화 취지가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의 법개정 사실과 함께 그 개정취지가 판단기준 완화에 있다는 점까지 실시하면서 판시한 피고인이 비밀관리성 인정·불인정¹¹⁰⁾ 사건 합계 총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민사 가처분·본안 사건 재판부에 비해서는 비교적 비밀관리성 요건의 완화를 적극 재판에 고려하는 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비중이 비밀관리성 인정·불인정 피고인

110) 수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243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447 판결 등 참조. 즉, 결론적으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더라도,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설계도면 등에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는 등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등으로 판시하였다.

평균 30.9%에 불과하여 여전히 대부분의 피고인에서는 아예 법 개정 사실 자체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그 판단기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판시한 판례(‘상당한 노력’과 ‘합리적 노력’은 동일하게 해석된다고 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실시, 기존의 ‘상당한 노력’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실시하면서 판시 등)¹¹¹⁾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표2-91] 영업비밀 형사 비밀관리성 완화 취지 반영률

행위시법		계	비밀관리성 완화 취지 반영률							
			비밀관리성 인정				비밀관리성 불인정			
			판단기준 완화 인정	판단기준 완화 불인정	법개정 사실 실시 없음	소계	판단기준 완화 인정	판단기준 완화 불인정	법개정 사실 실시 없음	소계
2015년 개정법 (2015.1.28.개정) (2015.7.29.시행)	합리적 노력	110	17 (34.0)	-	33	50 (100)	17 (28.3)	2	41	60 (100)
2019년 개정법 (2019.1.8.개정) (2019.7.9.시행)	합리적 노력 삭제	-	-	-	-	-	-	-	-	-
합계		110	17	-	33	50	17	2	41	60

이는 ‘상당한 노력’ 하에서든 ‘합리적 노력’ 하에서든 비밀관리성의 개념 자체가 개개의 사안을 불문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비밀관리성의 개념본질상 판단기준의 획일적 완화가 불가능한 이상, 결국 기업의 규모 외에 다양한 기준으로 비밀관리성의 상대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의 영업비밀 형사 판례 중 침해행위자와 목적물에 따른 비밀관리성 판단기준의 상대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개발자 등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상 접근 권한이 주어진 직원이 행위자인 경우 그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의 상당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모순”이라고 하거나¹¹²⁾ “영업비밀로서 경제성과 비공지성에 대해(특정한 자료가 영업비밀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아직 공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일 공지될 경우 경쟁업체와의 차별성 혹은 독점성을 잃게 되어서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 충분히 인식하는 자에게는 비밀로서 표시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알릴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¹¹³⁾라고 판

111)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고단479 판결 등.

1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485 판결(“피고인 B와 같은 개발자의 경우 평소 프로그램의 핵심 자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할 것이므로 퇴근, 외부 업무, 퇴직 시 등에 외부 반출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과 물적 시설을 충분히 운영하더라도 의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하므로(굴지의 대기업에서 끊임없이 침해와 경쟁사로의 유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상 접근 권한이 주어진 직원이 행위자인 경우 그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의 상당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모순이다. 마찬가지로 비밀로서의 표시도 영업비밀의 나머지 요건 즉,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가져오는 자산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직원과의 관계에서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인식의 흠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1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9고단729 판결(“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경제성과 비공지성에 대해(특정한 자

시한 하급심 관례들을 주목할 만하다.

선고연도별로 위 비밀관리성 인용률 및 완화 취지 반영률을 하나의 표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표2-92] 선고연도별 영업비밀 형사 비밀관리성 인용률 및 완화 취지 반영률

선고연도	행위시범		계	비밀관리성 인용률 및 완화 취지 반영률							
				비밀관리성 인정				비밀관리성 불인정			
				판단기준 완화 인정	판단기준 완화 불인정	법개정 사실 설시 없음	소계	판단기준 완화 인정	판단기준 완화 불인정	법개정 사실 설시 없음	소계
2017	2015년 개정 전 법률	상당한 노력	98	-	-	-	47	-	-	-	51
	2015년 개정법 (2015.1.28.개정) (2015.7.29.시행)	합리적 노력	25	1	-	12	13	2	-	10	12
2018	2015년 개정 전 법률	상당한 노력	66	-	-	-	33	-	-	-	33
	2015년 개정법 (2015.1.28.개정) (2015.7.29.시행)	합리적 노력	33	5	-	3	8	7	2	16	25
2019	2015년 개정 전 법률	상당한 노력	33	-	-	-	10	-	-	-	23
	2015년 개정법 (2015.1.28.개정) (2015.7.29.시행)	합리적 노력	52	11	-	18	29	8	-	15	23
	2019년 개정법 (2019.1.8.개정) (2019.7.9.시행)	합리적 노력 삭제	-	-	-	-	-	-	-	-	-
합계			307	17	-	33	140	17	2	41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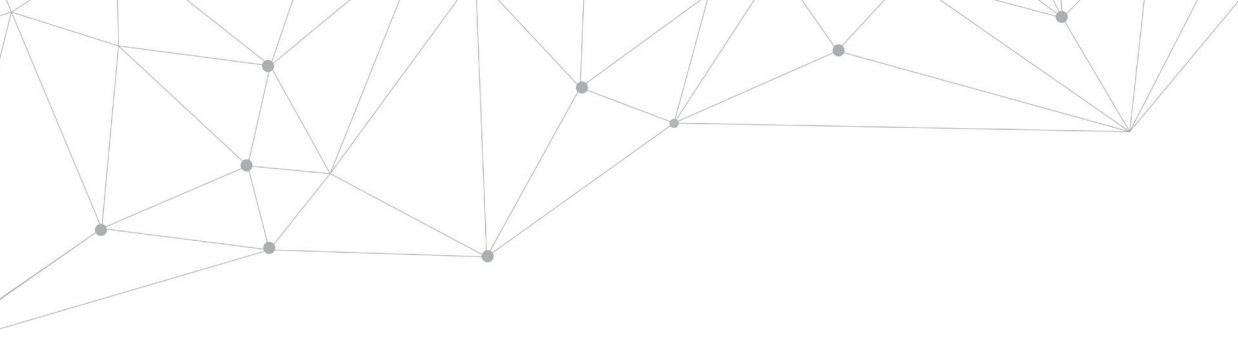
료가 영업비밀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아직 공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일 공지될 경우 경쟁업체와의 차별성 혹은 독점성을 잃게 되어서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 충분히 인식하는 자에게는 비밀로서 표시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알릴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공동창업자로서 연구소장 및 영업본부장 직책으로 평소 피해 회사의 핵심 자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기밀자료를 직접 생성할 뿐 아니라, 대표자가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일임한 상태이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비밀표시, 등재, 교육 등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서 비밀관리성을 상실하여 영업비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영업비밀침해죄 벌칙 구성요건 구체화

2019년 개정 부경법은 아래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구성요건을 구체화 하였다. 본 연구용역의 분석대상 형사 판결문 중에는 2019. 7. 9. 개정 부경법이 시행된 뒤에 판결이 선고된 판결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사건수 56건, 피고인수 129명), 행위시법주의 원칙(형법 제1조)에 따라 모두 구법이 적용되었을 뿐 개정법이 적용된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표2-93] 2019년 개정 부경법 신구조문대비표(벌칙 구체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80호, 2018. 4. 17.,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
<p>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p> <p>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p> <p>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p>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3(예비·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8조의3(예비·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2017-20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분석 연구

제3장

주요 판례 서지사항 및 요약문

제1절 개관

제2절 부정경쟁행위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3장 주요 판례 서지사항 및 요약문

제1절 개 관

1. 선정현황 및 기준

가. 선정현황

주요 판례 선정작업은 크게 부정경쟁행위 부문과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문으로 구별하여, 1차 예비선정(210건)- 2차 예비선정(70건)-최종선정(60건) 3단계에 걸쳐 시행하였고, 이때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복 쟁점 판례의 경우, 양 부문에서 모두 선정대상으로 삼되 결과적으로 중복 선정되지는 않도록 하였다. 또한 영업비밀 관련 판례 수가 부정경쟁행위 판례 수보다 약 1.5배 가량 많은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총 60건 중 각각 35건과 25건을 선정하기로 하되, 각 부문 내에서 민사 가처분, 민사 본안, 형사 사건을 골고루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부정경쟁행위 부문의 경우, 전체 대상판례 838건(중복쟁점 판례 93건 포함) 중 민사가처분 8건, 민사본안 11건, 형사 6건을,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문의 경우, 전체 대상판례 1,216건(중복쟁점 판례 93건 포함) 중 민사가처분 11건, 민사본안 12건, 형사 12건을 각 선정하였다. 이는 각 부문별 전체 대상판례 대비 2.9 내지 3.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표3-1] 2017-2019 주요판례 60선 선정 현황

부문	대상판례	주요판례 최종 선정 현황				선정율
		민사가처분	민사본안	형사	소계	
부정경쟁 (중복쟁점)	838 (93)	8	11	6	25 (41.7)	3.0%
영업비밀 (중복쟁점)	1,216 (93)	11	12	12	35 (58.3)	2.9%
합계	2,054	19	23	18	60 (100)	2.9%

나. 구체적 선정기준

우선 부정경쟁행위 부문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부정경쟁행위 전반의 여러 쟁점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종합적인 법리를 실시한 판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문제가 된 쟁점이 많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관한 개별 법리를 상세하게 실시하여 해당 행위유형에 대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판례 위주로 선정하였다(사례 13).

부정경쟁행위 민사 사건의 경우, 가처분 재판부와 본안 재판부 가처분 사건과 본안 사건의 인용 여부 판단이 달라진 사례(사례 5),¹¹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체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경우 그 사례를 선정하였으며(사례 14), 그밖에 등록권리와 관계에서 이에 대한 권리주장을 한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시효가 중단되는 시기에 대해 판단 사례(사례 15), 동일 사안에 대해 형사사건에서는 주지성을 인정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사건에서는 달리 판단한 사례(사례 12), 등록권리가 있는 경우 각 등록권리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법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판단하고 이에 대해 어떤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판단하는지(사례 1) 전반적으로 모든 부정경쟁행위에서 유의미하게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안을 선정하였다. 또한 어떠한 산업군에서 주로 어떤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문제가 되고,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산업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고, 음식점업 중 소위 말하는 ‘맛집’과 관련하여 유사한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개시한 경우 혼동초래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되어 부정경쟁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례(사례 19)를 선정하여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구법 차목)의 적용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카목 주장이 배척된 사례(사례 17)와 카목 주장이 인용된 사례(사례 5) 모두 선정하였다. 또한 카목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인 만큼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등록권리에 대한 법률과 카목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그 인용 여부(사례 4), 카목을 제외한 가목 내지 차목과 중첩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대한 사례(사례 16) 역시 선정하였다.

부정경쟁 형사사건의 경우, 행위유형 각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목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경우를 선정하였고, 등록권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부정경쟁행위법에 예비·음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유추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돼 의미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사례 25). 또한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무죄 사례의 경우, 이를 선정하여 그 법리 및 판단기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14) 가처분 사건에서는 구법 차목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나, 본안 1심에서는 오인, 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본안 판결은 올해 2020. 6. 25. 선고되었다).

다음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문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개념요소 중 ‘비밀관리성’에서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가 ‘상당한 노력’에서 2015. 1. 28.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되었다가 2019. 7. 9.부터는 삭제되어 이를 요구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론적으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법의 취지가 얼마나 판결문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민사본안 및 형사 주요 판결문 선정의 가장 주요하고도 공통적인 기준이 되었다(사례 26, 30, 46, 49, 51-56, 58).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결정문의 경우, 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전직금지청구 혹은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가 주류였다. 전직금지청구는 근로계약상 혹은 퇴직시 영업비밀보호약정에 따른 전직금지청구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전직금지청구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조건을 모두 갖추어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전형적인 사례(사례 28)와 지역적 제한이나 전직금지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는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사례 29)와 유효성을 부정한 사례(사례 34)를 선정하였다. 또한 후자의 경우 전자보다 엄격한 법리가 적용되어 전직금지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없었던 점에 착안하여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결정문(사례 27, 32)을 선정하였다.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의 경우 보호기간 도과여부에 따라 인용여부가 달라지는 점에서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보호기간 도과를 이유로 기각한 사례(사례 31) 등을 선정하였다.

영업비밀 민사본안 판결문의 경우, 주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금지청구가 대부분으로, 손해배상청구와 금지청구를 모두 인정한 사례(사례 37), 금지청구를 인용하면서도 별도로 금지기간은 산정하지 않은 사례(사례 41, 48)를 선정하였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 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한 사례(사례 45, 48), 영업비밀성은 부정하면서도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사례 38)를 선정하였고, 그 외 섭외사건에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여부를 실시한 사례(사례 40),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시한 사례(사례 44) 등을 선정하였다.

영업비밀 형사 판결문의 경우, 영업비밀 부정취득, 사용, 누설 등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주류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해당여부와 영업상 주요 자산 해당여부가 형사처벌 여부의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비밀관리성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사례(사례 51-56), 비밀관리성의 상대성을 실시한 사례(사례 58-59)를 선정하였고, 그 외 업무상 배임죄 기수 이후 영업비밀 사용 등에 가담한 제3자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판단한 원심(사례 49)과 대법원 판결(사례 50),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판시한 사례(사례 57),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을 부정한 사례(사례 59),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 조사결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례(사례 57) 등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선정기준에 따라 2017-2019 부경법 관련 주요판례로 최종 선정된 총 60개 판례의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3-2] 2017-2019 주요판례 60선 선정 목록

부문	순번	법원	사건번호	제목	주제어
민사가처분	1	서울중앙	2017카합80760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이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목, 주지성, 오인·혼동가능성, 서비스표권
	2	서울중앙	2017카합80606	시장 점유율 1위인 생수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가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가목, 주지성, 오인·혼동가능성, 상표권
	3	서울고등	2017라20655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목 및 구법 차목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가목, 구법 차목, 주지성, 저작권
	4	서울동부	2018카합10209	제품 포장 용기 등이 차이가 있고 이미 유사한 제품명을 사용한 제품이 출시되었음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목, 자목, 구법 차목, 주지성
	5	서울중앙	2018카합157	음식점 프랜차이즈가 가지는 종합적인 이미지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나목, 구법 차목, 오인·혼동 가능성, 상표권
	6	서울중앙	2018카합21701	가계약 체결 후 일정한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독자의 와인 카페를 개점한 경우 카목에 해당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목, 카목, 특별한 사정
	7	서울고등	2018라21047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목, 구법 차목, 주지성, 특별한 사정
	8	서울중앙	2019카합21496	유사한 영업표지를 경쟁업체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카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목, 카목, 주지성, 지명성, 특별한 사정, 상표권
부정경쟁	9	서울중앙	2017가합503208	수유등 제품의 형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에 대해 가목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가목, 구법 차목, 보충성
	10	서울중앙	2016가합573811	광고표현물이 창작성 및 트레이드 드레스를 형성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구법차목, 트레이드 드레스
	11	대전	2016가합107145	미술저작물로 등록된 인형을 외국에서 제조한 뒤 이를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자목, 구법 차목, 모방
	12	서울중앙	2016가합553435	형사재판에서 주지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민사재판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불법행위 책임만을 인정한 사례	가목, 주지성, 상표권, 서비스표권
	13	서울중앙	2016가합555264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부 유사한 명칭이나 샘플사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목, 나목, 바목, 구법차목, 혼동초래, 오인유발
	14	서울중앙	2017가합502502	상품의 제작자뿐만 아니라 그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독점적 판매권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에 해당함을 이유로 제2조 제1호 자목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목, 모방, 디자인권
	15	서울중앙	2017가합510626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웹사이트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경우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나목, 주지성, 혼동초래, 상표권, 서비스표권
	16	서울중앙	2016가합36473	유명 상표의 포장 및 제품 형태를 전혀 다른 상품군에 모방한 경우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가목, 다목, 구법 차목, 혼동가능성, 식별력 명성 손상
	17	서울중앙	2018가합555817	차목과 카목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 없음을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목, 나목, 차목, 카목, 주지성, 혼동초래, 상표권
	18	서울중앙	2018가합566909	음식점의 레시피를 무단반출한 경우 제2조 제1호 나목, 카목에 해당하지 않고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목, 카목, 주지성, 트레이드 드레스, 영업비밀
	19	서울중앙	2019가합526830	유명 맛집과 상호와 서비스 방식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나목 및 카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목, 카목, 주지성, 트레이드 드레스

부문	순번	법원	사건 번호	제목	주제어
형사	20	인천 부천	2017고정712	주지성있는 상품의 호환 상품임을 표시한 경우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가목, 주지성, 혼동가능성
	21	전주	2017노755	후발업체라 할지라도 주지·저명성을 획득하고 있고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업체가 다수 등장하였다고 할지라도 선발업체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할 사례	가목, 주지성, 저명성, 오인유발, 혼동초래, 상표권
	22	서울 동부	2018고단713	제품의 실질적 동일성 및 의거성, 모방의사에 대한 판단기준 및 이에 따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할 사례	자목, 모방, 실질적 동일성
	23	부산	2019고정446	상품표지가 출처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 주지성 및 혼동가능성 부인으로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부인할 사례	가목, 주지성, 혼동초래, 저작권
	24	창원	2018고단2941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경우에도 주지성을 인정해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할 사례	가목, 주지성, 혼동초래
	25	서울 동부	2018고단3978	‘착통’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보관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상표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예비, 음모에 해당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가목, 주지성, 혼동초래, 상표권
민사 가처분 요청 비요청	26	서울 중앙	2016카합81253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인‘합리적인 노력’을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영업비밀침해 금지기간, 의료영상정보시스템
	27	의정부	2018카합5004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청구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전직금지명령을 모두 부정한 사례	영업상 주요 자산, 전직금지약정, 전직금지
	28	수원	2018카합10106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전직금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전직금지약정, 보호가치 있는 이익, 전직금지대가, 전직금지기간, OLED 디스플레이
	29	대전 고등	2018라126	전직금지약정상 전직이 금지되는 지역적 제한, 전직금지의무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없었음에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사례	전직금지약정,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 전직금지의 지역적 제한, 전직금지대가, 자동차 전지
	30	서울 고등	2018라20665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전직금지, 금지청구
	31	서울 고등	2018라20045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고, 또한 부정하게 사용되었음에도, 그 보호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영업비밀 부정사용, 영업비밀 보호기간, 콜라겐
	32	수원 성남	2018카합50314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은 인용하였으나, 경업금지 가처분은 기각한 사례	비밀관리성, 영업비밀 침해금지, 경업금지, 가상현실 콘텐츠
	33	수원 성남	2018카합50378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의무의 기산일을 판단하여 전직금지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전직금지약정, 전직금지기간 기산일, 자문역 위촉
	34	서울 고등	2019라20165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전직금지기간이 장기이고, 전직금지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지약정, 전직금지기간, 전직금지대가, 메모리 반도체 전직금
	35	수원	2019카합1029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 사용, 업소용 튀김기
	36	의정부 고양	2019카합528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가맹계약, 경업금지, 돈가스 전문점
민사	37	서울 중앙	2016가합468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도 인용한 사례	손해배상, 침해금지, 폐기, 세라믹

부문	순번	법원	사건 번호	제목	주제어	
본안	38	울산	2014가합19086	영업비밀성은 부정하였으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아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 비밀관리성, 영업상 주요 자산, 업무상 배임, 불법행위	
	39	서울 동부	2016가합108593 판결	고용계약상 영업비밀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성을 모두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 사례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호스	
	40	서울 중앙	2014가합532786 (본소), 2016가합571853 (반소)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준거법으로 볼 수 있는지 실시한 사례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부정경쟁방지법, 준거법, 국제사법	
	41	서울 고등	2014나2011824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별도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기간은 정하지 않은 사례	손해배상, 비밀관리성, 침해행위 금지기간, RIA 솔루션	
	42	부산	2016가합4337	역설계를 통해 취득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손해배상, 비공지성, 역설계, 선박용 조명등기구	
	43	서울 중앙	2017가합559836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에 적용되는 법리가 사인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례	손해배상, 경업금지, 간접강제, 중고 명품	
	44	서울 중앙	2018가합521364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집행한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손해배상, 가압류 집행, 고의·과실 추정	
	45	서울 중앙	2012가합540820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 통상 실시료, 가스엔진 구동 열펌프(GHP)	
	46	부산 고등	2017나54008	‘합리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도록 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시점을 판시한 사례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금지청구, 폐기·제거청구, 진공식품냉각기	
	47	부산 고등	2017나54442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기간을 산정한 사례	영업상 주요 자산, 침해행위 금지기간,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48	서울 중앙	2017가합556769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되 그 금지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제14조의2 제5항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 금지청구, 폐기청구, 침해행위 금지기간, 콘덴싱 온수기	
	형사	49	서울 중앙	2016노3163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비밀관리성(‘상당한 노력’)을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사례	업무상 배임, 비밀관리성, 제18조 제2항, 불가별적 사후행위, 의료용 3D 스캐너
		50	대법원	2017도3808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 이후 불가별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제3자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업무상 배임, 배임죄의 주체, 불가별적 사후행위, 의료용 3D 스캐너
		51	의정부 고양	2015고단3315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운영 상황과 규모, 경제력에 부합하는 상당한 노력을 다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업무상 배임, 비밀관리성, 영업상 주요 자산
52		의정부	2017노2162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밀관리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업무상 배임, 비밀관리성, 영업상 주요 자산	
53		수원 안산	2017고정710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54		서울 동부	2018노79	영업비밀 ‘취득’의 의미 및 IT회사에서의 비밀관리성 판단기준을 판시한 사례	영업비밀 취득, 비밀관리성, 산업기술	

부문	순번	법원	사건번호	제목	주제어
	55	인천	2017노4721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	업무상 배임,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미용기기
	56	수원	2018노2435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더라도,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을 부정한 사례	업무상 배임,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LCD 패널 본당기
	57	대법원	2017도1817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판시하면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의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부정사용, 실행의 착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58	서울 동부	2018고단2485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성의 상대성’을 판시하여 적용한 사례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비밀관리의 상대성, 소스코드
	59	서울 동부	2019고단729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부정행위 목적이 없다고 보아 영업비밀침해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비밀관리의 상대성, 부정행위 목적, 배임행위
	60	대법원	2017도13792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관리를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3자 소속 직원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비밀관리성, 상당한 이유, 주류도매

2. 감수의견

우리나라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역사는 상당한 연조를 가지고 있다. 이미 1934년에 일본 제국 부정경쟁방지법이 제령(制令) 제24조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에 의용되고 있었다. 이 의용법은 1909년 독일 불공정경쟁방지법(UWG)를 모델로 한 것이나, 당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후진적인 상태에 있었던 일본 국민경제의 실정을 감안하여 사실상 의도적으로 불구화된 입법이었다. 1961년에 제정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이와 같은 의용법의 상태를 답습하여 일반조항도 없고 부정경쟁행위의 실질적 유형도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¹¹⁵⁾

이와 같은 법 상태에 큰 변화를 가져온 두가지 사건이 1980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1991년의 부정경쟁방지법 전면개정이다. 전자를 통해 각종 부정경쟁행위 혹은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공정위에 의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본격화되었으며, 후자를 통해서는 영업비밀침해라는 중대한 행위유형이 추가되고 범명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각종 부당행위 혹은 불공정관행에 관한 법제의 기본 줄거리는 독일식에서 미국식으로 큰 전환을 이루었으며¹¹⁶⁾, 부정경쟁방지법 또한 지식재산권법의 중요한 일환으로 재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나라 시장경제가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각종 부정경쟁행위 혹은 영업표지 관련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구제 시스템의 체계적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면서, 감수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사법절차(司法節次)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오래 전부터 주목한 바 있다.¹¹⁷⁾ 여기에서 2017-2019 기간 동안 전국에 산재한 여러 법원이 생산한 판결례의 분석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집행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주무관청 및 수범자들에 있어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부정경쟁행위는 다양한 기준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경쟁자나 수요자 혹은 공익 등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독일의 전통적이 분류방법인 오인유발, 적대행위, 부당착취로 나눌 수도 있다.¹¹⁸⁾ 그러나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로 대별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실제적이다. 두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의 역사,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의 편제, 보호대상과 구제수단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기본적 행위유형을 일반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로 나누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또 하나의 지식재산권 내지 준물권으로 인식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부정경쟁행위의 한 갈래로서 규율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115)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3), 15, 29-32.

116) Volker Emmerich, Unlautern Wettbewerb, 9.Aufl. (2012), 11-20.

117) 정호열, 경제법 전정 제6판 (2019), 161.

118) Volker Emmerich/정호열 역, 부정경쟁법, 삼지원 (1996), 94-96.

내지 보호법익은 배타적 사권의 보호가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¹¹⁹⁾. 이 연구가 분석하는 판결례 중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가 중복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이 다수 존재하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행위 유형에 대한 법집행 또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2013년 보충적 일반조항(현행 카목, 구법 차목)의 신설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또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 다음, 세부 유형별로 판결례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일반 부정경쟁행위 부문은 제2조 제1호 각목에 따른 11개의 행위유형을 개별적으로 살필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직접적인 피해자, 규정의 도입배경 등을 감안하여 사칭·회색화(가·나·다목), 오인유발(라·마·바목), 성과모용(자·차·카목) 등으로 범주화하는 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¹²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일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정의규정 없이 개별 행위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각목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온 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유형 외에 영업비밀에 대한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1991년 법 개정 때 6개 행위유형이 설정된 이래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세목 6개에 대해서는 지나친 세분화라는 비판도 있는바,¹²¹⁾ 민사적으로는 제2조 제3호 각목에 열거된 6개 행위를 침해행위자를 기준으로 제3자 부정취득(가·나·다목)과 비밀유지의무자 부정공개(라·마·바목)로 나누는 이분법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적으로는 구성요건에 따라 국외침해(제18조 제1항)와 국내침해(제18조 제2항)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부문별로 엄선된 총 60개의 주요 판례에 대한 서지사항과 요약문은 주요 쟁점과 주요 판시사항, 주제어 등을 위주로 살펴 보았고, 1·2차 예비선정 때 포함되었던 에르메스 눈알가방 항소심 사건(서울고등 2016나2035091)은 최근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된 관계로 최종 선정에서 제외하였다.¹²²⁾ 이는 그동안 하급심에서 카목(구법 차목)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법문에도 없는 요건인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카목(구법 차목) 적용을 부정해 오던 판례 경향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는 일련의 개정과 관련하여, 비밀관리성 판단기준의 상대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영업비밀누설죄를 유죄로 판시한 판례가 있어¹²³⁾ ‘상당한 노력→합리적 노력’ 내지 ‘합리적 노력 삭제’ 이후의 법집행에 있어 일응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19)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3) 50-72, 230.

120) 윤선희·김지영, 부정경쟁방지법, 법문사 (2012) 189; 최정열·이규호, 부정경쟁방지법, 진원사 (2019) 16.

121)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3) 257.

122)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나2035091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1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485 판결.

01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이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자 2017카합80760 결정
사건명	부정경쟁행위금지등가처분
채권자	1.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2. 사단법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채무자	1. 거창군 2. 거창문화재단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채권자신청 일부 인용 (50,000,000원)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1) 채권자 1은 등록서비스표권자이다.
- (2) 채권자들은 1995년부터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으로 연극제 개최해 왔고 2017. 7. 28.부터 2017. 8. 15.까지 제29회 연극제 개최 예정이다.
- (3) 채무자들은 2017. 7. 28.부터 2017. 8. 13.까지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예정이다.

나. 원고 주장

이미 주지성이 인정된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채무자 실시표장을 채무자들 연극제에 사용하는 행위는 등록서비스표권 침해 행위이자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채권자들의 영업표지가 주지성 및 오인, 혼동가능성 인정여부

4. 판결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특정의 상품 또는 영업을 다른 상품 또는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한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지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정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

- 나. ‘영업표지의 유사’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련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 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이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합, 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다. 이 사건 영업표지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보통명사로 결합된 표장이므로 ① 채권자들은 1995년부터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매년 연극제를 개최해 왔고, ② 채권자들 연극제에 참가한 유료 관람객은 2008년 약 15만명에 이를 뿐 아니라 ③ 각종 사전, 서적, 블로그에 소개되어 왔고 2014년에는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으므로 채무자들이 채무자 실시표장을 사용할 무렵에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어 식별기능을 가지는 영업표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같은 일시에 동일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같은 성격의 연극제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이 중복되고 채무자들의 연극제는 제29회 연극제가 아님에도 마치 채권자들 연극제인 것처럼 29주년을 맞는 거창국제연극제라고 광고하기도 하였으므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나목에 해당한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가처분, 나목, 주지성, 오인·혼동가능성, 서비스표권

02

시장 점유율 1위인 생수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가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4.자 2017카합80606 결정
사건명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채권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크리에이션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채권자 신청 일부 인용 (100,000,000원)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1) 채권자는 등록상표를 표시하여 ‘삼다수’라는 생수 판매업체이다.
- (1) 채무자는 한라수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생수 판매업체이다.

나. 원고 주장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고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채무자 실시표장을 채무자 상품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주지성 및 오인,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가. 채권자 상품은 1998년 경 출시한 이래 이 사건 상품 및 영업표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출시 이래 국내 생수 시장점유율 1위 및 브랜드파워 1위로 선정된 바도 있어서 삼다수는 주지성이 인정되

나, 한라수도 채권자의 영업표지로 알려졌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채권자의 표장과 채무자의 표장은 색상이나 도형, 문구의 전체적인 배치, 형상이 유사하고 수원지도 모두 제주도이며 채무자 상품을 채권자 상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였다는 소비자들의 후기도 존재하는 상품의 경우 오인, 혼동가능성 인정된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가처분, 가목, 주지성, 오인·혼동가능성, 상표권

03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목 및 구법 차목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자 2017라20655 결정
사건명	가처분이의
채권자	주식회사 삼육오엠씨네트웍스
채무자	주식회사 도담코리아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채권자 신청 기각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7.자 2017카합50057 결정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구법 차목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1) 채권자는 지방흡입, 비만 전문클리닉으로서 2011년경 주식회사 로커스에게 홍보용 캐릭터 개발 의뢰하였다.
- (2) 2012. 2. 21. 로커스는 지방 캐릭터 창작해 채권자에게 저작권 양도하였다.
- (3) 2016. 8. 31 채권자는 등록 캐릭터를 미술저작물로 등록하였다.
- (4) 봉제완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6년경부터 ‘안녕? 난 지방!’이란 명칭으로 인형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원고 주장

채권자는 저작권자인 채권자의 동의없이 지방캐릭터를 이용해 이와 동일, 유사한 형상을 가진 인형을 제조·판매함으로써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할 뿐 아니라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구법 차목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가. 등록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침해여부

나.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도 가목 및 구법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 가. 등록 캐릭터가 지방을 뚱뚱하면서도 귀여운 이미지로 의인화하였다는 것은 캐릭터의 표현형식이 아니라 캐릭터 자체의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포섭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정적, 열거적 방식으로 제한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신설 경위와 제반 지식재산권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는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모방이나 이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의 경과, 이용자의 목적 또는 의도, 이용의 방법이나 정도, 이용까지의 시간적 간격, 타인의 성과물의 취득 경위, 이용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관행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유형의 행위에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하거나 선행자와의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양태로 이를 모방하는 행위, 건전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쟁지역에서 염가로 판매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하는 행위, 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모방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모방 (예속적 모방) 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모방 직접적 모방 등이 해당된다.

라. 채무자가 채무자 인형을 제작 및 판매한 행위가 지방이 캐릭터나 지방이 캐릭터 인형에 대한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법 차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가처분, 가목, 구법 차목, 주지성, 저작권

04

제품 포장 용기 등이 차이가 있고 이미 유사한 제품명을 사용한 제품이 출시되었음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7.자 2018카합10209 결정
사건명	가처분이의
채권자	주식회사 세화피앤씨
채무자	주식회사 더블유비스킨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채권자 신청 기각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자목, 구법차목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1) 2016. 3.경 채권자는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이라는 명칭의 헤어트리트먼트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 (2) 2017. 7.경 채무자는 모레모 제품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트리트롭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품 출시하였다.

나. 채권자 주장

- (1) 채무자의 제품 출시 행위는 법 제2조 제1호 (자) 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제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 (2) 채권자 제품은 '워터트리트먼트'라는 용어를 업계 최초로 사용하는 등 주지성을 획득하였는데, 채무자가 채권자 제품과 유사한 용기를 이용하여 '워터트리트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채무자 제품을 판매한 것은 가목에 해당한다.
- (3) 자신의 노력으로 구축한 광고 콘셉트 및 상품의 주지성 등을 채무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구법 차목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가. 채권자의 제품과 채무자의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으로서 모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채권자 제품이 주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다. 채무자의 제품 출시 및 판매행위가 채권자의 노력으로 구축한 광고 컨셉트 등을 채무자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구법 차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지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품의 형태"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상품의 형태"의 범위에 당해 상품의 용기·포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품의 용기·포장도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어 용기·포장의 모방을 상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상의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 제품과 채무자 제품이 용기 크기, 용기 상, 하단의 모양, 용기 바닥면적, 용기의 용량, 용기 마개의 세부적 모습, 용기의 투명도 및 색상이 서로 다르고, 채권자와 채무자 제품 모두 뾰족한 모양의 뚜껑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모발용품에서 널리 사용되는 형태로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임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상품과 채권자의 상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채권자 주장의 상품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태라고 보기 부족하고 채무자 제품이 채권자 제품과 상품 표지가 동일 내지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채권자의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부터 '위터트리트먼트'라는 용어를 표시한 화장품 내지는 모발용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상품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유형과는 다른,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행위로서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목 내지 자목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유형에는 해당하나 위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함부로 의율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 제품이 채권자 제품의 광고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는 등 채권자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채무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는 소명이 부

족하므로 구법 차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가처분, 가목, 자목, 구법 차목, 주지성

05

음식점 프랜차이즈가 가지는 종합적인 이미지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자 2018카합157 결정
사건명	상표권침해금지등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이차돌
채무자	주식회사 서래스터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채권자 신청 일부인용 (50,000,000원)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구법 차목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1) 채권자는 차돌박이를 주 메뉴로 하여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인 차돌박이 전문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과 관련하여 ‘이차돌’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표장을 영업을 위한 표지로 사용하였다.
- (2) 채무자는 ‘일차돌’이라는 차돌박이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에 관하여 표장을 영업을 위한 표지로 사용하였다.

나. 채권자 주장

-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각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하여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2) 채권자의 영업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차돌’ 표장과 유사한 이 사건 각 표장을 채무자가 유사한 형태로 간판에 사용하는 등 영업표지로서 사용하여 채권자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고 있는 것은 나목에 해당한다.
- (3) 채권자 매장의 간판, 외부 인테리어 및 메뉴 구성은 채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물인데, 채무자는 채권자 매장의 핵심 구성요소인 간판, 외부 인테리어 및 메뉴 구성 등을 그대로 모방하여 차돌박이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채무자 매장에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있는바, 구법 차목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숫자로 인식될 수 있는 글자와 결합한 표장의 경우 오인,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다. 음식점 프랜차이즈가 가지는 종합적인 이미지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

4. 판결요지

가. ‘이차돌’과 ‘일차돌’이라는 부분은 숫자로 인식될 수 글자와 차돌을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숫자로 인식할 경우 명백히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등 표장 조합방식의 유사성만으로는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차돌’표장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음은 인정되나, 숫자로 인식될 수 있는 글자인 ‘이’ 또는 ‘일’과 ‘차돌’을 결합하거나 4개의 글자로 구성된 한자를 부가하는 등의 표장 조합방식의 유사성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거나 채권자 매장과 채무자 매장이 서로 영업적으로 관련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음식점 영업에 있어서 상호, 영업점의 외관이나 인테리어 등 전체적인 이미지, 주된 메뉴의 선정과 전체 메뉴의 구성, 영업방식 등은 다른 음식점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고,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위와 같은 음식점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을 종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구성하였다면, 이러한 프랜차이즈가 가지는 종합적인 이미지는 차목이 규정한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에 해당할 수 있고,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구법 차목에 해당하므로 ‘이차돌’프랜차이즈가 가지는 종합적인 이미지는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프랜차이즈는 채권자의 영업표지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2018. 5.경 영업을 시작하였고 메뉴 및 마케팅 전략이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프랜차이즈는 상호 및 영업표지, 영업점의 외관이나 인테리어 등 전체적인 이미지, 주된 메뉴의 선정과 전체 메뉴의 구성, 영업방식 등 여러 개별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종합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개별 요소들 중 일부가 종래 다른 음식점에서 채택하였던 것과 유사하더라도 그로 인해 프랜차이즈의 전체적인 이미지 또한 종래의 것과 차별화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부분도 성과의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는데, 채무자가 ‘일차돌’ 프랜차이즈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차돌’ 프랜차이즈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상호 및 영업표지, 외부 인테리어, 메뉴 구성 등과 매우 유사한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와 메뉴를 함께 사용하였고, 이로써 채무자 매장이 채권자 매장과 유사한 특징 및 느

낌이 들게 되었다면, 비록 유사한 특징들 중 매장 인테리어 일부가 종래 다른 음식점에서 채택된 바 있는 것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채권자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가처분, 나목, 구법 차목, 오인·혼동 가능성, 상표권

06

가계약 체결 후 일정한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독자의 와인 카페를 개점한 경우 카목에 해당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1.자 2018카합21701 결정
사건명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A
채무자	B, 주식회사 C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채권자 신청 기각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구법 차목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1) D은 2016. 9.경 F라는 상호로 와인 카페를 개점하였고, 2017. 1.경 채권자 주식회사 A을 설립하여 사내이사 겸 대표자로 위임해 'F'라는 브랜드로 가맹사업 영위하여 2017. 12. 말 기준 7개의 직영점과 5개의 가맹점 보유하고 있다.
- (2) 채무자 B는 채권자 회사와의 가맹계약 체결을 희망하여 2017. 11. 28. 채권자 회사와 'F' 가맹계약을 위한 가계약 체결하고 가맹점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7. 12. 26. G 호텔 1층 상가임대차계약 체결하며 채권자 회사에 가맹점 준비 일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3)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B에게 2017. 12. 28. 와인 발산예정점 일정 및 자금 스케줄, 법제처 음식점 창업 기준, 가맹계약시 진행참고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8. 1. 8. F 발산역점 예상 투자비, 매장 외부 및 내부 도면을 이메일로 송부, 2018. 1. 15.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채무자 B의 가맹점 개점 지원하였다.
- (4) 이후 발산점의 영업지역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 B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 1. 16. 채무자의 가계약 파기 의사표현으로 가계약 효력을 상실하였다.
- (5) 채무자 B는 2018. 1. 18. H와 컨설팅 계약 체결하고 2018. 2. 2. T와 인테리어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2. 6. J와 와인 카페 브랜드 네이밍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으로 와인 카페 개점 준비하였다.
- (6) 채권자는 2018. 2. 28. 채무자 B에게 매장 인테리어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 및 당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함은 물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을 이유로 제공받은 인테리어 도면의 원본과 사본을 즉시 폐기하고 가맹사업의 점포 내 디자인, 배치 및 구조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도록 시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7) 채무자 B은 개점 준비를 계속하여 2018. 3.경 K 라는 상호로 와인 카페를 창업하고 주식회사 C 설립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주장

채권자 회사는 채권자 회사만의 독자적 영업 특징을 구축하였고 채권자 회사만의 종합적 영업외관이 형성되었는데 채무자 B은 채권자 회사와의 가계약을 통해 채권자 회사의 종합적 영업 외관에 관한 내부 자료를 취득한 후 고의로 가계약을 파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채권자 회사의 종합적 영업외관과 동일 내지 유사한 외관을 창출하여 채무자들의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카목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나목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종합적 영업외관이 카목에 의해 보호되기 위한 요건

4. 판결요지

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다음에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전체적인 영업 외관 등 (이하 통틀어 '종합적 영업외관'이라 한다) 이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고, **종합적 영업외관이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제2조 제1호 나목의 구체적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종합적 영업외관이 예외적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카목에 의해 보호되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종합적 영업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태양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위법하여 그러한 무단 사용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채권자 회사가 'F'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채권자 회사만의 종합적 영업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소명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창출된 종합적 영업외관이 채권자 회사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에는 소명이 부족하고 카목에 의해 보호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하는데 채무자 B가 가맹계약 가계약에 따라 채권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매장 도면 등을 가계약 파기 이후에도 매장 인테리어 과정에 활용하는 등 채권자 회사의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일부 엿보이기는 하지만 가맹계약

정식 체결을 앞두고 영업지역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채무자 B가 가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자 채권자 회사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B가 채권자 회사의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의도 아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고의로 파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가계약 파기 이후 채무자 B는 별도의 창업 컨설팅 업체 및 인테리어 업체에 와인 카페의 전체적 콘셉트(아이덴티티) 구축 및 브랜드 네이밍을 정식 의뢰하였고 그 결과물로서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이 창출되고 채무자 B가의뢰한 창업 컨설팅 업체 및 인테리어 업체는 채권자 회사 이외에도 다수의 카페 및 음식점의 외관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별지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창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과격적인 가격정책·와인바와 카페를 결합한 감각적인 매장 인테리어·감성적인 콘셉트의 메뉴판 등 비품·와인명함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법' 등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종합적 영업외관의 핵심 요소 자체는 매장을 방문한 일반 수요자들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 B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가처분, 나무, 카목, 특별한 사정

07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본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 9. 27.자 2018라21047 결정
사건명	영업표지 사용금지 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A
채무자	B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채권자 신청 기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자 2018카합20400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구법 차목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① 채권자는 소고기 무한리필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채무자와 사이에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라 지역을 영업 범위로 하는 가맹지사계약체결하고 서울 서초구 에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체결하였거나 적어도 '채권자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는 무명계약체결하였다.
- ② 위 가맹지사계약은 채무자의 수익분배의무 불이행 등 의무위반과 그에 따른 채권자의 계약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나. 채권자 주장

가맹지사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채권자 영업표지 사용중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맹지사계약의 특성상 채무자의 사용중지의무는 당연히 인정되므로 채권자의 영업표지 또는 채권자 영업표지의 요부인 'D'를 사용하여 가맹점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청구하고 채권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구법 차목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법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 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영업표지'와 채권자로부터 지원받은 인테리어, 메뉴, 내·외장 인테리어 등 채권자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모방하여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법 차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용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구하면서, 채권자 영업표지 또는 채권자 영업표지의 요부인 D의 사용금지만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설령 **채권자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구법 차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영업표지가 구법 차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용금지 가처분을 발령하는 것은 차목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차목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상품주체 혼동행위(가목, 나목, 다목)등의 규정을 통하여 식별표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정한 신용 등의 이익을 보유한 자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식별표지 보유자의 보호와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신설된 차목을 너무 폭넓게 적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기존 법률 체계가 갖출 것을 요구하던 일정한 보호 요건의 존재 의의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고,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식별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성과물에 대하여 위 차목에 따른 보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러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들인 투자나 노력의 정도, 성과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정도,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의 정도, 모방의 정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개별조항들에 준하는 정도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존 개별조항들에 의한 법적 보호의 공백이 있는 영역을 메워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품표지, 영업표지, 상품형태 등 기존 개별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식별표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들을 인정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
- 다. '채권자 영업표지'는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보호받을 적격이 있는 상품표지, 영업표지에 해당하나 채권자 영업표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채권자 영업표지에 대하여 위에 준하는 보호를 해주어야 할 만큼 투자나 노력, 성과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정도 등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채무자가 '채권자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법 차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가처분, 가목, 구법 차목, 주지성, 특별한 사정

08

유사한 영업표지를 경쟁업체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카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자 2019카합21496 결정
사건명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채권자	A
채무자	B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채권자 신청 기각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카목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1) 채권자는 ‘별밤’이라는 상표의 권리자이고 채무자는 서울 관악구에서 신림별밤, 신림별밤2등 표장을 사용하여 주점 운영 중이다.
- (2) 2018. 4. 30 신청의 K의 이 사건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 주장

- (1)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주점을 운영하는 것은 채권자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 (2) 채권자의 영업표지는 나이트클럽 혹은 감성주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동종 업계에서 채권자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 채무자는 이를 모방하여 채무자 표장을 주점업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한편 채권자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이룩한 업소 이미지에 무단으로 편승하고 있는바, 나목 내지 카목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채권자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경쟁자가 사용한 경우 카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 가. 채권자의 제1상표권의 경우 채무자가 2016. 4. 8.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이를 인용하였으므로 심판절차에 의해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상표에 근거한 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나. 채권자의 제2, 3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채권자는 채권자 영업표지가 나목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표지라고 주장하나, 별밤 내지 N 표지가 거래계에서 사용되어 온 방법, 태양, 구체적인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 영업표지가 '별밤' 표지가 갖는 자체적인 주지·저명성을 넘어 채권자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라. 나목이 규정한 구체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영업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영업표지 등'이라 한다)가 예외적으로 보충적 일반조항인 카목에 의해 보호되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영업표지 등을 사용한 '행위 태양'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위법하여 그러한 무단 사용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영업표지 등이 경쟁자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런데 '별밤' 내지 'N' 표지가 거래계에서 사용되어 온 방법, 태양, 구체적인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없이 단지 채무자가 채권자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동종의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의 영업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가처분, 나목, 카목, 주지성, 저명성, 특별한 사정, 상표권

09

수유등 제품의 형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에 대해 가목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가합503208 판결
사건명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아모전자
피고	주식회사 홍옥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금지 청구, 폐기 청구 인용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구법 차목, 제4조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7. 설립된 회사로, '아모램프'라는 제품명의 수유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러뷰램프'라는 제품명의 수유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2) 원고 주장

원고 제품의 형태는 큰 둥근 형상 안에 작은 둥근 형태의 부품이 전원장치(스위치) 기능을 하는데 이는 기존에 공지된 스위치의 형상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 제품의 형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인 피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제품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데, 피고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 제품과 동일한 형태인 피고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가. 원고 제품의 형태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성립하는 경우 법 제2조 제1호 구법 차목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 가.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수요자가 봤을 때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 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판단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호·상표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 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나. 피고는 원형인 원고의 제품과 달리 자신의 제품은 사각형 모양이고, 상품에 포함된 그림도 다르고 밝기를 나타내는 조도의 단계 역시 다르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형상이 등글뿐 아니라 조도의 단계는 상품출처기능에 대한 판단에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 원고의 제품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 중 약 10%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원고의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볼 때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태로 피고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 다. **구법 차목은** 같은 조 가목 내지 자목에 규정된 행위유형과는 다른,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행위로서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본안, 금지청구, 폐기청구, 가목, 구법 차목, 보충성

10

광고표현물이 창작성 및 트레이드 드레스를 형성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선고 2016가합573811 판결
사건명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원고	주식회사 스마트홈일렉트로닉스
피고	주식회사 티베라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원고청구기각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구법 차목, 제4조, 제14조의2 제2항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1) 원고는 가전제품, TV, 컴퓨터 부품 제조·판매·도소매·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마트라(SMATRA) TV'시리즈를 광고·판매하는 회사이다.
- (2) 피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도소매 및 유통업, TV, 모니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도니스(ADONIS) TV'시리즈를 광고·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주장

- (1) 피고는 원고의 광고표현물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자인 원고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의한 침해정지청구 및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2)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광고표현물 내지 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 및 도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구법 차목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원고의 광고표현물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가. 피고의 광고물에 원고의 광고물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특성이나 사업활동의 내용 내지 관측 정책을 그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어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광고를 위한 문구와 이미지를 선택, 배열, 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부분들은 미술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도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광고물은 창작성있는 저작물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는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데, 원고 광고물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을 정도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는 점, 피고 광고물이 원고의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점, 피고의 광고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혹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트레이드 드레스'를 형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본안, 손해배상, 금지청구, 구법차목, 트레이드 드레스

11

미술저작물로 등록한 인형을 외국에서 제조한 뒤 이를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7. 9. 14.선고 2016가합107145 판결
사건명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도담코리아
피고	주식회사 제이케이인터내셔널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금지청구 인용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구법 차목, 제4조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1) 원고는 2016.경부터 '안녕? 난 지방!'이란 명칭으로 인형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2015년 11월 경 팔을 옆으로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인형도안을 창작하였다가 2016년 초경에는 인형이 음식을 들고 앉아 있는 모습 등 다양한 도안이 창작돼 닭다리, 케이크, 핫도그, 햄버거를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의 도안을 2016. 12. 19. 미술저작물로 등록하고 2016년 9월부터 중국 공장을 통해 제조, 수입해 판매하였다.
- (2) 피고는 2016년 8월경 원고가 최초로 제작한 인형(팔을 옆으로 든 채 음식을 들고 있지 않은 형태의 인형)을 구매하였고, 피고가 2016. 11.경 피고 제품을 수입함에 따라 인천세관에서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제3자에 의해 수입되고 있다고 원고에게 통보해 원고는 담보제공 후 통관보류 신청을 해 2016. 11. 8. 인천세관의 통관보류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 주장

- (1)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인형 캐릭터를 이용하여 동일, 유사한 형상을 가진 피고 제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 (2) 피고가 피고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피고는 피고 제품의 수입을 통해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 구법 차목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 가. 제2조 제1호 자목이 인정되기 위해서 식별력, 오인·혼동가능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나.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인형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판결요지

-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취지는 스스로 상품형태를 개발하여 상품화한 사람이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동안 그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상품화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그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것을 규제하는 데 있다. 즉, 위 규정은 상품개발에 자본, 노력을 투자한 시장선행자의 개발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른바 데드카피(dead copy)와 같이 복제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할 뿐, 디자인과 같은 창작성 또는 상품표지와 같은 식별력을 요하지 아니하고, 오인·혼동도 그 요건이 아니다**(다만 그러하기 때문에 보호기간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창작성, 식별력 등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신상품 개발자가 그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노력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그 신상품의 형태를 모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후행자가 그러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아니하는 등 무임승차(free-ride)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위 자목의 입법취지**이므로, 인형의 전체적인 구성, 모양, 비율이 매우 유사한 사실, 들고 있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인형의 입모양과 색상이 유사한 사실, 원고 인형과 피고 제품에는 핫도그를 들고 있는 인형 형태에만 존재하는 입의 왼쪽 하단에 침을 흘리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원고 인형과 피고 제품의 인형들이 양 손으로 들고 있는 음식의 배치와 색상, 핫도그 빵 사이에 끼워진 소시지와 그 소시지에 뿌려진 케첩, 햄버거 빵 위에 뿌려진 깨와 그 사이에 끼워진 상추, 케이크의 삼각형 모양, 닭다리의 구체적 표현까지 매우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제품은 원고 인형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
- 나. 상품의 형태 중 해당 타인의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그 상품형태의 독점적 이용을 인정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서 본래 바람직한 것인 건전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형태에 관해서는 그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모방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로 하지 아니하는 취지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서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을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취지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이 통상

적으로 가지는 형태란, 동종의 상품이라면 통상 가지는 흔하고 특별한 특징이 없는 상품형태와 그와 같은 형태의 상품을 단순히 조합한 형태 및 해당 상품으로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결하게 갖추어야 하는 형태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행위가 자목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인정하는 이상 저작권 침해 여부 및 구법 차목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본안, 금지청구, 자목, 구법 차목, 모방

12

형사재판에서 주지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민사재판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불법행위 책임만을 인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선고 2016가합55343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지)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C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원고 청구 일부 인용 (10,000,000원)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1) 소외 D는 각 등록상표 및 등록서비스표의 상표권자이다.
- (2) 2015. 1. 13.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 (3) 2016. 3. 29. 피고가 상표를 출원하자 소외 D가 이에 대해 상표법상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였다.
- (4) 2016. 5. 16. 피고가 위 출원을 취하하였다.
- (5) 2016. 7. 19. 원고와 소외 D 사이에 각 등록상표에 대해 한국, 중국에서의 독점적 통상사용권을 1년간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6) 2016. 12. 26.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17. 1. 23.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 (7) 2017. 2. 9. 원고 상표에 대해 주지성을 인정됨을 이유로 2015. 7. 20.경 피고가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화장품 용기와 동일한 용기를 제조하고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8) 2017. 9. 20. 소외 D의 추가출원에 대해 출원거절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 주장

2015. 7.경 원고의 상호 및 상표와 동일한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여 이를 중국에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형사재판에서 주지성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된 경우 동일한 민사사건에서 동일하게 주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9153 판결).

나. 2015. 6. 10.경 걸그룹에 대한 광고모델료를 지급하고 2015. 6. 15.부터 걸그룹이 나오는 홍보책자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설립일자가 2015. 1. 13.이고 걸그룹이 등장하는 상품 광고가 2015. 7. 이전에 나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포털사이트에 검색광고료를 최초로 지급한 시점도 2015. 7. 31.경이고 매출 역시 문제되는 상품에 대한 국내매출임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2015. 7. 27.경까지 원고의 상호 및 상표가 국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질 정도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 다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에는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본안, 손해배상, 가목, 주지성, 상표권, 서비스표권

13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부 유사한 명칭이나 샘플사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선고 2016가합55526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원고청구기각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바목, 구법 차목, 제4조, 제14조의2 제2항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1) 원고는 2013. 9.경부터 B라는 상호로 C, D, E, F 등의 사진보정 앱(이른바 ‘G 시리즈’)을 개발하여 아이폰을 기반으로 사용되는 운영체제인 iOS의 앱스토어에서 판매하였다.
- (2) 피고는 ‘사이메라(cymera)’라는 이름의 앱을 개발하여 해당 아이튠스에서 ‘Love 필터’라는 명칭 하에 ‘GB 1/2, French 1/2/3, Sakura 1/2/3, Marryme 1/2’테마로 구성된 필터목록을 두어 이를 모바일 사용자들로 하여금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나. 원고 주장

- (1) ‘G’ 및 ‘G시리즈’라는 표지는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상품 표지로서 널리 알려졌는데 피고가 원고의 G 시리즈 중 가장 다운로드 수가 많은 C, D, E, F 4가지 앱에 포함된 일부 필터를 무단으로 모방한 행위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 (2) 피고가 원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거나 피고의 러브필터 판매가 원고의 영업상의 활동인 것처럼 혼동하게 한 것으로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 (3) 피고는 SNS 계정을 통해 광고하고 해시태그를 사용하였으며 ‘G’와 ‘C’등의 표지를 조합하고 ‘유료 G필터’를 전제로 ‘무료 G필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고의 앱을 원고의 앱으로 사칭하거나 원고의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해당한다.

(4) 원고의 일부 앱에서 필터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필터를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앱의 샘플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피고 앱을 샘플사진으로 사용하고 이를 SNS 상에 광고하였는데 이는 구법 제2조 제1호 차목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가. 원고가 사용하는 제품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피고의 앱을 원고의 앱으로 사칭해 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단순히 각 필터를 거친 사진에 육안으로 식별불가능한 영역의 비율이 일정 이상 존재하는 경우 법 제2조 제1호 차목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가. 일부 피고 앱의 필터목록 명칭이 원고 앱의 필터목록 명칭과 유사하고 필터 샘플 사진 역시 유사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 앱은 '싸이메라'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앱 내의 필터 프로그램 역시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필터명칭을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독자적 명칭을 사용한 앱을 사용하고 있어 사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과 같이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차목의 신설 경위와 제반 지식재산권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어떤 행위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내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저작권법 등 제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포함한 시장의 경쟁과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전체 법체계 내에서 볼 때 피고가 무단 이용함으로써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은 전체 법체계의 해석 결과 보호주장 성과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로운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이용하더라도 원고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를 먼저 규명해 보아야 한다. 더구나 중전의 판례 법리를 수용하여 차목이 신설된 이상, 관련 법률과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라. 피고가 원고의 앱에 사용된 필터값을 이용해 원고의 투자나 노력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육안으로 식별불가능한 영역의 비율이 일정 이상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 앱 필터를 거친 사진들의 RGB값과 피고 앱 필터를 거친 사진들의 RGB값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역 내의 수치임이 입증돼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구법 차목 및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본안, 손해배상, 가목, 나목, 바목, 구법차목, 혼동초래, 오인유발

14

상품의 제작자뿐만 아니라 그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독점적 판매권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에 해당함을 이유로 제2조 제1호 자목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가합50250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제이에프티
피고	주식회사 A, B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원고청구 일부 인용 (19,000,000원)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제5조, 제14조의2 제2항, 제5항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1) 2014. 3. 7.경부터 주식회사 저스트포크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 (2) 2014. 5. 23. 원고는 디자인권자인 저스트포크와 등록디자인의 독점적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체결하였다.
- (3) 2015. 10. 6. 설정등록을 경료하였다.
- (4) 2015. 3. 16.경부터 피고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였다.
- (5) 2017. 4. 5. 피고는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등록디자인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6) 2017. 10. 17. 피고의 주장대로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 주장

피고 제품은 디자인권자로부터 독점판매권을 수여받아 원고에 의해 수입· 판매되고 있는 이 사건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므로 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주요쟁점

가. 상품 제작자뿐만 아니라 상품 제작자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독점적 판매권자도 부정경쟁방

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되고 이는 같은 법 제4, 5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 독점적 판매권자도 판매망의 개척과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결과 보호되어야 할 '영업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부정경쟁행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대방을 단순히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체를 상품의 제작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상품의 제작자뿐만 아니라, 상품의 제작자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독점적 판매권자도 포함된다.

나.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상품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면서 일부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낮은 변형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상품 형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형태에 해당하므로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본안, 손해배상, 자목, 모방, 디자인권

15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웹사이트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경우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51062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케이씨휴먼네트웍스
피고	주식회사 캐럿코리아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원고 청구 일부 인용 (45,000,000원)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4조, 제14조의2 제2항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1) 중국 및 중국어 취업 알선업 및 이를 이용한 배너광고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관련된 인터넷 웹사이트 (도메인이름 "chinatong.net") 를 운영하면서 2004. 4.경부터 원고 웹사이트 등에 영업표지로 "CHINATONG", "차이나통"을 사용하였고, 2006. 3.경 원고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도메인이름으로 "chinatong.co.kr"을, 2008. 2.경 원고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로 "차이나통"을 각 추가하였다.
- (2) 피고는 영어, 중국어 등을 비롯한 외국어 교육 및 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7. 7. 11. 주식회사 가비아에 도메인이름 "china-tong.net", "china-tong.com"을 등록한 다음 2008. 2.경부터 위 도메인이름들로 연결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어 교육 강좌 및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피고 웹사이트 및 블로그 등에 영업표지로 "차이나통", "차이나通"을 사용하면서 2009. 3. 1.경 "china-tong.co.kr"이 추가하였다.
- (3) 2007. 7. 25.경 피고의 '차이나통', 'CHINATONG' 상표 및 서비스표등록출원 에 대한 원고의 이의 신청에 대해 2008. 10. 7. 특허청이 거절결정을 하였다.
- (4) 2008. 2. 19.경 원고는 피고에게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해 중단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5) 2009. 8. 10.경 피고가 서비스표 출원 및 등록을 하였다.
- (6) 2010. 1. 22.경 원고가 등록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하였다.

- (7) 피고를 상대로 선사용표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심결취 소소송에서, 2015. 11. 27. 기각심결 중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취소판결을 선고한 후 2016. 2. 25.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 (8) 2016. 11. 21. 특허심판원의 피고 등록서비스표 중 원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하거나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을 하였다.
- (9) 2015. 10. 16. 원고는 2008. 2.경 피고 사용 영업표지 및 도메인이름의 사용 행위가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표지 등의 사용금지를 청구하였다.
- (10) 2016. 6. 3. 원고 청구 인용판결 후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11. 1. 영업표지 사용 금지 및 웹사이트말소등록, 원고에게 600만원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 주장

2008. 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 웹사이트 등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표지 및 원고 등록 상표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피고 사용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피고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 원고 영업표지 및 원고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유사한 피고 사용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피고의 행위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가. 피고 사용 영업표지의 사용기간

나. 원고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 및 영업표지 등의 동일·유사 여부, 영업의 출처에 대한 혼동 가능성 유무

다. 피고의 피고 사용 영업표지 및 도메인이름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4. 판결요지

가. 2008. 2. 1.부터 2016. 6. 3.까지 피고 사용 영업표지 및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것을 피고가 자인하였다.

나. 원고가 영업표지를 사용한 시기, 회원수, 포털사이트의 인기도, 웹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수, 지속적으로 언론매체에 기사가 게시된 점, 국내 주요 사이트에 영업표지 등이 노출되도록 한 점에 비추어 주지성이 인정되고 피고의 도메인 이름은 원고의 영업표지와 호칭 및 개념이 유사하며 원고 영업표지와 혼동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 1973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조 제1호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청구'란**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멸 대상인 권리 그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참조).

라. 피고의 피고 사용 영업표지 및 도메인이름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알게 된 2008. 2. 19.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소멸시효의 진행은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168조, 제170조), 원고가 2015. 10. 16.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후 항소심에서 2016. 11. 1.경 '피고가 피고 사용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6.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소 제기일인 2015. 10. 16.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2015. 10. 16.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2. 10. 16.이전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본안, 손해배상, 나목, 주지성, 혼동초래, 상표권, 서비스표권

16

유명 상표의 포장 및 제품 형태를 전혀 다른 상품군에 모방한 경우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선고 2016가합36473 판결
사건명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원고	루이비통 말레띠에
피고	주식회사 더페이스샵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원고 청구 일부 인용 (50,000,000원)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구법 차목, 제4조, 제5조, 제14조의2 제2항, 제5항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Louis Vuitton'이라는 브랜드로 고가의 가방, 지갑, 의류 등의 여러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각국에 판매하고 있는 프랑스 회사로서, 이른바 'LV 모노그램'이라고 불리는 상표를 등록 후 2003년경 디자이너 A와의 공동작업으로 LV 모노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도형을 다양한 색깔로 채색한 '멀티 컬러 LV 모노그램'으로 불리는 상품표지를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여 생산·판매하고 있다.

(2) 피고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전면 또는 표면 중 약 2/3 가량의 면적을 피고 표장이 표시된 쿠션화장품 98,000개를 생산, 판매하면서 주머니와 거울을 함께 제공하였다.

나.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상품표지와 유사한 이 사건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가목, 다목, 구법 차목에 해당

3. 주요쟁점

가. 주지성 및 혼동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식별력, 명성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이른바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용표장을 자신의 상품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표장이 순전히 장식적 또는 디자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나,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 20044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의 상품표지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상품표지와 유사한 이 사건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피고의 상품인 이 사건 각 제품을 원고의 상품으로 혼동하게 하였고 원고 상품은 주지의 정도를 넘어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저명의 정도에 이른 상표에 해당하나, 구매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원고 제품과 피고의 상품이 동일한 출처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방법·태양·사용량·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또한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고, 명성의 손상이란 저명한 정도에 이른 특정한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상품 또는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그 표지가 가지는 좋은 이미지 및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저명한 정도에 이른 표지의 식별력 손상이나 명성 손상을 위해서 그 상품 또는 영업표지가 반드시 동종·유사 관계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 또는 영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등 참조).

라. 피고는 사용표장이 논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품표지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각 제품에 이 사건 사용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이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평적 의미가 전달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사용표장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품표지의 희석화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사용표장의 사용이 상표의 패러디로서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저명상표인 이 사건 각 상품표지를 모방하여 이 사건 상품표지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고 이 사건 상품표지의 가치를 희석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판매한 피고의 행위는 다목의 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한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본안, 손해배상, 금지청구, 가목, 다목, 구법 차목, 혼동가능성, 식별력 명성 손상

17

차목과 카목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선고 2018가합555817 판결
사건명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원고 청구 기각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차목, 카목, 제4조, 제14조의2 제2항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1) 원고는 2012. 7. 24.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등록상표가 사용된 'G'라는 이름의 남성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여 의류, 신발, 모자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 (2) 피고는 2010. 1. 5. 섬유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8. 3.경부터 원고 주장 표장을 의류 등 제품들에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 주장

- (1)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였는바,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 (2)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원고의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 사건 표장이 사용된 의류 브랜드를 출시한 피고의 행위는 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한다.
- (3) 피고는 원고가 'G' 의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기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피고의 행위는 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가. 원고 제품의 주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표장 사용일이 법 제2조 차목 시행일 이전인 경우 적용 여부

다. 누구나 검색이 가능한 홈페이지 자료, 주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약 8년 동안 사용하고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제품들을 광고하고 있고 원고의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매출 증가가 등록상표가 부착된 제품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남성 의류업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크지 않다고 보아 주지성은 부인된다.

나. 원고의 등록표장은 영문자 6글자(BESLOW)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의 표장은 영문자 4글자(SLOW)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과 호칭의 동일,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의 행위는 법 제2조 제1호 차목 시행 이전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거래교섭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공한 원고의 매출, 성장률, 핵심아이템, 원가 등에 관한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원고의 영업상 아이디어라고 주장할 뿐 위 각 정보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위 각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자료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원고의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구축하기 위하여 장기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이 무엇인지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카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본안, 손해배상, 금지청구, 가목, 나목, 차목, 카목, 주지성, 혼동초래, 상표권

18

음식점의 레시피를 무단반출한 경우 제2조 제1호 나목, 카목에 해당하지 않고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선고 2018가합566909 판결
사건명	부정행위금지청구 등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C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원고청구기각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카목, 제4조, 제14조의2 제2항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1) 원고는 2015. 4경부터 멕시코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사업체로 'A'상호로 서울시내와 수도권 일대에 다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 (2) 피고 C는 2016. 12. 8.부터 2017. 3. 31경 까지 원고의 신사본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 2017. 11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음식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3) 이 사건 식당과 피고들 식당 외에도 'E', 'F', 'G' 와 같은 상호의 음식점에서도 멕시코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 주장

- (1) 원고는 오랜 준비, 연구개발기간을 거쳐 메뉴와 식기, 인테리어, 조리방법 음식세팅과 서빙시스템을 등 제반 식당운영 노하우를 개발하여 개업하였고,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모아 현재 총 10개의 체인점에서 18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널리 알려진 음식점으로, 메뉴와 메뉴판의 내용은 이 사건 식당만의 독특한 영업의 종합적 표지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가 되었다.
- (2) 피고 C는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할 기회를 가지게 되자, 이 사건 식당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음식의 레시피를 무단히 반출하여 피고들 식당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는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한다.
- (3) 설령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식당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무단히 사용하거나, 이 사건 식당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카목에 해당한다.

(4) 한편 피고 C는 2016. 12. 8. 원고 식당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식당 신사본점에 근무하면서 재직기간 동안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고의 운영진만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소스의 레시피를 습득한 후 피고들 식당에서 무단히 사용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가. 원고 식당이 주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식당만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상당한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소스 등 레시피가 영업비밀로서 인정되는지 여부

라. 근무기간이 4개월 남짓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배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판결요지

가. 언론매체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소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가 개업초기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 시스템,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의 광고에 주력하면서 매년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였음을 고려하면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상행위를 의미하는 '트레이드(Trade)'와 전체적인 외관, 외양을 의미하는 '드레스(Dress)'의 조합에 의한 용어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어문상으로는 상행위와 관련된 상품 등의 외관, 외양을 의미하는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문자나 기호 또는 도형들과는 달리, 상품이나 서비스의 포장, 색채의 조합 그리고 도안을 포함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포함되고,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로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 또한 포함될 수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 (inherently distinctive),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 사용에 의한 식별력)를 획득함으로써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비기능적(non-functional)이어야 하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하여 침해자의 상품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의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을 야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4716 판결 참조).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되려면, 이 사건 식당이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이 사건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종합적 이미지, 외양이 다른 식당 등에서 제공되거나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종합적 이미지와 구별되는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식별력은 비슷한 종류의 음식이 제공되는 식당과 다른 이 사건 식당만의 고유한 영업의 이미지나 외양이 특정되어야 가능하므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외식 업체의 식당에서 오픈형 주방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인테리어이므로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식당의 개별 메뉴가 일반 멕시코요리 전문점과 얼마나 차별된 특이한 재료나 요리법을 사

용하여 개발되고,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식당의 메뉴가 이 사건 식당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이 사건 식당의 소스, 레시피 등은 피고 C가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주방에 A4 용지 등에 인쇄되어 비치되어 있어 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식당의 소스의 맛이나, 종류, 구성이 다른 멕시코 전문 음식점과 특별히 차별화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레시피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도 부족하다.
- 마. 주방보조로 근무기간도 4개월 남짓에 불과함 점, 원고가 피고 C 사이에 근로계약 외에 비밀유지 계약 등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배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본안, 손해배상, 금지청구, 나목, 카목, 주지성, 트레이드 드레스, 영업비밀

유명 맛집과 상호와 서비스 방식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나목 및 카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선고 2019가합526830 판결
사건명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원고청구기각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카목, 제10조

2. 사건개요

가. 기초사실

- (1) 1964년경 창업한 후 2017년 경 원고 주식회사를 설립해 55년 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 (2) 수차례 TV프로그램에 소개되었고, 유명 유튜버들에 의해 먹방이 촬영되어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
- (3) 연매출액은 2013년경 기억 원을 넘었고, 2018년에는 약 119억 원에 이르며 ‘해운대소문난암소갈비’라는 상호를 55년간 사용하고 있고 한옥을 개조하여 만든 건물에서 영업하면서 건물 벽면 등에 간판 설치하고, 두툼한 갈비에 칼집을 내어 굽는 생갈비구이, 양념갈비구이인데, 숯불의 가운데가 불록하게 숯고 구멍이 있는 철판 위에서 갈비를 구운 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철판 가장자리 부분에 갈비의 양념을 부어 감자사리를 끓여 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4) 포털사이트 J 검색창에 상호를 검색하면 블로그글 3370건, 상호와 감자사리를 함께 검색하면 1525건이 검색되고, 포털사이트 K에서 상호와 감자사리를 함께 검색하면 10,800개의 검색결과가 표시되며, 리뷰는 1072건이 검색된다.
- (5) 피고는 2019. 3.경부터 서울 용산구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 (6) 피고 식당의 대표 메뉴도 생갈비구이, 양념갈비구이이며, 갈비구이 후에는 감자사리면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철판 가장자리 부분에 끓여 제공하고 있다.
- (7) 피고 식당은 양옥 단독주택을 개조한 공간으로 테이블과 의자가 제공되는 홀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 주장

- (1) 상호와 서비스 방식이 결합된 식당의 종합적 외관은 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서 독립한 영업의 표지를 이루고, 국내에 널리 알려있는데, 피고의 상호와 서비스 방식과 매우 유사한 피고 사리제공방식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 (2)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55년의 전통과 부산의 대표 맛집으로 인정받는 원고의 저명성과 인지도 등을 이용하려 하는 것으로 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한다.

3. 주요쟁점

- 가. 유명 언론매체나 TV프로그램에 맛집으로 보도되고 있는 경우 주지성 및 식별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나. 원고의 영업표지가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원고의 성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 가. 주지성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로만 이루어졌거나, 여기에 '소문난' 부분이 결합된 것은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

나. **상당한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지표나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동종 외식업체의 매출 규모나 정보검색결과 등과의 비교가 없다면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상행위를 의미하는 '트레이드(Trade)'와 전체적인 외관, 외양을 의미하는 '드레스(Dress)'의 조합에 의한 용어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어문상으로는 상행위와 관련된 상품 등의 외관, 외양을 의미하는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문자나 기호 또는 도형들과는 달리, 상품이나 서비스의 포장, 색채의 조합 그리고 도안을 포함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포함되고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로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 혹은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①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inherently distinctive),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 사용에 의한 식별력)를 획득함으로써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예컨대 "P"나 "Q"는 소비자가 그들의 등록상표를 보고서 다른 업체와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표가 없더라도 그들의 전반적인 영업형태를 보고서 그것이 "P"인지 "Q"인지, 아니면 "R" 등의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인지를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다. ② 비기능적(non-functional)이어야 하며, ③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하여 침해자의 상품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의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을 야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4716 판결 참조).

라. 이 사건 서비스 방식에서 제공되는 불판의 모양이 다른 불고기구이집이나 갈비집 등에서 제공되는 모양과 다른 특징이 있고, 일부 언론보도, 소비자들의 리뷰에서 불판 모양의 특징 혹은 사리면이 감자면이라는 점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통상적으로 고깃집에서 갈비나 불고기 등을 굽기 위해 제공되는 불판과 원고 식당의 불판 모양은 모두 둥근 모양에 무쇠 등 금속으로 제작되어 가운데 부분이 솟아있고 가장자리 부분이 움푹하게 파여 있으며 여러 개 구멍이 뚫려 있는 등 상당 부분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점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갈비구이 후 제공되는 사리면의 재료가 감자 전분으로 만든 사리면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냉면사리 등을 사리면으로 제공하는 식당과 기본적으로 쫄깃한 식감의 국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이것이 다른 고깃집과 구별하여 원고 식당을 떠올리게 하는 식별력을 갖춘 요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5. 주제어

부정경쟁, 민사본안, 금지청구, 폐기청구, 삭제청구, 나목, 카목, 주지성, 트레이드 드레스

20

주지성있는 상품의 호환 상품임을 표시한 경우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9.선고 2017고정712 판결
사건명	가. 업무상 배임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1. A 2. B
피해업체	
판결결과 (형량)	1. A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B 일부 유죄 (벌금 300만 원)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2. 사건개요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을 생산하는 피해업체가 ‘H’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이를 표지로 샤워기용, 주방용, 썬크대용 등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및 피고인 주식회사가 인터넷 사이트 상에 피고인이 제조, 생산 판매하는 필터, 이온수기 등의 물품을 선전·광고하면서 ‘H호환필터’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3. 주요쟁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가목 상품주체 혼동행위 중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판결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임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일반적으로 “상품주체 혼동행위”라 하는데, 위 부정경쟁행위에 포섭**

될 요건으로는 ① 상품 등의 표지성, ② 주지성, ③ 표지의 동일 또는 유사, ④ 상품이나 영업표지로서의 사용, ⑤ 혼동가능성이 있다. 위 요건 중 혼동가능성과 관련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엽, 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을 광고하면서 H 필터가 아닌 H'호환'필터임을 명시하였고, 제조업체 또한 피해업체가 아닌 피고인 업체임을 명시한 점, 피해업체가 제조한 필터를 타사의 고급형 필터라고 표시하면서 자신들이 제조한 필터와 비교하여 설명하기도 한 점, H의 고유상품명을 병기한 것은 필터가 서로 호환될 수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일반 소비자 또한 호환되는 필터 제품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다른 제품들의 경우도 호환되는 부속용품이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혼동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주제어

부정경쟁, 형사, 가목, 주지성, 혼동가능성

21

후발업체라 할지라도 주지·저명성을 획득하고 있고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업체가 다수 등장하였다고 할지라도 선발업체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8. 2. 22. 2017노755
사건명	가. 상표법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고인	1. A 2. B
피해업체	주식회사 장수산업
판결결과 (형량)	1. A 유죄 2. B 파기 유죄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5고정1091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2. 사건개요

피해업체는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돌침대를 생산, 판매하면서 '장수온돌', '장수★★★★', '장수돌침대'라는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피해업체보다 먼저 피고인은 전기돌침대를 판매하면서 '장수돌침대★★★★'를 사용하고 있다.

3. 주요쟁점

- 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표지의 유사' 판단기준
- 나. 상품표지의 유사성 판단기준

4. 판결요지

- 가. 여러 차례 영업양도를 거쳐 피고인이 상표를 사용하였다거나 최근 들어 '장수'라는 명칭을 포함한 상표 등을 사용하는 업체가 다수 등장하게 된 점만으로는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 나. 더욱이 ① 일부 돌침대 소비자들이 피해업체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표지를 사용하는 피고인의 돌침대를 장수산업의 돌침대로 혼동하여 고객센터에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해업

체와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표지를 부착하여 제조, 전시, 판매하는 제품은 돌침대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표지의 동일, 유사성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상표의 표시가 장수산업의 하위브랜드 또는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의미하거나,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는 점, ③ 피해업체는 피고인에게 이미 경고장 및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에 관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표지를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업체의 이 사건 등록상표로 오인 및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5. 주제어

부정경쟁, 형사, 가목, 주지성, 저명성, 오인유발, 혼동초래, 상표권

제품의 실질적 동일성 및 의거성, 모방의사에 대한 판단기준 및 이에 따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19.선고 2018고단713 판결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고인	1. A 2. B
피해업체	미용악세사리 제조 및 판매업
판결결과 (형량)	1. A 유죄 (벌금 300만원) 2. B 유죄 (벌금 500만 원)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

2.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미용악세사리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업체의 국내독점판매권을 가진 그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판매한 경험을 이용하여 '젤 네일 스트립스' 상품 4종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전시하는 등 피해업체의 제품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고 이를 위한 전시를 하였다.

3. 주요쟁점

가. 제2조 제1호 자목의 '모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불과하여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가. 이 사건 각 상품과 이 사건 각 피고인들의 상품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선행자가 자금, 노력 등을 투자하여 상품화하고 시장에 제공한 성과를 후행자(모방자)가 특별한 노력 없이 그대로 모방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데에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상품형태에 디자인보호법에서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지된 디자인을 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상품형태 중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그 상품형태의 독점적 이용을 인정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서 건전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형태에 관해서는 그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누구든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모방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서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을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

- (2) 먼저 이 사건 상품과 이 사건 피고인들 상품은 모두 손톱을 장식하기 위한 '젤 네일 스티커'로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형상 안에 대략 15-20개의 선이 임의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점, 내부의 선은 검정색과 금색계통의 색으로 되어 있고, 검정색 선이 2배 가량 많은 점, 배경이 되는 색도 유사한 점 등에서 양 제품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 (3) 다음으로 이 사건 다른 상품과 이 사건 피고인들의 다른 상품도 모두 손톱을 장식하기 위한 '젤 네일 스티커'로서,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 등이 매우 비슷한 점, 손톱 안쪽 부분이 반원 형태로 영역이 구분되어 바깥쪽과 안쪽의 색상 이 구분되는 점, 구분되는 영역을 따라 일정 두께로 다수의 작은 큐빅들이 분포하고 있는 점 등에서 양 제품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다른 상품은 큐빅의 형태가 원형이나 이 사건 피고인들의 다른 상품은 큐빅의 형태가 사각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큐빅 자체가 매우 작아 그 구체적인 형상의 차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원형과 사각형의 차이는 사소한 변형에 불과한바,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양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가 크게 달라졌거나 상품의 디자인에 차별적인 특징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 (4) 따라서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과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은 각각의 상품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의거성 및 모방의사

- (1) 미용약세사리 등 제조·판매업체의 운영자는 2016. 10.경 이 사건 제2, 3, 4 상품을, 2017. 2.경 이 사건 제1상품을 각 출시하였다.
- (2) 피고인 B은 2016. 9.경 위 미용약세사리 등 제조·판매업체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경까지 젤 네일 스티커 등 상품을 판매해오다가 2017. 3.경 그와 사이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그 직후인 2017. 3. 17.경 피고인 A과 함께 미용재료 판매 등을 목적으로 'H'이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을 설립한 직후인 2017. 3.말경부터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의 생산을 시작하였고, 2017. 4. 초순경부터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을 판매하였다
-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을 판매하기 이전까지는 여성용 손톱 미용상품인 네일 스티커

를 직접 디자인하여 판매한 경험이 없었다.

- (5) 피고인 B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의 디자인 개발 등을 누가 하였고, 디자인 개발 등에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상품 디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과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 (6)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과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은 그 형태, 구성 등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여 상품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2017. 3.경 그와 사이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직후 그동안 T의 젤 네일 스티커 등 상품을 판매해오면서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의 디자인, 구성 형태 등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와 함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려는 모방의사를 갖고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을 제작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 및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 이외에도 시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젤 네일 스티커들이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의 형태나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의 형태가 젤 네일 스티커 판매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되어있다거나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라면 통상 가지는 흔하고 특별한 특징이 없는 상품형태 또는 그와 같은 형태의 상품을 단순히 조합한 형태 및 해당 상품으로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결하게 갖추어야 하는 형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2)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이 종전에 출시된 적이 있던 P의 젤 네일 스티커 상품과 그 디자인 등이 일정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상품의 형태를 강력히 보호하기 위하여 데드카피(dead copy)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2조 제1호 자목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그 형태가 독창적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 (3) 따라서 이 사건 각 고소인 상품이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상품이라거나 이 사건 각 피고인들 상품이 동종의 상품인 젤 네일 스티커 상품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5. 주제어

부정경쟁, 형사, 자목, 모방, 실질적 동일성

상품표지가 출처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 주지성 및 혼동가능성 부인으로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부인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고정446 판결
사건명	가. 저작권법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고인	A
피해업체	애니메이션 캐릭터 저작권 보유업체
판결결과 (형량)	무죄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2. 사건개요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의류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 상표권 등에 대해 고소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8. 10. 15.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저작물인 애니메이션 잠옷의 캐릭터가 디자인된 상품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파자마 겨울 수면 잠옷세트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3. 주요쟁점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정경쟁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판결요지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 표현형

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되므로, 기초적 도형을 배열한 디자인에 독자적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디자인에 사용된 도형의 크기 및 그 배열 방식이 상이한 경우,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 나. 단순한 도형을 배열한 것 자체만으로는 이를 사용하는 상품의 제조, 판매자나 그 영업주체가 고소인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사용되어 상품이나 영업을 개별화하는 인식 수단으로 기능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위 디자인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주제어

부정경쟁, 형사, 가목, 주지성, 혼동초래, 저작권

24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경우에도 주지성을 인정해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9. 6. 14.선고 2018고단2941 판결
사건명	가. 업무방해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고인	A
피해업체	방전기 판매업체
판결결과 (형량)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2. 사건개요

과거 국내 최대 방전기(방전원리를 이용하여 금형을 가공하는 기계) 총판업체에서 같이 근무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국내에서 방전기를 판매하는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국내에서 일반인들에게 방전기 제품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상표가 부착된 방전기를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수입한 방전기를 피해자의 방전기로 혼동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곧 부도로 더 이상 방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방전기 수입·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요쟁점

- 가.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주지성 인정여부
- 나. 업무방해의 범의

4. 판결요지

- 가. ① 피해자는 2017. 4. 2. 중국의 'J'와 'T'가 생산하는 방전가공기계 및 관련제품에 관하여 3년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제품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인은 2016. 12. 말경 'J'와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2017. 2. 홍보용 카다로그를 제작하면서 국내총판이라는 허위의 내용

을 기재한 점, ③ K에서 방전기를 제작하면서 중국 국내용으로 만든 제품에는 'L'라는 글자를 부착하지 않으나 한국에 수출하는 방전기에는 'L'라는 글자를 부착한 점, ④ 피고인은 요일자 특허청에 'L'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2018. 1. 26. 'L'는 선사용 표장 'L' (회사명: G, 대표: F) 와 외관 및 호칭이 동일하여 피고인이 출원한 상표는 상표법 제34조 1항 제13호에서 정한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점, 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사한 형태의 방전기를 판매하고 있어 그 거래자나 수요자가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기존 거래처나 피해자와 거래를 하려는 업체가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L'는 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타인의 상표로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L'가 부착된 방전기를 판매한 행위는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판매한 방전기를 타인의 상표와 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해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말을 한 이상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그의 국내총판인 피해자 회사의 신용에 대한 인식 등이 저하되어 그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5. 주제어

부정경쟁, 형사, 가목, 주지성, 혼동초래

25

짝퉁'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보관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상표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예비, 음모에 해당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4.선고 2018고단3978 판결
사건명	가. 상표법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고인	A
피해업체	
판결결과 (형량)	일부유죄 (징역 1년)
원심판결	-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2. 사건개요

피고인은 소위 '짝퉁' 축구복을 수입한 후 국내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자로,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상표가 표시된 축구복 및 '짝퉁' 상표를 소지하고 '짝퉁' 상표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구복에 부착되지 않은 '짝퉁'등록상표 및 미등록상표를 소지하고 있었고, 상표 판매 및 상표가 표시된 미등록 상표 축구복을 판매하였다.

3. 주요쟁점

- 가. 짝퉁 상표가 표시된 상품 보관행위의 혼동가능성 인정 여부
- 나.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상표의 소지만으로 부정경쟁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비·음모·미수의 경우 처벌 가능 여부)

4. 판결요지

- 가. **'짝퉁' 등록상표 소지 및 미등록상표 소지는 예비·음모나 미수에 해당하고, 상표법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이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 나. '짝퉁' 등록상표가 표시된 축구복 및 '짝퉁'등록상표 판매하고, '짝퉁'미등록상표가 표시된 축구복 및

‘짜통’미등록상표를 판매한 경우, ① 상표의 ‘사용’에서 대표적인 행위태양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표를 축구복에 부착하지는 않은 점, ②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한 등록상표 내지 미등록상표 미부착 상태의 축구복과 엠블럼으로서의 등록상표 내지 미등록상표는 각각 단가가 책정되어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축구복 소매업자에게 동봉하여 배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표가 축구복과 결합되어 피고인이 판매한 축구복의 표지로서의 상표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등록상표 내지 미등록상표만을 판매한 행위는 향후 축구복이라는 상품에 사용될 표시수단으로서의 엠블럼 내지 휘장(‘열접착식 패치’로 보인다.)을 판매한 예비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상표 내지 미등록상표 미부착 상태의 축구복에 ‘짜통’ 등록상표 내지 미등록상표를 동봉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짜통’ 축구복을 판매하거나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짜통’ 상표를 판매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해외 축구단의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주제어

부정경쟁, 형사, 가목, 주지성, 혼동초래, 상표권

26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인 ‘합리적인 노력’을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자 2016카합81253 결정
사건명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A
채무자	주식회사 B, C, D, E, F, G, H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일부 인용 (350,000,000원)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소스코드, 설계서, 매뉴얼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라목 및 마목, 제10조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업체

채무자 B사 : 채권자와 사이에 채권자의 제품인 PACS(I)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개발용역계약, J(K) 제품 유지보수 및 마이그레이션 용역계약, Gateway solution 제품 개발 업무위탁 계약 등 (‘이 사건 계약’)을 각 체결하고, 채권자의 제품에 관한 유지보수, 신규 제품 개발 업무 등을 수행

채무자 C : 채무자 B사의 대표이사

채무자 D, E, F : 채권자에서 근무하다 각 2015. 3.경, 2011. 5.경, 2007. 8.경 각 퇴사한 사람들

채무자 G, H : 채무자 B사에서 프로그래밍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2) 채권자 주장

각 파일은 채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득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무자 실시제품들을 개발하고 이를 제조하

였으며,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채권자의 기존 고객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채무자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 마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청취지의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주요쟁점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판단기준
- 영업비밀침해 금지기간

4. 판결요지

채권자는 이 사건 파일을 별도의 서버에 관리하고 채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접근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으로부터는 업무상 비밀준수 약정 의무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 B사로부터는 비밀유지약정 의무를 각 부과하고 있으며, 나아가 채무자 B사 소속 개발 직원들로부터도 비밀유지 서명을 받는 한편, 별도의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비밀유지 및 관리 여부는 비밀관리 기술 및 장비의 시기적인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종전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이 요구되었으나, **2015. 1. 28.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되기만 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 정도가 완화되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파일을 비밀로 유지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 ① 채권자는 J(K) 개발에 5년이 소요되었고, 그 중 뷰어 프로그램의 개발에만 2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채무자들은 2013. 6.경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무렵부터 채무자 실시제품2를 개발하여 오다가 2014. 12.경 완성함으로써 채무자 실시제품2를 개발하는데 약 1년 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채무자 실시제품2를 구성하는 대다수 소스코드들이 오픈소스코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유사 파일 개수는 채무자 실시제품2의 총 파일 개수 7,417개 중 3개(167줄)에 불과하므로 유사비율이 극히 낮은 편인 점
- ③ 채무자 B사는 이 사건 합의약정 이전인 2009.경 개발된 채무자 실시제품1(의원용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채권자 제품은 대형병원용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이고, 채무자 실시제품2는 채권자 제품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형 병원용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인 바, 채무자들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자 실시제품2를 개발하였다더라도 채권자의 주장과 같은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2016. 9. 30.에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각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

된 시점인 2013. 6. 19.경으로부터 4년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품 개발에 각각 투입한 시간, 각 제품의 유사성, 용도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설정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영업비밀침해 금지기간,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청구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전직금지명령을 모두 부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자 2018카합5004 결정
사건명	전직금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A
채무자	B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신청기각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개발·제조·판매하는 기계 제품들에 대한 기술, 정보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타발기, 합지기, 인쇄기 등의 기계를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

채무자 : 채권자에 과장 직책으로 사후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11. 1. 퇴사한 후 2017. 12. 11. 채권자와 같은 업종의 주식회사 C(‘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2) 채권자 주장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를 퇴사하고 곧바로 경쟁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위반하였고, 채권자 회사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 바, 채권자는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금지청구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주요쟁점

-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전직금지명령 인정여부

4. 판결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전직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 근로자의 퇴직 경위,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① 채권자가 보호가치 있는 기술이나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채무자가 채직 중 신규 개발 제품 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수리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얻은 정보와 기술은 독립성과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채무자가 근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하여 채무자 개인의 일반적인 지식, 기술 및 경력에 해당할 여지가 더 커 보이는 점 ②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전직금지약정 체결에 대하여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 별도의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소명은 없고,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채무자의 전직이 배신적 전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 및 소명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가지는 직업선택의 자유(직장이전의 자유)와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주로 사용자인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률적인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체결에 관하여 근로자인 채무자의 자발적이고도 진정한 의사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 금지약정은 그로써 보호되는 사용자의 이익에 비하여 근로자인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전직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전직금지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한다.

① 채권자의 주장 자체로도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의 기술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채무자가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염려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쟁업체인 이 사건 회사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일반적 지식 활용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무자의 직업경력상 채무자는 인쇄기 관련 사후서비스 업무에 취업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 분야에는 채권자 회사와 이 사건 회사가 경쟁 관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이므로 전직 자체를 금지할 경우 채무자의 인격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③ 채권자 회사가 이 사건 회사보다 기술 수준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채권자도 이 점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전직으로 채권자의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사용되어 채권자의 시장점유율에 의미 있는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불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채무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써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만큼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영업상 주요 자산, 전직금지약정, 전직금지

28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전직금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8. 7. 3.자 2018카합10106 결정
사건명	전직금지가처분
채권자	A 주식회사
채무자	B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일부 인용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D 기관 양산기술을 포함한 E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
적용법조	-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채무자 : 채권자 회사에서 플렉서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D 기관 개발업무를 포함한 E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였고, 2017. 3. 16.부터 OLED F팀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15.자로 퇴사한 사람

2) 채권자 주장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를 퇴사하고 경쟁업체에 입사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위반하였고, 채권자 회사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 바, 채권자는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주요쟁점

-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4. 판결요지

채권자는 2017년 4분기 기준으로 E OLED 방식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E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채권자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들로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반면, 이러한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되었을 경우 경쟁업체는 채권자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생략하고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어 채권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E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중 채권자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플렉서블 OLED의 경우, 유기물 형광체의 산화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밀폐도 및 얇은 두께를 유지하는 무색·투명한 D 기판을 낮은 불량률로 양산하는 기술이 핵심기술인 점 등을 종합하면, D 기판 양산기술을 포함한 채권자의 E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는 2010. 5.경부터 2015. 9.경까지 D 기판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자 회사의 H 개발그룹에 소속되어 CL3(Senior Engineer) 지위에서 ① D 기판 두께 저감공정개발 ② D Curing(D 분말을 용매에 용해시켜 용액상태로 제조한 후 이를 유리 기판 위에 얇은 두께로 도포하여 수시간 동안 가열함으로써 D 막을 형성하는 공정) 시간 단축공정개발 ③ 고내열 D 공정 개발 ④ D 공정 셋업 및 표준화 진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 바, 채무자가 D 기판과 관련된 기술 개발팀에서 장기간 근무한 점에 비추어 채무자는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D 기판 양산기술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권자는 2017. 8. 21.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75,280,000원(채무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전직금지의무는 손해배상이나 위반결과의 제거 등 사후적인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의 전보가 불가능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퇴직 전 약 5년 동안 D 기판 양산기술의 개발업무를 직접 경험한 근로자로서 채권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인 D 기판 양산기술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직금지의무의 대가로 제공한 점, 이 사건 결정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남은 전직금지기간은 1년 1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약서에 의한 전직금지의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약정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려운 바, 채무

자는 이 사건 서약서에 기하여 퇴직일인 2017. 8. 15.부터 2년간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자문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가 수행하는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전직금지약정, 보호가치 있는 이익, 전직금지대가, 전직금지기간, OLED 디스플레이

전직금지약정상 전직이 금지되는 지역적 제한, 전직금지의무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없었음에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8. 7. 19.자 2018라126 결정
사건명	전직금지 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채무자, 상대방	B, C, D, E, F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일부 인용 (500,000,000원)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2. 13.자 2017카합50474 결정
영업비밀의 내용	고용량 및 급속 충전 음극재, 시스템 디자인 컨셉, AMP 모듈의 설계 및 개선 방안, AMP 내 CMC를 최적화하여 배치하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적용법조	-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주요 사업영역으로 기초 소재 사업, 전지 사업, 정보전자소재 사업, 재료 사업, 생명과학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지 사업의 경우 각종 휴대용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소형전지, 산업 현장 및 가정 등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해 주는 ESS전지, 자동차전지 사업을 영위

채무자 B, C, D, E, F : 채권자의 자동차 전지개발 사업부문 및 배터리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17. 1. 21.부터 2017. 8. 26. 사이에 퇴사한 후 SK 이노베이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2) 채권자 주장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도 이에 위반하여 경쟁회사인 SK 이노베이션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경쟁업체로 유출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 결정을 구한다.

3. 주요쟁점

-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

4. 판결요지

채권자 회사의 자동차전지 사업 관련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의 지위와 점유율, 채권자 회사가 연구개발 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점, 채권자 회사는 원재료인 셀 공급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배터리 팩 분야에 대하여도 상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비하여 SK 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자동차전지 사업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점, SK 이노베이션은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의 지위, 연구개발비용의 액수 등에 비추어 채권자 회사보다 자동차전지 사업에 있어서 후발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SK 이노베이션은 최근에서야 자동차전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 회사는 자동차전지 사업과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전직 지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대상 직종을 ‘경쟁업종’으로만 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전지 시장의 특성이나 지역적 범위, 소수의 기업만이 자동차전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점, 채무자들이 지득한 영업비밀 등은 자동차전지 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규정이 채무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채무자들은 직접적·명시적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채권자 회사로부터 채무자 B, C, D, F는 OSI(On-Spot Incentive)라는 인센티브를, 채무자들은 모두 상당액의 성과급을 각 지급받았고, 채무자 C, D는 채권자 회사의 지원하에 ISO26262 전문 업체인 독일 TUV사에서 Functional Safety Assessor 과정 교육을 이수하여 Functional Safety 매니저 인증을 취득한 사정들과 계속적인 고용의 보장, 승진·승급, 특별한 지식 및 기술의 교육·훈련 등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과 포괄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가사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채무자들의 퇴직 경위에 비추어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지급이 없다는 점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사정은 아니다.

채무자들이 퇴직 시 수차례의 면담과정에서 채권자 회사에게 밝힌 퇴직사유를 보면, 채무자들은 모두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들의 퇴직에 특별히 채권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그 전직금지의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들에 대한 전직금지의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 위 기간에 한정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는 점,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전직금지의무는 손해배상이나 위반결과의 제거 등 사후적인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 회사에게 충분한 손해의 전보가 불가능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에서 자동차전지의 연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지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지득한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향후 출시될 제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정보에 대한 공개 가능성이 있는 시점까지는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채권자 회사의 자동차전지 사업 관련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의 지위와 점유율, 연구개발비용의 투자 정도, 기술적인 강점 등과 이에 대비되는 SK 이노베이션의 자동차전지 사업 관련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의 지위, 연구개발비용의 액수, 기술력의 정도, 이 사건 결정일 기준으로 채무자들에게 남은 전직금지기간은 1년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채무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전직금지약정,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 전직금지의 지역적 제한, 전직금지대가, 자동차 전지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자 2018라20665 결정
사건명	전직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유로라인글로벌 주식회사
채무자, 상대방	A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항고기각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11.자 2018카합50127 결정
영업비밀의 내용	영업실적, 선사 제시 운임, 고객사에 대한 견적가격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국제물류 주선, 해운·항공운송의 대리·중개·주선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기존의 영국선사 브로인터메드의 국내대리점이었던 ‘유로라인’ 을 인수하여 2015. 1. 15.경 설립된 회사

채무자 : 채무자는 2012. 3.경 유로라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채권자의 설립과 함께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2. 28.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

2) 채권자 주장

채무자는 채권자의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의 영업실적을 채권자의 윈 서비스(Win-Sabis) 프로그램에서 내려받아 복사한 후 반출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채권자의 영업실적과 그에 포함되어 있는 선사 제시 운임 및 고객사에 대한 견적 가격(‘이 사건 정보’)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에도 채무자는 경쟁업체인 주성에 이직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 또는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주성에의 전직금지와 채권자 회사의 다른 임직원에게 대한 주성에의 전직 권유 등 금지를 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영업비밀 공개 및 사용 금지를 구한다.

3. 주요쟁점

- o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4. 판결요지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는 정보의 보유자가 스스로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내·외부인에게 영업비밀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① 채권자의 운송주선업의 특성상 채권자의 영업직원 및 사무직원 모두 이 사건 정보의 주된 요소인 선사의 운임 등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채권자는 적어도 이 사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라도 비밀로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어야 하는데 ②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할 목적으로 객관적·실질적·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③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영업비밀이라 보기는 어렵다.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위해 비밀관리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보의 보유자에게는 비밀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정보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당해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까지 보호하는 경우 정보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그러한 정보를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자로 하여금 무엇이 영업비밀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루거나 취득한 정보와 관련하여서도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내세워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정보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하게 되면, 직원들이 동종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업체에서 직원들을 고용하는 행위가 대부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게 된다. 따라서 비밀관리성이 충족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 서비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운송주선업체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위 프로그램 공급자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채권자의 직원들은 누구나 그 직급이나 담당업무에 관계없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를 제한 없이 검색할 수 있었고, 위 프로그램

에 입력된 정보에는 비밀성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없었으며, 그 내용을 따로 저장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위와 같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이용은, 채권자의 영업비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채권자의 영업비밀관리를 위한 용도로 기능하거나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및 정보보호서약서에 채권자의 영업비밀 누설금지 등 조항들은 비밀보호에 관한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정보를 비롯하여 비밀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다. 채무자가 퇴직 무렵 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에도 채권자의 업무 전반을 망라하는 추상적 내용이 비밀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비밀유지가 요구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특정할 기준을 찾을 수 없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침해된 영업비밀로서 주장하는 이 사건 정보는 채무자가 퇴직하던 2017. 12.말경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정보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를 구성하는 선사의 운임, 화주에 대한 계약가격 등 가격정보는 실제 운송주선을 시도하는 시기의 국내 및 국제적인 경제, 사회, 정치, 자연적 조건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 수시로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이 사건 정보가 일반적 가격정보가 아닌 채권자에게 특화된 정보라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언제나 위와 같은 조건에 부응하여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고용한 경쟁업체가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채권자와의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전직금지, 금지청구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고, 또한 부정하게 사용되었음에도, 그 보호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자 2018라20045 결정
사건명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A 주식회사
채무자, 상대방	B, C, 주식회사 D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항고기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5.자 2017카합80132 결정
영업비밀의 내용	콜라겐 제품에 관한 제품개발 자료, 제조 및 생산 관련 자료, 인·허가 관련 자료, 콜라겐 제조기술(바이오콜라겐 제조기술) 관련 자료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라목, 제10조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세포치료제 및 콜라겐을 이용한 재생의료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

채무자 B : 채권자 회사의 재생의학 사업부의 중앙연구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각종 콜라겐 제품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9. 8. 31.경 퇴사한 사람

채무자 C : 바이오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바이오 분야의 국내 영업 및 거래처·유관기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 31.경 퇴사한 사람

채무자 D사 : 의료기기 제조, 세포치료제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채무자 C가 설립된 회사

2) 채권자 주장

채권자의 이 사건 기술파일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기술파일에 포함된 영업비밀은 채권자의 특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공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공법이 최적화되기 위한 방법, 즉 최적화 조건으로서 세부적인 기술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파일을 부정 사용하여 채무자 제품을 제조하고 품목허가를 받음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는 바, 채권자는 이

사건 기술파일과 채무자 제품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주요쟁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해당 여부
- 영업비밀 부정사용 여부
- 영업비밀 보호기간 도과 여부

4. 판결요지

① 이 사건 기술파일에는 채권자만의 제조방법으로 보이는 이 사건 기술정보 및 그와 관련한 세부 실험 조건들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제품의 국내 품목허가와 관련된 시험성적서, 제조기록서 등 기술 및 품질에 관한 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직접 실험과 연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보유자인 채권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채권자는 이 사건 기술파일을 얻기 위해 수년 동안 상당한 양의 인적·물적 시설과 비용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의 경쟁업체나 후발업체가 이 사건 기술파일을 취득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비하여 상당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파일의 경제적 유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채권자는 보안규정 및 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였고, 임직원들에게 퇴직 후 2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퇴사하는 임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을 징구하고 있고, 채권자는 출입 통제를 위하여 지문인식 장치를 설치하였고, 통제 장소에는 등록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산상으로 출입 시간을 체크하였고, 임직원들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채권자 그룹웨어에 접속할 때는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이 사건 기술파일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기술파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당해 영업비밀이 관계된 영업활동에 어떻게 이용 또는 활용되었는지가 영업비밀 본래의 용법 및 속성, 관계된 영업활동의 내용, 진행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또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

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① 채무자 제품의 제조 공정은 채권자 제품과 달리 콜라겐 정제 과정에서 접선유동여과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중성화 염침전 및 원심분리가 아닌 무균염침전 및 압착과정을 거치고 있어 채권자 제품의 제조 공정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그 제조 공정 중 (a) 산처리 과정에서 ‘인산’을 사용하고 (b) 염침전 과정에서 염화나트륨의 농도를 초기 5몰(Mole)을 적용한 후 0.7몰을 적용하며 (c) 망을 통하여 침전물을 회수하는 등 채권자의 특징적인 제조 기술을 일부 채용하고 있는 점 ② 채무자 B는 채무자 D사의 명칭 및 로고 등을 사용하여 ‘공정관리 규정집’, ‘제품요약서’, ‘AH 시험방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문서들은 채권자의 것과 매우 유사하고, 특히 ‘AH 시험방법서’는 채권자의 ‘F 시험방법서’ 파일을 수정한 후 새 이름으로 저장함으로써 파일 속성의 ‘만든이’가 채권자의 대표이사 영문 성명인 ‘J’로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F 시험방법서’ 중 ‘하이드록시프롤린 분석’에 관한 자료(시약의 종류, 구입처, 보관조건 등)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들은 채무자 B에 의하여 유출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거나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① 채권자가 2003. 10.경부터 채무자 B가 이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한 2009. 8. 31.경까지 채권자 제품을 개발하였다면 이 사건 기술파일에 담긴 정보가 축적된 기간은 6년을 넘지는 않는다고 보이고 ② 채무자

B는 채권자에서 채권자 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연구·개발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콜라겐 제품에 관한 제조 기술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습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채권자에 비해 인적·물적 설비가 다소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자 제품을 개발한 기간 정도면 이 사건 기술파일을 참조하지 않고도 충분히 채무자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③ 채권자 특허의 특허명세서에는 위 (b), (c)를 제외한 (a), (d), (e), (f), (g)와 같은 일련의 기술정보가 모두 개시되어 있고, 위 (b), (c)는 이미 공개된 한국특허번호 AM(AN 출원), 유럽특허번호 EP AO(AP 공개), 미국특허번호 US AQ(AR 등록)의 특허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바, 이 사건 기술정보의 내용이 대부분 공지된 상태에서 선행 특허명세서에 이미 개시된 위 (b), (c)를 부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이므로, 채권자 특허가 모두 등록공고된 시점인 2015. 6. 26.경 이후에는 이 사건 기술정보의 대부분은 영업 비밀로서의 보호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기술파일 중 각종 인·허가 관련 자료들, 특히 국내 품목허가와 관련된 기술심사문서(시험 검사자료, 독성 시험, 안정성 시험, 성능 시험 등) 및 품질심사문서(품질경영계획서, 품질경영매뉴얼, 제조기록서, 시험기록서 등) 등은 2009. 8.경까지의 자료로서 그로부터 약 9년이 지난 현재에는 그 활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점 ⑤ 이 사건 기술파일이 유출된 이후부터 약 7년이 경과한 2016. 8.경까지 채무자 D사를 제외하고도 약 9개 회사가 채권자 제품과 같은 콜라겐사용 조직보충제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이와 같이 현재 다수의 회사가 아탈로콜라겐 및 이를 이용한 콜라겐 제품의 제조에 성공하고 있는 실정인 바, 위 회사별 제품의 품질 차이나 시장에서의 평가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보면, 경쟁자들이 콜라겐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9년을 넘는 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채권자는 채무자 B, C에 대하여 전직금지기간을 퇴직일로부터 각 2년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지기간을 위 전직금지기간을 훨씬 넘어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가 초래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술파일은 채무자 B가 퇴직하면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한 2009. 8. 31.경부터 9년이 지난 현재는 그 보호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기술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들에 대하여 본안 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만족적 가처분을 명할 정도로 그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영업비밀 부정사용, 영업비밀 보호기간, 콜라겐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은 인용하였으나, 경업금지 가처분은 기각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6.자 2018카합50314 결정
사건명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A
채무자	B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일부 인용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및 내부자료, 개발계획, 비용계산방법 및 분석자료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채무자 : 채권자의 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7. 2.경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경쟁업체인 C의 ‘Vice President’ 직위에 있고, 2018. 8. 1.부터는 경쟁업체 H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채권자 주장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근로계약상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약정,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충실의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을 갖고,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서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을 갖는데, 채무자가 위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C 등 회사들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C 등 회사들에게 채권자의 영업비밀인 각 정보를 제공하면서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주요쟁점

- 근로계약에 따른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4. 판결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채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고(채무자의 성명이 계약내용 등과 함께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을 뿐이다),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그 계약서 내용대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의 소명자료가 될 수 없고, 채무자가 그 무렵부터 채권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액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약정까지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구두에 의한 약정 체결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외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개정전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를 완화한 것인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되, 비밀 관리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가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요건이 완화된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보는 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작성자 및 보유자인 채권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②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할 경우 거래제시, 가격협상, 특정업체를 상대로 한 마케팅이나 거래조건 협상, 고객의 수요 내지 성향 파악 등에 관하여 경쟁업체에 비해 우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채권자의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한다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임과 동시에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③ 채권자의 조직은 사업부, 개발팀, 디자인팀으로 나뉘어져 있고, 채무자는 사업부의 차상위 직책인 본부장(채무자의 상급자는 대표이사 1명 뿐이다)인데, 이 사건 정보에 채권자의 직원들 중 사업부의 4명(대표이사, 본부장, 실장, 차장)만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고, 사업부의 팀장이나 개발팀, 디자인팀 소속 직

원들은 접근할 수 없었고, 채권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업부의 실장, 차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상 비밀 유지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채권자는 이 사건 정보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가 현재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C, H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C, D, E, F, G의 임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 중에는 이 사건 정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콘텐츠개발에 관한 제안서, 계약서, 기획안, 견적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 바, 채무자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공개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채권자와 C 등 회사들의 영업 내용 및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침해금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경업금지에 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가상현실 콘텐츠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C 등 회사들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정보를 보호할 수 없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영업비밀 침해금지, 경업금지, 가상현실 콘텐츠

33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의 기산일을 판단하여 전직금지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7.자 2018카합50378 결정
사건명	전직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A 주식회사
채무자	B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신청기각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
적용법조	-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채무자 :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SRAM1팀, Flash PA팀, Flash TD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7. Flash PA팀 연구임원(상무)이 되었고, 이후 협력사경영자문단 자문역으로 위촉되었다가, 퇴사한 후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

2) 채권자 주장

채무자는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채권자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퇴직 후 2년 동안 채권자의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퇴직일인 2017. 4. 5.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채권자의 주요 경쟁업체에 해당하는 C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바, 이에 채권자는 전직금지약정에 기한 전직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주요쟁점

-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의 기산점

4. 판결요지

채권자는 ‘채무자는 2014. 12. 채권자의 임원 직위에서 물러나 자문역의 지위로 보직 및 부서가 변경된 것일 뿐 퇴직한 것이 아니고 2017. 4. 5. 비로소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채무자의 전직금지의무의 기산일은 2017. 4. 5.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2017. 4. 5. 비로소 퇴직하여 채무자의 전직금지의무의 기산일이 2017. 4. 5.임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의무의 기산일은 2014. 12. 3.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채무자의 전직금지기간은 2014. 12.경부터 2년이 경과한 2016. 12.경 이미 만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자가 2019. 4. 5.까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2014. 12. 작성된 이 사건 서약서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를 퇴직하면서 영업비밀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본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문언해석상 위 서약서의 작성시점에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로부터 퇴직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 그때로부터 2년간 전직금지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채무자가 2014. 12. 7.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의 내역서에도 ‘퇴임일 : 2014. 12. 3.’ 로 기재되어 있다.

③ i) 1차 자문역 위촉 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자문역은 비상근인 점 ii) 실제로 채무자는 2차 자문역 위촉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사무실로 출근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iii) 채권자가 채무자를 자문역으로 위촉하면서 교부한 안내문(이 사건 서약서 역시 위 안내문과 함께 제공된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다)에는 재임기념품 지급, ‘D모임’ 회원가입 안내, ‘E센터’ 및 F센터 안내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 ‘D모임’ 은 채무자의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친목모임이며, ‘E센터’ 는 취업, 창업 등 경력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취업을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 점 iv) 채무자가 자문역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받은 보수의 규모, 처우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 대한 자문역 위촉은 실질적으로 이른바 퇴직 후 프로그램 또는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은 채 연속적으로 재직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④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의 자문역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채권자의 기술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채권자의 기술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는 한다. 그러나 나아가 설령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장처럼 경쟁업체로 전직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기술정보를 열람·복사하는 등 채권자에 대해 배임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전직금지약정, 전직금지기간 기산일, 자문역 위촉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전직금지기간이 장기이고, 전직금지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 4. 16.자 2019라20165 결정
사건명	가처분의이
채권자, 상대방	A 주식회사
채무자, 항고인	B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항고 인용 (가처분을 인가한 제1심 결정 및 가처분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7.자 2018카합10436 결정
영업비밀의 내용	C 메모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기술, 향후 개발 계획 정보들
적용법조	-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 회사

채무자 : DS(Device Solution)부문 메모리사업부의 C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검증 수석 연구원, D개발팀의 수석엔지니어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31.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8. 4. 2. 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임원(상무)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채권자 주장

채무자는 퇴직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E 주식회사에 입사함으로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영업상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주요쟁점

-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금지기간의 적정성 여부

o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지급 여부

4. 판결요지

① 채권자 회사는 2003년 C 제품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이래 현재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시장 점유율 40% 내외)를 차지해 온 점 ② C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의 제품이므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 내는 동작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이들 기술 중 일부 내용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 제품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후발업체인 E 주식회사는 C 제품에서 기술력이 뒤처지는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의 C 제품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기술과 향후 개발 계획 정보들을 전달받을 경우 C 제품 분야에서 채권자 회사와 동등한 사업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 기간 단축되는 반면, 채권자 회사는 그에 관한 경쟁력이 훼손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에게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업 제한의 기간 및 대상 직종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이어야** 한다.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은 채무자의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2년 동안 채무자의 전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① 반도체 산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는 달리 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술이 양산되는 점 ② C 메모리 분야에서 채권자 회사와 후발업체인 E 주식회사와의 **기술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채권자 주장과 같이 2년 이상의 격차가 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이라는 전업금지기간은 채권자가 갖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보인다.

전업금지 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직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① **특별 인센티브는** 그 지급받은 때로부터 2년간 계속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반환이 면제되나 그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잔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약정서에 기재된 것처럼 채무자가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돈에 불과할 뿐, 2년간 전직을 제약하는 것에 대한 **전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고** ②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12년간 근무하면서 그에 상응한 연봉을 지급받고,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 제공한 노무의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것이거나 해외 파견되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들**

어 채무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여 전직금지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③ 나아가,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퇴직절차를 만류하면서 퇴직절차를 이유 없이 지연하자 법에 따른 퇴직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퇴직하게 된 것이고, 채무자에게 반드시 채권자와 사이에 전직금지 대가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채무자는 퇴사 후 바로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E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 퇴사 후 개인사업을 준비하다 약 1년이 지난 2018. 4. 2. 경쟁업체인 E 주식회사에 취업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전직금지의 대가를 미지급하게 된 것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경쟁회사로의 전직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인 퇴직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업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채권자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나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일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전업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반도체 기술 분야가 빠른 기술발전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업금지기간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이는 바, 늦어도 채무자의 퇴직일로부터 1년 10개월 이상이 지난 이 사건 항고심 결정일 현재는 더 이상 채권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전직금지약정, 전직금지기간, 전직금지대가, 메모리 반도체

3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 10. 30.자 2019카합10295 결정
사건명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A
채무자	B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일부 인용 (50,000,000원)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업소용 튀김기 ‘H’ 와 ‘I’ 에 대한 각 설계도면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가목, 제10조 제1항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냉열기기 제조업, 주방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채무자 : 채권자 회사에서 해외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17. 퇴사하고, 그 후 C라는 명칭으로 주방기기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 채권자 주장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 퇴사시 채권자의 영업비밀인 채권자 설계도면을 불법으로 반출하여, 위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채무자의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이에 기하여 채무자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또는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채권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기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주요쟁점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판단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

4. 판결요지

① 채권자 설계도면은 도면을 작성하는 설계팀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팀 이외의 PC에는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직원의 컴퓨터도 비밀번호 등의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 온 점 ② 채권자는 개발 도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직원에게 업무상 비밀준수 약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③ 한편, 비밀유지 및 관리 여부는 비밀관리 기술 및 장비의 시기적인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 바, 종전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이 요구되었으나, 2015. 1. 28.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되기만 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 정도가 완화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채권자 설계도면을 비밀로 유지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 채권자의 설계도면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관리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를 정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는바(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한 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① 채권자 설계도면과 채무자 설계도면은 제품명·모델명, 도면의 배열(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구성 및 치수선 배치 방식, 도면 제작일, 재질, 규격, 처리방식, 수량, NOTE 내용, 도면 검토자(L), 도면의 수정을 기록하는 날짜와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무자는, 채무자 실시제품을 채권자 설계도면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채무자 설계도면은 채무자 실시제품에 사용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채무자는 채무자 실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어떠한 연구나 투자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채무자 실시제품에 대한 설계도면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영업팀에서 근무했을 뿐 튀김기 제작 경험은 없었고, 채무자 실시제품과 같은 영업용 튀김기를 새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

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채무자는 2018. 7.경 업소용 튀김기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2018. 9.경 곧바로 인도네시아 고객에게 위 제품을 납품했다는 것인 바, 채무자가 채권자 설계도면의 기술상 정보를 참고하지 아니하고는 위와 같은 짧은 기간 안에 채무자 실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권자 설계도면을 취득하였고, 채무자 실시제품을 개발하는데 위 설계도면을 직접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그 연구·개발 과정에서 위 설계도면을 활용함으로써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개념 구성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채무자가 영업비밀인 채권자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채무자 실시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 사용, 업소용 튀김기

36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4.자 2019카합5283 결정
사건명	경업금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A
채무자	B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일부 인용 (50,000,000원)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메뉴, 원/부재료, 운영 시스템, 디자인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E’ 라는 상호로 돈가스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법인

채무자 : 채무자는 채권자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해 오다가, 2019. 3. 12. 그 기간이 만료되자, ‘F’ 로 상호를 변경함과 아울러, 인테리어, 메뉴 등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한 채 돈가스 전문점 영업을 계속 중인 사람

2) 채권자 주장

‘E’ 의 메뉴, 원/부재료, 운영 시스템, 디자인 등은 채권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연구개발 및 노력 등을 투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 노하우로서, 채무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계약의 존속 중은 물론 계약해지 및 종료 후에도 채무자 및 채무자가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장소에서 1년간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F’ 라는 상호로 채권자와 동일 업종 및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바, 채권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한다.

3. 주요쟁점

-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4. 판결요지

① 채권자는 2018년 기준 전국에 가맹점 32개를 거느린 가맹업체로서, 현재 국내 3대 유통 업체에 모두 진출한 상태인 사실 ② 채권자의 전체 매출 중 4.36%가 판촉비로 사용되고 있고, 블로그 15,000개 이상에서 상호가 검색될 만큼 지명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맹비 및 교육비를 면제해주고,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기간 중에 채무자의 영업지역도 보장해주는 등 채무자의 독점적 가맹점 영업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실 ④ 채무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위 소명사실과 같이 동일한 장소인 이 사건 호실에서 인테리어, 메뉴 등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한 채 동종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⑤ 일부 손님은 채무자의 현재 점포를 채권자의 가맹점으로 착각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사실 ⑥ 또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경업금지 기간은 1년으로서, 채권자가 위와 같이 해당 상호의 지명도 유지와 판촉, 가맹점 영업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쏟은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조항은 ‘채무자 및 채무자가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장소에서’ 경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문언의 전후 맥락이나 경업금지를 통하여 보호될 채권자 및 가맹점들의 영업상 이익의 범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그대로 하는 경업도 당연히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사업장의 변경없이 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동종 영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더더욱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가맹계약, 경업금지, 돈가스 전문점

37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도 인용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가합4681 판결
사건명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C, 주식회사 D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일부인용 (손해배상액 44,467,533원 전부인용)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세라믹 컬러 제품 제조를 위한 유리 프리트, 무기 착색안료, 유기 비히클 성분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 (유리프리트 23종, 유기 비히클 28종 및 이를 조합한 세라믹 컬러 144종)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가목 및 라목, 제10조, 제14조의2 제5항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세라믹 컬러신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 기업 최초로 세라믹 컬러를 독자 개발하고 상용 세라믹 컬러를 생산·판매하고 있음

피고 B :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피고 D사에 입사 (퇴사시기 : 2015. 5. 31.)

피고 C :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피고 D사에 입사 (퇴사시기 : 2014. 9. 21.)

피고 D사 : 전기, 전자,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업, 나노 신소재 개발·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원고 주장

피고 B는 원고 연구소 및 영업팀 과장에 이르기까지 14년 이상, 피고 C는 영업팀 대리가 될 때까지 10년 이상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D사는 피고 B, 피고 C가 입사 전 세라믹 컬러 관련 영업을 한 적이 없다가 피고 B 등이 입사한 후 불과 2~3개월여 만에 세라믹 컬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 바,

이는 피고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사용·공개한 것이므로, 정보의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등의 폐기, 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및 그 침해행위에 따른 판매 감소로 인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주요쟁점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인정여부
-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침해금지기간
- 손해배상액 산정근거

4. 판결요지

원고는 1974년 창업한 이래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세라믹 컬러를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하는 사실상 유일한 국내 업체인 점, 피고 D사는 2012년 친환경 페인트를 개발하였고, 무기 항균제품, 기능성 복합세라믹 필터, 기능성 복합수지사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 2015년 이전까지 세라믹 컬러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 C에 이어 피고 B가 입사한 후 불과 2~3개월여 만에 세라믹 컬러 관련 영업을 개시한 점, 피고 D사는 세라믹 컬러 제품을 단기간 내에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였다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선발주자로서의 이익과 규모의 경제를 누리면서도 계속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때문에 개별 제품들에 대하여 일일이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오랜 기간 관련정보를 영업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영업비밀은 특허와 달리 절대적 의미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다, 원고의 시장지배력이 원고가 가진 수치정보(데이터베이스)를 경쟁업체와도 나누어 써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후 10여 년 후에 원고를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약관계 및 신의칙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원고 직원이라도 연구소 직원이 아니면 위 연구소 내 컴퓨터의 자료에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 피고 C도 원고가 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자신들의 근무경력과 직책,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 등 여러 장치들에 의하여 조성된 원고 회사의 분위기,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위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그 보유자인 원고에 의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세라믹 컬러 제품을 제조·판매한 적이 없었던 피고 D사가 피고 B, 피고 C 입사 후 2~3개월여 만에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여 세라믹 컬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의 기술정보,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 D사가 세라믹 컬러 제품을 단기간 내에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하였다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 D사가 판매한 세라믹 컬러 제품의 성분 구성이 원고 제품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나타내고, 피고 D사가 세라믹 컬러 영업을 함에 있어서 원고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기준이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들은 원고 회사에 의해 보유되던 이 사건 정보를 참조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개발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하였으며, 거래처 정보를 판매활동에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이를 개발 내지 개량하는 데 2년에서 40년이 걸린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피고 D사는 종래 세라믹 컬러 관련 영업을 하지 않다가 위 기술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비로소 관련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사실상 세라믹 컬러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기술적 차별성뿐 아니라 매우 앞선 시기에 최초로 세라믹 컬러 제품의 국산화를 시도한 선발주자로서의 이익과 규모의 경제 등 시장의 특수성이 만든 진입장벽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보유한 세라믹 컬러 제품 중에는 피고 B가 원고 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연구개발한 것도 있는 점, 피고 들은 금지기간 만료 전이라도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를 통하여 세라믹 컬러 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그리하여 어떤 기술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의 사용 및 공개 금지기간은 피고 B의 원고 퇴사일로부터 5년 후인 2020. 5. 31.까지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은 원고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많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손해액을 엄밀하게 계산할 경우 이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원고 청구금액 전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침해금지, 폐기, 세라믹

영업비밀성은 부정하였으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아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4가합1908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C, 주식회사 D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일부인용 (90,000,000원)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제품의 레시피를 포함한 코팅제 등 제품들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연구 파일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자동차용 E 코팅제를 포함한 화학제품 제조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하는 회사

피고 B, 피고 C :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 (퇴사시기 : 2008. 9. 30.)

피고 D사 : 피고 B와 피고 C가 설립한 회사로, 자동차용 E 코팅제를 생산하여 기존에 원고로부터 자동차용 E 코팅제를 납품받아 오던 G 주식회사에 자동차용 E 코팅제를 납품하는 회사

2) 원고 주장

피고 B, 피고 C는 원고에서 퇴사하더라도 원고에 근무 중 지득하게 된 영업비밀 등 자료를 유출하거나 이를 통해 스스로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인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기술을 원고를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후 이를 활용하여 피고 D사를 설립하고 자동차용 E 코팅제를 생산하였다. 설령, 자동차용 E 코팅제 제조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기술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

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 B와 피고 C가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무단 반출한 자동차용 E 코팅제 기술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한 자동차용 E 코팅제를 원고의 기존 거래처인 G에 저가로 납품함으로써 원고가 G에 더 이상 자동차용 E 코팅제를 납품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909,484,015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손해 중 일부로서 원고에게 101,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주요쟁점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여부
-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 산정근거

4.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 B, 피고 C를 비롯한 연구원들이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제조기술 자료를 원고 회사 내부의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도록 하면서, 컴퓨터에 보안 암호를 걸도록 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누구든지 컴퓨터를 켜고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제조기술 자료를 열람 및 복사 할 수 있도록 방치했던 점, 원고가 연구원들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제조기술 자료 파일을 관리할 보안책임자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도 않았던 점, 원고가 사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연구자료 파일이나 연구노트 등에 대외비나 비밀자료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안의 필요성에 따라 각 정보가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제조기술 자료는 비밀유지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제조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B, 피고 C는 원고의 사규 규정 및 연구개발업무 지침, 서약서에 따라 재직 중 원고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연구자료들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고, 퇴사 시에도 영업상 주요 자산인 연구자료들을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레시피를 포함한 기술자료들을 원고를 퇴사할 당시 향후 개인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무단 반출한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레시피를 이용하여 자동차용 E 코팅제 샘플을 만들고, 피고들이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레시피를 분석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 샘플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레시피를 활용하여 피고 D사의 자동차용 E 코팅제를 생산한 후 이를 원고의 거래처인 G에 저가로 납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 피고 C가 무단 반출한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가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음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제조기술은 원고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 피고 C가 원고의 주요한 자산인 자동차용 E 코팅제 기술 자료들을 무단 반출한 행위 및 피고들이 위와 같이 무단 반출한 레시피를 활용하여 피고 회사의 자동차용 E 코팅제를 제작·판매한 업무상 배임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6700, 671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성질상 매우 곤란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가 2013. 2. 28. 부터 2017. 1. 24.까지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G에 납품한 자동차용 E 코팅제 제품의 물품대금 합계 4,512,920,750원의 2% 상당액인 90,00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비밀관리성, 영업상 주요 자산, 업무상 배임, 불법행위

39

고용계약상 영업비밀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성을 모두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10859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일부인용 (285,647,935원)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C 호스의 생산 기술, 제품 사양과 원가 정보, 거래처 관련 정보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C 호스(유류 등 화학물질 이송에 사용되는 복합호스)를 비롯하여 선박·석유화학 공장에서 사용되는 특수호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

피고 B : 2008. 10. 27.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한 뒤 2011. 4. 30. 퇴사할 때까지 원고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

2) 원고 주장

원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C 호스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춘 회사인데, 피고는 원고의 영업부장이자 영업비밀에 관한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입사 및 퇴직 시 원고와 사이에 ‘향후 원고의 영업비밀을 누설·이용하지 아니하고 퇴직 후 5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원고의 동종업체인 F 등에 입사하여 C 호스의 생산 기술, 제품 사양과 원가 정보, 거래처 관련 정보 등 위 호스와 관련된 원고의 영업비밀을 F 등에 누설하고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F 등이 C 호스를 자체적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

니 이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나아가 피고는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누설·이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이를 예비적으로 구한다.

3. 주요쟁점

- 고용계약상 영업비밀 인정여부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인정여부
- 손해배상액의 범위

4. 판결요지

원고의 보안관리지침은 영업비밀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면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회사의 모든 정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직접 영업활동에 이용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경쟁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 등을 영업비밀로 규정한 점, 원고는 다년간의 영업과정에서 C 호스를 자체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력과 정보는 물론 위 호스의 제품 단가 및 부품·자재단가, 거래처 및 영업망에 관한 정보를 수집·확보하고서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사건 파일 내 자료나 정보도 위와 같이 원고의 비밀로 유지되는 자료였던 점, C 호스는 그 제작·생산에 전문적인 설비와 기술, 경험 등이 필요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는 원고만이 이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파일에 포함된 거래처 관련 정보는 원고가 수년에 걸쳐 거래처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축적한 유기적인 일체로서의 자료여서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가진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보안관리지침상 영업비밀로 별도로 명시된 ‘원고와 거래하는 일체의 업체 정보 및 연락처’에도 해당되는 점, 위와 같은 정보·자료들은 모두 C 호스의 제작·생산수단과 영업망 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경쟁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거나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자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일에 든 각종 자료나 정보는 원·피고 간 고용계약상의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피고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고의 동종업체인 F에 입사한 뒤,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파일을 이용하여 F로 하여금 별다른 시행착오 없이 손쉽게 I와의 협상을 진행하여 C 호스 부품 조립·판매에 필요한 설비와 영업망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파일 중 C 호스 제품이나 부품 등의 단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C 호스 조립에 필요한 설비나 부품 등을 저가에 구입하여 비용 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파일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영업부장이자 영업비밀 총괄담당이었던 자로서 퇴직 후에도 이 사건 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동종 업체인 F에 입사하여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 파일을 사용하거나 F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 원고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으며, 이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하는 수액의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 바, 주위적 청구원인에 기하여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의 액수가 예비적 청구원인에 기한 지연손해금 액수보다 소액이므로(손해배상액 자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도 판단하였음

원고는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D와의 거래가 단절되었고, 기존 거래처에 일정 기간 C 호스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으며, 거래관계가 유지된 업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유지되었을 금액보다 하락한 단가로 C 호스를 납품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원고의 위와 같은 매출감소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상당(일실영업이익)이다.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호스

40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준거법으로 볼 수 있는지 설시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4가합532786(본소), 2016가합571853(반소)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청구 등(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반소원고), C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본소, 반소 모두 기각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탈모방지 제품의 임상자료 및 셀리움계량적 공식 등 자료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라목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스위스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탈모방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탈모방지의 효능을 가진 ‘D’ 라는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

피고 B사 : 신약개발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E의 자회사로서, 대리점사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C : 소외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소외 E와 피고 B의 대표이사였음

2) 원고 주장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글로벌데이몬파마의 증개로 피고 B사와 사이에 피고 B사에게 원고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B사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 소외 E가 탈모치료제인 J을 개발 중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소외 E에게 공개하여 J의 개발 및 임상시험 승인절차에 사용하게 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 B사에게 J의 개발 중단과 J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사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피고 B사의 행위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 유지되었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매출순이익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납 받은 제품인도비용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이 기재된 자료에 대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외 E에게 공개하여 J의 개발 및 임상시험 승인절차에 사용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함으로써 개발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제품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해 반소원고인 피고 B사는 피고 B사의 계약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적법한 근거 없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후 한화제약에게 원고 제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 B사로부터 선납받은 제품인도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유지되었더라면 피고 B사가 1차 판매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매출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3. 주요쟁점

- 섭외사건에서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준거법
- 섭외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판결요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 B사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본소 중 피고 B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B사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 청구이므로, 이 사건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고,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B사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준거법을 스위스법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준거법 지정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스위스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원고와 피고 B사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하여 로잔상업재판소에 회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 B사가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한 변론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겨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았음

한편, 국제사법 제7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

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그 적용을 주장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제 규정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스위스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더라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

※ 이 사건 대리점계약 파기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원고인 피고 B사의 청구는 상사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함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부정경쟁방지법, 준거법, 국제사법

4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별도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기간은 정하지 않은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4나2011824
사건명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등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C, D, E, F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일부 인용 (50,000,000원)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18. 선고 2012가합1413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RIA 솔루션과 관련한 데이터 구조, 서버 소스코드, 레포트 툴 소스코드, 레포트 컴포넌트 소스코드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라목 및 마목,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 2 제5항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기업의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방식에 기반한 저작도구[솔루션(solution)] 프로그램을 주로 판매

피고 B사 :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C : 원고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9. 30. 퇴사한 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 설립

피고 D : 원고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10. 5. 31.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람

피고 E : 원고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09. 11. 17.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람

피고 F : 원고의 연구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람

2) 원고 주장

피고 퇴사자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피고 B사는 이와 같이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O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금지 및 폐기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설령 이 사건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정보들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들의 사용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 퇴사자들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3. 주요쟁점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제품 판매금지의 각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4. 판결요지

원고는 문서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사내에서 시행하였고, 문서의 종류를 기밀문서, 중요문서, 일반문서로 나누어 관리하는 규정을 새로이 마련한 점, 피고 퇴사자들은 퇴사 직전 원고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원고 제품의 제조기술, 설계, 기획개발, 실험데이터들에 관한 정보 등 원고의 영업이나 기술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각서에 서명하여 원고에 제출하였던 점, 원고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09년 중소기업 보안시스템구축지원 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위 사업에의 참여를 신청한 당시 원고는 보안규정이나 보안담당자는 두고 있지 않았으나, 회사의 주요 정보는 직원들이 볼 수 없었으며, 임직원의 업무에 기밀사항의 보호 등 보안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편 문서나 파일 등의 정보자산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분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보안감사도 정기적이지는 않았으나 필요에 따라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안지원사업이 시정 조치를 거쳐 완료됨에 따라 원고는 각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소스코드나 기타 자료를 서버에 저장하여 서버 내에서 작업을 행하도록 하고, 특히 소스코드의 경우 수정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SVN 서버를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에게만 해당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자료의 외부 반출시에는 본부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파일공유 및 보안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들은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권의 존부를 심리,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문에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영업비밀 요건의 상실이 확실시되는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금지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2009. 3. 16.자 2008마1087결정, 2014. 3. 13. 선고 2011다17557 판결 등 참조), 금지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더 이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당사자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영업비밀은 현재도 여전히 그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피고 퇴사자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7년~8년)이 경과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영업비밀의 침해금지 및 제품 판매금지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이 사건은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영업비밀 요건의 상실이 확실시 된다는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별도로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분안, 손해배상, 비밀관리성, 침해행위 금지기간, RIA 솔루션

역설계를 통해 취득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합4337 판결
사건명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
원고	희생법인 극동일렉콤 주식회사
피고	보영에이치에스 주식회사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청구기각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선박조명등 제조를 위한 설계도면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가목, 나목, 제10조, 제14조의2 제5항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선박용 조명등기구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피고 : 원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의 재정 악화로 법정관리절차가 진행 중일 무렵 원고를 퇴사하고 입사한 회사로, 이 무렵부터 선박조명등의 제조, 판매를 시작함

2)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A에 위탁 보관한 선박조명등 제조를 위한 금형을 불법 반출하여 입수하고, 원고를 퇴사한 기술 인력이 피고에 입사한 후 원고의 선박조명등 제조를 위한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원고의 선박조명등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으로 피고 제품의 생산 등 금지와 폐기를 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원고가 통상 선박조명등을 납품할 경우의 영업이익인 총 매출의 30%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피고의 영업이익 3,8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3. 주요쟁점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 역설계를 통해 취득한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판결요지

해당 자료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관리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실제 역설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역설계가 정당한 기술정보의 획득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정보를 부정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역설계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중 그 기술 자체가 단순하고, 이를 구현한 제품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그 기술정보가 해당 기술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몇 시간 혹은 며칠 안에 역설계를 통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도의 것(readily ascertainable by proper means)이라면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원고의 설계도면은 이른바 ‘벤더도면’으로 제품 개개의 부품 도면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도면에 해당하고, 물품 제작을 발주하는 업체(선주사)에서 요구하는 조명등 기구의 규격과 형태가 상당부분 유사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의 카탈로그에는 선박조명등이 설계도면 형태로 그려져 있고 규격 및 부품, 치수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바, 이 도면을 통해 선박조명등의 형상을 알 수 있고 각 구성부분의 수치도 확인할 수 있는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카탈로그가 있으면 설계도면과 기술인력이 뒷받침되는 경우 원고 법인의 선박조명등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인 바, 원고의 퇴사인력 중 설계도면 작성에 참여한 인력이 다수 피고에 입사한 점도 피고 제품 및 원고 제품의 유사성의 주된 요인인 점, 위와 같은 기술인력과 설계 프로그램, 카탈로그 및 제품 분해 등에 의하여 원고 법인의 선박조명등 형상 및 치수를 손쉽게 역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법인의 설계도면은 그 중 일부가 카탈로그의 형태로 관련자에게 공개됨으로써 그 전체로서의 구체적인 기술정보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공개된 자료에 의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비공지성, 역설계, 선박용 조명등기구

4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에 적용되는 법리가 사인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합559836 판결
사건명	경업금지 등 청구
원고	A
피고	B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청구기각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
적용법조	-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C' 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을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 단기간 입점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고 명품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피고 : 원고와 친구 사이

2) 원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중고 명품을 조달해오면 원고가 섭외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피고가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에서 판매에 소요된 경비, 수수료 및 순이익의 3.3%를 공제한 정산금의 50%를 피고가 분배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21조(경업금지)에 따라 2020. 2. 15.까지 대한민국에서 원고와 중고 명품 판매·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2. 21. I를 설립하여 L 주식회사와 중고 명품 거래를 함으로써 위 의무를 위반하였고, 2017. 12. 11. I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여자친구를 통하여 여전히 중고 명품 거래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경업행위의 금지 및 간접강제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192,205,342원(=2016년 원고 매출액의 10%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주요쟁점

- o 사인 사이의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4. 판결요지

위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에 적용되는 법리이기는 하나, 사인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효과의 측면에서는 동일하므로, 사인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온라인 카페나 쇼핑몰, 오프라인 중고 명품 매장을 통하여 중고 명품을 공수하고, 온라인 명품 관련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공개 포털에 공개된 진품 감정방법으로 중고 명품의 진품 여부를 판정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일반인에게 알려진 정보로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기술이나 정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기술이나 노하우, 자료 등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사실상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자신이 섭외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고 명품을 판매하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가 공급한 중고 명품의 판매대금에서 50%의 수익을 배분받는 것인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중고 명품 공급 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고, 그 판매 또한 피고가 직접 하고 있으며, 중고 명품 공급상 지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부담하는 반면,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기술이나 정보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피고의 지위는 매우 열세한 점, 이 사건 계약기간은 1년임에 반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경업금지기간은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3년으로 지나치게 장기이고, 경업금지의무 부담에 따른 별도의 보상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사건 계약은 약 3개월 정도만 유지되었다)이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공급한 중고 명품의 상표나 품목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원고와 중고 명품 판매·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가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된다고 주장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범위와 상표, 중고 상품 품목이 매우 광범위하여, 피고의 직업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원고에 비하여 열세적 지위에 있는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할 뿐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원고는 명품 감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 고정적인 매장 임대료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고 명품을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 단기간 입점하여 판매하는 영업 방식을 중고 명품업계에서 최초로 고안한 점 등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경업금지, 간접강제, 중고 명품

영업비밀 침해로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집행한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가합52136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코세스
피고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청구기각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레이저 드릴링 장비, 레이저 마킹 장비, 디캡 장비,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의 각 소스코드 등
적용법조	-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

피고 :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

※ 사건의 경과

- 피고의 E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A, B, C, D는 2009. 4. 1.경부터 2009. 7. 1.경까지 사이에 원고로 전직
- 그 과정에서 A 등은 ① 레이저 드릴링 장비 ② 레이저 마킹 장비, ③ 디캡 장비, ④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와 관련된 기술정보 문서파일, 그 정보를 구현한 소스 프로그램, 위 소스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로 구성된 프로그램 파일 등을 피고의 허락없이 복사하여 가져나옴
- 피고는 원고와 A 등이 원고의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A 등을 상대로 그 손해 중 5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458호)
- 제1심 법원은 원고 및 A 등은 각자 피고에게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118,841,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4나4592호), 항소심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기술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원고 및 A 등이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손해액은 3,000만원으로 인정하여, ‘원고 및 A 등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 한편, 피고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가 삼성전자에 대하여 반도체장비 등의 거래로 인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51억 2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2757호)
- 삼성전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3806호로 최초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 있는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권 5,098,651,200원을 집행공탁함
- 원고는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명한 손해배상액과 그 지연손해금 합계액인 38,247,946원을 변제공탁하여 이를 완제한 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카합32), 민사사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자, 위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됨

2) 원고 주장

민사사건의 결과 피고의 정당한 피보전채권액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는 영업비밀의 가치와 이로 인한 손해액을 과장하여 최초 가압류를 기준으로 51억 2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그 액수는 873,733,981원에 이르고, 피고가 최초 가압류 집행을 하기 전까지 원고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회사였는데,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로 거액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면서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등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신용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1,276,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요쟁점

- o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집행한 가압류의 부당성 여부

4. 판결요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관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제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반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신청에 의해 원고가 삼성전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에 청구금액 51억 200원의 가압류가 집행되었는데, 그 후 본안소송인 민사사건 제2심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제1항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안사건인 민사사건에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고, 이에 민사사건 제1심 및 항소심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며, 제1심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4,118,841,283원에 이른 점, 비록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손해액을 3,000만 원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항소심이 제1심이 인정한 손해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피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① 이 사건 원고 장비의 가치에 대한 피고 영업비밀의 기여도 ②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삼성전자에 레이저 드릴링 장치를 납품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인과관계) ③ 침해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관한 판단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으로, 이는 주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최초 가압류 신청 당시 그 피보전권리인 약 5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법원은 위와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가압류 집행, 고의·과실 추정

45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 해액으로 인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2가합54082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지)
원고	한국가스공사
피고	주식회사 엘에스, 엘지전자 주식회사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일부 인용 (75,866,024원)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가스엔진 구동 열펌프(GHP)용 엔진 선정 및 천연가스 연료 공급장치 개발 관련 기술, 엔진 및 GHP용 시스템 제어 관련 기술, 방진 관련 기술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라목, 제11조, 제14조의2 제3항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

피고 엘에스 : 전력송변전, 배전 및 통신을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

피고 엘지전자 : 전자제품 생산을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엘에스와 사이에 2002. 10. 14.부터 2007. 10. 14.까지 5년간 원고가 피고 엘에스에게 원고의 영업비밀인 가스엔진 구동 열펌프(GHP) 제작에 관한 기술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내용의 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GHP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한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GHP 제품을 판매하여 올린 매출액 합계 5,791,299,608원의 2%

상당인 115,825,992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엘에스는 이 사건 GHP 제품 등을 포함하는 기계·부품의 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 회사인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물적 분할을 한 후, 엘에스엠트론과 함께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2007. 10. 15.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5,791,299,608원 상당의 이 사건 GHP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엘에스엠트론은 2011. 3. 10. 피고 엘지전자와 사이에 이 사건 GHP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등에 관련된 공조사업 부분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 부분에 관한 영업 일체를 피고 엘지전자에 포괄적으로 양도함

3. 주요쟁점

-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4. 판결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무렵 및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GHP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위 기술이 영업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어 온 점,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이루어진 감정 결과 비로소 이 사건 GHP 제품에 이 사건 GHP 기술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점, 따라서 원고로서도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기는 빨라야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GHP 제품에 이 사건 GHP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가 회신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제3항은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영업비밀에 대한 통상 실시료 등을 가리키는 것인 바,

① 이 사건 GHP 기술에 대한 통상의 실시료 상당액은 ‘이 사건 GHP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한 GHP 제품의 매출액의 2%’ 이고 ② 피고 등이 2007. 10. 15.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GHP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은 5,791,299,608원이며 ③ 이 사건 GHP 기술 중 이 사건 GHP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비중은 65.5%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피고 등의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866,024원(= 침해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 5,791,299,608원 × 2% × 이 사건 GHP 기술 중 이 사건 GHP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비중 65.5%)이 된

다.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통상 실시료, 가스엔진 구동 열펌프(GHP)

46

‘합리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도록 한 개정 부정 경쟁 방지법의 적용시점을 판시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9. 3. 14. 선고 2017나54008 판결
사건명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항소기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5가합44659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진공식품냉각기에 관한 전체적인 설비의 배치와 연결, 개별 구성품의 세부 형상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정보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냉열응용기기 및 냉열기기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 : 1999. 6. 1. 원고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07. 5. 22. 퇴사하였고, 2009. 9. 1.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4. 26. 퇴사한 후, 2011. 12. 19. J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4. 7.경부터 진공냉각기를 제조·판매하고 있음

2) 원고 주장

피고는 2011.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진공식품냉각기 및 그 각 부품들의 제조방법과 도면(이하 ‘이 사건 제조방법 및 도면’)을 기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본인의 영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피고가 사용 중인 이 사건 제조방법 및 도면의 사용 금지 및 그 폐기, 제3자에 대한 공개 금지를 구한다.

3. 주요쟁점

- ‘합리적인 노력’을 기준으로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도록 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시점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여부

4. 판결요지

원고는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비밀관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된 법률은 공포한 날인 2015. 1. 28.부터 시행되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2014. 7. 30.경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고,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일인 2015. 1. 28. 이후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회사 내부적으로 보안규정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정한 보안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거나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조방법 및 도면을 사장실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별도의 비밀관리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사장실 문손잡이에 부착된 잠금장치(문손잡이 끝 부분 둥근 단추를 눌러 문을 잠그는 방식)만으로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조방법 및 도면을 사장실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면서 컴퓨터에 암호를 설정해두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업무용 컴퓨터 및 사무실의 사진은 촬영시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5년에 촬영되었다고 보이는 자료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취업규칙에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규정(제11조)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주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취업규칙의 시행일자가 1998. 2. 1.로 정해져 있음에도 당시 원고 회사의 상호(주식회사 N)가 아닌 현재의 상호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취업규칙만으로는 이 사건 제조방법 및 도면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⑤ 원고가 제출한 도면에 존재하는 ‘대외비’ 표시는 사후적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영업비밀 침해기간 동안 이 사건 도면이 ‘대외비’로 표시되어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⑥ 원고는 피고를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기장경찰서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조방법 및 도면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금지청구, 폐기·제거청구, 진공식품냉각기

47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기간을 산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7나5444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C, 주식회사 D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일부 인용 (100,000,000원)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4가합19086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기술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4조의2 제1항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자동차용 E 코팅제를 포함한 화학제품 제조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B, 피고 C :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 (퇴사시기 : 2008. 9. 30.)

피고 D사 : 피고 B와 피고 C가 설립한 회사로,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생산하여 기존에 원고로부터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납품받아 오던 F 주식회사에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납품하는 회사

2) 원고 주장

피고 B와 피고 C는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인 원고의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기술을 무단으로 반출한 후 이를 활용하여 피고 D사를 설립하고 원고의 제품과 동일한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생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설령 원고의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제조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기술이 불

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무단 반출한 원고의 기술을 활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후단에서 손해액의 한도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들이 원고의 기술자료를 도용한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생산하여 F에 판매하기 이전까지 원고가 F에 위 제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들이 F에 공급한 제품의 수량만큼 위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기존 거래처인 F에 동일한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원고 제품의 판매수량이 그만큼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는 바,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은 피고 회사가 F에 납품한 제품의 총량에 원고의 납품단가 및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곱한 508,382,809원이다.

☞ 제1심에서는 명시적 일부 청구로 101,000,000원을 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508,382,809원으로 청구를 확장함

3. 주요쟁점

-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기간
- 손해배상액 산정근거

4. 판결요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대법원 2017. 4. 13.자 2016마1630 결정 등 참조)는 법리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한 침해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제조기술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로서, 원고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만든 것이고, 그 제조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원고를 포함하여 3개에 불과할 정도로 **기술 개발이 쉽지 않은 점** ② 피고 B와 피고 C 스스로도 자신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레시피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만들고, 위 레시피를 분석하여 시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제조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기술정보에 편승하였음을 시인하였던 점** ③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의 제조기술은 **역설계의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인적·물적 시설을 고려할 때 원고의 기존 레시피 없이 독자적

으나 역설계에 의하여 동종 제품을 개발하였을 경우 상당한 장기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비록 피고 B와 피고 C가 2004. 8. 16.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서약서’에는 위 피고들의 전업금지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피고들이 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피고를 설립하여 동종 제품을 생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기술정보가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를 반드시 퇴직 종업원의 전업금지 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기술정보에 대한 피고들의 침해금지기간은 피고 B와 피고 C가 퇴직한 시점 이후부터 피고가 2012. 10. 17.경 설립된 지 5년 가량이 지난 2017. 10.말 무렵까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위 기간 동안 동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이하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고,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부정취득한 원고의 기술자료에 대한 경제적 가치로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침해행위 금지기간 동안 피고들이 F에 동종제품을 납품하면서 얻은 최소 순이익의 30% 가량(F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액의 3% 가량)에 해당하는 1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영업상 주요 자산, 침해행위 금지기간,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
하되 그 금지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제14조의2 제5항과 함께 민사소송
법 제202조의2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7가합556769 판결
사건명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C, D, E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일부 인용 (50,000,000원)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북미향 콘덴싱 온수기 프로그램 및 회로사양 승인원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가목 및 나목, 제14조의2 제5항

2.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국내외에서 보일러·온수기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는 회사

피고 B사 : 보일러·온수기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

피고 C : 원고의 온수기 및 보일러 개발팀장으로 근무한 후 2012. 5. 18. 퇴사하고 2013. 4.경부터 피고 B사의 보일러 및 온수기 개발팀장으로 근무

피고 D : 원고의 책임연구원으로 연구 업무를 수행하다 2014. 1. 31. 원고를 퇴사한 후 2014. 2. 3.부터 피고 B사의 보일러 및 온수기의 기구설계 업무를 담당

피고 E : 피고 B사의 개발팀 과장으로 보일러 및 온수기 프로그램과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제어기술 개발을 담당

2)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피고 B사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관련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영업비밀파일들이 포함된 저장장치는 모두 피고들에게 반환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여전히 이를 이용할 위험성이 있는 바, 피고들 전체에 대하여 각 파일들의 사

용, 제3자에 제공 또는 공개금지 및 폐기를 구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약 7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들을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위 자료들의 개발에 들인 비용 상당액의 지출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고, 나아가 피고 B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보일러 등 제품개발에 이용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어려우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일부청구로서 우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주요쟁점

-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
-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기간
- 손해배상액 산정근거

4. 판결요지

피고 C : 피고가 [별지 2] 순번 1, 2, 3 자료들을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관리 범위 내로 옮김으로써 이를 ‘취득’ 한 후, 그 중 순번 1, 2 자료를 피고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공개’ 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미국 법인장을 역임했던 Q에게 요청하여 [별지 2] 순번 4 내지 7 자료들을 ‘취득’ 한 후 이를 피고 D, 피고 E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공개’ 한 행위는 Q가 전달하는 위 자료들에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전달받아 피고 E, 피고 D에게 재차 전달하여 공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

피고 E : 피고 C으로부터 [별지 2] 순번 1, 2 자료를 전달받은 것은 당시 피고 C가 위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로부터 [별지 2] 순번 5, 6, 7 파일을 전달받은 것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취득한 행위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

피고 D : 피고 C으로부터 [별지 2] 순번 4 내지 7 자료들을 취득한 행위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취득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

피고 B사 : 피고 C, 피고 D, 피고 E가 위와 같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피고 B사가 피고 C, 피고 D를 영입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이 피고 B사에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위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 B에 대하여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한 영업비밀침해가 인정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이 원칙이지만(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제한적 금지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침해자들인 피고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영업비밀이 그 요건이 상실될 것이 확실시되는 시점을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별도로 금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별지 2] 기재 이 사건 각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사용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B사가 나머지 피고들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위 영업비밀을 이용해 이를 어느 범위까지 이용하였는지, 그러한 행위를 통해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한 물건의 수량이나 그러한 물건에 대한 한계이익 또는 위 침해로 인한 피고들의 이익액을 산정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바,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5,000만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5. 주제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금지청구, 폐기청구, 침해행위 금지기간, 콘텐츠 온수기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비밀관리성(상당한 노력)을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사건명	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항소인	쌍방
피해업체	주식회사 F
판결결과 (형량)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3고단7560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의료용 3D 스캐너 소스코드, 설계, 데이터, 구조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2. 사건개요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 피해 회사에서 근무 당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특히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동종제품을 개발

피고인 B :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의 상당 부분을 주도적으로 개발

2) 항소이유

피고인들 : ① 이 사건 각 파일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고, 특히 피고인 B는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인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며, 피해 회사의 소스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없고 ② 양형(피고인 A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①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1 내지 13, 15 내지 34번 각 파일을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범행을 범하고,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의 범행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주요쟁점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 여부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판단
-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 이후에 가담한 제3자의 범죄 성립 여부

4.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 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은 영업비밀을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영업비밀 누설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려면 우선 그 재산상 이득액이 특정이 되어야 하고 재산상 이득액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영업비밀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취지로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었다(개정 이유는 기업 외에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처벌대상을 확대한다는 취지이고, 이에 따라 재산상 이득의 유무에 불구하고 일괄하여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분에 있어서 구 부정경쟁방지법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즉, 구법에 따르면 종래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모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한편, 위반자의 재산상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거나 위반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의해 징역형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구법보다 신법의 법정형이 가볍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된 재산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 회사의 규모와 자금력이 그리 큰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 회사와 같은 규모의 중소기업은 자금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영업비밀을 완벽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비밀 유지·관리를 요구한다면, 중소기업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비밀 유지·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의 규모, 자금력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다.**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 B가 퇴사시에 이 사건 14번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퇴사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을 회사의 동의 없이 반출하여 외부에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는 회사와 직원사이의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민사상의 의무로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 B가 퇴사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후 불가별적 사후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범죄의 성립이 가능하므로(대법원 1977. 5. 18. 선고 77도541 판결 참조), 피고인 B에 대하여 불가별적 사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이 사건 14번 파일의 사용 행위에 제3자인 피고인 A가 공모 및 가담한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14번 파일에 대한 별도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이 사건 14번 파일에 대한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하지만 이 판단은 대법원(2017도3808)에서 파기됨 (제50번 참조)

5. 주제어

영업비밀, 형사, 업무상 배임, 비밀관리성, 제18조 제2항, 불가별적 사후행위, 의료용 3D 스캐너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 이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제3자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사건명	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업체	주식회사 F
판결결과 (형량)	피고인 A(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 대한 부분 파기 및 환송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상고기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의료용 3D 스캐너 소스코드, 설계, 데이터, 구조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2. 사건개요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 피해 회사에서 근무 당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특히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동종제품을 개발

피고인 B :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의 상당 부분을 주도적으로 개발

2) 원심판결

피고인 B가 2011. 8.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A가 설립한 경쟁회사에 입사하여 경쟁회사를 위한 소스코드를 만드는데 이 사건 각 파일을 이용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2012. 8. 24.경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하는데 있어 공모·가담하였는 바,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14번 파일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피고인 B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14번 파일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그와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3) 상고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14번 파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피고인 B : 원심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영업비밀, 사용,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음

검사 :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음

3. 주요쟁점

-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 이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범죄 성립 여부

4. 판결요지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

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여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14번 파일 이용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가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단에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불가별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함

5. 주제어

영업비밀, 형사, 업무상 배임, 배임죄의 주체, 불가별적 사후행위, 의료용 3D 스캐너

51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운영 상황과 규모, 경제력에 부합하는 상당한 노력을 다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4. 선고 2015고단3315
사건명	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다. 절도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주식회사 D 5. 가. E 6. 나.다. F 7. 나.다. G 8. 나.다. H 9. 나.다. I 10. 가. J 11. 가. K 12. 가. L
피해업체	주식회사 S (Y를 생산하는 의료기기 생산업체)
판결결과 (형량)	피고인 F, G, H, I 각 벌금 100만원 피고인 F, G, H, I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무죄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E, J, K, L는 각 무죄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Y의 기술문서, 작업표준서, 도면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9조

2. 사건개요

1)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A : 피해 회사의 해외영업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2013. 10. 9.경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설립
- 피고인 B : 피해 회사의 인증팀원으로 근무하다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D사의 품질팀원으로 근무
- 피고인 C : 피해 회사의 인증팀장
- 피고인 D사 :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와 별개의 Y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 피고인 E : 피고인 D사의 품질·인증 책임 이사로 근무
- 피고인 F :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부서장으로 근무
- 피고인 G :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Y 유키 및 열처리 공정의 선임대리(팀장급)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제품사업부 과장으로 근무
- 피고인 H :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Y의 코딩공정의 선임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3. 8. 퇴사하고 D로 이직하여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D의 제품사업부 대리로 근무
- 피고인 I :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Y의 딜리버리시스템(T) 공정의 선임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퇴사하고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제품사업부 대리로 근무
- 피고인 J : 2011. 1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 회사의 인증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인증팀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다시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인증팀원으로 근무
- 피고인 K :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인증팀원으로 근무
- 피고인 L : 2013. 6.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 자회사인 주식회사 X에서 연구개발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연구개발부 차장으로 근무

2) 공소사실

- ① 피고인 F, G, H, I는 공모하여 함께 315,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원재료를 절취하였다.
- ② 피고인 A, E, C, B, J, K, L는 동시에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유출하거나, 유출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사용하였다.
- ③ 피고인 D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와 그 종업원인 E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문서 등을 유출하거나, 유출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Y 제조기술이 기재된 기술문서 등을 사용하였다.
- ④ 피고인 F, G, H, I는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절취한 Y 원재료를 사용하고 피해 회

사를 위하여 습득한 Y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피고인 D사에서 피해 회사의 Y와 유사한 Y를 제작하여 의료기기 인허가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D사에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주요쟁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 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상 주요 자산 해당 여부

4.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편의성이나 직업적 숙련도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에 필요한 관련 문서를 열람, 저장, 출력하는 것은 근로 현장에서 통상 허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 개인이 자신의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이나 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이를 다른 직업 선택이나 자기 발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복추구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 중 어떠한 정보가 임의 반출이 금지되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항을 분명히 고지받지 않는 한 직원 개개인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이라는 점에 관한 표시를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고지하는 등으로 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하지 않은 정보는 비록 그 경제적 가치가 크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영업비밀로 쉽게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 중 일부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자백하였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자백하였더라도, 법원은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임

피해 회사는 동종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연 매출이 400억 원, 직원이 200명 이상인 상당한 규모의 회사로서, 연구개발 분야의 직원 수만 30여 명에 이르고 이 사건 문서 외에도 수많은 문서가 작업에 사용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하여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운영 상황과 규모, 경제력에 부합하는 상당한 노력을 다함으로써 위 정보들이 피해 회사에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퇴사 당시 이 사건 각 문서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그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피해 회사 나름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객관적으로 이 사건 각 문서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해 회사의 정보 관리 방식, 문서 보안규정, 비밀준수의무 부과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Y 제조기술 등을 영업비밀로 볼 수 없음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참조).

특정 회사의 직원에게 경쟁업체인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권유하여 그 직원이 실제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른 결정이므로, 이직하는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직원이 종전 회사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기술이나 능력을 그 회사에서 퇴직한 후 다른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담당 업무에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은 이미 종전 회사를 퇴직함으로써 더 이상 종전 회사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자신이 업무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기술을 다른 업체로 이직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원재료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315,000원 상당의 원재료에 불과하고, 피해 회사가 아니고서는 시장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희귀한 재료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이상의 많은 원재료를 임의 반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원재료 공급처나 임의로 가지고 나온 소량의 원재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그 원재료를 D를 위해 사용하고, 알고 있는 원재료 공급처를 D 업무에 활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시가 315,000원 상당의 원재료를 절취한 행위에 대해서만 절도죄 인정

5. 주제어

영업비밀, 형사, 업무상 배임, 비밀관리성, 영업상 주요 자산

52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밀관리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2162
사건명	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다. 절도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주식회사 D 5. 가. E 6. 나.다. F 7. 나.다. G 8. 나.다. H 9. 나.다. I 10. 가. J 11. 가. K 12. 가. L
항소인	검사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피해업체	주식회사 S (Y를 생산하는 의료기기 생산업체)
판결결과 (형량)	항소기각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4. 선고 2015고단3315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Y의 기술문서, 작업표준서, 도면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9조

2. 사건개요

1)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A : 피해 회사의 해외영업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2013. 10. 9.경 피고인 D사를 설립
- 피고인 B : 피해 회사의 인증팀원으로 근무하다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D사의 품질팀원으로 근무
- 피고인 C : 피해 회사의 인증팀장
- 피고인 D사 :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와 별개의 Y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 피고인 E : 피고인 D사의 품질·인증 책임 이사로 근무
- 피고인 F :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부서장으로 근무
- 피고인 G :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Y 유통 및 열처리 공정의 선임대리(팀장급)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제품사업부 과장으로 근무
- 피고인 H :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Y의 코딩공정의 선임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3. 8. 퇴사하고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제품사업부 대리로 근무
- 피고인 I :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Y의 딜리버리시스템(T) 공정의 선임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퇴사하고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제품사업부 대리로 근무
- 피고인 J : 2011. 1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 회사의 인증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인증팀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다시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인증팀원으로 근무
- 피고인 K :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인증팀원으로 근무
- 피고인 L : 2013. 6.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 자회사인 주식회사 X에서 연구개발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연구개발부 차장으로 근무

2) 공소사실

- ① 피고인 F, G, H, I는 공모하여 합계 315,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원재료를 절취하였다.
- ② 피고인 A, E, C, B, J, K, L는 동시에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유출하거나, 유출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사용하였다.
- ③ 피고인 D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와 그 종업원인 E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문서 등을 유출하거나, 유출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Y 제조기술이 기재된 기술문서 등을 사용하였다.
- ④ 피고인 F, G, H, I는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절취한 Y 원재료를 사용하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습득한 Y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피고인 D사에서 피해 회사의 Y와 유사한 Y를 제작하여 의

료기기 인허가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D사에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원심판결

315,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원재료를 절취한 점에 대해서 절도죄 유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누설등) 및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4) 항소이유

① 피해 회사가 중소기업의 제한적인 인력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등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비밀관리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피해 회사가 중소기업으로서 비밀유지·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의 규모, 자금력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공지성과 독립된 경제성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오로지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으며 ② 피고인 D사는 피해 회사에서 유출된 영업비밀(특히 작업지침서)과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원재료 및 그 공급처에 관한 정보와 피고인들의 기술을 결합하여 단기간에 유사한 스텐트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③ 피고인 F, G, H, I의 각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3. 주요쟁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 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상 주요 자산 해당 여부

4. 판결요지

이 사건과 같이 영업비밀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므로, 대상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종업원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영업비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①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②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③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데, 그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주어진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종업원이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

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이 인정된다.

해당 영업비밀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사람을 제한하는 인적 통제와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물리적 통제 등 다양한 통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바, 여기서의 접근통제는 종업원이 그러한 접근통제로 인하여 대상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통제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문서에 대한 보안조치를 시행하는 등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서 제한적인 인력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문서는 전자파일로 생성, 보관되면서 별도의 암호나 방화벽 없이 열람할 수 있었고, 출력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도 두지 않았으며, 문서 출력본에 별도의 대외비라는 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부서의 팀장들은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부서의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고, 일반 직원들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 팀장의 구두 허락을 받기만 하면 다른 부서의 문서들을 자유롭게 열람, 저장, 출력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문서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공지성 요건이 충족되거나 해당 영업비밀의 경제성이 강하게 인정된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요구되는데(2015. 1. 2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합리적 노력’이 필요하다),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밀관리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공지성과 독립된 경제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사가 피해 회사에서 유출된 작업지침서와 피고인들의 기술을 결합하여 단기간에 유사한 스텐트 제품을 제작한 것으로 주장하나, 피해 회사는 피고인 D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4997호 사건으로, 피고인 D사가 피해 회사의 스텐트 제조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 전제로 침해행위의 금지, 조성물 등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피고인 D사가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 사용하여 스텐트를 제조,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스텐트 제조업계 내에서 이직이 잦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이직 제한에 대한 고지를 받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5. 주제어

영업비밀, 형사, 업무상 배임, 비밀관리성, 영업상 주요 자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6. 선고 2017고정710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A
피해업체	주식회사 E (플라스틱 자동성분 분석기 제조업)
판결결과 (형량)	무죄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기술 관련 PLC 프로그램 소스코드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2. 사건개요

1) 피고인의 지위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D’ 를 운영한 사람

2)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와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를 위한 PLC 및 주변기기 제어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PLC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피해 회사에서 개발하여 사용해온 기존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프로그램, 피해 회사의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기술 관련 자료들을 제공받아 플라스틱 선별기 PLC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용역 계약 제15조에 따라 피해 회사의 기술정보 및 결과물에 대한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결과물에 대한 복사물을 보유해서는 아니되는 등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 회사의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관련 영업비밀이 포함된 위 PLC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중 피해 회사의 경업회사 H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에 납품하였던 PLC 프로그램과 유사한 PLC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피해 회사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PLC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한 후 위 H 주식회사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

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3. 주요쟁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4. 판결요지

①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에는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비밀등급, 비밀보존기간 등을 표시하였거나, 출입카드 등에 의하여 출입 및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정황은 찾기 어렵고, 단순히 피해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특별한 비밀표시 없이 저장, 보관되어 있었던 점 ② 피해 회사 내부에서도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사 내 관련 직원이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 네트워크 서버에 접속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위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된 위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특정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찾기 어렵고, 그 밖에 직원들로부터 일률적으로 징구한 것으로 보이는 보안준수약정서, 기밀유지 서약서, 서약서, PC 사용 및 보안 서약서 등에 서도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고, 단지 일체의 회사 내 업무상 정보나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④ 피해 회사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영업비밀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⑤ 용역계약서 제15조에 “본 계약과정에서 취득한 갑의 기술정보 및 결과물에 대한 기술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어떤 복사본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조항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특정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체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내용에 가까운 점 ⑥ 피해 회사는 플라스틱 자동성분 분석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1. 8.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이 32억 원을 상회하고, 연매출이 25억 원 정도이며, 국내 폐기물 선별기 시장을 약 30% 정도 점유하고 있는 바, 그 규모나 능력이 미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5. 주제어

영업비밀, 형사,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영업비밀 ‘취득’의 의미 및 IT회사에서의 비밀관리성 판단기준을 판시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8노79
사건명	가.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피해업체	C 주식회사
판결결과 (형량)	원심(전부 유죄, 징역 1년 2월) 파기, 일부 무죄 (징역 10월)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고단3134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위폐 이미지 정보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2. 사건개요

1) 피고인의 지위

2009. 9.경부터 2016. 6. 15.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연구소장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보안서약을 하여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업무용으로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총 6,085개 상당의 위폐 이미지정보를 I가 관리하는 서버컴퓨터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취득 및 유출하고,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기술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

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원심판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4) 항소이유

피고인 : ① 피고인이 취득, 유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② ‘C를 이용한 위폐검출방법’은 ‘신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지폐계수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신기술적용제품’일 뿐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신기술’ 또는 ‘산업기술’이 아니어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③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3. 주요쟁점

- o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의 의미
- o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4.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의 ‘취득’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연구소장 및 중국 해외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업무를 목적으로 이미 저장한 상태였는 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고위 임원으로서 그 자료에 접근하여 인지,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 역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고위 임원으로서 이미 보유하고 있었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저장한 상태였으므로 그 자료에 접근하여 인지·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점(비공시성), 그 자료를 보유한 자가 이를 사용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점(경제적 유용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비밀관리성’만이 문제된다.

피해 회사는 IT업체인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문서’임을 전제로 비밀등급, 비밀보존기간 표시 여부나 특정한 장소의 보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이 ‘파일’로 되어 있는 이상 상당한 노력을 들여 ‘전산 보안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비밀을 관리해 왔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밀관리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피해 회사의 규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① 피해 회사는 서버별·폴더별로 중요도에 따라 파일을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차등화하였고(이는 문서의 비밀등급 표시 및 접근권한 부여와 비슷한데, 권한 없는 자는 아예 다른 폴더·서버에 접근을 할 수 없으므로 어떤 파일이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문서가 영업비밀인 경우에 비해 한층 강화된 시스템이다) ② 각종 보안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감시를 하면서 내부 직원에 한하여 등록된 PC에서 등록된 ID를 이용해서만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점(이는 문서보관창고에 CCTV를 설치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금지, 사진촬영금지 표시를 한 것과 유사한데, 접속권한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유출하려는 시도 자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함과 동시에 그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 역시 한층 강화된 시스템이다) ③ 피해 회사의 직원은 약 200명이고, 그 중 연구소 직원은 약 80명이며, 연매출은 약 500억 원인데, 보안 업무를 위해 장비 대여료·솔루션 구매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는 모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서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영업비밀 유출의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

※ ‘위폐검출방법’ 및 ‘지폐계수기’는 모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신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

5. 주제어

영업비밀, 형사, 영업비밀 취득, 비밀관리성, 산업기술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노4721
사건명	가. 업무상배임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다. 주식회사 C
항소인	검사
피해업체	주식회사 G (의료용 레이저 콘트롤러 등을 생산)
판결결과 (형량)	항소기각 (피고인 A, B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 : 무죄)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고단7271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MicroSon Dual Hifu Controller 제작 관련 회로도면 및 기구도면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제19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2. 사건개요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 : 피해 회사에서 제품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경 퇴사한 이후, 2015. 12. 14.경 피해 회사에 의료·미용기기에 실장되는 Controller(제어기)를 납품하는 거래처인 피고인 C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 : 피해 회사에서 기술연구소 하드웨어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경 퇴사한 이후, 2016. 2. 1.경 피고인 C사에 입사하여 전자설계팀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사 : 의료·미용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4.경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피부 미용 기기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인 콘트롤러, 보드 등 의 개발 및 제조를 피해 회사에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아 왔음

2) 공소사실

- 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의 정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을 반출·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회사에서 퇴사시 위 정보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의 동의없이 외장형 저장장치에 MicroSon Dual(초음파 피부치료 미용기기) Hifu Controller의 생산에 필요한 피해 회사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인 MicroSon Dual Hifu Controller 제작 관련 회로도면, 기구도면 파일 등(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을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C사에 입사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 등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②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동의없이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파일을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C사에 입사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 ③ 피고인 C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3) 원심판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각 파일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해서 (이유)무죄, 피고인 C사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

4) 항소이유

- ① 이 사건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②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3. 주요쟁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해당 여부

4. 판결요지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위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다.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고지가 있었는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는지,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 무가 부과되어 있었는지 등을 여전히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으나, 다만 그 노력의 정도는 기업의 규

모 등에 비추어 그 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각 파일에 관하여 ‘비밀’ 임이 표시되거나 고지된 바 없고, 개인 노트북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추상적인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인들이 작성, 관리하는 모든 파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피고인 A는 개인 노트북에 이 사건 각 파일을 보관하였고, 위 노트북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다른 직원이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직접 노트북에 접속시켜 파일을 복사해 가기도 하였는 바, 이 사건 각 파일은 그 접근대상이나 접근방식도 제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연구소는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었으나, 대표이사실이 연구소 내부에 있는 관계로 일단 손님이 사무소 내부에 들어오면 별다른 제한 없이 연구소에 출입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대표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5. 9. 23. 문자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는데, 디지털번호키나 현판 부착 등의 추가조치는 피고인 A의 직위해제 통보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주제어

영업비밀, 형사, 업무상 배임,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미용기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더라도,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을 부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2435
사건명	가. 업무상배임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 주식회사 B
항소인	검사
피해업체	주식회사 G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
판결결과 (형량)	항소기각 [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위반의 점은 (이유)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C : 무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고단479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휴대폰 LCD 패널 본딩기, FOG 본딩기, 수지도포기, 투입 컨베어, 압흔 검사기 등의 제작에 필요한 구매리스트 및 설계도면 파일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제19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2. 사건개요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 : 피해 회사의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8.경 퇴사하였고, 2014. 3. 5.경부터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피고인 B사에서 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기술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사 :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

2) 공소사실

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보안절차를 준수하고 피해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의 FOG 본딩기 제작 관

런 설계도면, 구매리스트(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 등’)를 퇴직 후에도 반환,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피고인 B사를 위해 사용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증가와 경쟁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② 피고인 A는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피고인 B사의 본당기 제작에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 B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원심판결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해서 (이유)무죄, 피고인 C사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

4) 항소이유

① 비밀관리성의 판단기준이 2015. 1.경 법률 개정으로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되어 기준이 완화된 점,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영업비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술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해 회사가 규모가 작고 인적 관계가 강한 중소기업인 점,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저장된 메인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의 설계팀 직원들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②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3. 주요쟁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해당 여부

4. 판결요지

①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바 없는 점 ② 비밀관리를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지도 보안관리규정을 두거나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던 점 ③ 메인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없었고, 로그기록 파일에 대한 저장, 추적 기능도 없었으며, 피고인 A가 근무할 당시에는 설계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④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의 일부를 하청업체에 제공하고 부품 제작을 의뢰할 경우 여러 업체에 설계도면을 분

산, 제공하여 한 업체에서 본당기를 제작할 수 없도록 방지하였다고 하나, 피해 회사에서 제작하는 I 본당기 부품을 한 개의 하청업체에서 모두 제작할 리는 없으므로 일부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에 그에 해당하는 설계도면만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점 ⑤ 피해 회사는 하청업체에 설계도면을 보내는 경우 파란색 스탬프를 찍어서 보낸 다음 납품과 동시에 설계도면을 회수하고 이메일로 보낼 경우에는 납품과 동시에 해당 설계도면을 폐기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스탬프를 찍는다고 하여 복사본 제작을 방지할 수 없고, 하청업체가 이메일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폐기한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으며, 피해 회사가 다른 업체와 비밀유지 약정을 별도로 체결한 바도 없고, 설계도면 등 문서에 대한 DRM 등 보호조치를 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지적한 2015. 1. 28. 법률개정의 취지(비밀관리성의 판단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유자의 입증곤란을 완화함)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구법의 ‘상당한 노력’ 과 개정된 법률의 ‘합리적인 노력’ 의 노력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시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더라도,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설계도면 등에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는 등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주제어

영업비밀, 형사, 업무상 배임,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LCD 패널 본당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사
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판시하면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의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사건명	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4.가. 주식회사 JTBC
상고인	피고인 C 및 검사
피해업체	KBS, MBC, SBS
판결결과 (형량)	상고기각 (피고인 A와 피고인 B : 각 무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JTBC : 무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052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당선예측 및 예상득 표율이 담긴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제19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2. 사건개요

1) 피고인의 지위

- 피고인 A : JTBC 보도국 소속 프로듀서(PD)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 태스크포스팀(이하 ‘T/F팀’)의 팀장이자 이 사건 지방선거 방송 책임 PD
- 피고인 B : JTBC 보도국 정치부 소속 기자로서 T/F팀 팀원
- 피고인 C :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부사장
- 피고인 JTBC :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2) 공소사실

① KBS, MBS, SBS 등 지상파 3사는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당선자 예측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이하 ‘미디어리서치’), 주식회사 리서치앤리서치, 주식회사 테일러넬슨소프레스코리아 등 3개의 여론조사기관과 ‘이 사건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 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미디어리서치 등 위 3개의 여론조사기관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선거일인 2014. 6. 4. 17:25경부터 17:27경까지 각 방송사 담당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투표종료 전에 지상파 3사의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게 되면 미리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해 두기로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에 더 나아가 지상파의 개표방송을 통해 위와 같이 사전 입수한 자료와 일부라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지상파에서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 전이라도 미리 준비한 그래픽 화면과 함께 지상파 3사와 같은 시간대에 신속히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선거방송에서 사실상 지상파 3사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방송 시청률을 높이며 향후 그에 따른 피고인 JTBC의 위상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17개 시·도지사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 (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입수한 즉시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위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18:00 직후 지상파 3사에서 개표방송이 시작되면서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일부가 방송되자 위와 같이 사전 입수한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의 일부와 일치함을 확인 후 그 즉시 함께 있던 T스튜디오 진행 PD U에게 지상파 출구조사를 방송에 내보내라고 하였고, T스튜디오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보도를 위해 미리 대기 중이던 Y 아나운서는 18:00:41경 “지상파 출구조사를 보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마친 후 바로 뒤이어 지상파 3사에서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도 전인 같은 날 18:00:49경 위와 같이 미리 입력해 둔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방송에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 JTBC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사용하였다.

③ 미디어리서치 부사장이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책임자인 피고인 C는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주위적 공소사실) 혹은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하여 미디어리서치로 하여금 지상파 3사에 손해배상 위협을 부담하게 하거나 향후 미디어리서치가 지상파 3사로부터 예측조사 용역계약을 더 이상 수주 받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안될 업무상 임무(예비적 공소사실)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 CR로부터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알려달라는 요청

을 받고 삼성과 미디어리서치와의 관계 및 CR과의 개인적 친분 개선을 위한 의도로 2014. 6. 4. 17:46경 지상과 3사의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인 17개 지역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예상 순위 및 각 예상득표율이 기재된 ‘CS’ 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CR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R로 하여금 지상과 3사의 영업비밀의 각 조사,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지상과 3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및 조사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주위적 공소사실) 혹은 미디어리서치에 지상과 3사로부터 청구 당할 손해배상책임액 및 지상과 3사로부터 더 이상 예측조사 용역계약을 수주하지 못함으로써 받을 손해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지상과 3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지상과 3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를 누설하였다.

3)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고합235 판결)

①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 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영업비밀인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전체를 하나의 영업비밀로 보아 그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이 상실되는 시점을 개별 후보자나 선거구마다 해당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방송된 시각을 기준으로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총 17개 지역 선거구 전체에 대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전부 방송된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지상과 3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는 ‘18:00 이전까지’ 는 물론 ‘18:00 이후 피고인 JTBC 방송 당시까지’ 도 ‘비공지성’ 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미리 입력하여 둔 선거구별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를 18:00:49경부터 방송에 일부라도 사용함으로써, 그 때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고 그 무렵 기수에 이르게 되었으며,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나 공모,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800만원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 JTBC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지상과 3사의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를 인용 보도 하면서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벗어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JTBC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③ 피고인 C는 지상과 3사에 대한 사무처리자가 아니고, 지상과 3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미디어리서치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평소의 친분 때문에 대학 동문인 CR에게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를 전달한 것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함

4) 원심판결

① 2014. 6. 4. 18:00 이전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졌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

진 경우에는 비공지성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며,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져야 비공지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 바, 이미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18:00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졌더라도 그 진위가 분명하지 않아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비공지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최소한 지상파 3사를 통하여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되는 순간 즉시 그 비공지성을 상실하며, 정보가 공지되었다는 것은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상태를 말하므로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된 순간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거나 지상파 3사 모두가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여야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17개 시·도지사별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 등으로 그 정보가 단일하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7개 선거구 전체에 대한 방송이 모두 종료될 때 예측조사 결과 전체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방송되어 공개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비공지성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방송을 통하여 입력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한 후 미리 입력하여 둔 선거구별 예측조사 결과를 18:00:49부터 순차로 방송함으로써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데, 피고인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한 것은 최소한 지상파 3사에 의하여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되어 비공지성을 상실한 이후인 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비공지성을 상실하기 이전에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상파 3사는 이행각서에서 투표 종료 시점까지 출구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을 뿐 투표 종료 이후인 18:00부터는 출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고, 지상파 3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투표 종료와 동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행각서에서는 18:00 이후에는 지상파 3사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지상파 3사에서 18:00 이후에도 출구조사 결과를 비밀로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투표 종료 시점인 18:00 이후까지 비밀관리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각 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②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C는 출구조사가 방송을 통하여 공표되기 전에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누설하였고, 미디어리서치는 이러한 채무불행으로 인하여 지상파 3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 C의 행위는 미디어리서치의 신뢰성을 훼손시켜 향후 미디어리서치가 지상파 3사로부터 예측조사 용역계약을 수주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었고, 실제 미디어리서치는 지상파 3사가 발주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예측조사업체 선정에 참가하였으나, 지상파 3사는 피고인 C의 예측조사 결과 누설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미디어리서치를 선정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 판결(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5) 상고이유

피고인 C :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

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음

검사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3. 주요쟁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4. 판결요지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서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야 할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또는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9433 판결 등 참조).

지상파 3사가 공동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당선자 예측조사의 결과의 본래 사용 목적은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후 방송을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인데,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지상파 3사의 방송을 통해 이 사건 정보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한 후 미리 입력해 둔 위 정보를 18:00:49경부터 순차로 방송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등 참조),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면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별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 등으로 그 정보가 단일하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2014. 6. 4. 17:30경 이후 투표종료 시점인 18:00 이전에

이미 지상파 3사 외에 다른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알려진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투표종료 후 지상파 3사 중 어느 한 방송사를 통해 개별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방송되어 공개될 때마다 해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상태로 되었는데,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2014. 6. 4. 18:00:49경부터 위와 같이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를 순차로 방송한 것을 두고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34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투표종료 시점인 2014. 6. 4. 18:00 이후에는 지상파 3사 사이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다거나 지상파 3사가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18:00 이후에는 이 사건 정보가 더 이상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5. 주제어

영업비밀, 형사,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부정사용, 실행의 착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성의 상대성’을 판시하여 적용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485
사건명	가. 업무상배임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다.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3.나.다 주식회사 C
피해업체	주식회사 G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유지보수업 등)
판결결과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사 : 벌금 50,000,000원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PC 시간 관리 솔루션 ‘H’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의 기술 정보와 ‘H’ 관련 영업활동 자료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제19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 제75조

2. 사건개요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 피해 회사에서 서비스 기획팀장, 서비스 지원팀장 및 프로젝트 매니저(PM)로 근무하면서 ‘H’의 개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6. 11. 1.경 피해 회사와 동종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C사로 이직하여 현재 차장으로 재직중인 사람

피고인 B : 피고인 C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사람

피고인 C사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하드웨어 개발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2) 공소사실

- 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이직할 다른 회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H 소스코드’가 기록된 파일 및 피해 회사의 영업자산인 ‘Sale Inventory(H의 영업활동 관련 내용)’가 기록된 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사 또는 J 계정(K)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보관해 놓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위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입수하게 될 경쟁 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② 피고인 A는 이직하여 근무할 피고인 C사의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H 소스코드’ 중 클라이언트, 웹, 데몬(서버) 소스코드가 포함된 파일(‘소스.zip’)을 이메일(K)로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H 소스코드’ 중 DB스크립트 문서 파일이 포함된 파일(‘Db.zip’)을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전송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고인 C사에 정식 입사한 후 피고인 B, I와 함께 무단으로 반출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H 소스코드’를 공유하며 사용하여 H 프로그램과 유사한 ‘O’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출시하고 이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피고인 B, I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 ③ 피고인 B는 피고인 C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가 누설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H 소스코드’가 포함된 파일 2개를 취득하여 같은 날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무단으로 반출된 피해자의 영업비밀 ‘H 소스코드’를 공유하며 사용하여 H 프로그램과 유사한 ‘O’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출시하고 이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고, 피고인 A, I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 ④ 피고인 C사는 사용인 피고인 A, 피고인 B,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3. 주요쟁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의 상대성

4. 판결요지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조치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 비밀 관리성의 상대성

비밀 관리성으로서 접근 제한과 객관적 인식 가능성(표시)는 침해 행위자와 목적물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같은 개발자의 경우 평소 프로그램의 핵심 자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할 것이므로 퇴근, 외부 업무, 퇴직 시 등에 외부 반출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과 물적 시설을 충분히 운영하더라도 의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하므로(굴지의 대기업에서 끊임없이 침해와 경쟁사로의 유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상 접근 권한이 주어진 직원이 행위자인 경우 그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의 상당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모순이다.** 마찬가지로 비밀로서의 표시도 영업비밀의 나머지 요건 즉,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가져오는 자산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직원과의 관계에서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인식의 흠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① 피해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고객사에게 설치하고 관리하여 주는 업무를 하므로 외부인이나 거래 업체 직원 등이 방문할 일이 거의 없어서 직원들의 인식이나 신뢰 수준에 맞추어서 비밀 관리 시설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이상의 관리 방법에 인력과 비용을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점 ② 이에 비추어 피해 회사는 사무실 출입 시설, 보안 장비, 사무실 내 사무용 개인 컴퓨터나 회사 서버의 경우 로그인 계정 등을 통하여 외부인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접근을 차단하여 온 점 ③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서 개발자는 아니지만 프로젝트 매니저(PM)으로 근무하면서 H 소스코드는 경쟁사 등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고 피해 회사가 H를 개발, 판매하기 위한 핵심 자산이며 이것이 외부에 유출되어 경쟁제품이 개발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따라서 피고인과 관계에서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이라고 별도로 표시되어 고지될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이를 표시할 방법도 없다) ④ 피고인 A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 서버의 패치파일공유폴더에 접근 권한이 주어졌던 것이고 또 U은행 납품과 관련하여서는 임차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따라서 이 범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접근제한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⑤ 피고인 A가 임차작업을 기화로 별도의 복제 CD를 만들고 인터넷 클라우드에 저장하였으며 퇴사 후 타인의 계정으로 침입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해 회사와 같은 중소기업이 상응하는 보안조치를 충분히 강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원천적인 봉쇄를 기대할 수 없는 점 ⑥ H는 출시된 지 8년 이상 지났으나 지금까지 직원에 의해서건, 거래 상대방에 의해서건 영업비밀 침해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점 ⑦ 피고인 B는 전문 개발자로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소스코드를 제공받아 취득할 당시 그 내용이 피해 회사의 주력제품인 H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자료이므로 이로써 경쟁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러

므로 이 사건 소스코드는 피해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외부로 반출되거나 경쟁사에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스코드는 영업비밀로서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인정된다.

5. 주제어

영업비밀, 형사,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비밀관리의 상대성, 소스코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보아 영업비밀침해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9고단729
사건명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A
피해업체	F 주식회사 (소프트웨어 개발 등)
판결결과 (형량)	무죄
원심판결	-
영업비밀의 내용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솔루션 제품 ‘H’의 2차 BMT(Bench Marking Test) 보고서 V2.0의 데이터를 비롯한 성능검사 자료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 사건개요

1) 피고인의 지위

피해 회사에서 연구소장 및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피해 회사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사람

2) 공소사실

①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인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H’의 2차 BMT 보고서 V2.0의 데이터를 비롯한 성능검사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High Speed Data Backup Business Proposal’이란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후 일본에 있는 J사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투자받기 위하여 K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영업자산인 ‘H’의 2차 BMT 보고서 V2.0의 데이터를 비롯한 성능검사 자료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무단 반출하고,

피해 회사와 같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G를 설립한 후 일본에 있는 J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위 자료를 이용하여 위 ‘High Speed Data Backup Business Proposal’ 를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요쟁점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인정 여부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의 상대성
- 영업비밀침해죄에서의 부정한 목적 인정 여부

4. 판결요지

비공지성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널리 일반에 공개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놓여져야 하고,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된 범위의 상대방에게만 제공되고 그 상대방이 더 공개할 가능성이 없다면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M&A 추진 과정에 I나 L 담당 직원에게 제공되었더라도 이는 그러한 목적에 한정하여 담당 직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용도로만 제공된 것이지, 상대방이 이후 다른 경쟁제품을 개발, 사용하거나 경쟁업체에 공개하도록 허락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 직원 또한 이러한 점에 유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N이 이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O는 상대방에게 자료로써 제공해도 되는 것과 보여주기만 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 문제되는 자료를 피해 회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비공지성에 대한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밀관리성으로서 접근 제한과 객관적 인식 가능성(표시) 등은 침해 행위자와 목적물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비밀 관리의 상대성). 즉,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경제성과 비공지성에 대해(특정한 자료가 영업비밀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아직 공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일 공지될 경우 경쟁업체와의 차별성 혹은 독점성을 잃게 되어서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 충분히 인식하는 자에게는 비밀로서 표시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알릴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행위자의 주관적인(내심의) 인식 정도는 쉽게 판정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비밀관리성의 유지 정도는 행위자의 인식을 추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 행위자가 영업비밀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임

피고인은 공동창업자로서 연구소장 및 영업본부장 직책으로 평소 피해 회사의 핵심 자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기밀자료를 직접 생활할 뿐 아니라, 대표자 O가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일임한 상태이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비밀표시, 등재, 교육 등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서 비밀관리

성을 상실하여 영업비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다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 회사의 ‘H’의 2차 BMT 보고서 V2.0의 데이터를 비롯한 성능검사 자료에 대해 영업비밀 인정

피고인이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한 ‘High Speed Data Backup Business Proposal’ 문서에는 현재의 특허권자가 피해 회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체불임금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특허권 압류와 매각명령을 진행 중이며, 계획대로 매각하여 피고인이 특허권을 확보할 경우와 그렇지 못하고 별도로 개발하여야 할 경우를 구분하여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우선, 특허권 매각 절차에서 취득하여 추가 개발하는 방법의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체불임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무산되는 것이므로, 그 결과 취득할 이익이 부정한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피해 회사가 특허권을 잃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여도 법률이 보호하려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특허권 취득에 실패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의 경우, 피해 회사가 사용한 ‘Delta’ 기술의 우수성을 타사제품과의 비교자료로써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의 기술의 우수성을 부각시켰을 뿐이고, 타사제품과의 비교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 결과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만한 경쟁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므로(다만 제대로 개발될 경우에 그 정도 기술적 우위가 있다는 참고자료일 뿐이다), 여기에 전형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쟁행위를 하려는 경우 인정되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투자를 유치한 행위를 가리켜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5. 주제어

영업비밀, 형사,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비밀관리의 상대성, 부정한 목적, 배임행위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관리를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3자 소속 직원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1. 서지사항

사건번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2
사건명	가. 업무방해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업체	특정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도매점들
판결결과 (형량)	파기환송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4494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주류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313조

2. 사건개요

1) 피고인들의 지위

주류도매점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I 소속 직원들

2) 상고이유

피고인들 : 원심의 판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3. 주요쟁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해당 여부

4. 판결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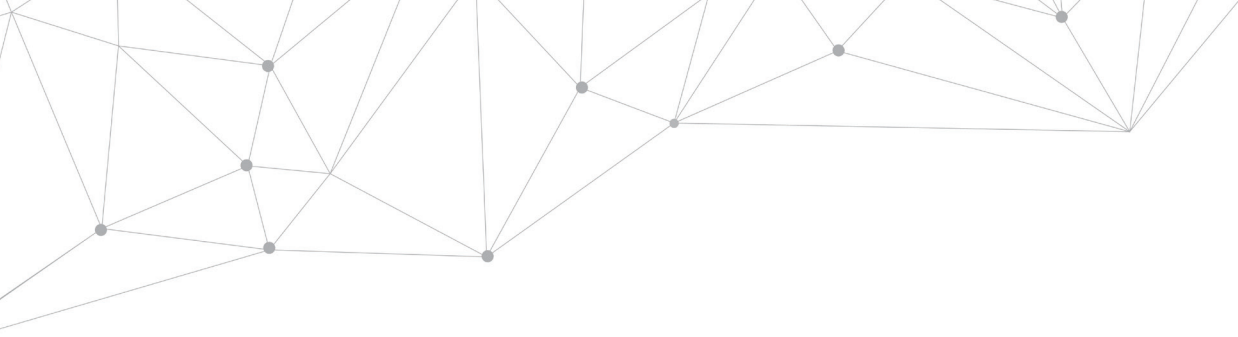
영업비밀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 및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I은 특정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도매점들과 1년 단위로 일정 지역에 대한 판매 독점권을 주는 대신, 도매점들도 I의 제품만을 취급해왔고, I의 매출액 중 도매점을 통한 매출액 비중은 약 60% 정도인 점 ② I은 2002년경 도매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도매점장들은 휴대용 단말기(PDA)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I의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 등을 입력하였던 점 ③ 도매점장들이 위와 같이 입력한 이 사건 정보는 I가 소유·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었고, I도 영업계획 수립 및 도매점의 소매점별 판매목표 설정 및 재고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정보를 영업에 활용해왔는데, 도매점장들도 I가 이 사건 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6~7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고,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도매점장들과 I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적은 없는 점 ④ 도매점장들은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각자의 아이디어 따라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었으나, 영업상 편의를 위해 자신의 도매점을 관리하는 I의 영업직원들에게 위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신 물품 주문을 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정보는 도매점장들이 I로부터 관할지역에 대한 주류판매권을 부여받아 영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로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동안 도매점주들과 I가 공동으로 활용해 왔고, I와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도매점장들은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매점장들은 I가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I와 그 직원들이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가 도매점장들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영업비밀 보유자인 도매점장들이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등누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함

5. 주제어

영업비밀, 형사, 비밀관리성, 상당한 이유, 주류도매



2017-20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분석 연구



2015-2019 5개년도 연계분석



일러두기

2015-2016 통계수치는 판결문 원문이 아니라, 선행 연구진의 엑셀 로데이터 결과물에서 본 연구진이 2차적으로 추출한 데이터로서, 판결문을 직접 대상으로 한 2017-2019 통계수치와 세부적인 분류기준에서 상이할 수 있다.

분석대상 판결문 현황은 최초에 수집된 판결문 모수가 아니라 판례 전문 확인 후 최종 심층분석 대상으로 삼은 판결문 모수 현황을 의미한다.

민사가처분·본안 1심 인용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청구인용된 경우만을 인용으로 처리하여 산출하였다(등록권리 침해나 약정위반 등이 인정되어 청구인용된 경우는 기각 기타로 처리).

형사사건 통계는 인원수 기준을 원칙으로 하였고, 부경법위반(단, 업무상 배임 포함)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긴 하였으나, 부경법위반죄(단, 업무상 배임 포함) 외에 기타법률위반죄로만 의율된 부수적 피고인은 제외하였다.

카목(구법 차목) 주장 인용률은 부정경쟁행위 단독쟁점 판례와 부정경쟁·영업비밀 중복 쟁점 판례를 한꺼번에 분석하였다.

손해액 추정규정(14조의2) 각항별 활용률은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도 근거조항이 불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출하였고, 1개 사건에서 복수의 산정근거조항에 근거한 경우는 복수개 처리하였다.

1. 분석대상 판결문 현황

(단위: 건)

선고 연도	전체 건수	부문											소계		
		민사가처분			민사본안			형사							
		부정 경쟁	영업 비밀	중복 쟁점	부정 경쟁	영업 비밀	중복 쟁점	부정 경쟁 (피고인수)	영업 비밀 (피고인수)	중복 쟁점	부정 경쟁	영업 비밀	중복 쟁점		
2015	547	72	110	-	108	71	9	57 (77명)	120 (283명)	-	237	301	9		
2016	679	105	153	-	110	98	17	41 (61명)	155 (344명)	-	256	406	17		
2017	666	92	102	7	131	142	20	49 (71명)	123 (301명)	-	272	367	27		
2018	659	95	100	8	114	146	26	29 (40명)	141 (269명)	-	238	387	34		
2019	547	81	96	8	81	97	24	42 (63명)	118 (270명)	-	204	311	32		
합계	3,098	445	561	23	544	554	96	218	657	-	1,207	1,772	119		

2. 민사가처분 1심 인용률

(단위: 건, %)

선고 연도	1심 건수	민사가처분											1심 인용률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인용 (부경인용 한정)	기각 기타	소계	인용 (영비인용 한정)	기각 기타	소계	인용 (부경·영비 인용 한정)	기각 기타	소계	부정 경쟁	영업 비밀	중복 쟁점		
2015	169	17	50	67	18	84	102	-	-	-	25.3	17.6	-		
2016	222	22	77	99	24	99	123	-	-	-	22.2	19.5	-		
2017	174	12	74	86	10	71	81	1	6	7	13.9	12.3	14.2		
2018	175	19	59	78	8	81	89	2	6	8	24.0	8.9	25.0		
2019	161	19	52	71	13	69	82	3	5	8	26.7	15.8	37.5		
합계	901	89	312	401	73	404	477	6	17	23	22.1	15.3	26.0		

3. 민사본안 1심 인용률

(단위: 건, %)

선고 연도	1심 건수	민사본안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1심 인용률		
		인용 (부경인용 한정)	가각	소계	인용 (영비인용 한정)	가각	소계	인용 (부경·영비 인용 한정)	가각	소계	부경 경쟁	영업 비밀	중복 쟁점
2015	154	33	58	91	11	44	55	3	5	8	36.2	20.0	37.5
2016	182	24	63	87	19	61	80	1	14	15	27.5	23.7	6.6
2017	229	15	85	100	8	105	113	-	16	16	15.0	7.0	0.0
2018	215	15	68	83	9	102	111	5	16	21	18.0	8.1	23.8
2019	151	9	52	61	4	68	72	2	16	18	14.7	5.5	11.1
합계	931	96	326	422	51	380	431	11	67	78	22.7	11.8	14.1

4. 형사 1심 무죄율

(단위: 명, %)

선고 연도	1심 피고인 수	형사								
		부정경쟁			영업비밀			1심 무죄율		
		무죄	유죄 기타	소계	무죄	유죄 기타	소계	부경 경쟁	영업 비밀	전체
2015	210	10	37	47	49	114	163	21.2	30.0	28.0
2016	225	7	40	47	37	141	178	14.8	20.7	19.5
2017	233	5	57	62	49	122	171	8.0	28.6	23.1
2018	170	3	30	33	38	99	137	9.0	27.7	24.1
2019	184	4	51	55	15	114	129	7.2	11.6	10.3
합계	1,022	29	215	244	188	590	778	11.8	24.1	21.2

5. 형사 1심 집행유예율

(단위: 명, %)

선고 연도	1심 자유형 선고 인원수	형사								
		부정경쟁			영업비밀			1심 집행유예율		
		집행유예	실형	소계	집행유예	실형	소계	부정 경쟁	영업 비밀	전체
2015	102	15	2	17	65	20	85	88.2	76.4	78.4
2016	132	11	7	18	96	18	114	61.1	84.2	81.0
2017	103	12	5	17	68	18	86	70.5	79.0	77.6
2018	72	3	0	3	52	17	69	100	75.3	76.3
2019	94	11	3	14	66	14	80	78.5	82.5	81.9
합계	503	52	17	69	347	87	434	75.3	79.9	79.3

6. 카목(구법 차목) 주장 인용률

(단위: 개, %)

선고 연도	카목 주장 건수	카목(구법 차목) 주장 인용 여부										
		민사가처분				민사본안				주장 인용률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소계	주장 인용	판단 없음	주장 기각	소계	민사 가처분	민사 본안	전체
2015	72	2	2	25	29	13	1	29	43	6.8	30.2	20.8
2016	110	1	3	55	59	9	4	38	51	1.6	17.6	9.0
2017	137	2	8	43	53	6	8	70	84	3.7	7.1	5.8
2018	143	5	7	42	54	8	11	70	89	9.2	8.9	9.0
2019	125	12	4	29	45	6	11	62	79	26.6	7.5	14.5
합계	587	22	24	194	240	42	35	269	346	9.1	12.1	10.9

7.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단위: 건, 천원)

선고연도	전체 인용건수	손해배상 인용액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최저값	평균값	인용건수	최저값	평균값	인용건수	최저값	평균값	인용건수
		최고값	중간값		최고값	중간값		최고값	중간값	
2015	45	1,000	93,770	29	10,000	743,405	13	20,000	156,666	3
		1,200,000	19,530		5,500,000	150,000		400,000	50,000	
2016	43	1,000	75,959	30	15,549	1,209,331	10	20,000	240,000	3
		600,000	34,475		7,199,434	410,113		500,000	200,000	
2017	24	3,650	74,887	15	4,040	1,308,121	9	20,000	20,000	1
		300,000	50,000		8,504,945	50,000		20,000	20,000	
2018	27	3,000	23,467	11	3,000	208,237	10	0	38,333	6
		50,000	19,000		1,696,873	30,000		150,000	15,000	
2019	19	3,870	48,120	9	50,000	260,655	7	20,000	173,333	3
		120,000	20,000		700,000	210,000		400,000	100,000	
합계	158	1,000	72,475	94	3,000	764,033	49	0	122,500	16
		1,200,000	20,000		8,504,945	150,000		500,000	30,000	

8. 손해액 추정규정(14조의2) 각항별 활용률

(단위: 개, %)

선고연도	전체 활용개수	손해액 추정규정(14조의2)																		
		부정경쟁					영업비밀					중복쟁점					손해액 추정규정 각항 활용률			
		1	2	3·4	5	소계	1	2	3·4	5	소계	1	2	3·4	5	소계	1	2	3·4	5
2015	32	2	5	-	9	16	1	1	-	11	13	-	-	-	3	3	9.3	18.7	0.0	71.8
2016	28	3	6	2	6	17	2	1	-	6	9	-	-	-	2	2	17.8	25.0	7.1	50.0
2017	25	2	1	1	11	15	1	2	-	6	9	-	-	-	1	1	12.0	12.0	4.0	72.0
2018	27	-	1	-	10	11	-	1	1	8	10	-	-	-	6	6	0.0	7.4	3.7	88.8
2019	19	1	-	-	8	9	1	-	-	6	7	-	-	-	3	3	10.5	0.0	0.0	89.4
합계	131	8	13	3	44	68	5	5	1	37	48	-	-	-	15	15	9.9	13.7	3.0	73.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분석 연구

발행일 | 2020년 9월

발행인 | 특허청장 김용래


발행처 | 산업재산보호정책과(www.kipo.go.kr)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 481-5425

FAX. (042) 472-1360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분석 연구**



KIPO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481-5425 <http://www.kipo.go.kr>

ISBN : 979-11-89854-99-7 13500

DOI : 10.8080/P9791189854997